

구 제 역 백 서

2003. 2

농림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V. 구제역 방역홍보 추진내용

1. 방역활동 홍보
2. 국경검역 홍보활동 강화

VI.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 피해농가 지원

1.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2. 소·돼지 등 수매
3. 경영안정자금 및 가축입식비 지원

VII.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1. 구제역 방역추진 평가와 교훈
2. 문제점
3.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4. 법령등 제도개선

VIII. 결론

< 부록 >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일지
-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보고서
- 해외역학전문가 평가보고서(요약, 원문)
- OIE규정
- 방역활동 홍보·보도자료
- 구제역 방역추진중 미답사례, 소감문 등

I. 머리글

1. 연구의 목적

- 2000.3.24~4.16(23일간) 경기 파주·화성·용인과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등 3개도 16개 시·군의 15 소사육농장(한우 62두, 젓소 19두 등 81두)에서 1934년 이후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발생 농장 반경 500m이내 182농가 2,223두를 살처분·매몰하고 반경 10km이내 우제류가축(연2회, 1,523천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병행한 결과 종식되었으며, 동년 9.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은바 있다.
- 2002.5.2~6.23(52일간) 경기 안성·용인·평택과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의 16농장(돼지 15, 소1)에서 구제역이 재발생되어, 발생 농장 반경 3km내외 농가 162호 160,155두(돼지 158,708두)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매몰한 결과 종식되었으며, 동년 11.29일 국제수역 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재획득한바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등이 구제역 상재지로서 주변국의 발생상황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물적교류확대등에 따라 재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금번 구제역의 발생경위와 긴급 방역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평상시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여 이땅에 구제역의 재발방지로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금번 구제역의 발생경위와 발생원인·병인체등 역학조사 상황등을 종합하여 2000년도 발생상황과 비교분석하고, 그동안 가축과 사람·차량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실시 그리고 가축의 살처분·매몰과 사후관리등 긴급방역조치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2000년도 대응조치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방역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또한 구제역 방역활동에 대한 홍보·보도내용과 대농가 교육홍보 추진상황을 종합정리하고, 가축수매등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농가 지원상황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 그리고 중국·몽고·동남아 국가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상황과 방역대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예방법·축산법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포함한 평상시 국경 검역대책과 질병모니터링 및 양축농가의 차단방역 실시등 국내 방역강화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 중앙 및 지방의 구제역 방역관련 자료수집을 위하여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경기도·충북도 및 시·군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다.
- 외국의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입수를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등과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며, 중국·동남아등 재외공관을 통하여 방역정보를 제공받는다.
- 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시·군의 가축방역관과 발생지역 농장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검증절차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2년 구제역 백서”를 완성한다.

II. 2002년도 구제역 발생이전 방역대책 추진상황

1.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역사

가. 연도별 발생상황(1911~1999)

-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구한말인 1911년 일제치하에서 소 11두에 구제역(일명 아구창)이 최초로 발생보고 되었으며, 이후 매년 발생되어 1918년에는 발생두수가 36,397두에 달하였다.

- 그 후 발생두수가 감소되어 1927년에 소1두에서 발생한 이외에는 발생이 없다가 1931년 2월에서 7월까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4개도에서 소 968두의 발생이 있었으며, 1933년에는 3월22일부터 5월26일까지 65일동안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2,383두(소 2,371, 돼지 12)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 (표Ⅱ-1 참조)

[표Ⅱ-1]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상황(1911-1999)

년도	축종	발생두수	년도	축종	발생두수	비 고
1911	소	15	1924	소	177	
1912	소	15	1925			
1913	소	1,015	1926	소	128	
1914	소	9,182	1927	소	1	
1915	소	1,202	1928		0	
1916	소	802	1929		0	
1917	소	870	1930		0	
1918	소	36,397	1931	소	968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1919	소	317	1932		0	
1920	소	634	1933	소, 돼지	2,383	돼지 12두 포함
1921	소	181	1934	소	3	
1922	소	27	1935~ 1999		0	1935년부터 1999년까지 없음
1923	소	37				

나. 2000년 구제역 발생 및 종식상황

'90년대에 이르러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고 여행객이 늘어나는 등 구제역 유입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수의과학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차폐연구시설을 설치('96)하고 해외전염병과 신설 등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997년 이웃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니터링 혈청검사와 국내발생을 대비한 가상방역훈련, 예방약 확대비축(완제품 5만두분 → 30)등 방역대책을 추진했었다.

- 우리나라는 2000.3.24~4.16(23일간) 경기도 파주·화성·용인과 충청남도 홍성·보령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 소사육농가 15호 81두(한우 62, 젓소 19)에서 구제역이 1934년 이후 66년만에 발생되었다.
- 정부에서는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 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과 방역대를 설치하여 가축·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였으며, 경계지역내 우제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와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즉,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182농가 2,223두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경계지역내 우제류가축 연 1,523천두에 대하여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2차에 걸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발생농장 반경 20km이내 관리지역 우제류 가축 3,523농가 12,782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농림부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에 의거 예방접종 중단후 만1년이 되는 2001.9.1자로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였으며,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을 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2001.9.19자로 프랑스·아일랜드·화란등 국가와 함께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되었다.

2. 국경검역대책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수입 건초』 및 『해외여행객』으로 추정되고, 바람(황사)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경검역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검역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경검역의 기본원칙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유입을 방지하여 왔다. 우리는 구제역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초부터 방역의 비상이 걸렸다. 영국에서 2001년 2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영국으로부터 가축을 수입하여 영국의 구제역과 연관된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등에 대하여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EU 국가중 비발생국가를 포함한 전체 EU 국가산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01. 3. 14)를 취하였다. 2001년 2월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외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국내 유입방지에 비상이 걸렸지만 국내 방역측면에서는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 역학조사 결과 나타난 위험요인중 『수입건초』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지정검역물로 분류하고 수입 조사료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수출국에서는 소독시설을 승인받도록 하고, 상대국에서 소독을 실시한 다음 국내 도착후 재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여행객』에 대하여는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 11월말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탐지견 2두를 처음 투입하여 여행객 휴대품 검색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탐지견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축산물 가공품을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짐속에서 찾아내어 휴대품 검색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탐지견 훈련센터 건립, 탐지견 및 운용요원 추가 확보, 외국의 탐지견 운용기술 습득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처음 10마리를 추가 투입하여 활용하여 왔다.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31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휴대축산물에 대하여 구제역 오염여부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였다. 공·항만의 입국장에는 발판 소독조(310개소)를 설치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신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입국장의 범위가 넓고 게이트가 많아

검역관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용역을 주었다. 전국 공·항만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세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밀수 검역물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선사 및 항공사의 남은 음식물에 안전처리 관리를 강화하였다. 오염물이 묻은 화물컨테이너·중고농기계류·피항 및 나포선박, 골프화 및 골프채에 대하여도 소독을 실시하였다. 국경검역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원 뿐만아니라 축산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공·항만에서 전광판·리후렛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연말연시·명절 연휴 등에는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국내 공·항만에서의 홍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에서 비자 발급시 또는 탑승권 발매시 현지 언어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현지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으로 항공기가 국내 도착직전에 항공기내에서 검역안내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고, 비행기에서 내린후에는 전광판 안내 홍보와 동물검역설문서 회수 등을 통한 홍보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생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등에 출장하여 인솔자를 교육하여 인솔자가 여행객에 대하여 방역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내 도착시 검역을 철저히 받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3. 국내방역대책

'00. 3. 24 ~ 4. 16일 사이 경기 과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의 6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정부, 축산농가, 관련단체 등 민·관이 합심 단결하여 강력한 초동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방역 추진사항을 총정리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국 인증 신청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 조치사항을 높이 평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국으로 인증받았다('01. 9. 19).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하여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가 청정국 인증이나 향후 대일 돼지고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었으며, 예방접종 가축으로 인한 방역상의 실질적인 관리도 이해되어야 하므로 예방접종 지역에 대하여 2회(1회째 ; 2~3월, 2회째 ; 6월)에 걸쳐 일제 농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읍면동)의 관리대장까지 검역원 직원이 확인 보완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평가된 황사에 대한 방역관리가 무척 어려웠다.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축산농가 황사 관리수칙” 홍보자료 40만부를 우선 제작 배포하고, 황사 발생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상청과 검역원간에 기상정보 전용 팩스(Hot Line)를 설치하여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도록 하고, 황사 발생 기상정보가 확인되면 검역원(상황실)에서는 시·도, 생산자 단체 등에 황사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시·도(시·군)에서는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마을단위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대비토록 하였다. 황사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 문제없이 추진하였으나 느닷없이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새벽 일기 예보시 황사발생 기상정보가 나오면 우리 또한 새벽 일찍 출근하여 조치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다.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은 이후 '01. 12. 1일자로 돼지콜레라도 내륙지역의 전면적인 예방접종 중지(강원도는 '01. 1. 1일자로 예방접종 중지)와 함께 청정화를 선포하였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므로써 돼지고기 등 수출기반이 확실하게 다져진 것이었다. '02년도에는 청정화 유지를 위해 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02. 2월 ~ 4월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범정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 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02. 3. 7), 시·도별로 구제역 방역 가상훈련(CPX)를 실시하였다.

'02년도는 무엇보다도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 정부에서는 테러 다음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다. '02년 2 ~ 4월은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마을단위로 공동방제단(10,355개소)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소규모 농장(31만호)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러한 현장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소독차량 313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여부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부, 검역원, 농진청 등 기관별 담당지역을 정하여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도축장, 집유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하였다.

4. 최근 세계의 구제역 발생상황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질병정보자료에 의하면 2002.12월말 현재 전세계의 발생국가는 103개국이며, 비발생국가는 56개국으로 보고되었다.
- 연도별로는 2000년에 러시아·한국·일본·대만·베트남·부탄·그루지아·그리스·이집트·모리타니아·나미비아 등 10개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34년 이후 66년만에 발생되었다.
- 2001년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아시아(9개국)·중동(4개국)·유럽(5개국)·아프리카(5개국)·남미(3개국)등 27개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 영국은 2.20 남동부 도축장(Essex)계류장내 돼지28두에서 1981년 이후 20년만에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발생농장의 미신고에 따라 급속히 전국의 소·양등 우제류가축에 확산되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그밖에 유럽은 프랑스·화란·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등 국가에서 발생되었다.

- 대만은 '97년 돼지 4,659천두 발생에 이어 매년 발생되었으며 '00년에는 소·염소등 전체 우제류가축으로 전파되어 연2회 전체 우제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아시아지역에서는 몽고·중국·말레이시아·터키·태국·홍콩·키르기스지탄·카자흐스탄등 국가에서 발생되었고, 중국과 북한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질병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쿠웨이트·카타르등 국가에서 발생되었다.
- 아프리카는 남아공·에리트리아·말리·말라위·짐바브웨등 국가에서 발생되었다.
- 남미는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에서 발생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99.4월 예방접종을 중단하여 '00.5월 비발생국인증후 3개월만인 '00.8월에 재발생되었다.
- 2002년에는 몽골·한국·팔레스타인·파라과이·모잠비크·잠비아·보츠와나·시리아·베네주엘라 등 9개국에서 발생하였다.
 - 몽골은 7.21부터 소·양·염소등 가축에서 8건의 구제역(O형)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링백신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살처분정책을 병행하였다.
 - 시리아는 2.9 소구제역(A, O형)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총 11건이 발생되었다.
 -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는 7.18 염소와 양(40두)에 구제역(O형)이 발생되어 지역별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는 2.7소(2건 67두)에 구제역(SAT2형)이 발생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잠비아에서는 5.7소(69두)에 발생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잠비크에서는 11.4소(3건 5,200두)에서 구제역(SAT1)이 발생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 베네주엘라는 10.16 소와양(9건)에서 구제역(A형)이 발생되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링백신과 살처분정책을 병행하였다.
 - 파라과이에서는 10.31 소(1건 2두)에서 구제역(O형)이 발생되어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5.2~6.23(52일간) 돼지와 소(16건)에 구제역(O1형)이 발생되어 발생농장과 인근농장가축에 대한 살처분 실시(160,155두)로 종식되었으며, 11.29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은바 있다.
- 세계의 최근 각국별 연도별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상황은(표1)과 같고, 구제역 발생상황은(그림1)과 같다.

(표 1)

최근 국가별 구제역 발생상황



국가	발생일자 (최초 발생건 기준)		최초발생건	방역 조치 상황
	최초 발견일	OIE 보고일		
스와질랜드	'01.01.10	'01.01.17	소(3) Virus type (SAT1)	· 이후 추가발생(377두). 총 896두 살처분 · 링백신접종실시
남아공	'01.2.01	'01.2.06	소(35) Virus type (SAT2)	· 남아공 북부지역에서 발생 · 백신접종실시
몽골	'01.2.10	'01.2.19	소·면양(657) Virus type (O)	· 총 15건 발생(총 948두에서 발생, 744두 살처분) · 링백신접종실시
영국	'01.2.19	'01.10.22	소(7)·돼지(28) Virus type (O)	· 총 2,030건 발생(총 4,203,000두 살처분) · 살처분 정책
키르기스탄	'01.2.21	'01.2.28	소(49)·양(41) Virus type (O ₁₉₄)	· 감염 및 위험지역에 대한 백신실시
대만	'01.02.25	'01.03.02	돼지(3) Virus type (O)	· 총 1건발생(돼지 3두 살처분) · 백신접종실시
북아일랜드	'01.2.27	'01.3.02	양(4) Virus type (O)	· 총 4건 발생 · 살처분 정책
아르헨티나	'01.03.12.	'01.03.12.	소(450) Virus type (A)	· 총 1,641건 발생(6.30일까지 집계) · 백신접종실시
프랑스	'01.03.12.	'01.03.13.	소(6) Virus type (O)	· 총 2건발생(총 390두 발생/소 233두, 양 147두, 돼지 10두) · 살처분정책 : 총 53,450두
말라위 (아프리카)	'01.3월	'01.3.16	소(2) Virus type (?)	· 백신접종실시
아일랜드	'01.03.20	'01.03.22	면양(8) Virus type (O)	· 총 1건발생 · 살처분정책 : 약 60,000두 살처분(4.12일 정부발표)
사우디 아라비아	'01.3.18	'01.3.28	소(1,891)· 양/염소(523) Virus type (SAT2)	· 총 46건 발생(소 1,891두, 양/염소 523두). 동물의 이동에 의해 질병이 확산됨. 백신접종실시

국가	발생일자 (최초 발생건 기준)		최초발생건	방역 조치 상황
	최초 발견일	OIE 보고일		
네델란드	'01.03.21	'01.03.22	소(5)·염소(130) Virus type (O)	· 총 26건 발생(발생지기준 : 총 272두 발생, 5,501두 살처분) · 긴급백신접종(EU Commission Decision(2001/246/EC))실시
쿠웨이트	'01.4.17	'01.4.21	송아지(30두) Virus type (O ₁)	· 총 6건(소 47두) 발생 - 5.25일 OIE 질병정보기준 · 긴급 백신접종실시 - 5.15일 기준 총 2,200두
우루과이	-	'01.4.25	Virus type (A)	· '01.6.13일 OIE보고 기준 : 총 1,596건 발생 · 긴급, 전략적 백신접종실시
카타르	'01.4.22	'01.5.01	소(20)·염소(25) Virus type (O)	· 검역실시, 이동통제, 긴급 백신접종실시
브라질	'01.5.08	'01.5.08	소(15) Virus type (A)	· 총11건(소 97두)발생(5.25일 OIE질병정보보고) · Rio Grande do Sul주내 25개 구역에서 전략적 백신접종실시
카자흐스탄	'01.5.05	'01.5.23	소(3) Virus type (O ₁)	· 1건 추가발생(총 2건) · 백신접종실시(발생지 및 위험구역(반경30km내))
말레이시아	'01.5.13	'01.6.11	소(26) Virus type (O)	· 총 7건 발생 · 링백신접종실시(발생농장 및 반경4km내)
터키	'01.6.17	'01.6.29	염소(40두) Virus type (O ₁)	· '01.7.20일 터키 보고 : 총 염소 50두에서 발생 · 발생농장 주위 12곳 마을내 가축에 대하여 백신접종실시
말리	-	-	-	· 2001.2월 발행 말리 가축위생상황에 관한 보고서 내용 -2001년 2월 한달동안 구제역 1건 발생 : 소(34두)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	-	-	· 2001.1월 발행 에리트레아 가축위생상황에 관한 보고서 내용 -2001년 1월 한달동안 구제역 2건 발생 : 소(200두)
아제르바이젠	-	'01.8.08	-	· 3건 발생(소 25두)
짐바브웨	-	'01.8.16	소(400) Virus type (SAT2)	· 1건 발생(소 400두) · 백신접종실시
우간다	'01.11.05	'01.11.08	소(200)	· 링백신접종실시
보츠와나	'02.2.07	'02.2.14	소(66) Virus type (SAT2)	· 총 2건(소 67두) 발생 · 백신접종실시

국가	발생일자 (최초 발생건 기준)		최초발생건	방역 조치 상황
	최초 발견일	OIE 보고일		
대한민국	'02.5.02	'02.5.04	돼지(851) Virus type (O 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6건(소 1두, 돼지 389두) 발생 살처분 정책(총 160,155두 살처분)
잠비아	'02.5.04	'02.5.07	소(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9두 추가발생
팔레스틴 자치지구	'02.7.18	'02.7.24	염소/양(40) Virus type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인 백신접종실시
몽골	'02.7.21	'02.07.21	소(66) Virus type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건 발생(소 431두, 양 46두 염소4두) 링백신접종실시
파라과이	'02.10.31	'02.11.04	Virus type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건 발생(소 2두), OIE reference Lab에서 소 Esophageal-pharyngeal액 시료중 구제역 바이러스 분리 살처분 정책
모잠비크	'02.11.04	'02.11.06	소(20두) Virus type (SA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건(소 5,200두 : 추정치) 발생 백신접종실시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12월 발행 에리트레아 가축위생상황에 관한 보고서 내용 -2001년 12월 한달동안 구제역 1건 발생 : 소(3두)
시리아	'02.02.09	'02.11.17	소(11) Virus type (A,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1건 발생('02년 2-3월중 시리아 수의연구소에서 채취한 소혈액 샘플을 영국 Pirbright연구소에 송부 '02.11월 검사결과 통보) 백신접종실시
베네주엘라	'02.10.16	'02.11.28	소(20두) Virus type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건(소 710두, 양 1두) 발생 링백신접종실시

※ 국제수역사무국(OIE)국가별 구제역 질병정보자료 참조

(그림1) 세계의 구제역(FMD)발생 현황

□ 주요국별 경제적 손실 평가

<한국>

- 2000.3~4월 소 사육농가에서 15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우제류 가축(연2회 1,523천두)에 대한 긴급예방접종과 함께 살처분 정책(182건, 2,223두)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살처분보상비 지급·소득 실시등 직간접 경제적 손실 총액은 약 3,00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2002.5~7월 돼지와 소사육농가(16건)에서 구제역이 재발생되어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62건 160,155두의 우제류 가축(돼지 158,708)을 살처분하여 살처분 보상비 지급등 1,434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입어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4,44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대만>

- 1997.3~12월 돼지 사육농가에서 6,147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긴급예방접종과 함께 4,659천두 돼지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98년에 돼지 6건, '99년에 돼지·소 16건, '00년에 소·염소·돼지 6건, '01년에 돼지1건등 매년 발생이 계속되어,
 - '00년부터 전 우제류가축에 대하여 연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간접 경제적 손실 총액은 양돈관련 산업피해와 수출 중단에 따른 손실을 포함하여 5년간 약 41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 2001.2~10월 돼지·양·소에서 2,030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총 10,841천두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여
 - 살처분 보상금 지급등 축산업 피해와 관광손실을 포함하여 총 14.4조원(축산 1.6조, 관광 7.6조)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고 있다.

주요국별 구제역 경제적 손실평가 비교

		발 생		살 처 분		직·간접 경제적 손실총액	비 고
		농가	두수	농가	두수		
한국	'00 3~4월	건 15	소 81두	건 182	2,223두	3,006억원	살 처 분 및 예 방 접 종 :우체류(2회) 1,523천두
	'02 5~7월	16	소 77두 돼지 59,979	162	160,155두	1,434억원	살 처 분
대만	'97 3~12월	건 6,147	돼지 1,196천두	건 6,147	4,659천두	총 41조원 (5년간)	살 처 분 및 예 방 접 종 -'00년부터 전 우체류가축 예 방 접 종 (연2회)
	'98	6	돼지 3,449두	6	3,916두		
	'99	16	돼지·소 5,922두	10	6,715두		
	'00	6	소·염소·돼지 744두	6	744두		
	'01	1	돼지 3두	1	3두		
영국	'01 2~10월	건 2,030	돼지·양·소 4,068천두	건 2,030	10,849천두	총 14.4조원 -축산 : 1.6조원 -관광 : 7.6조원	살 처 분

※ OIE(국제수역사무국) 보고서

-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평가 “Animal Health Economics”
; 축산업 총 생산액의 20~24%
- 우리나라, 연간 약 1조2천억원 손실 추정

Ⅲ. 구제역 발생경위

1. 경기(안성·용인·평택), 충북(진천) 구제역 발생현황

2002년5월2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6월23일까지 경기도와 충북지역 4개 시·군(안성·용인·진천·평택)에서 안성9건, 용인4건, 진천2건, 평택1건등 총16건이 발생하였고, 축종별로는 돼지15건(388두), 젖소1건(1두)이었다.

16건 발생지역은 최초발생농장인 율곡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내외지역에서 13건이 집중발생되었다.

2002년중 구제역 의심증세로 35건이 신고되었으나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16건은 구제역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19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 '02년 구제역 발생양상 분석

<발생기간>

최초 발생신고일인 5월2일부터 최종발생일인 6월23일까지 52일간 4개 시·군 16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처음 발생이후 2차·3차 발생시기는 8일 내외의 발생주기를 보이다가 5. 20일 이후에는 3~14일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1차발생 2건(5.2~5.3) → 2차발생 6건(5.10~5.12) → 3차발생 4건(5.18~5.19) → 4차발생 4건(6.2~6.23 : 산발적 발생)

6월23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8월7일 최종발생지역에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8월14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종식을 발표하였다.

<발생지역>

최초발생은 5.2일 경기도 안성 율곡농장과 5.3일 율곡농장에서 남쪽으로 22.5km 떨어진 충북 진천에서 각1건씩 2건이 인력의 유동성이 많은 수도권 인근 중부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되어 전파위험성이 높은지역이었다.

2차발생은 울곡농장과 진천 발생농장 500m내외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한 5.5일로부터 5~7일이 지난 5.10~12일 사이에 6건이 경기 안성과 용인지역에서 추가 발생되었으며, 추가발생된 농장중 5곳이 안성과 진천 최초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에 위치하였고, 안성 보개면 가율리에서 발생한 1농장만이 울곡농장에서 남서쪽 6.9km에 있는 농장이었다.

3차발생은 최초발생농장 반경 3km내외에 대한 살처분을 용인지역에서 최종 완료한 5.17일로부터 1~2일이 지난 5.18~19일사이에 안성 울곡농장으로부터 3~10km사이에서 4건이 추가발생되었다.

4차발생은 6.2일, 6.7일, 6.10일, 6.23일에 1건씩 4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중3건이 안성 울곡농장으로부터 3~10km지역의 농장이었고, 1건은 울곡농장 서남쪽 28km에 위치한 경기 평택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발생지역을 보면 최초 발생농장(울곡농장) 중심 10km내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13건)하였고, 10km밖에서 3건(평택 1, 충북 진천2)이 발생하였다.

<발생축종 및 발생두수>

- 구제역 발생 축종 : 돼지(15농가), 소(1농가)
 - 돼지의 경우 1,000두 이상 사육규모가 12농가, 1,000두 미만 사육규모가 3농가로, 주로 1,000두 이상 사육농장에서 발생하였다.
- 정부에서는 방역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소독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왔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왔으나, 양돈관련자 및 사료·동물약품·돼지출하등의 차량출입이 많은 중대규모 농가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구제역 발생 및 의심축 신고현황

□ 구제역 발생내용(16건 발생 : 돼지 15건, 유우 1건)

- ① 경기 안성 삼죽면 율곡리(유창주, 돼지) : 5.2 신고 → 5.4 양성판정
- 돼지 폐사 280두, 8,022두 사육
- ② 충북 진천 이월면 사곡리(이춘복) : 5.3 신고 → 5.4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50두, 폐사 1두, 1,005두 사육 (율곡농장 남쪽22.5km 위치)
- ③ 경기 용인 백암면(김기돈) : 5.10 신고 → 5.10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폐사 7두, 돼지 1,416두 사육 (율곡농장 북동쪽 1km 위치)
- ④ 경기 용인 백암면 옥산리(김진우) : 5.10 신고 → 5.10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폐사 5두, 돼지 10,930두 사육 (율곡농장 북동쪽 2km 위치)
- ⑤ 경기 안성 삼죽면 덕산리(송경식) : 5.10 신고 → 5.11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160두, 한우·젖소 등 116두 사육 (율곡농장 남서쪽 2.1km 위치)
- ⑥ 경기 안성 보개면 가율리(우석재) : 5.10 신고 → 5.11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4두, 돼지 4,000두 사육 (율곡농장 남서쪽 6.9km 위치)
- ⑦ 경기 용인 백암면 옥산리 1075(박장근) : 5.12 신고 → 5.13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7두, 돼지 301두 사육 (율곡농장 동쪽 1km 위치)
- ⑧ 충북 진천 진천읍 장관리 596-5, 안중국(유전자원) : 5.12 신고 → 5.13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3두, 돼지 15,924두 사육 (진천 이춘복농장 남쪽 2.5km 위치)
- ⑨ 경기 안성 일죽면 방초리 송림농장(송병훈) : 5.18 신고 → 5.19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5두, 돼지 900두 사육 (율곡농장 북동쪽 3km경계 위치)
- ⑩ 경기 안성 일죽면 고은리(신오성) : 5.19 신고 → 5.19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6두, 돼지 1,000두 사육 (율곡농장 서북쪽 4.5km 위치)
- ⑪ 경기 용인 원삼면 독성리(강경석) : 5.19 신고 → 5.20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2,000두 사육 (율곡농장 서북쪽 8~9km 위치)
- ⑫ 경기 안성 보개면 남풍리 삼분농장(박용범) : 5.19 신고 → 5.20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3,500두 사육 (율곡농장 남서쪽 7.9km 위치)
- ⑬ 경기 평택시 유천동 버들농장(강일원) : 6.2 신고 → 6.3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20~30두, 돼지 1,551두 사육 (율곡농장 서남쪽 28km 위치)
- ⑭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맘마목장(김준수) : 6.7 신고 → 6.8 양성판정
- 젖소 의심축 1두, 젖소 78두 (율곡농장 북동쪽 3.5km 위치)
- ⑮ 경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일죽GP농장(이원형) : 6.10 신고 → 6.11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4두, 돼지 3,580두 (율곡농장 동북쪽 6.5km 위치)
- ⑯ 경기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돼지농장(최근섭) : 6.23 신고 → 6.24 양성판정
- 돼지 의심축 4두, 돼지 1,680두 (GP농장 동북쪽 1.3km 위치)

□ 의심축 신고내용중 정밀검사결과 비발생(음성 19건)

- ① 경기 광명 가락동(염영선) : 5.3 신고 → 5.4 음성판정
- 젖소 의심축 1두, 젖소 17두 사육
- ② 경기 양주 남면 한산리(김영식) : 5.6 신고 → 5.7 음성판정
- 한우 의심축 1두, 한우 76두 사육
- ③ 경기 가평 가평읍 하색리(최귀호) : 5.7 신고 → 5.8 음성판정
- 젖소 의심축 2두, 젖소 65~70두 사육
- ④ 경기 안성 대덕면 신령리(이원근) : 5.8 신고 → 5.9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3,400두 사육
- ⑤ 충남 보령 주교면 송학리(이정학) : 5.8 신고 → 5.9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2,730두 사육
- ⑥ 경기 안성 보개면 가율리(최천수) : 5.11 신고 → 5.12 음성판정
- 젖소 의심축 2두, 젖소 45두 사육
- ⑦ 경기 안성 삼죽면 덕산리788(박장원) : 5.12 신고 → 5.13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2두, 돼지 3,888두 사육
- ⑧ 충북 진천 진천읍 문봉리 137(정운소) : 5.13 신고 → 5.14 음성판정
- 유우 의심축 1두, 유우 33두 사육
- ⑨ 광주광역시 광산구 요기동(이철동) : 5.16 신고 → 5.17 음성판정
- 한우 의심축 1두, 한우 9두 사육
- ⑩ 경기 이천 모가면 소고리(유승문) : 5.16 신고 → 5.17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7두, 돼지 60두 사육
- ⑪ 충북 진천 이월면 신월리(이진건) : 5.18 신고 → 5.19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1두, 돼지 3,000두 사육
- ⑫ 경기 안성 미양면 금보중돈 : 6.5 신고 → 6.6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모돈 4두, 자돈 1두, 돼지 1,500두 사육
- ⑬ 충남 서산 성연면 한우농가 : 6.8 신고 → 6.9 음성판정
- 한우 의심축 6두, 한우 22두 사육
- ⑭ 경기 안성시 일죽면 승문농장(양희문) : 6.11 신고 → 6.11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3두, 돼지 1,400두 사육
- ⑮ 경기 안성시 일죽면 안성축산진흥공사(김기선) : 6.11 신고 → 6.12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3두, 돼지 65두 사육
- ⑯ 경기 안성시 고삼면 한샘농장(최재충) : 6.18 신고 → 6.19 음성판정
- 돼지 의심축 3두, 돼지 1,000두 사육
- ⑰ 경기 가평군 외서면 상천3리(이대우) : 7.1 신고 → 7.2 음성판정
- 젖소 의심축 1두, 유우 41두 사육
- ⑱ 경기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황의성) : 7.25 신고 → 7.26 음성판정
- 한우 의심축 1두, 한우 18두 사슴 6두 사육
- ⑲ 경기 안성시 금광면 중환농장(강웅균) : 8.10 신고 → 8.11 음성판정
- 젖소 의심축 1두, 젖소 30두 사육

<그림>

2002년도 국내 구제역 발생상황

경기 안성 구제역 최초발생농장 주변 위험지역

경기 안성, 용인/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상황

경기 안성, 용인,평택/충북 진천지역 구제역 발생상황

2. 정밀검사내용

5월 2일 신고된 안성의 양돈농가(유창주)의 의심축에서 채취한 수포액, 편도, 혈청, 가피조직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특수 차폐 실험실에서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항원검사를 위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3ABC 유전자에 대한 효소중합연쇄반응(PCR)을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어서 혈청형 특이성 검사를 위한 VP1 PCR검사결과 혈청형은 A형, C형 및 Asia 1형이 아닌 O형 구제역바이러스로 판명되었고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생산된 항원검사용 효소면역검사법(Antigen ELISA)으로 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으로써 PCR 검사와 일치하였으며, 전자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조직내 구제역바이러스로 인정되는 병원체를 확인하였다.

구제역 감염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생산한 LPB-ELISA(구조단백질 항체검출용)와 이탈리아 제품인 Brescia 3ABC ELISA(비구조단백질 항체검출용)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낸 대부분개체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항체가 생성되기전에 검사하였기 때문에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결국 이는 감염극초기에 가검물이 채취되어 진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의심축(돼지)에서 채취한 가검물(수포액 등)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가검재료 유제액을 조직 배양세포(염소태아 폐세포, BHK, IBRS2)에 접종하였다. 접종후 세포에서는 3-9일 사이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가 관찰되었고 감염된 세포의 상층액을 다시 PCR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제역 특이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형광항체법(IFA)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바이러스 입이 증명되었다. 구제역발생은 5월 4일에 공포하였고 이어 OIE에도 보고하였다. 이상 구제역 진단의 방법과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진천 등 타지역의 가검물도 이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1] 구제역 정밀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구분	검사방법	재료	검사결과
혈청학적 검 사	○ 항체검사(ELISA) - Pirbright kit - 3ABC 비구조단백	혈청 혈청	일부 양성(O형) 일부 양성
원인체 검 사	○ 유전자 검사(RT-PCR) ○ 바이러스 항원검사(ELISA) ○ 전자현미경(TEM) ○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분석(VPI 부위) ○ 바이러스 분리 동정	수포액, 타액, 가피조직 수포액, 타액, 가피조직 수포액 수포액 유체액 또는 수포액 →세포배양	양성(O형) 양성(O형) 양성 양성(O1형)몽고주 (2000)와 매우유사 양성 (IFA, PCR로 확인)

5월 2일부터 수포성질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총 35건 중에 16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14건이 경기, 2건이 충북에서 발생되었다

[표2] 구제역 의심가축 신고 및 정밀검사 결과

지역별	신고건수	검사건수	음성	양성
경기	27	27	13	14
충남	2	2	2	0
충북	5	5	3	2
전북	1	1	1	0
합계	35	35	19	16

한편 국내에서 분리된 구제역바이러스의 VP1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2000년 몽골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주와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여 국내에서 분리된 구제역바이러스는 아시아대륙(중국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경기도 일대와 인근 충북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한 구제역은 총 16건중 1건만이 유우(경기, 맘마목장)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서 발생하여 이번에 발병한 구제역바이러스의 2차적인 전염은 공기전파에 대한 전염보다는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간 전파가 주요한 전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관련한 연구로서 2002년 국내분리 바이러스주의 숙주특이성 등과 및 병원성시험도 2003년에 새롭게 신규연구과제로 설정되었다.

2002년 구제역진단에서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현장에서 직접 적용한 간이항원키트라고 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2C 혹은 3ABC)의 존재여부를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대사산물이 들어 있는 개체의 수포액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15분 이내에 검출해 냄으로서 현장방역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추후 실험실에서의 항원검사와 비교한 결과 간이항원키트의 민감도는 수포액에서의 경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임상 및 분리바이러스의 특성>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임상적 특징은 발열, 침흘림, 수포형성, 파행, 기립불능 등 전형적인 구제역 임상 증상과 병변을 나타내었다. 최초로 신고된 안성의 환축 뿐만 아니라 진천, 용인, 평택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에서도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었다. 최초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계속적으로 돼지 농장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하여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97년도 대만의 경우와 같은 돼지 친화성 바이러스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만 발생 구제역의 바이러스와는 유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PanAsia type으로 확인되었다. 이 type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소나 염소 등 에서도 발생되며 돼지에서는 구제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들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행히 축주 및 방역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 구제역 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조기에 구제역을 진단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여 단 16개 농장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에서와는 달리 돼지는 구제역바이러스를 증폭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을 우려했으나 철저한 방역 및 신속한 진단을 통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국내에서 분리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7가지 바이러스형 가운데 하나인 O형으로서 단 한건의 젖소에서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돼지에서 발생하였다.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결과 1999년 몽고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O/MOG/99)의 염기서열과 거의 일치했으며 2000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및 일본등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약 3% 전후의 차이를 보였다. 이 바이러스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PanAsia type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원래 중동 및 인도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구제역 바이러스형이다.

3. 역학조사 결과

가. 역학조사 활동현황

□ 중앙역학조사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신설
 -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원인규명을 위해 긴급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그 이후 역학조사 강화를 위하여 2001년 12.31일자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역학조사과 신설
 - 역학조사과 전무가 위주로 역학조사 수행
- 역학조사의 방법 및 활동 현황
 - 기본적으로 발생농장 축주 및 조사대상자와의 면담을 하고, 환축의 임상증상 관찰내용과 농장의 위치 및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
 - 1차 조사된 현지 내용을 바탕으로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관련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자료 (사료, 동물약품, 인공수정 등의 차량 운행 일지, 배달일자, 판매대장 등)를 재차 확인작업을 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
 - 역학조사 내용의 검증 및 자문
 - 역학조사위원회 및 구제역분과위원회에 조사내용 보고 및 결과 토의
 - 해외 역학전문가와의 역학조사 내용 토의 및 발생농장 등 현장점검

□ 역학조사위원회(중앙역학조사반운영규정; 검역원훈령)

-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등 15인으로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분과위원회(6인) 구성
 - 역학조사위원회 활동사항 : 역학조사위원회 3회, 구제역분과위원회 2회
- 위원장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순재 명예교수
- 위 원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봉환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한홍률 교수, 박봉균 교수,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무형 교수,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박선일 교수, 대한양돈협회 김건태 회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송지봉 축산물검사부장, 이주호 질병방역부장, 안수환 질병연구부장, 이승원 검역검사과장, 임경종 방역과장, 위성환 역학조사과장, 주이석 해외 전염병과장, 진영화 병리과장

□ 해외 역학전문가 자문

- 국내 역학조사·방역정책 자문을 위한 해외역학전문가 초청 (6.27~7.7) : 가너(호주), 맥커레스(뉴질랜드), 웨인라이트 (미국)
- 해외 역학전문가의 평가 결과
 - '02. 5.2일 이후 6.23일까지 총 16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결과로 평가
 - 감염농장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역학조사 자료는 해외역학전문가팀의 평가시 매우 가치가 있었음을 표명
 -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르고 최근에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의견에 동의

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 결과

- 2002년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 국내 소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Pan Asia O₁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2000년 발생주와는 다른 바이러스주(strain)로 밝혀짐
 - 퍼브라이트 연구소 (영국)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계통 발생론적 분석에 의하면, 2001년 발생한 중국이나 몽고형 바이러스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명
- '00년 이후 지속된 혈청 예찰의 결과, 구제역 발생 축종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

다. 유입 요인별 분석 내용

- 발생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중국 등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촉하는 친지나 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발생농가 및 인근지역에서 잔반 급여사실이 없어 잔반을 통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황사·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
 - 황사·바람 등에 의한 전파시 나타나는 산발적이고 불특정 지역 감염특성 등을 나타내지 않아, 황사·바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2000년 : 서부 해안지역, 소, 개방 우사; 2002년 : 내륙지방, 돼지, 밀폐 돈사)
 - 2000년 발생이후 잔존하던 바이러스의 재발 가능성 검토 결과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에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 평가를 위해 지속적 혈청예찰을 실시하였고,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결과를 OIE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1년 9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승인

라. 국내전파 양상

- 구제역 발생 양상
 - 총 16건중 13건 (81.3%)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서 발생
 - 8~9일 간격으로 전파되었으며, 그룹별로 전염되는 연속적 발생 양상을 나타냄
 - 질병의 전파는 농장 전파를 한세대로 보았을 때 최대 5세대에 걸쳐 전파
- 16개 발생농장 중 8개 농장은 5.2일 최초 신고 이전에 기 감염된 것으로 추정
- 인근농가 전파 요인 분석
 - 돼지 이동에 의한 직접 전파는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사람 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로 추정
 - 발생농장 주인 및 농장 종업원 또는 타 농장주인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 농장 출입자 (동물약품, 정액납품자 등)를 통한 전파
 - 농장 출입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를 통한 전파 가능성

- 공기전파에 대한 가능성 평가
 - 발생농가 주변 500m내의 모든 감수성 가축 살처분, 반경 3km내 모든 돼지 살처분, 의심축이 신고된 현장에서 진단키트 판정에 의해 즉각적인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방역대처로 공기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마. 결론

- 역학조사 결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Pan Asia O₁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재발이 아닌 동북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
 - 2000년과 같은 Pan Asia O₁형이나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strain (바이러스주)로 밝혀졌으며, 2002년 분리 바이러스는 중국, 몽고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주와 유사
 - 발생농장(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최초 발생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는 주로 사람 및 차량(물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
 - 발생농장·비발생 농장 축주간 접촉, 발생농장 출입자 (종업원, 동물약품, 정액납품자 등), 농장 출입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 등을 통해 전파
 - Pen-side 키트 현장적용, 발생농가 주변 감수성 동물의 신속한 살처분으로 주변으로의 바이러스 오염을 최소화하였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배출현황, 바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바람(공기)에 의한 주변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4. 2000년도 발생과의 비교

2000년도와 2002년도에 국내 발생한 구제역은 발생지역, 발생축종, 방역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발생지역은 2000년도에는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의 6개 시·군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에 2002년도는 경기 안성·용인 및 평택, 충북 진천의 4개 시·군의 인접한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발생축종은 2000년도에는 전부 소 사육농가(15농가)에서 발생하였고, 2002년도에는 16농가중 대부분 돼지 사육농가(15농가)에서 발생하였고 소 사육농가는 1농가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방역정책에서도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직후 발생농장 중심 20km이내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반면에 2002년도는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조기 청정화를 이룩하였다.

□ 2000년 발생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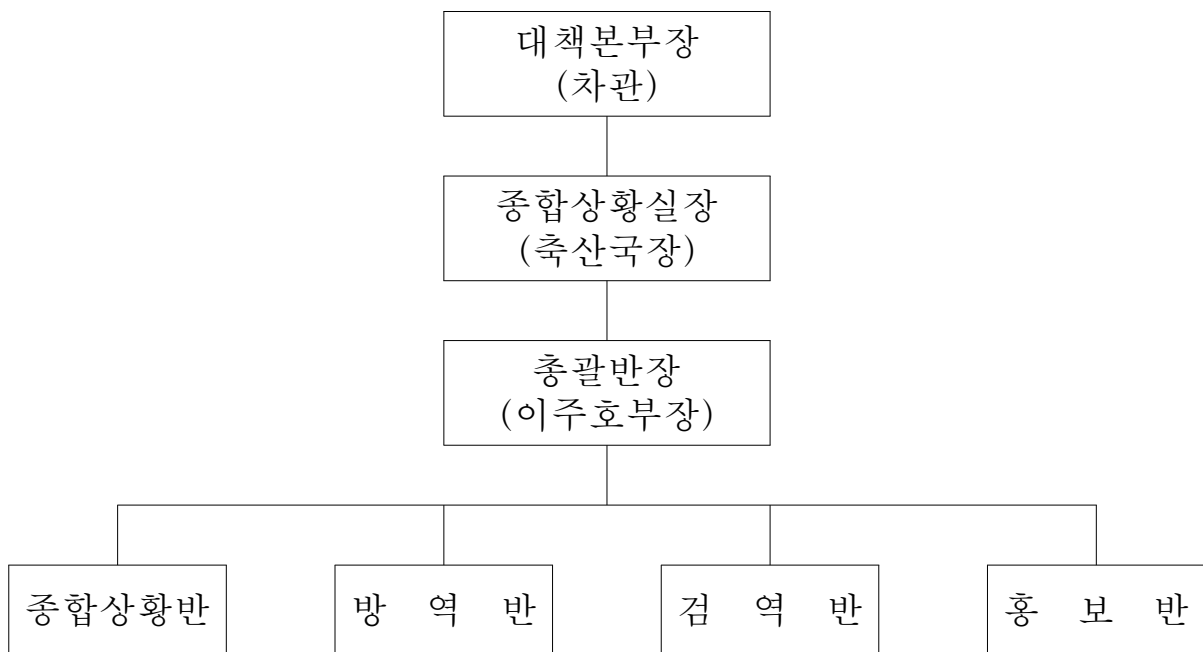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2년
발생상황	- 발생기간 : 3.24~4.15(22일간) - 발생건수 : 15건(소 15건)	- 5.2~6.23(52일간) - 16건(돼지 15건, 소 1건)
방역조치	-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우제류 가축 살처분 - 반경 10km내 2차 예방접종 ('00.3.28~8.31)	-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우제류 가축과 3km내 돼지 살처분 - 예방접종 배제
이동제한 해제	-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 경과 혈청검사결과 음성(7.14일)	- 살처분 완료 후 21일 경과 혈청검사결과 음성(8.7일)
국내 종식선언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01.8.31일)	- 발생지역별 단계적 이동제한 해제 후 전국적 선언(8.14일) ※ 특별관리농가(5호), 정밀검사(프로방검사) 기간 소요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	- 예방접종 금지 후 1년 경과 ('01.8.31일)	- 살처분 완료 후 3개월 경과 ('02.9.24일)
OIE 청정국 인증	- '01.8.27 “구제역위원회”에 신청 - '01.9.19일 청정국 인정	- '02.10.4 청정국 재인증 신청 - '02.11.29일 청정국 지위회복 (OIE구제역위원회 : 브라질)
방역비용	3,006억원	1,434억원

IV. 구제역 방역추진내용

1.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등 운영

농 립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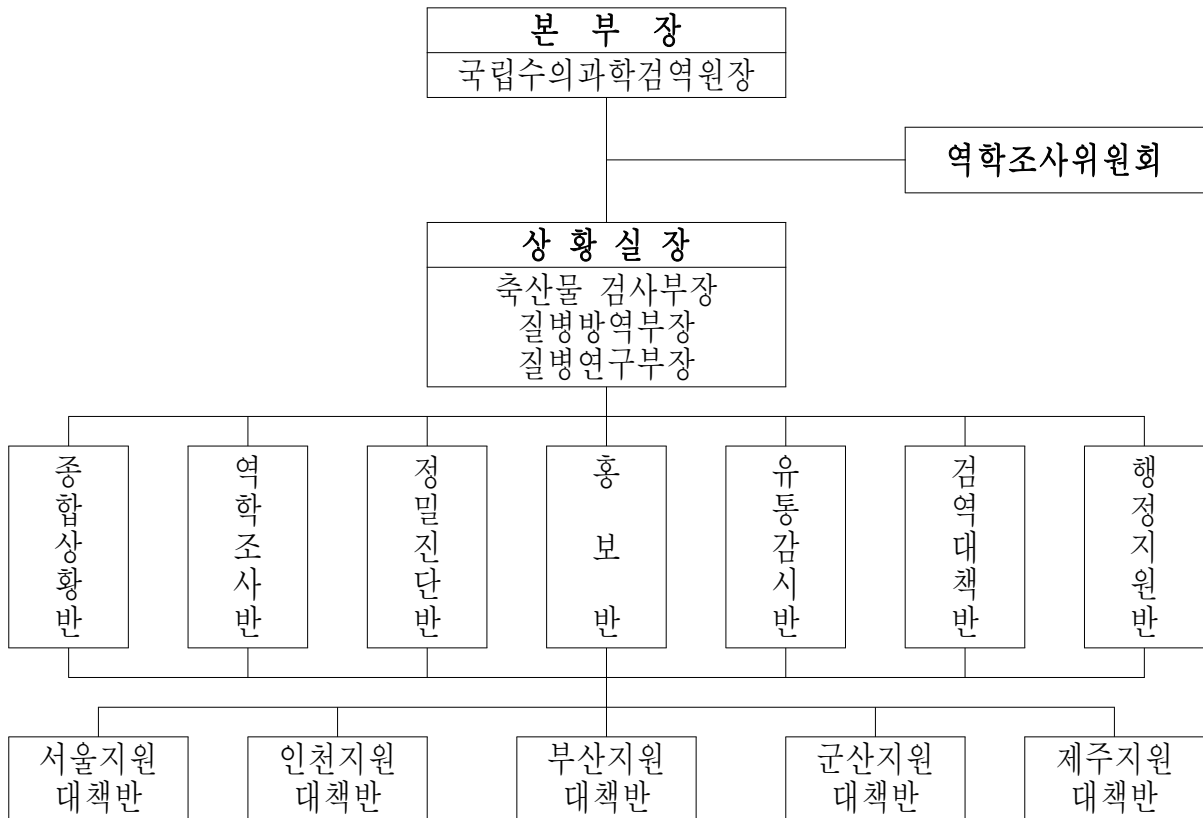
2002.4.16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농림부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본부를 4월17일 설치하고 대책상황실(실장 : 축산국장)을 운영하였으나, 5월2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비상대책상황실을 확대개편하고, 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에도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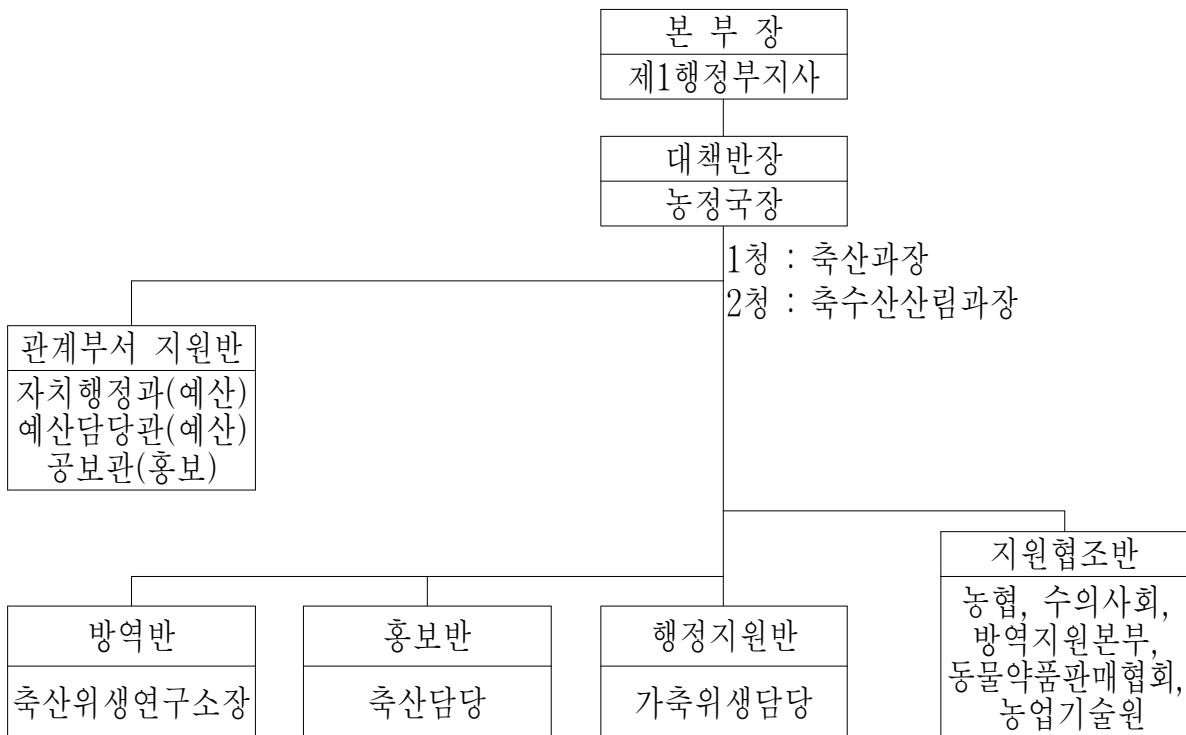
<운영기간 및 근무요령>

- 운영기간 : '02.5.3~ 별도 조치시까지
- 24시간 근무체계 확립 : 상황실(216호), 24시간 근무
 - 농림부 : 4개반 합동근무
- 일일 추진실적 보고 : 매일 18:00(장관)
 - 본부(각반), 시·도, 검역원,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은 추진실적을 매일 16:30까지 상황실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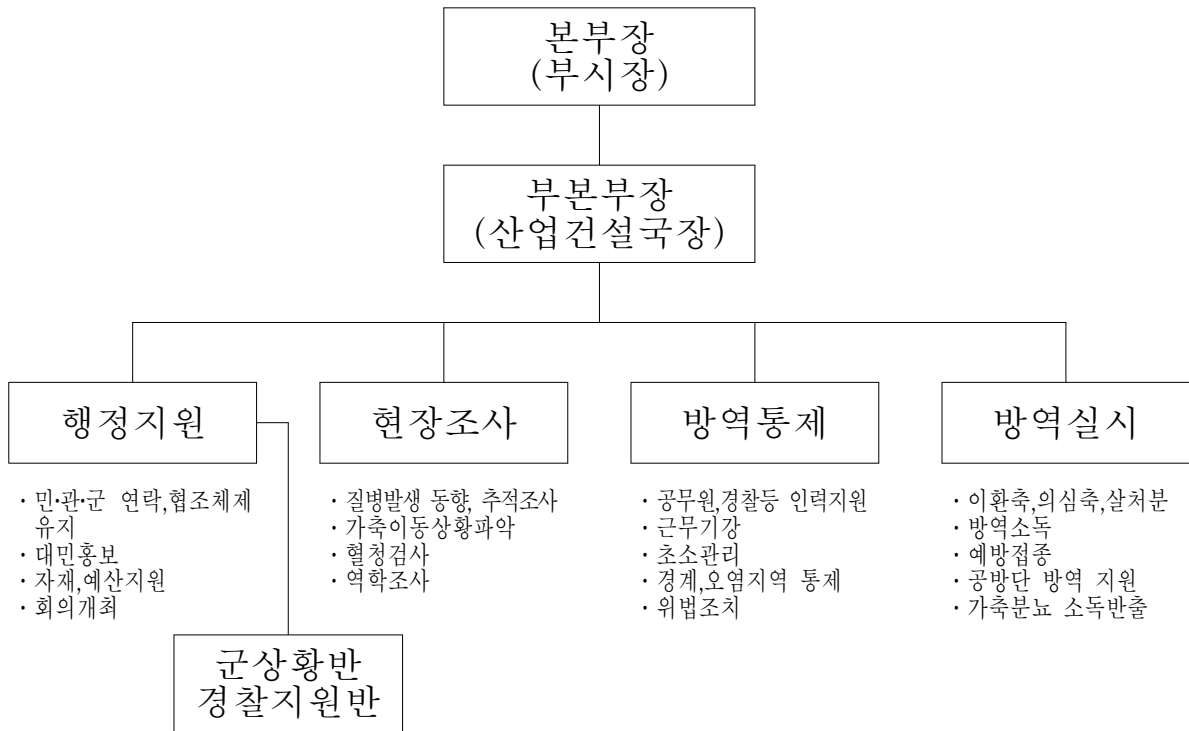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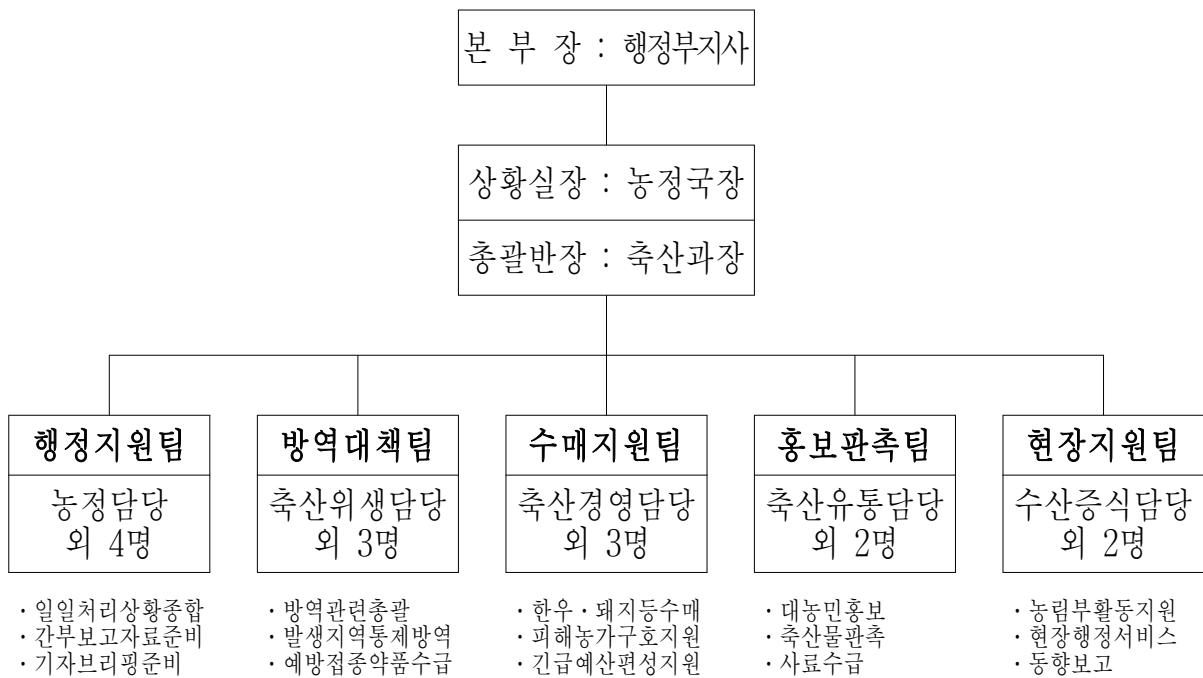
경기도 : 특별대책본부



안 성 시



충청북도



가축방역담당조직(중앙·지방정부)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과

조직개편전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에 관한 대내·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가축위생과는 기획·방역·검역·위생제도·위생관리·수의업무 등 6계로 나뉘어 있었고, 수의직 12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1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2년8월24일 축산국 직제개정으로 기존의 가축위생과와 축산물유통과 업무를 조정하여 가축방역과와 축산물위생과로 분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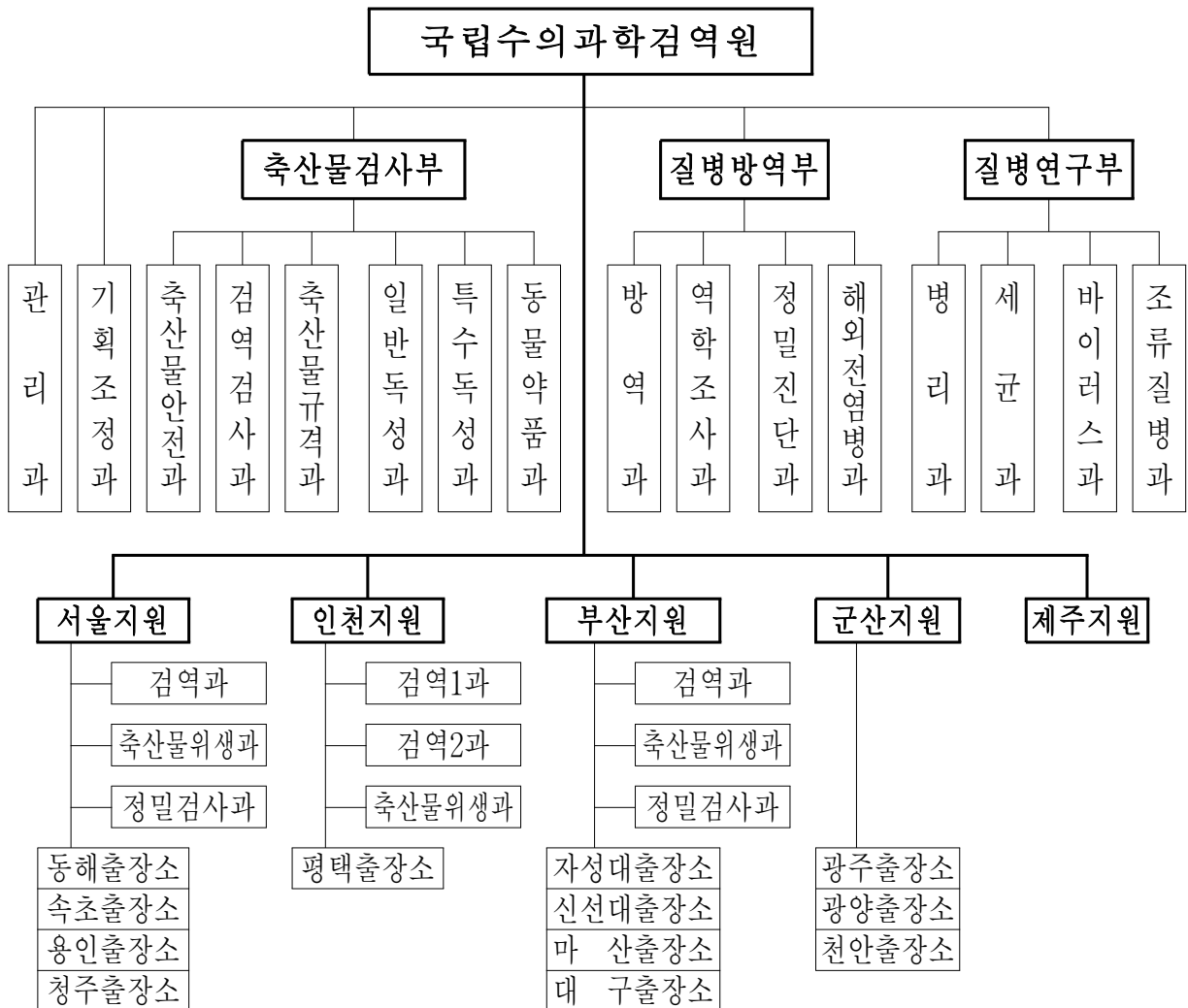
가축방역과는 방역기획·검역·방역1·방역2·방역3 등 5계로 수의직 10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1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과는 위생제도·위생관리·유통제도·유통시설·축산물소비·사료 등 6계로 나누어 있고 행정직 5명, 수의직 4명, 축산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제역 재발이후 축산국 직원을 중심으로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지역발생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현지 방역점검, 살처분 매몰, 보상금 지급, 농가 사후관리 및 생계지원 대책 등 정책수립에 밤낮으로 쉴틈이 없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가 1998.8.1 통합하여 설립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의기술개발연구 및 보급,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 및 검정업무가 주요임무이며, 국내에 발생하는 가축질병대책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공·항만의 검역업무등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중앙연구·검사·검역기관으로서, 조직현황은 축산물검사부·질병방역부·질병연구부 등 3부, 16개과, 5지원(서울·인천·부산·군산·제주지원), 12개 출장소(동해·속초·용인·청주·평택·자성대·신선대·마산·대구·광주·광양·천안)로 운영되고 있다. 검역원 소속인원은 총 480명으로, 수의직 241명, 연구직 110명, 행정직 31명, 전산직 9명, 기능직 82명, 계약·별정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전인력을 가동하여 발생지역 방역조치 점검, 역학조사 실시등 방역대책과 공·항만의 검역업무에 밤낮없이 앞장서왔다.



□ 시·도, 시·군조직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에서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에 관한 정책의 집행계획 작성·시달·집행을 맡고 있다. 특히 시·군·구는 가축방역의 최종 집행기관이다. 전국적으로 수의직 213명, 축산직 952명등 총 1,165명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원에 비해 결원은 수의직 33명, 수의축산등 복수직 96명인 상태이다.

구제역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행정기관으로 방역정책 집행과 양축농가 방역지도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여 구제역 조기종식에 큰 역할을 하였다.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부 포함)

시·도에 속한 연구·시험·검사기관으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지도, 기타 시험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개 시·도에 16개 본소와 28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수의직 366명, 연구직 150명, 행정직 기타 174명등 총 69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 가검물 채취검사, 진단위주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구제역발생지역의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일선에서 전직원이 동원되었고 조기종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 민간 가축방역 조직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양돈산업 관련 22개 단체가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1999.4.15창립)」라는 민간 방역조직을 설립·운영한 이후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시 현장에 신속하게 주사기·소독약 등 방역기자재를 공급하고, 예방접종·소독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민간방역조직 확대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는 2000.6.14일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개편되었고, 돼지콜레라 이외에도 구제역·돼지 오제스키·닭뉴캐슬병·가금인플루엔자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본부와 8개 도본부 및 128개 시·군방역단에 수의·축산전문가로 구성된 방역요원 135명이 농장별 채혈 및 방역관리 실태점검·예방 주사·소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시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지원, 구제역 방역강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구제역 항원·항체검사를 위한 농가별 채혈에 주력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이후에는 시·군방역요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의 경계지역에 대한 예찰과 채혈검사 및 방역지원 활동을 계속하였고, 비발생지역의 방역요원들은 각 지역별로 방역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차단방역에 앞장서 활동하였다. 사료업계와 협회 및 단체, 농협,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방역본부에 방역기부금을 2002년도에 623백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축발기금으로 2002년도에 방역사업비와 운영비로 5,056백만원을 보조지원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법률이 2002.12.26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9조에 설치근거와 담당업무·소요경비 지원근거 등이

명시되었고, 개정법률이 2003.6.27일부터 시행되면 방역본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방역지원사업과 위생업무를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 주요 방역업무별 인력배치

- 상황실 근무 : 농림부, 검역원, 시·도, 시·군, 축협
- 현장방역
 - 의심축 검사 및 시료 채취 : 검역원, 도 가축위생시험소
 - 시료 실험실검사(구제역 확인진단 : 검역원)
 - 이동제한지역의 통제초소 : 군·경찰·행정공무원
 - 살처분·매몰·오염물(사료 등)·원유 폐기 : 검역원, 도 가축위생연구소, 시·군, 군, 경
 - 소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방제단, 사료회사, 동물약품, 농·축협
 - 예찰·채혈 : 도 축산위생연구소

발생초기 현지의 방역주체인 시·군에는 방역전문인력인 수의직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도와 검역원이 주관이 되어 해당 시·군과 함께 방역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가축·축산물·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된 발생지역 반경 20km이내의 이동통제를 유지하고, 환축의 살처분·소독·예방접종·예찰 등 모든 방역업무를 검역원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주도하게 되어 이 기관들의 고유업무인 악성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가장 인력소요가 많았던 이동제한 지역 내 방역초소의 이동통제는 군과 경찰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는 했으나 이동제한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까지 길어짐에 따라 경찰 자체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했고, 군경과 합동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시·군 행정공무원들도 밤낮 없는 격무에 가중된 고통을 받았다.

이번 방역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료회사·동물약품업체·농·축협 등 민간단체·업계의 협력과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축산과는 관련이 없는 군부대가 적극 방역활동을 전개하였고 경찰의 협조와 인력지원은 초동방역 성공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방역대책 우수지원 사례

□ 국방부 : 군부대 대민지원 활동

2002년 5월3일 안성지역 구제역 발생상황을 인지한 군부대에서는 안성·용인·이천지역의 주요도로 및 발생지역 인근부락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단화학대 제독차를 투입하여 활동한 후 7월13일까지 휴일도 없이 매일 교통통제소와 발생우려지역에서 소독지원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구제역의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부대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의 가축살처분·매몰, 축사 내·외부 축분제거작업, 교통통제초소 운영, 소독활동에 적극 지원하였고, 구제역 방역대책기간 동안 군장병 44,000명이 참여하였고, 굴삭기·운반차량 등 장비 1,414대를 지원하는등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대민지원활동으로 양축농가와 일반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찬사를 받았다.

□ 경찰청 : 구제역 방역 이동통제초소 운영

구제역 발생직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가축 및 차량이동통제초소 운영에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통제하였기에 4개 시·군이외의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았으며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또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액 수준과 관련한 안성·용인지역의 양축농가의 항의시위등으로 경찰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하였다. 이번 구제역 발생이후 동원된 경찰인력은 51,265명이 투입되어 힘든 업무를 지원하여 구제역 방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특별지시를 1~11호까지 발령하고, 가축방역체제를 비상사태로 전환하고 방역업무에 총력지원하였으며, 도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지도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을앰프방송 실시, 지역TV, 유선방송 등을 통한 구제역 방역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안성지역에서의 통제초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45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및 통제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 농업기반공사

구제역 발생지역의 살처분매몰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비상근무인력 1명씩을 발생 시·군의 상황실에 상주시켜 사후관리에 지원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르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지원하고 주민식수지원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3.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운영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은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축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농림부 훈령 제1378호로 2001.1.16일 제정되었으며,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중요사항,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다.

협의회는 위원장(농림부 차관보)와 부위원장(축산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가축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2002년도에는 5월2일 구제역 재발이후 9월26일까지 가축방역 중앙협의회를 8회 소집, 개최하였다.

□ 위원명단

- 위 원 장 : 농림부 서규용 차관
- 부위원장 :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
- 위원(12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옥경 원장,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김남철 종축개량부장, 경기도 유도형 농정국장, 서울대 수의대 박봉균 교수, 건국대 수의대 김순재 교수, 경북대 수의대 김봉환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 전국한우협회 이규석 회장, 대한양돈협회 김건태 회장, 농협중앙회(축산경제) 임병철 상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배상호 상임이사, 대한수의사회 박근식 부회장
- 간 사 : 농림부 이희우 가축위생과장

□ 제1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6.3(목) 18:40~19:50
- 장 소 : 농림부대회의실(421호)
- 참 석 자 : 차관외 12명(교수·축산단체 대표 등)
- 협의결과 : 발생농장 인근농장의 살처분 범위를 확대토록하고 발생 추이를 본후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하고, 발생농장 돼지출하도축장 폐쇄 및 4월23일 도축분부터 유통돈육은 추적·수거폐기토록 하였다. 또한 정확한 발생원인의 강제적인 조사를 위해 경찰수사의뢰 또는 역학조사시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강화토록 협의하였다.

□ 제2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2002. 5. 10. (금) 17:00~18:50
- 참 석 자 : 위원장(차관)외 12명
- 협의결과 : 예방접종할 경우 면역형성이 접종후 7~14일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살처분실시가 타당하며, 5월12일에 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검토키로함

□ 제3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 5. 12. (일) 15:00~17:00
- 참 석 자 : 위원장(차관)외 12명
- 협의요지 : 최초발생농장인 울곡농장과 진천 이춘복농장 반경 3km 내외 돼지는 전두수 살처분 조치하고, 소·사슴등은 임상관찰을 지속실시하여 1두라도 발생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조치토록하며, 기타지역 발생시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내외 모든 우제류 가축 전체는 예외없이 전두수 살처분토록 함
- 회의 종료후 대학교수등 전문가가 최초발생농장 반경3km지역을 방문조사하여 살처분 범위를 결정토록 함

□ 제4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 5. 19. (일) 15:00~17:25
- 협의결과 : 추가발생농장 반경 500m내외 우제류가축전체 살처분 원칙은 유지하되, 돼지이외의 축종은 지리적여건, 사육 형태를 감안하여 현지 가축방역관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발생지역 주민 행동수칙을 홍보토록하고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세부지침을 작성·시달토록하며, 발생 상황 변화에 대비한 예방접종 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함.
(9명 : 차관, 김순재·박봉균교수, 김건태, 배상호, 김남철 축산국장, 검역원장, 경기축산과장)

□ 제5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 5. 21. (화) 18:30~21:10
- 협의결과 : 5.18~19일 4개소 발생농장과 직·간접 접촉농장(54개소) 등에 대해 해당 도에서 지역별 전담 방역관(수의사)을 배치토록하고,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추가발생이 우려될 경우 농장주 동의를 얻어 전담방역관이 신고없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조치검토 함
 - 경계지역내 과체중 돼지등 수매·비축검토
 - 이동제한지역밖에서 추가발생시 500m범위 살처분, 10km이내 백신 방안 검토

□ 제6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 6. 3. (월) 17:00~19:00
- 협의결과 : 추가발생농장(평택)이 독농가인 점을 감안하여 살처분 원칙 유지하고, 관련 작업장으로부터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도축장, 육가공장 잠정폐쇄 및 발생농장산 돼지고기 유통물량 수거·폐기조치
 -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 급여시 열처리하여 공급토록 홍보·교육조치

□ 제7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 시 : '02. 6. 24. (월) 16:30~18:55
- 협의결과 : 살처분 확대실시(반경 500m이내 우제류 가축 및 반경 3km내 돼지살처분)키로하되 위험지역중 오염위험이 높은 안성시 관내 돼지는 전두수 살처분하고, 지형적으로 차단이 양호한 이천시 관내는 살처분을 유보하고 전담 방역관 배치로 특별관리 실시
 - 예방접종방안은 위원대부분이 반대의견 표명하여 소위원회에서 재론기로 함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소위원회 개최(20:40~20:50)
 - 발생농장 중심으로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여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 돼지전두수를 살처분 조치하되, 향후 위험지역밖에서 추가 발생시 10km이내 돼지 전두수에 예방접종실시키로함(양돈협회·경기도의 동의를 전제로함)

□ 제8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 일시 : '02.9.26(목) 11:10~12:15
- 협의결과 주요의견
 - 발생원인의 조속한 규명 및 중국등 발생국 입국자 검색·소독등 국경검역 강화
 - 탐지건, X-ray확충보다도 검역전문인력 보강이 시급
 - 관세청에 검역관 파견제 도입, 휴대품 검생강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및 방역인력 확충
 - 국경검역은 정부가, 국내방역은 농가책임하에 실시하는등 방역체계 강화방안을 공론화하여 개선 추진
- 제시된 의견을 10월1일 구제역등 평시가축방역대책회의결과와 종합하여 방역대책을 보완토록 추진기로 함.

4. 가축살처분·매몰 및 매몰지 사후관리

□ 가축살처분·매몰조치

구제역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근절을 위하여 구제역 방역중앙협의회를 개최하고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인근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감수성 동물(90농가 97,202두)을 긴급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에 구제역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돼지를(72농가 62,953두)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등 총 162개 농장 160,155두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매몰하였다. 또한 2002년 발생당시 수포액에서 항원을 검사하는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살처분 조치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

구 분	발생농장	500m내외	3km내외	계	살처분일
경기 안성	9농가 26,679두	43농가 22,851두	32농가 31,373두	84농가 80,903두	7.1완료 (예방적살처분) 7.13완료
용인	16농가 15,432두	14농가 7,095두	32농가 28,077두	62농가 50,604두	5.30완료
평택	1농가 1,551두		3농가 2,502두	4농가 4,053두	6.6완료
충북 진천	2농가 18,385두	5농가 5,209두	3농가 988두	10농가 24,582두	5.15완료
충남 천안	-	-	2농가 13두	2농가 13두	6.4완료
계	28농가 62,047두	62농가 35,155두	72농가 62,953두	162농가(150) 160,155두	

○ 구제역 발생지역 축종별 살처분 현황

구 분	소		돼지		염소		사슴		계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농장	두수
경기 안성	29	1,322	50	79,521	3	27	2	33	84	80,903
용인	2	5	60	50,585		14			62	50,604
평택			4	4,053					4	4,053
충북 진천	1	45	8	24,536	1	1			10	24,582
충남 천안			2	13					2	13
계	32	1,372	124	158,708	4	42	2	33	162	160,155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면 의심축 신고상황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팀이 현지로 출발하여 시료채취와 함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원에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 중심 500m 이내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살처분 권고를 실시하고 중앙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살처분·매몰·소독·이동통제 등의 방역지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2년도에는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배출량이 소의 경우보다 1,000 ~ 3,000배 많아 전파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 구제역의 전파 속도보다 방역조치를 더 빨리 하여야만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초동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검역원에서 (주)피비엠이스트사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제역 신속 간이진단키트”를 '02.5.9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현장에서 구제역 수포액을 이용하여 20분이내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증식과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신속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우선 감염축을 도태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 환축이 있던 돈사의 돼지를 우선 안락사 시켜 감염대상축을 제거함으로써 전파·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현장에서 구제역 신속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어 현장에서의 방역조치가 아주 유효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전파 방지를 위하여는 인근농가의 감수성 가축을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생농가 중심 500m이내 농가의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 이후 '02.5.10~5.12일의 2차 발생시기에는 동시에 여러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최초 발생농장 이동통제 이전에 이미 여러 농장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02. 5. 12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 협의결과 3km내외의 구제역 감염 위험성이 높은 돼지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장에서 신속 진단과 감염축의 즉각적인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은 구제역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요인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3km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사육 가축은 농장내 또는 인근지역에 매몰하였다.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매몰 방역지도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의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 가축살처분 · 이동통제에 군병력 · 장비 적극 지원

'02년중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 진천, 용인, 평택지역의 구제역 발생농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살처분조치는 초기에 해당농가에 대한 설득과 소요인력 및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군병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조기 살처분 · 매몰 및 이동통제등 신속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군병력이 지원되어 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02.5.3~7.14까지 군부대 지원현황을 보면 병력동원 연인원 44,323명, 장비 1,446대가 동원되었고, 안성 · 용인지역에 보병 제55사단 부대장병들이, 충북 진천지역에 37사단 부대장병들이 동원되어 축사의 악취와 살처분과정의 괴성등 살처분 · 매몰과정의 온갖 어려움을 참고 비를 맞아가며 악천후에서도 밤낮으로 축산농가 방역지원에 앞장서 주었고, 살처분후의 농장청소와 소독실시 및 통제초소에서 이동차량 통제와 소독실시에 적극 참여하여 땀흘린 장병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 가축매몰지 관리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 3km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매몰지는 감염 가축이 이동되고 접촉이 많았던 지역으로 매몰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였다고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검역원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5.20~5.23일까지 지도 · 점검조를 편성하여 일선 시 · 군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분노에 대하여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직접 PH를 측정해 가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성소다 또는 생석회 도포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하였다. '02.6.23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소재 최근접 농가(신흥농장)의 마지막 발생이후 1개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8월초부터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매몰지가 유실되지는 않을까 노심조사하여 매몰지에 대하여 또다시 일제점검을 실

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침출수관리 및 악취 저감 방안

가축매몰지에는 악취제거약품과 발효제를 살포토록 축발기금 192백만원을 지원, 약품을 구입 공급하였고, 매몰시 지표면까지 2개이상 복토한후, 지표면에서 다시 1.5m이상 성토토록 하였으며, 성토후에도 악취가 날 경우 톱밥을 50cm두께로 덮도록 하였다.

기설치된 가스배출관의 배출구가 지표면으로 향하도록 조정(∩자형)하고,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에 고인 침출수는 톱밥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침출수가 흐를 경우에 대비하여 0.5톤용량의 원형물탱크를 땅속에 설치하여 저류조로 이용토록 하였다.(톱밥구입비와 물탱크를 축발기금으로 96백만원 지원)

매몰지의 표토함몰에 대비하여 중장비를 이용해 복토를 실시토록 하고, 장마철 유수유입 방지를 위해 복토 상부에 비닐커버를 하도록 하였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제거, 침출수 관리등 대책비로 축발기금 348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다.

- 약품 및 발효제 : 192백만원(19.2톤)
- 톱 밥 : 72백만원(800톤)
- 물 탱 크 : 24백만원(160개, 매몰지당 2개)
- 비 닐 천 막 지 : 60백만원(20천㎡)

○ 주민 식수대책

가축매몰지 인근지역의 주민 식수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대형암반관정 15개소를 개발하고 이용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용인·안성시에 각9개소씩, 진천 1개소)음용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식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다.

관정개발 대상지역은 3개 시·군 5개면 19개 지구이며, 사업비지원은 국비 2,200백만원, 도비 550백만원 합계 2,750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02.5~11월까지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은 대형관정 16개소와 이용시설(관로, 물탱크) 18개소, 농업용관정 1개소 이며 주민식수대책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지구명	추진현황		
시·군	읍·면	동·리					
계			19지구	착정개발	수질검사	이용시설	
경기도 용인시	백암	고안2	소정	완료	적합	양수장, 전기공사완료	
	백암	고안2	아곡	-	-	관로 설치 준비중	
	백암	고안3	대주천	완료	적합	양수장, 전기공사완료	
	백암	옥산2	하산	"	적합	"	
	백암	옥산3	옥천	"	적합	"	
	백암	장평1	장제	-	-	관로 설치 준비중	
	백암	장평2	울애	완료	적합	양수장, 전기공사완료	
	백암	장평4	강정	"	적합	"	
	백암	석천1	사천	"	적합	"	
경기도 안성시	보개	남풍	풍정	"	적합	설계중	
	보개	가울	기좌	"	적합	"	
	삼죽	내장	하장	"	적합	"	
	일죽	고은	고목	"	적합	"	
	삼죽	내장	상장	"	적합	"	
	삼죽	용월	외토	"	적합	"	
	삼죽	덕산	품곡	"	적합	"	
	삼죽	율곡	장틀	"	적합	"	
	삼죽	덕산	상덕	"	검사중	"	
충북 진천군	진천	원장관리	장관	"	-	※농업용수로 활용 4개공×3ha=12ha	

※ 수질검사기관 및 항목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질산성질소·불소 등 46개항목

○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구제역 가축매몰지는 총 132개소로서 안성69, 용인42, 진천8, 평택11, 천안2개소이다. 매몰지에는 시·군 사후관리팀을 구성하고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가스와 침출수 배출이나 매몰지 함몰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토록하고, 가스배출관 보수, 성토, 저류조시설을 점검토록 하였고, 함몰시에 대비하여 성토흙을 사전 확보토록 하였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사업비로 3,248백만원(국비 2,320, 지방비 580, 축발기금 348)을 지원하여 약품 및 발효제, 톱밥, 물탱크, 비닐 등을 구입하고 약품과 발효제를 살포하여 악취제거, 복토(2m), 성토(1.5m)등으로 침출수 관리, 주민식수용 암반관정개발(용인7개, 안성9개) 및 이용시설(용인9개소, 안성9개소)을 설치토록 하였다.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실명제 책임관리
 토록 하고, 매립직후 15일간 세심하게 관찰하여 함몰되거나 용출수 및
 약취발생 또는 사체유풀기 등으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였
 으며, 톱밥비치량을 개소당 40m³이상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지표면
 용수로 및 배수로의 액처리는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치된 톱밥으로
 충분히 덮고, 비치된 상토로 표면을 수시 도포토록 하였다.

약취제거를 위해 발효제를 평당 1kg수준으로 전면 살포하고 탈취약품
 을 1일3회 희석하여 분무토록 하였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필요물자를 매몰지 현장에 비치하여 예비확
 보 물량은 필요물량의 50%를 다음과 같이 비축토록 하였다.

물자	매립지 개소당 물량	예비 확보 물량 (예, 매립지 총10개)
톱밥	40m ³ 이상	200m ³ 이상
발효재	90kg	450kg
탈취약품	60kg	300kg
성토재	20m ³	100m ³
비닐	250m ²	1,250m ²
가스배출관	5개	25개

박상권 수의사,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

2002. 5. 19 18:00경 경기도 안성시 방초리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박상권(32세) 수의사가 방역현장에서 살처분가축을 매몰하기 위해 흙을 실어 나르던 트럭에 치어 현장에서 순직하였다.

고 박상권 수의사는 지난 5월 3일 안성지역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현지에 최초로 투입되어 순직하던 직전까지 계속 아비규환의 방역현장을 누비며 혼신을 다해 보이지 않은 적과 싸워 왔다.

5월19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구제역 방역현장을 지휘감독하다가 이러한 갑작스런 참변을 당하여 되어 더욱 숙연한 순직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은 평소에도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가축위생시험연구사업들 수행하여 왔으며 창의적인 사고로 매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큰 경기도 인재중의 한사람이며, 평소 성실한 성품과 함께 직장 동료간에도 우애가 매우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세 젊은 나이, 사회에 더 많은 봉사과 미망인 전태운씨와 함께 둔 만1살난 딸의 재롱 속에 행복한 삶을 등지고 너무 빨리 떠나갔기에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인의 시신을 한림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 빈소를 마련하였으며 1계급승진과 훈장을 수여하고 2002. 5. 21 09:00 고인의 업적을 추앙하기 위해 도민 및 동료·후배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도장으로 영결식을 거행기로 했다.

고 박상권 수의사 사고경위

□ 사망자

- 성명 : 박상권(남 32세)(소속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
- 가족 : 처 전태운(여 31세), 1녀 박서영(2세)

□ 사고경위

- 2002.05.19일 18:20분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완료후 매몰장소 되메우기 작업 중 점검하던 고 박상권 가축방역관을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사고

□ 발생경위

- 2002.05.18일 22:05분 안성 일죽 방초리 농림농장 축주로부터 신고접수
- 2002.05.18일 22:50분 현지조사결과 구제역의심, 도상황실 및 검역원에 상황보고(모돈 유두수포와 기립불능 및 자돈폐사)
- 2002.05.19일 01:40분 검역원 정밀조사팀 도착하여 간이검사 실시 결과 양성확인(9번째 발생)
- 2002.05.19일 03:50분 포크레인 2대로 사전매몰장소 작업시작
- 2002.05.19일 06:00분 농장에 고 박상권씨 추가투입
- 2002.05.19일 10:00시 살처분시작
- 2002.05.19일 17:00시 살처분완료, 마무리 작업중 18:20분 사고발생

□ 발생농장

- 농장주소 :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871번지(TEL 332-4637)
- 축 주 명 : 송병훈(송림농장)
- 사육두수 : 1,047두(모돈 102두)
- 발생두수 : 2두(모돈1두, 자돈1두)

□ 현장조치

- 119 구조대 출동(18:25) 및 이송(18:40)
- 안성 일죽 파출소에서 현장조사 (18:20)
- 시신 안성의료원 도착 및 시신수습(19:40)
- 안양시 평촌동 한림대학교부속병원으로 시신 이송(20:00)하여 영안실에 안치, 빈소 설치

永 訣 辭

故 박상권 주사님 !

저와 우리 경기도청 가족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무슨 변고입니까.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지난 5월19일날은 일요일이자 부처님 탄신기념일 이었지만 구제역이 재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돌아보며 구제역 방역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공직자와 주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안성시 일죽면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매몰을 지도감독 하시던 박상권 수의주사님께서 덤프 트럭에 부딪치어 유명을 달리하셨다니 참으로 가슴아프고 허탈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농정을 책임맡은 사람으로써 박상권 수의주사님의 죽음앞에 너무도 비통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5월3일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동분서주하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흘려 일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날 비보(悲報)를 접하는 순간 허탈함과 호소할길 없는 애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망(慌忙)중에 엄청난 슬픔을 당하신 부모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정중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公私間 바쁘신 중에도 오늘故人이 가시는 길에 명복(冥福)을 빌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창열 지사님과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 박상권 수의주사님께서서는 지난 96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묵묵히 땀흘려 일해 오시면서 지난해 6월에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고 친화력 있는 인간적인 성품으로 동료, 선·후배 공직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고인의 동료중 일부는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비통함을 억누르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료들의 모습과 울부짖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날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음으로 향하는 일이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너무도 갑작스럽게 유명(幽冥)을 달리하시니 우리 모두를 더욱 애통(哀痛)하게 만 합니다.

이제는 故 박상권 수의주사님의 모습을 기억속으로만 간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인(故人)의 뜻을 받들어 구제역 재발방지와 정기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고인(故人)이시여!

이제 못다 이루신 일들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부디 평안(平安)히 잠드소서 비통함속이 고인(故人)을 떠나 보내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哀悼)의 뜻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제신 모든분들과 함께 옷깃을 여미고 다시한번 삼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영결식 사진3장 첨부>

5. 가축의 이동제한, 차량·사람등의 통제

○ 이동통제

구제역 전파방지를 위하여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한 이동제한지역(위험 및 경계지역) 방역대를 설정하고, 발생농장 중심으로 위험지역(3km내)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민·관·군·경 합동으로 24시간 근무를 실시하면서 불법 이동가축 감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비발생 시·도에서도 관할지역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였다. '02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은 1차발생 2건(5.2~5.3) → 2차발생 6건(5.10~5.12) → 3차발생 4건(5.18~5.19) → 4차발생 4건(6.2~6.23 ; 산발적 발생)으로 진행되 오면서 3차발생 이후에는 추가 발생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다. '02. 6. 23일 마지막 발생농인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소재 최근섭 농가(신흥농장)로부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안성·이천간 331번 지방도로를 폐쇄(6. 25일) 조치하고, 신흥농장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에 대하여도 폐쇄 조치를 하였다. 또한, 331번 지방도로에서 신흥농장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 및 38번 국도에서 331번 지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에 통제초소 설치 및 중앙가축방역관을 상주 배치시켜 이동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행차량·사람 등에 대한 기록을 실시하였다.

'02.5.22일부터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전담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특별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토록 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가단위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였다.

이동제한지역은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충북 진천은 '02.6.24일, 경기 평택은 '02.7.19, 경기 안성·용인지역은 '02.8.7일 지역에 따라 단계별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 통제초소 운영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해 임상관찰과 출입자 및 가축이동 통제, 소독 등 초기방역 조치를 취하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이내)과 경계지역(3~10km)으로 구분되는 이동통제지역을 설정한 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군, 경, 공무원, 생산자단체, 농가 등이 구제역 발생 지역별로 최종 살처분이후 21일 이상을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이동가축감시, 출입차량·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도로(331 지방도 등)는 통행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하였다. 경기 안성시의 경우 5.10일부터 6.23일까지 8건의 구제역이 추가발생 하여 구제역 차단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하였다.

<안성 시기별 이동통제초소 운영실적>

구분	계	5.2~9	5.10~13	5.18~28	6.2~10	6.11~23	6.24~30	7.1~
신고건수	15건	1	3	5	5	1	-	-
양성판정	9건	1	2	3	2	1	-	-
통제초소	-	17개소	32	41	33	26	27	28
배치인원	-	90명	279	416	345	75	219	222

충북 진천군의 경우에는 5월12일 추가발생이후 잠복기간이 경과한 6.10일까지 최고 30개의 통제초소를 운영하는등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차단방역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진천 시기별 이동통제초소 운영실적>

구분	계	5.2~9	5.10~13	5.18~28	6.2~10	6.11~23	6.24~30	7.1~
신고건수	5	1	2	1	-	1	-	-
양성판정	2	1	1	-	-	-	-	-
통제초소	-	24	24	30	30	29	7	5
배치인원	-	353명	357	348	338	252	56	40

○ 이동제한지역 해제

구제역 최초발생지역인 안성지역은 용인지역까지 확산되어 다른지역에 비해 가장 늦은 8월7일에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었고, 5월3일 발생된 충북 진천지역은 5월15일 최종살처분이 완료된 후 6월15일 경계지역을 이동제한 해제조치하였고 6월24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여 구제역이 발생된 4개 시·군중 진천군지역이 가장먼저 종식시킨 지역이 되었다.

구 분	진천	평택	안성·용인	신흥농장	비고
최초발생일	5.3	6.2	5.2	6.23	
최종살처분일	5.15	6.6	6.16	6.24	
경계지역해제일	6.15	7.12	7.25	7.28	
위험지역해제일	6.24	7.20	8.7	8.7	

이동통제초소 최대 운영현황('02.6.17기준)을 보면, 경기도는 119개소 857명(군·경 354, 공무원 289, 기타 214), 전국적으로는 329개소, 2,204명(군·경 725, 공무원 873, 민간 606)이 동원되어 이동제한을 실시하였다.

○ 이동통제 및 농가접촉

안성시 지역은 최초 발생농장인 울곡농장의 최초신고가 늦어져 3km 통제선밖에 오염원이 존재하여 추가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3~10km 사이의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으나 지선이나, 농로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고, 차량에 대한 소독은 제대로 되어지고 있으나 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원이 사람 등을 매개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천군 지역은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훨씬 많이 설치·운영한 것이 구제역 차단방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천에서는 농가모임 등이 거의 없었으나, 안성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끼리 모여 피해보상·사후대책 논의 등을 위한 모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6. 이동제한지역 가축검사

이동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 혈청학적 예찰이 실시되었으며, 위험, 경계지역의 구제역 비발생여부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당시에는 3개의 보호지역과 4개의 경계지역(안성 경계지역은 2개의 지역)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경계지역은 마지막 발생 농가 살처분 3주 후,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이 해제된 후에 혈청예찰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었다. 또한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검사시에도 검사되어 총 2회의 예찰이 실시되었다.

위험지역은 소, 돼지, 염소사육 전농가에 대해서 혈청예찰을 실시하였고, 농가내 구제역 유행률(prevalence)을 20%로 가정하여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을 적어도 1두 이상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이 95%가 되도록 농가당 검사두수를 설정하였다.

경계지역의 소, 염소사육 농가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가간 구제역 유행률을 1%, 농가내 유행률을 20%로 가정하여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을 적어도 1두 이상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이 95%가 되도록 검사두수를 설정하였다. 돼지사육 농가는 전농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위험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검사두수를 설정하였다.

스크리닝 검사법으로는 LPB-ELISA를 사용하였고 항체반응개체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중화시험법을 추가 실시하였다. 중화시험 반응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혈청 및 Probang 시료 채취를 실시하여 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청예찰 검사 흐름도는 그림 .과 같다

보호지역 5,067두, 경계지역 10,842두가 검사되었으며(표 .) 이 중 101개의 개체가 LPB ELISA에서 항체반응을 나타내었다. 이 중 59두는 예방접종축으로 확인되어 3ABC ELISA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42두는 중화시험으로 검사한 결과 6농가에 대해 프로방 및 추가혈청검사가 필요하였으며 PCR 및 바이러스분리법에 의한 검사결과 구제역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동제한 해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2002년 7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림 . 구제역 검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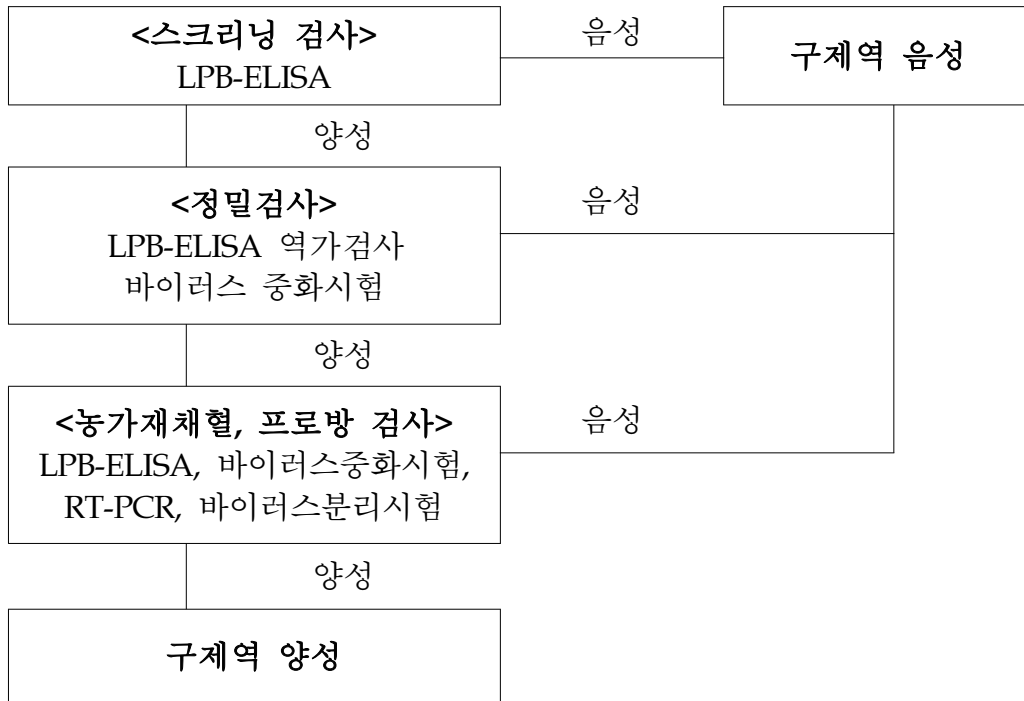


표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시·군	지역	구분	소		돼지		염소		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안성	보호지역	1차	138	1,340	22	307	12	82	172	1,729
		2차	138	1,347	22	307	12	80	172	1,734
	경계지역1		335	1,349	128	1,742	41	164	504	3,255
	경계지역2		318	1,265	121	1,697	21	85	460	3,047
진천	보호지역	1차	49	302	9	126	7	39	65	467
		2차	49	303	9	126	7	39	65	468
	경계지역		250	746	50	646	38	133	338	1,525
평택	보호지역	1차	30	327			2	6	32	333
		2차	30	330			2	6	32	336
	경계지역		359	1,476	111	1,457	21	82	491	3,015
계			1,696	8,785	472	6,408	163	716	2,331	15,909

7.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내) 및 경계지역(3~10km사이)의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통행 차량 및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발생지역 이동통제 초소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원에서는 매일 초소 운영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불법적으로 가축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통행 차량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통제초소의 경우에는 도로를 절단하여 소독 파이프를 묻어 아래에서 위로 소독약이 분사되도록 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였다. 안성 일죽면 소재 신흥농장 발생시에는 3km내 지역에 검역원 소독차량 2대를 상주 배치시켜 농장 주변 도로에 하루에도 수회씩 소독을 실시하였다.

8.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시설 폐쇄(농림부)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정규적인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특히, 2001년부터 2월에서 4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매월4회 소독을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이후에는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소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시·도에서는 공동방제단(10,355개) 구성·운영하고 소독차량 313대를 구입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제조공장, 집유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여부등 실태를 점검하였다.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 및 이와 연관된 가공장에 대하여는 오염된 육류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 이천 소재 신영도축장·경기 안성 소재 안성축산진흥공사·경기 평택 소재 평택도축장·원주 도축장·서울 축산물공판장 등 4개 도축장을 5월3일 잠정폐쇄조치하고, 가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지육·가공품 1,021톤을 폐기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 도축장 및 가공장에 보관된 물량의 안정성이나 폐기처분의 범위, 시중유통물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구제역 발생시 전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서 가축 시장이 폐쇄되었으며, 2002년 구제역 발생시에도 2002년5월3일 발생지역 인근 9개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나머지 93개 가축시장은 5월4일부터 모두 자율적으로 휴장한 이후 8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였다.

9. 2000년 발생시 대응과의 비교

2000년도에는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및 보령의 6개 시·군 15개 소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한 반면에 2002년도에는 경기 안성·용인 및 평택, 충북 진천의 4개 시·군 16개 농가중 소 농가 1, 돼지 농가 1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방역대응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2000년에는 발생농가 중심 10km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 ~ 20km사이를 경계지역으로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하였다. 2000년 구제역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유럽이나 타국가의 이동제한 지역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그 이후에 보완대책으로 위험지역은 발생농가 중심 3km이내, 경계지역은 3 ~ 10km사이로 정하고, 10 ~ 20km사이의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조정하였다. 2000년도 구제역 방역정책은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 반면에 2002년도에는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역정책의 차이로 청정국 달성기간도 2000년에는 발생후부터 청정화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발생후 청정화까지 약 7개월이 걸렸다.

'00년 및 '02년 구제역 방역조치 현황 비교

구 분		2000년	2002년
발생현황	발생기간	'02.3.24~4.15(22일간)	'02.5.2~6.23(52일간)
	지역(시·군)	6개 지역 (과주, 화성, 용인, 충주, 홍성, 보령)	4개 지역 (안성, 용인, 평택, 진천)
	농 가	15개 농가	16개 농가(소1, 돼지15)
	축 종	소	돼지, 소
살 처 분	발생 및 인근농가	182개 농가, 2,216두	162개 농가, 160,155두
이동통제	위험지역	10km이내(초소설치)	3km이내(초소설치)
	경계지역	10~20km이내(초소설치)	3~20km이내(초소설치)
	관리지역	-	10~20km이내
방역정책	살처분 또는 예방접종	예방접종	살처분
청 정 국	자격요건	예방접종 중단후 1년간 비발생	살처분 종료후 3개월간 비발생
	소요기간	· 예방접종 중단후 1년이상 비발생('00.8.31~'01.9.19) · '00.3.24일 발생 후 청정화까지 약 18개월	· 살처분 종료('02.6.24)후 3개월 ('02.9.24)간 비발생시 청정국 추진가능 · '02.11월 OIE인증시 청정화 까지 약 7개월

V. 구제역 방역홍보 추진내용

1. 구제역 방역대책 홍보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홍보전단, 소책자, 포스터 달력 및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가축중개인과 양축농가에게 배포하였으며, 농촌 및 농업관련 신문과 잡지에 구제역 예방관련 기사를 주기적으로 기고하였다.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가별 전화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전국민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언론 브리핑 및 각 기관·단체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시 피해확산을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에 양축농가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농가 마을방송용 녹음테이프 3만5천개를 긴급 제작하여 전국 각 시·군,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배포하였고 홍보용 리후렛 40만매와 홍보용 표어 50만매를 제작배포하고 홍보용뱃지 2만개를 시·도, 검역원,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구제역 발생후에는 정부에서 발생내용을 신속히 보도하여 양축농가와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독실시등에 협조를 받기 위해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정확히 보도되도록 하였으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이동제한 조치에 차질없도록 홍보하였다.

구제역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02년3월에는 시·도별로 지역별 구제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하였으며 지방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 및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비디오 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제역 임상증상, 신고방법, 소독제의 사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농가에게 농가행동수칙과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농림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 공동명의로 농가서한을 제작하여 축사농가에게 발송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전국 수의·축산방역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 1박2일간 구제역 방역교육을 실시하였고, '02.10월에는 전국 읍·면장 소집교육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1,143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평시방역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한 축종별 전문가 회의를 '02.12월 차관주재로 개최하였으며,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전화ARS시스템을 운영하여 방역기관과 양축농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역효과를 높였다.

<구제역 방역홍보물 : 부록 참조>

기관·단체별 홍보·교육 세부추진 계획

구분	농림부	검역원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단체·협회
농장주	-홍보물 제작 배포	-구제역·돼지 콜레라 발생 지역 26개소와 인근지역 7개소에 대한 농가 방문 농장주 홍보·교육	-자금부담 -홍보물 제작 배포	-자금부담 -관내 전체 농가 방문 홍보·교육	-관내 전체 농가 방문 홍보·교육	-회원 농가 자유통보·교육
외국인 근로자	-홍보물 제작 배포(코팅)	-홍보물 외국어로 번역	-홍보물 제작 배포	-관내 전체 농가 방문 홍보·교육	-관내 전체 농가 방문 홍보·교육	-상동
산업연수생	-농촌인력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 작성 -교육자료·홍보물 제작 배포	-교재·교과과견	-농장 배치 전·후관리	-농장 배치 전·후 홍보·교육 등 관리	-계속 홍보·교육	-상동
기관·단체장	-자금 일부 지원 -교재·교과과견	-교재·교과과견	-교육주관·장소준비 -군과장·읍·면장, 단체·협회장 전원 소집	-군과장·읍·면장, 단체·협회장 전원 동원	-농업기술센터 과장 참석	-단체·협회장 참석
가축방역 관련 공무원	-자금부담 -공무원 교육원 교육	-교재·교과준비	-공무원 동원	-공무원 동원	-교육 참석	-단체장 참석

방역관련 기관·단체별 세부조치사항

관계부처	세 부 조 치 사 항
식물검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프화·콜프채 및 중고 농기계 소독 등 검역 ○ 기타 구제역 발생국의 의심물품 소독 등 검역 강화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에 임상증상, 신속 신고요령, 소독 등 방역 홍보·교육 전담
축산기술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독 등 방역실시사항 점검 및 지도·감독 ○ 농가에 임상증상, 신속 신고요령, 소독 등 방역 홍보·교육
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운영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전업규모이상 농가 소독 지원 ○ 농협(지역축협 포함) 소속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한 관내 농가 지도·홍보 및 구제역·돼지콜레라 의심축 발견시 신고 철저 ○ 폐사동물의 동물사료 사용금지 등 처리 철저 지도·홍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체·항원검사를 위한 채혈 실시 ○ 시도 가축방역요원으로 하여금 농장 채혈시 예찰강화와 예방접종 여부 동향 보고 ○ 방역홍보를 위한 리후렛, 책자, 표어등 제작배포
대한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이 되도록 홍보 강화 ○ 홍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농가 지도·홍보 ○ 떨어돼지 구입금지, 농장출입차량·사람 등의 소독등 차단방역 강화 ○ 폐사동물의 동물사료 사용금지 등 처리 철저 지도·홍보
한국육류유통 수출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되고 있는 사항 등을 홍보 ○ 돼지고기 조기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출국의 여론 등 동향 파악 ○ 물돼지 개선등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홍보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수송차량 소독기 장착 및 소독 철저 지도 ○ 남은음식물 사료를 돼지에 급여시에는 사료관리법령 관련규정에 의거 심부온도 80℃에서 30분동안 가열처리하여 급여토록 지도·홍보 ○ 사료판매 농가에 대한 지도·홍보

2. 국경검역 홍보활동 강화

○ 공·항만에서 육류 불법휴대 및 농장방문자제 홍보

구제역 발생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활성화(건교부·항공사 협조)하고, 공·항만에 도우미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공·항만 및 무역항에 검역전용전광판을 설치(인천항등 5개소)하고 현수막 200개, 포스터 2천부 제작 부착하였으며, 아시안게임과각종 국제행사 그리고 해외여행 성수기에 홍보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여 홍보리후렛 294만매·홍보칫솔 2만개 배부와 탐지견 포스터 500매를 부착하였고, 몽골인 1,200명에 대한 홍보와 산업연수생 및 운동선수단에 대한 교육을 문화공보부와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 재외 공관에서 검역홍보활동 강화

외교통상부 및 주재국 대사관과 긴밀 협조하여 입국비자 발급시 불법육류 반입을 금지토록 검역안내문을 16개국 500천매 제작·배포(영어, 중국어, 대만어, 러시아어, 몽골어 번역)하였으며, 문공부·관광공사 협조하여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홍보하였다.

○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및 축산행사 참석자 출국전 교육 실시

문화관광부 협조하여 관광공사 등의 단체인솔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와 축산단체의 홈페이지에 해외여행시 축산물 반입금지등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토록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협조사항

관계부처	협 조 사 항
외교통상부	<p><재외공관 등을 통한 검역홍보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발급시 검역안내서 등 홍보물 배부 ○ 재외교포단 등에 휴대육류 반입자제 등 홍보물 배포 ○ 재외 공관을 통한 주재국내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사실 조회 등
행정자치부	<p><지방자치단체의 국내방역 지원 및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일제 소독의 날”소독지원 및 실태점검 강화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국 여행자제·휴대육류 반입금지 및 의심 가축 조기신고 홍보(반상회, 마을방송, 지방언론 등 이용)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전환관련 소독,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업무는 현행대로 읍면동 존치(관련지침 및 시군조례반영) ○ 시·군,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수의직 결원 조기보충 ○ 시·도, 시·군, 축협조합에 지원된 방제차량 등의 운영강화 및 방제단 운영비·소독장비 등 지방비 지원 확대
국정홍보처	<p><국제행사 참가국 여행자 사전홍보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국 중심 입국자 홍보, K-TV활용 - 해외홍보원을 통한 주재국 전염병 발생 동향 파악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p><공항관리공단, 해운사 등 관련단체에 국경검역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공·항만 및 신규 개항장 CIQ기관 공조체제 구축 - 검역 및 소독장소 확보, 홍보물 게시, 검역정보 고유 등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의 선·기내방송과 항공사·선사 홍보물 배포 협조 ○ 유럽산 우제류 가공식품의 기내식·선식 사용금지 - 선·기내 남은음식물의 처리 철저 ○ 공·항만 발판소독조의 관리 및 검역원의 소독실시 협조
문화관광부	<p><검역홍보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검역 안내 ○ 관광공사, 여행사 홈페이지에 구제역·돼지콜레라 홍보내용 게시 ○ 아시안게임 기간중 조직위에 검역관 상주파견
관 세 청	<p><휴대·밀반입 육류 검색강화 및 검역물 소독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국 여행자의 휴대물품 검색 강화 ○ 동물검역 물품 및 소독대상자 확인시 검역원 통보 및 인계 ○ 공·항만 출장소·감시소의 육류 등 불법반입 감시강화 등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국 반입 농기계류·흙 묻은 골프화 등 소독 협조 ○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검색 및 X-Ray검색대 조기확대 도입
해양경찰청	<p><해상밀수·밀입국자 검문·검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등 밀수품 발견시 세관 및 검역원 인계 ○ 나포·피항선박 감시 강화 및 입항시 검역원 통보 철저 - 중국 등 밀입국자 검색, 해상을 통한 축산물 밀거래 단속 강화

VII.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구제역 방역추진평가>

- ◇ 국내발생 방역경험으로 발생시 방역수준은 향상된 반면
- ◇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
 - 전염병 발생국가와의 교류대확대로 유입가능성은 지속되고
 - 국경검역만으로 병원체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실정

1. 구제역 방역추진 평가와 교훈

<잘된 점>

- 2000년 구제역 발생경험과 영국등 외국의 구제역 발생시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 간이항원키트(Pen-side키트)를 이용한 신속한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진할 수 있었고, 구제역 예방약 비축 그리고 가상발생에 대비한 CPX훈련을 실시하였고,
 - 행자부·국방부·경찰청등 관계부처의 협조하에 발생농장 및 반경 500m이내 인근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감수성 동물(90농가 97,202두)을 긴급살처분하였고, 반경 3km이내 구제역 감염위험성이 있는 돼지(72농가 62,953두)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처분 조치하여 매몰과 이동제한등 초동방역 철저로 구제역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 양축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향상으로 농장별 차량·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등 실시가 자율적으로 이행되었으며,
- 구제역 일일 발생상황과 추진대책에 대한 정례 언론브리핑과 인터넷 게시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협력을 유도하였다.

< 잘못된 점 >

- 방역의 중요한 매체인 사람·차량 및 야생조수류 관리소홀등 전과경로별 대책이 미흡하였다.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계도와 휴대육류에 대한 단속, 이동통제지역 사람관리가 미흡하고 농장고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미약하고,
 - 이동통제지역 차량에 대한 통제관리가 미흡하고, 사료·동물약품·집유차량·가축수송차량의 소독기구장착과 소독실시가 미흡하며,
 - 야생멧돼지·까치·비둘기 등에 대한 정밀검사등 야생조수류에 대한 서식상황 조사와 검사·관리가 소홀하였다.

- 농가의 자율방역의식 부족으로 상당수 축산농가가 소독시설·기구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았다.
 -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지연과 방역위반 사례가 있었고
 - 완전 멸균되지 아니한 잔반사용과 죽은 돼지의 개사료 이용등 방역인식이 부족하여 전염병 발생 및 질병전파 요인이 되었다.

-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미확립되어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어려웠다.
 - 지자체 제도시행으로 시장·군수의 민선전환후 지방분권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시 및 방역조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관계부처간(관세청·해양경찰청·건교부 등) 상시협력체제가 미흡하였다.
 - 공항만을 통한 불법휴대육류 무단반입과 관련부처의 축산물 밀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2. 문제점

평시 방역대책 추진시

- 국경검역을 현 수준보다 더 강화할 경우 입국 불피초래 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워 병원체 유입차단에 한계가 있음
- 국경검역에서 농진 병원체가 가축에게 접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농장단위 소독과 차단 등 방역이 최우선이나 아직도 많은 농가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법령·규정 등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상인 농가의 이행실태는 아직도 담보상태이거나 취약한 실정임
- 일부 시·군의 경우 관내 축산단체(방역본부, 지역축협, 양돈·낙농·한우협회지부 등)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활동의 중복 또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발생시 방역대책 추진시

- 살처분 정책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야기
 - 매몰지 선정확보가 어려우며, 매몰시 침출수와 가스가 생성 배출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등 공해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양축농가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살처분 보상비 지급, 농장소독, 사료·약품 폐기처분, 가축재입식 비용등
 - ※ 2000년 : 3,006억 지원, 2002년 : 1,434억 지원
- 축산에 대한 국민(소비자)의 불신과 생산자 축산의욕이 저하됨
 - 살처분 현장보도에 따른 혐오감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남
 - 양축농가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축산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장기간의 이동통제 및 소독실시로 주민불편 초래

- 살처분농가의 사람 및 차량이동 통제로 직장출퇴근과 자녀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필수품 구매이용이 불편함
- 외부 통행차량의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로 불편초래 및 불만이 야기됨

□ 구제역 방역 집중으로 타 축산 및 방역업무 소홀 우려

- 소결핵·부루세라병, 돼지설사병, 닭뉴캐슬병등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방역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결여

- 방역관련 법령 및 SOP가 있음에도 살처분, 인력지원, 소독·예찰 활동 등 일상적인 현장방역조치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농가의 비협조로 방역관련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이 떨어짐

□ 일선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감독권한과 제재수단이 취약함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관장하고 있으나 국내 방역기관인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미약함

3.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 ◇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의 강화
 - 유입경로별 검역활동의 지속실시, 방역취약부분 중점관리
 - 농장단위 방역강화로 가축전염병에 강한 축산 조성
 -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분·퇴출, 우수농가 육성
 -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기관·단체별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운영
- ◇ 발생시 환경·동물복지·경제성등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주안에서 방역활동을 전개
 - EU등 외국동향을 파악, 방역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의 역할분담 정립

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국경검역

- 개정된 검역규정에 의한 육류등 휴대품 검색 및 처분강화로 반입물량의 최소화('02년 : 15.6건/일평균→'03년 목표 5건 이하)
 -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금년 6.27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일부터는 10~50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으나
 - 동물검역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99명)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연수부 교육) 현장에서 범칙금부과와 검찰에 직접 기소토록 했다.
 - ※위반자 대부분이 해외교포, 외국인 등으로 사법조치가 어려운 점과 휴대품 반입자의 신고시기·절차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 구제역이 상재하고 있는 동북아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관세청과 협조하여 확대추진하고, 개정법령에 의거 동물검역관이 검역물품외에 여행자 휴대품도 직접 개봉검사 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방안을 시행하고,
 - 구제역 특별대책기간(3~5월)중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한 국제공항만의 검역검사대에 동물검역관을 증원배치하여 불법휴대축산물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 몽골·중국·홍콩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와 국제행사에 참석하거나 현지농장을 방문한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키로 하였다.
- 검역탐지견의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집중투입 및 확대배치
 - 구제역 위험국 출발노선에 대하여 탐지견 투입비율을 확대하고 (12→20%) 인천공항외에 서울국제우체국과 평택항 등에도 순환 배치하여, 불법축산물에 대한 검색강화로 무단반입을 사전 차단
 - '02년 휴대품 4,400건중 탐지견(12두)이 1,862건(42%)을 적발하여, 검색효과가 높는데 비해 X-ray검색은 23건(0.5%)에 불과하였음

- 검역탐지견의 검색장소 확대등 관세청과 협조하여 운영활성화를 기하며, 탐지견이 적발한 물건을 검역대로 이동하여 개정법령에 의거 동물검역관이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항만 및 무역항에 설치된 발판소독조 보완 및 관리강화

- 동물검역관이 공항만에 설치된 여행객의 발판소독조(310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소독조(80개)는 용역위탁 관리를 실시('03년 230백만원)하고,
-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의 골프화·골프채에 대한 소독을 강화(식물검역소)하고 중고농기계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무역항에 설치된 소독조(110개)중 관리가 부실한 소독조의 소독약을 보충하고, 노후 소독조 교체 등 관리를 강화하며,
- 소독약품 부족시 관할 검역원에서 소독약품을 지원키로 하였다.

□ 해외여행입국자에 대한 세관신고 및 확인강화

- 세관원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확인후 축산농장 방문자에 대하여는 동물검역관에 인계하며, 동물검역관은 설문조사와 소독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육류등 반입자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입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원에게 제출할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 축산단체 등을 통하여 축산농장 방문자의 방문사실을 기재하여 방역에 협조하도록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하였다.

□ 밀수·밀입국·피항선박 등 유관기관 검역 협조체제 유지

- 해양경찰청·관세청과 협조하여 공해상 등 취약지역을 통한 동물·축산물의 밀수단속에 철저를 기하며, 태풍으로 인한 피항선박과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선박 그리고 구제역 발생지를 경유한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소독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 항공기와 외항선박의 남은음식물 소각처리등 실태를 확인·감독 (항공사·선사협조)하고, 남은 음식물을 금여하는 전국 축산농가의 금여실태를 관리하여 80℃에서 30분이상 가열금여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였다.

□ 건초등 수입조사료에 대한 소독 및 검역강화

- 수출국에서 조사료 수입 위생조건을 준수하여 구제역 비발생조건과 80℃ 10분이상 열처리 또는 포르마린 훈증소독 실시등 현지점검 및 검역을 실시하고, 수입후 가축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여부 확인후 당일 재소독을 실시하고,
- 국제 공·항만에 “검역전용전광판”을 확대설치하여 인천항 2, 부산항·울산항·대구공항 각1대와 평택항 등 8대를 추가설치하고, 인천공항은 공항공사 소유 7대를 활용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조하며,
- 구제역 발생국에 단체여행이나 외국의 축산행사 참석자는 출국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조하고, 단체인솔자에 대한 방역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축산농가·단체등의 해외 축산 행사 참석시 사전교육을 받도록 축산단체와 협조하고,
- 구제역 발생국 출발국 공·항만의 탑승권 발권창구와 재외공관 비자 발급시 검역홍보물을 배부하도록, 구제역 발생국 주재 외교공관 또는 국적 항공사와 협조(외교통상부)하여 기존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국내방역

□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강화

-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 의무규정의 철저한 적용과 확인 강화로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 하며, '03.6.26일까지는 계도차원에서 개정되는 시설별 설비 및 실시기준등을 적용하되, 위반농가(업체)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조치는 현행기준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 또는 시·군 책임하에 전 농가의 소독설비를 설치토록 추진하였다.

- 소독 미 실시 농가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하여는, 구제역등 발생시 소독약과 생계안정비용 등 방역비용의 감액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고,
- 구제역 대책기간중 축산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1차로 관할 시·도에서 점검하고 2차는 검역원·축기연·축산단체 합동으로 점검하며, 도축장·사료공장등에 대하여는 농협·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와 지자체가 합동점검하고, 적발농가 등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언론에 공표하며,
- 양축농가의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기록·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외부인·차량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농장 및 축사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다.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운영 활성화

-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총53회)로 하고, 소독약 공급은 27회(54억원, 기금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1회(125억원, 지방비 50% 분담) 지원체제를 유지하며, 지원대상은 245천 농가(돼지 300두 미만, 소·염소·사슴 등 10두 미만)이며,
- 소독방제차량(307대)의 운영주체별 역할을 분담 운행하여, 시·군(163대)에서는 축산밀집지·도로 등 공공지역과 정착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위생시험소(44대)에서는 과거질병 다발지역 등 방역취약농가와 시장·군수의 소독지원 요청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축협(100대)은 가축시장 및 시장·군수의 소독지원 요청지역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 시장·군수는 지역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소독방제차량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축산밀집 시·군 등은 “일제소독의날”외에도 소독 누락 농가등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 주관 “지역방역협의회”운영 등 방역대책 총괄 추진

- 시·군 “지역방역협의회”를 축협·협회장 중심으로 재구성·운영하여 소독실태 점검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방역교육 실시등 방역협의체로 정착시키고,
- 지역축협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관리협조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해당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 시·도, 시·군에서 공동방제단·지역협의회·소독방제차량 운영, 공수의 위촉, 가축위생방역본부 활동지원, 긴급방역비 등 지방비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하며,
-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위생시험소·축산단체·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살처분 장비 및 이동식 소독장비 등에 대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 “지역방역협의회”가 선정한 취약농가에 대하여 예찰강화와 방역 관리 등 평시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시·도 및 시·군단위 구제역 가상연습(CPX) 또는 집합교육 실시로 방역관련기관·단체의 협조체제 점검 및 평가

- 가상훈련은 실제 상황발생시 신속한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① 의심축 신고, 방역관 현장출장, 발생농장을 포함한 인접농장의 2시간내 이동통제 조치, 현장 통제본부 설치, 살처분·소독장비 동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은 실제상황으로 실시
 - ② 살처분 장소 선정 확보와 농가가축사육실태를 조사하여 위험 지역·경계지역등 방역대 설정 연습
 - ③ 관할 군경 협조와 살처분·통제초소 운영에 대하여 농협등 관련단체 인력지원 협조
 - ④ 수매가축 출하도축장 지정과 사료수급, 수집원유, 분뇨처리대책 추진
 - ⑤ 그 밖에 사항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함

-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도 또는 검역원 감독관(강사)을 파견(농림부)하여 교육·홍보 실시
- 각 시·도는 가상연습 실시결과를 자체평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SOP를 작성(도 또는 시·군 단위)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며,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시 발생지역 SOP를 기준으로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함

□ 구제역 특별대책 홍보 및 강화

- 농림부· 시도 및 방역관련기관 단체등에서 홍보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방송용 녹음테이프, 전화ARS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마을(가두)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 특별대책기간에 방역관련기관·단체·업체등에서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지자체에서 농장주·관리인에 대한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사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림부·검역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등에서 순회교육등을 지원하게 된다.

나. 구제역 재발생시 방역조치등 개선·보완추진

□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단체간 역할분담 정립

농림부(검역원) : 전국 방역관리 총괄 및 예산·기술지원

- 관련부처 예산·인력지원 협조, 발생사실 공표, 해외협력
- 방역중앙협의회 운영, 살처분 범위·예방접종실시등 결정
- 가축수매·예방약 수급·사업비 지원등
- 역학조사·혈청검사·발생지 기술지원 및 홍보
- 지자체 방역추진사항 지도·감독

시·도(시협소) : 발생지역 지원 및 인접 시·군 방역관리

- 발생 시·군 예산 및 방역·기술인력·장비 지원
 - 비발생지역 공개업 수의사, 방역요원, 소독장비 등
- 가축시장·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관련시설 방역관리
 - 시설폐쇄, 수매가축 도축 지정, 발생지역 전용차량 배치 등 조치
- 농장의 도축장 등 타시설에서의 발생시 방역조치
- 언론 대응 및 농가 홍보
- 검역원의 역학조사·혈청검사 협조
- 그 밖의 시·군방역추진사항 지도·감독

시·군 : 발생지역 방역관리 총괄

- 발생신고접수·발생농장(지역)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 방역인력·장비 동원 및 배치, 발생지 소독관리, 매몰지 관리 등
- 이동제한 지역 통제초소 운영 및 농장 예찰 등 방역관리
- 살처분 보상 평가·방역사업비 등 집행
- 수매지도,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

농협(지역축협) : 발생지역 방역지원

- 발생지 소독방제차량 등 방역장비 및 통제초소 인력 지원
- 중앙지원 소독약품 공급, 가축시장관리
- 시장·군수의 방역대책 추진 지원
 - 농장 전화예찰·소독·방역관계자 위문
- 방역지역 회원농가 설득 및 홍보·교육

방역본부(방역요원) : 발생지역 방역지원

- 이동제한지역 농장채혈 및 검사의뢰
- 이동제한지역 가축예방접종, 임상검사 등 예찰활동
 - 농장 방문시 방역지역 회원농가 설득 및 홍보
 - 비발생지역 방역요원 차출 지원
- 홍보물 제작·배포 및 비발생지역 농가 교육실시 등

축종별 단체 : 발생지역 방역협조

- 시장·군수의 방역대책 추진 협조
 - 농장 전화예찰·소독·방역관계자 위문
- 방역지역 회원농가 설득 및 홍보·교육

도축장·사료공장 등 : 시설소독관리 강화, 지정도축장 운영 등

- 이동제한지역 불법 출하가축 도축금지, 사료급여·집유제한 등 실시
- 검역원 등의 역학조사 협조 및 차량운행제한 등 협조

□ 의사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로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 추진

-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사육제한, 농장폐쇄 등 제재를 강화하여, 발생신고·소독 등 방역규정 위반농가의 보상금 차등 지급과 생계안정 비용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며,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등 전염병 발생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 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방지하고,
- 이동통제 등 위반농가의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의사전염병으로 간이진단시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대를 설정하여 즉각 가축·사람·차량등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 예방접종 실시를 대비한 접종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보완함

- 예방접종 정책이 결정되면 접종지침 시달과 함께 예방약과 기자재등 공급과 예방접종반이 투입되며, 예방접종 및 접종가축의 표시는 농가 스스로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 예방약 비축('03.2월기준) : 완제품 1백만두, 항원뱅크 4.3백만두

- 영국, 네덜란드 등 EU의 살처분 지양 및 긴급예방접종 동향을 참고하여 발생지역의 역학상황 및 축산형태와 동물복지·환경보호 및 차단방역 효과 등을 감안하여 예방접종 여부 조기결정 검토

- 환경·동물복지·경제성과 국민생활 등을 고려한 살처분 범위 최소화 결정과 가축·사람·차량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추진
 -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한 최소반경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 소독 실시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 발생농장과 주변농장 가축에 대한 살처분(전살차량 이용) 매몰시, 주민동의를 얻어 렌더링 또는 소각시설 위탁처리로 살처분 매몰지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방지를 추진하며,
 - 역학조사반 활동강화로 조기 원인규명을 함으로서 전염병 확산 조기차단 및 향후 방역대책 정책에 반영한다.

- 특별방역기간중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례 언론보도와 과장 또는 왜곡된 보도를 차단토록 언론사 적극 협조
 - 발생지역 관할 지자체 중심으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토록 지도·감독하고,
 - 일일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례적인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등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전국민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언론사협조는 당해 지자체·검역원과 공동으로 대처한다.

- 가축방역소홀 지자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제한 및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확대
 -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시 지방비 부담률을 확대(50→70%이내) 하고, 지역특화사업의 사업대상에서 제외(시·군) 또는 평가시 반영(시·도)하며, 현재 지역농정현안 대처노력에 따라 5점이내 가점제를 실시하고,
 - 관련 생산자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지자체에 대한 처분결과 등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한 포상(축산국 소관 포상 및 농정시책발전유공)등을 제한하며,
 - 우수지자체에 긴급 방역비를 확대지원하며, 기존지방비에서 책정된 방역비는 인건비와 수용비등으로 대체한다.

□ 민간방역단체 기능 활성화 추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 출범(6.27)과 함께 방역조직 개편 및 기능과 역할을 확대추진하여, 민간방역의 주체로서 일선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적극 보조하며, 예방접종·돼지오제스키 근절사업등 정부의 위탁사업업무를 수탁수행토록 하고,
- 가칭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6년제 수의과대학 졸업인력의 방역기관 활용과 시·군의 수의·축산직공무원 결원을 지속 충원하여 일선 방역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한다.

4. 법령개정등 제도개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문개정 공포('02.12.26)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추진 의무화

-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수집·분석,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질병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농가의 방역의무를 명문화하고 축산단체 등의 농가방역교육 실시 의무화

- 법 제1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법 제6조(가축방역교육)
 -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함.

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마련

- 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자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법 제13조(역학조사), 법 제58조(벌칙)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마. 농가의 가축거래기록 유지 조치

- 법 제16조(가축거래기록의무 등)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바. 소독설비·실시대상 확대, 소독설비 과태료 상향조정(300→500만원)

- 집유장·사료공장·종축장·부화장·축분비료공장 소독설비 및 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차량 소독을 의무화함.
- 법 제17조(소독등의 실시)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동물약품·사료·집유·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함

사. 방역지역에 가축(수송차량 포함)외 사람·차량의 이동제한, 소독등 방역조치 규정 신설

- 법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람과 가축·차량의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발생신고지연 농가, 사육제한·농장 폐쇄 및 보상금 차등 지급
- 법 제19조제2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
 -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신설함

자. 살처분 이행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지원 규정 마련

- 법 제49조(생계안정지원)
 -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휴대검역물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

- 미신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납부
 - 미납부시 현행과 같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1조제1항(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통칙)
 -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카. 그밖에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법 제4조)하여 가축방역 주요정책의 자문역할을 하며, 농장별 또는 마을단위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법 제18조)하여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음.

□ 축산법개정공포('02.12.26)

-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음
- 법 제20조(축산업의 등록)
 -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부화업·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 등록하도록 함
 - 등록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들을 갖추어야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03.6.27시행)

- 규정개정 후속조치 : (별첨)

□ 해외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개정안 (요지)

- 요령의 적용대상에 축산기자재와 사람을 추가하여 이동제한 및 세척·소독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의사환축 발생시 시·도지사는 가축의 도축·가공 처리시설의 지정계획을, 시장·군수는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확인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전염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농림부장관과 검역원장은 중앙통제관 등을 파견하여 방역지도·방역주체간의 업무조정 또는 방역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부여함(안 제12조)
- 추가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험지역·경계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발생직후의 혈청검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제16조)
- 과체중 가축처리 등을 위한 가축수매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 경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5조, 제16조)
- 효과적인 예방약을 비축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하여는 가축방역 중앙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역학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발생농장 및 기타 살처분지역의 농장에 대한 감수성 가축의 재입식 허용요건을 신설함(안 제23조)

□ “구제역긴급행동지침”보완 방안

- 발생시 이동제한 조기실시 : (현재)검역원 판정→(개선)시험소 1차 판정
- 이동제한 지역 농장채혈 등으로 인한 병원체 오염위험, 혈청검사 결과 음성판정에 따른 농가·언론의 불신 등을 고려, 발생후 일정기간 방역지역내 농장방문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채혈은 최소 잠복기간(7일) 경과후 실시(EU규정 참조)하고 소독·예찰은 농가 스스로 실시

- 검역원 진단결과 등의 공표 또는 설명회 개최
 - 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진단내용 공개
 -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서 돼지콜레라 진단방법, 기술전수 등 공유
- 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의 공개 또는 위원에 축산농가 등 참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공표하며, 농장등 역학조사시 조사기록에 대한 피조사자의 확인후 대외발표
-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처분대상 및 보상기준을 구체화
- 예방약 공급·접종·접종표시·사후관리 기준등 구체화
- 살처분 동원장비·인력 및 매몰기준 등 구체화

<별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규정 후속조치

구 분	현 행	개선·보완	비 고
○ 휴대검역물 검역 강화	○ 일반검역물과 휴대검역물 구분없이 검역규정 등 적용 ○ 검역관의 검역대상 물품에 한한 검사권한	○ 휴대 검역물은 국내 도착후 입국장에서 신고 ○ 불법 휴대품 반입자에 대해 범칙금 조치 -범칙금 액수등 규정 ○ 검역관의 휴대품 검사 권한 확대	시행령 시행규칙 ※불법휴대품 반입자에 대한 철저한 범칙금 적용 및 홍보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 행정지시에 의거 농가 자율 교육 등 실시	○ “외국인 농업연수생 관리 지침”에 의한 특별관리	농림부 고시 농협/검역원
○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 확대	○ 소독설비 : 300㎡축사, 도축장, 가축시장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소독대상 : 축사, 가축 운반차량	○ 집유장, 사료제조업체, 종축장, 부화장, 축분비료공장 추가 -500만원이하 ○ 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차량 추가	시행규칙 농림부 고시 (소독요령) ※미실시 농가 적발 및 처분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방역책무 부여	○ 농림부장관의 가축방역 시책강구 책무 부여	○ 시·도지사 포함, “가축 전염병관리대책” 수립·시행 책무규정	농림부 고시 제개정(방역요령) ※시상평가 반영

구 분	현 행	개선·보완	비 고
○가축거래기록 의무	(신 설)	○농가에게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의무 부여 -도축 신청시 거래기록서 사본제출 의무화	농림부 고시 (가축거래기록 운영요령)
○질병관리등급제 및 방역교육	(신 설)	○농장 또는 마을단위 방역·위생 평가기준 마련 -재발위험 농장지정 특별 관리(소독, 외국인고용, 사양관리인 등 평가) ○농가방역교육 규정 마련 ※축산관련단체 위탁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발생 신고자 신원보호	(신 설)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 비공개	개정사항 홍보강화
○역학조사 강화	○제1종전염병 대상 ○축산관련단체 및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 -비협조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대상 질병을 농림부령으로 정함 -거부·방해·회피자의 300만원 이하 벌금	시행규칙 ※역학조사결과를 보상금·농장폐쇄·생계안정비 기준 반영
○신고 지연자 제재	○사법기관 고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 추가	시행령
○방역조치 위반자 제재	○벌칙 및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추가, 생계비 배제	시행령
○발생지역 방역대상 확대	○가축과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이동제한·출입통제 등 조치	○발생농장 관련 사람과 타지역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추가	시행규칙

구 분	현 행	개선·보완	비 고
○ 살처분 매물지 관리	○ 가축방역관 지시에 따라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재활용	○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재활용시 주변 환경 오염 방지조치 이행	시행규칙
○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의무 - 시행령에서 평가액의 40~100% 지급구분	○ 보상금 차등지급 근거 마련 -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의 보상 차등기준 추가	시행령 농림부고시 (보상금등 지급요령)
○ 검역원장 권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역조치의 권고	○ 방역조치 요구로 개선	-
○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 “균독주관리요령(검역원 고시)”에 의거 임의 관리	○ 전염병 병원체별 관리 근거 마련 - 병원체 분리시 검역원 신고의무	검역원 고시 (균독주관리요령) ※ 대학·연구소 집중관리

VIII. 결 론

2000년 4월 경기 파주·충남 홍성등 지역에서 1934년 이후 66년만에 말로만 듣던 소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예방접종과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실망과 좌절을 겪었으나, 다행히 양축농가와 관계공무원, 군경등 모두의 상호협력과 땀흘린 노력으로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조기청정국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년후인 2002년5월 경기 안성·용인, 충북 진천 등 지방에서 이번에는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하였던바, 약 16만두의 가축살처분 매몰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 양축농가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작년 12월 가축 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등을 개정하여, 발생신고 지연농가에 대한 처분 강화와 축산업의 등록제 실시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동남아(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동북아(중국·북한)의 발생우려등 주변국 상황등을 고려할 때 계절적으로 구제역 발생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상 “아시아 O1형”으로 분류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최근 발생원인은 중국등 해외여행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유입으로 추정되고, 이웃농가로의 전파는 사람·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되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국제수역사무국(OIE)보고에 의하면 축산업 총생산액의 20%로 추산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연간 약1조2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3,006억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였고 작년도에는 1,43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외에 농가의 가축살처분·매몰에 따른 환경오염과 정신적피해 그리고 재입식비용 등을 포함하여 축산 관련 산업피해 등 엄청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앞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먼저 국경검역에 충실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사전차단하여야 하며, 가축방역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신고와 진단 그리고 이동통제 및 살처분대책 등의 추진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자율방역만이 질병청정화와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첩경인 것이며 일단 의사전염병이 신고된 이후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대를 설정하며 위험지역·경계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등 차단방역이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동통제는 가축뿐 아니라 사람, 차량(분뇨·사료·약품)등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여야 하며 특히 중간상인들에 대한 제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와 같은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양축가와 방역관련기관·단체 모두가 긴밀한 협조하에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 되어야하며, 희망을 갖는 우리의 축산업으로 재도약 하여야만 하겠다.

2002년 구제역 재발생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땅에 다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로, 양축가는 물론 온 국민의 신뢰속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선진입국을 고대하면서 구제역 백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지역별 구제역 발생현황

□ 경기 안성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6-1, 율곡농장, 유창주
- 사육형태 : 일괄 사육농장
- 사육두수 : 8,302두
- 신고일자 : '02. 5. 2(22 : 30)
- 최종진단일자 : '02. 5. 4
- 살처분·매몰일자 : '02. 5. 3 ~ 5. 4

2002년 최초 구제역 발생은 경기 안성지역 율곡농장으로부터 '02.5.2일 구제역 발생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농장은 4월초부터 돼지유행성설사(PED)로 인해 자돈들의 폐사가 많이 있었던 농장이었다. 그러던 중 4월 말경 분만사에서 이동한 자돈들이 토혈을 하며 급사를 하자 축주는 폐사원인을 돈사내 환기 불량문제(환기시설 교체 공사중)로 생각하고 환기개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되어 4.30일 직원들과 함께 폐사된 자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혀에서 유백색의 수포를 관찰한다. 그래서 거래하는 사료회사 직원을 통해 수의사 방문을 요청하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5.1일은 노동자의 날로 수의사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날인 5.2일 수의사가 방문하게 된다. 농장에 도착한 수의사는 폐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한 결과 전염병이 의심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가검물을 의뢰하게 되면서 구제역 정밀검사와 동시에 의심축 신고 및 농장반경 10km이내에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면서 5.4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2002년도 국내 발생한 구제역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과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 충북 진천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4 이춘복
- 사유형태 : 위탁 사유농가
- 사유두수 : 1,006두
- 신고일자 : '02. 5. 3
- 최종진단일자 : '02. 5. 4
- 살처분·매몰일자 : '02. 5. 4 ~ 5. 5

두번째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북 진천지역 구제역 발생신고는 안성의 최초 발생신고 1일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 한돈사의 약 115일령 돼지가 5월1일부터 몇마리가 낱새가 이상하여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계열회사와 연관된 수의사에게 5월 3일 의뢰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수의사는 구제역이 의심되어 인근의 동료수의사에게 문의 후 곧바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었다. 2002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16개 발생농장 중 8개 농장은 5.2일 최초 신고 이전에 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신고된 농장도 최초 발생농장 신고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북진천의 이 농장은 위탁사육농가로 2002년 3월경에 전체 돼지가 출하되고, 3월 12일~26일 사이에 3개의 돈사에 1,000여두의 자돈을 입식한 후 신고일까지 단한마리의 돼지도 이동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신고농장과 인접한 최씨 농장의 돼지들이 신고일 이전에 출하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최씨 농장의 돼지에 대한 구제역 정밀검사와 동시에 출하된 돼지를 추적하여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충북 진천의 농장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다른 우제류 사육 농가와와는 격리되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으나, 10Km 이내에는 국내 굴지의 GP농장이 위치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 시켰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빠르게 주위의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과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5.12일 인근에 있던 GP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는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생농장 신고 이전에 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방역당국은 10Km이내의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충북 진천지역에서는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았다.

□ 경기 평택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23, 버들농장, 강일원
- 사육형태 : 일괄 사육농장
- 사육두수 : 1,552두
- 신고일자 : '02. 6. 2
- 최종진단일자 : '02. 6. 3
- 살처분·매몰일자 : '02. 6. 2 ~ 6. 3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소재 버들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역적으로는 경기 안성 및 용인지역, 충북 진천지역에서만 발생하였고, '02. 5. 18 ~ 5. 19일 사이 안성·용인지역에서 4건이 발생한 이후 2주째가 지나가고 있는 날로써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대는 '02. 6. 2일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존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을 훨씬 벗어난 평택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발생농장은 축사 바로 옆에서 육가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더 많은 전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출하 도축하는 평택 도축장 뿐만아니라 오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되어 전파시키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가축운반차량 세차·소독, 식육판매업소는 물론 식육운반차량에 대하여도 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안성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에 살처분 인력으로 투입되었던 작업인부가 살처분 작업후 농장밖으로 나올 때 소독 등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평택 버들농장의 육가공장을 방문하므로써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의 신발이나 의복 등에 묻어 전파된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축산관계자 모두는 농장 출입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등 피해농가 지원

1. 살처분 농가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돼지콜레라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이거나 양축농가 스스로 예방이 어려운 주요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가는 가축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조치할 경우, 즉 공익을 위해 개인자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지급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보상금)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살처분한 가축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농림부고시 제2000-71호)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모든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성돈의 kg당 생체가격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구제역의 경우 “긴급행동지침”의 “살처분가축등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하고 동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기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수적이다. 발생농가의 경우 전염병 감염이 확인되어 살처분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인근농가의 경우 그 동안 쌓아올린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피해 때문에 살처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살처분이 발생농가뿐만 아니라 인근농가까지 확대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긴급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과 별도로 보상금 지급요령을 마련 시달하였다.

주요내용은 이번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살처분한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농장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1명, 지역축협 및 업종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축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1명,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1명, 축종별 농가대표 1명, 해당 축종의 생산자단체 시·군지부 직원 2명 등 7인으로

구성된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위원회」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평가당시 살처분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안에서 최근 1개월이내에 거래된 가축의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종축·젖소 고능력우·사슴·염소등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작가격의 등록폭이 커 조사가 어려운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한편 살처분한 가축과 같이 있었던 물건중 오염이 의심되어 소각·매몰한 배합사료·조사료·건초·볏짚등 오염물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상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당해물건 평가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구제역 살처분 보상규정 비교

구 분	농림부고시	구제역 행동지침
보상평가위원회	5명(시·군담당과장, 방역관 공수의, 축협직원 등)	7명(농가대표, 축종별 생산자 단체 포함)
축종별 평가 상한가격	농협조사 해당 시·도 산지 평균가격 기준 종축가격 불인정	해당 시·군의 최근 1개월간 거래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종축, 멧돼지, 고능력우, 염소 가격 별도인정

보상금 지급 절차는 살처분 실시시 시·군 보상금평가반이 평가하고 해당농가에 평가내용을 통보하게 되면 해당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접수하고 이를 시·도에 전달하여 각 시·도에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이며 농림부에서 시·도에 수시 재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매몰한 가축은 소 1,372두, 돼지 158,708두, 염소 42두, 사슴 33두 합계 160,155두를 매몰조치하였다.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소에 주로 발생하여 1,989를 살처분한데 비여 돼지는 74두 살처분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돼지에 주로 발생하여 158,708두를 살처분하였고, 소는 1,372두를 살처분하였다.

시·군지역별 살처분현황을 보면, 안성시 84농가 80,803두, 용인시 62농가 50,604두, 진천군 10농가 24,582두, 평택시 4농가 4,053두, 천안시 2농가 13두이며, 총 162농가에서 160,155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 : 162농가 160,155두

구 분	계 (162 농가)	발생농장 (28 농가)	500m내외 (62 농가)	3km내외 (72 농가)	살처분 완료
합 계	160,155	62,047	35,155	62,953	
안 성	80,903두 (84농가)	26,679두 (9농가)	22,851두 (43농가)	31,373두 (32농가)	○ 7. 1 완료 (예방적살처분 7.13)
용 인	50,604 (62농가)	15,432 (16농가)	7,095 (14농가)	28,077 (32농가)	○ 5.30 완료
진 천	24,582 (10농가)	18,385 (2농가)	5,209 (5농가)	988 (3농가)	○ 5.15 완료
평 택	4,053 (4농가)	1,551 (1농가)	-	2,502 (3농가)	○ 6. 6 완료
천 안	13 (2농가)	-	-	13 (2농가)	○ 6. 4 완료

임신모돈 평가액 산출방법 조정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안성·용인시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모돈과다평가(마리당 935~937천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보상금 지급업무에 철저토록 지시하였고, 경기도의 보상금평가지정조치 및 지급보류로 인해 농가의 민원이 발생하여 임신모돈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검토하였다.

<구제역 살처분 모돈 보상관련 검토추진>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 구제역의 경우 “긴급행동지침”의 “살처분가축등의보상금지급요령”에 의거 지급하고 동 요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상기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안성시 보상평가위원회에서 모돈의 가격을 과다하게 평가 (마리당 935천원)하였다는 동향을 접수, 시·도에 보상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6.1일 : 구제역등 가축보상금 지급업무 철저 지시(시·도)
- 6.14일 : 안성시 구제역비상대책위의 보상금 평가상한액 건의회신
 -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보상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평가 당시 살처분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안(시·군·구)에서 최근 1개월 이내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가격을 결정, 농가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을 지급토록 함
- ※ 안성시는 평가위원회 평가(5.27일, 5.30일, 6.1일)후 6.20일 경기도에 보상금 신청
- 6.18일 : 철원등 타지역에서 안성의 모돈가격 과다평가 여론동향이 있어 시·도에 보상금 평가에 적정을 기하도록 재촉구
 - 모돈은 농협조사 성돈(61kg 이상)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지시(예 : 220kg 체중 모돈의 경우 470천원 상당, 220kg×2,170원)
- ※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마리당 500천원 수준 지급된 사례, 금년도 다른 발생지역의 평가액에 비해 과다한 점을 지적함에 따라 경기도는 보상금 지급을 보류(농협 등 축산관련기관 제시 평균가 583천원)

□ 보상금 산출방식 추진내역

- 7.5일 : 안성·용인농가 30명 농림부 방문, 대표 5명 장관면담
 - 안성·용인시와 축산관련기관 전문가간 협의회 개최, 적정가격 도출 추진키로 함
- 7.6·7.8일 : 축산관련기관(7개소) 전문가 2차 자체협의
 - 임신 모돈의 태아가격을 일부 인정 필요(경영손실 보전 차원)
 - 모돈 평균가격 산출방식과 임신돈의 자돈 손실보상 산출기준을 마련
- 7.9일 : 안성·용인 평가위원과 축산관련 기관 전문가 1차 협의
- 7.10일 : 농가대표 4명을 포함, 축산관련기관·단체 전체 협의
 - 모돈의 감가상각비 적용과 자돈 판매가의 손실보상 수준에 대해 농가 반대

- 7.12·13일 : 농가대표 4명, 가축위생과장(1차)·축산국장(2차)면담
- 7.13일 : 경기도(안성·용인시 포함)와 산출방식 설명 및 협의
 - 후보모돈 손실비 추가분 등 산출방식 일부 조정, 농가설득 당부
- 7.26일 :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주관 농가대표, 축산국장 협의
- 7.29일 : 안성시의회 의장단 축산국장 면담·건의
- 8.1일 : 안성시 축산단체장 농림장관 면담(집회 자제 당부)
- 8.2일 : 경기도(안성·용인시 포함)와 산출방식 최종 성명
- 8.2일 : 안성시에서 민주당 한광옥 최고의원, 축산농가 면담
 - 8.3일 안성시에서 정장선 의원, 축산국장, 농가대표 협의
- 8.6일 : 모든가격 산출방식 시달(시·도, 축산단체 등)
- 살처분 보상금 부족분 예비비(253억원) 확보
 - 8.2~8.7 : 기획예산처 모든가격 산출방식 설명 및 보완요구자료 제출 등 실무협의
 - 8.19 :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도별 예상액 재배정 조치(8.23일)
- 8.9일 : 당정간담회 개최, 생계비 지원확대방안 협의
- 8.19일 : 이해구의원 주재 안성농가 설명회 참석
 - 정부안 수용불가, 당초 신청한 모든가격 및 휴업보상 요구
- 8.24일 : 안성·용인농가(40명)반발, 과천청사 방문 시위
- 8.26, 8.29일 : 경기도와 농림부 실무자간 추가지원방안 검토
 - 경기도 자체사업인 후보모돈 갱신사업과 연계하여 살처분농가 모돈갱신사업비(마리당 100천원)의 국비지원 건의(9.3일)
- 9.11일, 9.16일 : 국회농해위 국정감사시 이해구의원이 구제역 살 처분보상금등 조기지원 요구
- 9.24일 : 구제역등 발생지역 살처분농가 모돈갱신사업 지원계획 추진

□ 기관별 모돈 가격 산출내역

기관명	산출액	산출방법	비고
농촌진흥청	461,015 ~ 588,215 원	○ 현재 모돈평가액 + 임신자돈 이익금 - 현재 모돈가 = 초임 돈가-(감가상각비×사용년수) - 초임 돈가 = 후보돈 가격 + 후보돈사육비(2.5개월) - 감가상각비 = (초임 돈가-폐돈가)/평균 이용년수 - 임신자돈 이익금 = (자돈가-이유자돈사육비)×2.25/4.5×10두	○ 산출 조건 - 후보돈구입비 : 250,000 ~ 400,000 - 사용년수 : 1년 - 평균 이용년수 : 3년
축산기술연구소	538,004 ~ 568,315	○ 모돈사육경비 + 모돈 평가액 <일반관리비 기준시> - {(816,695-58,607)/365일×117일} + [365,000-{(365,000-225,000)/2.5×1.25}] = 538,004원 <생산비 기준시> - {(911,255-58,607)/365일×117일} + [365,000-{(365,000-225,000)/2.5×1.25}] = 568,315원 - 모돈사육경비 = 후보돈 구입~임신기간의 사육비 - 모돈 평가액 = 후보돈 구입비-가축상각비×사용연한	○ 산출조건 - 일반사육비 : 816,695 - 가축상각비 : 58,607 - 평균임신일수 : 57일 - 임신돈 사육기간 : 후보돈 구입부터 종부시까지 기간(60일)+임신기간(57일) - 후보돈구입비 : 365,000 - 모돈 폐기가격 : 225,000 - 모돈 사용연한 : 1.25년
농산물품질관리원	545,000	○ 오제스키병 항체양성모돈가 + (자돈가격×태아수×임신개월수÷4.5개월)	○ 바기관의 산출방식 적용
농협 (공제부)	482,000	○ 비육돈 지육단가에 따른 약관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	○ 산출조건(5월기준) - 비육돈 지육단가:3,174원/kg
농협 (축산조사팀)	772,524	○ 모돈 생체가격 + 번식돈 두당 소득 - 모돈 생체가격 = 225kg(생체중량)×2,190원(6월 중순 평균산지가격) = 492,750원 - 번식돈 두당 소득=139,887원×2년 = 279,774원	○ 산출조건 - 2001년 번식돈 두당 소득 : 139,887원 - 모돈(2년)의 수익성 인정
양돈협회	545,000	○ 오제스키병 항체양성모돈가(A) + (자돈가격×태아수×임신개월수÷4.5개월)(B) - 오제스키병 항체양성모돈가 = 250,000원 - 임신개월수(평균) = 2.25개월 - 계산식 = A×0.2+(A+B)×0.8	○ 산출조건 - 자돈가격 : 65천원~69천원 - 모돈비율 : 비임신돈 20%, 임신돈 80% - 태아수 : 11두
종축개량협회	748,000	○ 모돈가격 + 태아가격 - 모돈가격 = 교배전 종돈가 - {(후보돈 구입가+교배전 사육비)-노폐돈 가격} ÷ 감가상각비 - 태아가격 = (새끼돼지가격×분만두수) × (살처분시 임신개월수/임신기간) - 감가상각비 = 평균사용산차÷평균생산산차	○ 산출조건(예시) - 교배전 종돈가 : 566,000 - 후보돈 구입가 : 366,000 - 교배전 사육비 : 200,000 - 노폐돈 가격 : 250,000 - 평균 사용산차 : 6산 - 평균 생산산차 : 3산

□ 모돈의 적정가격 산출방안

검 토 내 용

- 반경 3km 살처분 정책에 협조한 양돈농가의 입장과 임신모돈의 지속적 사육시 예상수익등을 감안 생체가격 환산방식에서 모돈 생산비에 산차수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산출방식으로 조정하고
- 경영안정자금, 입식자금, 생계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 임신태아 예상가격은 자돈 판매가격이 아닌 자돈 생산비를 적용함

<모돈가격산출>

- 후보돈 외부구입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 ※ 후보돈 추가손실비 인정사유 : 후보 모돈은 종부단계에서 탈락 여부가 결정되고 탈락비율이 20%정도인 점을 감안, 손실비 산출에 종부전까지의 사육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신태아 손실보상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 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 ※ 임신모돈 태아가격 인정사유 : 모돈가격은 종부단계의 후보돈 평가액에서 산차수를 감안한 감가상각비를 제한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가격에는 임신한 모돈의 태아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임신모돈의 태아가격은 분만당시 자돈생산비를 적용하되 모돈마다 임신개월수의 구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평균 50%를 적용한 것이다.

<모돈의 적정가격 평가>

구제역 살처분 모돈가격의 평가는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생체 kg당 가격 환산방식에서 모돈 생산비에 평균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산출방식으로 조정하고, 임신모돈의 경우 태아가격은 자돈생산비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율(57일/114일, 50%)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모돈가격 산출방안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2002년 구제역 발생이후 살처분된 모돈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지원기준과 차이점

구 분	2000년	2002년
살처분 보상 -모돈 가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함 - 성돈의 kg당 생체가격 환산방식 (500천원) ○ 7,0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모돈 및 자돈 생산비 등을 기준한 산출방식(700~750천원) ○ 53,133백만원(추정)
생활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별 마리당 3개월분 소득액 (1~6백만원) ○ 276백만원 (성금 50%, 축발기금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호당 가계비 6개월분(5~10백만원) ○ 1,450백만원(추가지원 포함) (농림부 665, 지방 785)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5%, 2년거치 1년상환 ○ 25,84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 39,236백만원
모돈갱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돈 살처분 농가 모돈 구입비 보조(마리당 10만원) - 1,510백만원(축발기금 50%, 지방비 50%)
도 자체지원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위로금 : 85백만원 - 5백만원×17농가 ○ 소입식자금 : 198백만원 - 17농가 소, 107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지원계획 없음

※ 기타 대출금 상환연장, 중고생 학자금 면제, 소득세 등 일부 공제·납부기한 연장등 조치는 같음

2002년 구제역 발생시 가축살처분은 돼지 158,708두가 위주이고, 소 1,372두등 합계 160,155두이며, 살처분등 보상금 지급액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428억원, 오염물건 소각 매몰보상금 103억원으로 합계 531억원을 지급하였다.

□ 축종별 살처분두수 및 보상금액

구분	살처분두수					살처분등 보상금
	소	돼지	염소	사슴	계	
2000	1,989	74	144	9	2,216	71억원
2002	1,372	158,708	42	33	160,155	531억원(살처분보상금 428 오염물건보상 103

2. 소 · 돼지수매

1)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소수매

2002년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지역의 소수매는 '02.5.1~6.23일 까지 경기 및 충북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축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소 수매 대행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였다. 수매지역은 경기도 용인·안성·평택과 충북 진천지역이며 수매기간은 '02.5.15~8.12(80일간)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동제한 해제일이 수매중단일이다.

구제역 발생지역별 이동제한지역 해제 일은 다음과 같다.

발 생 지 역	발 생 일	경계지역해제	위험지역해제
경기 안성(율곡농장)	5. 2	7. 24	8. 6
용인 안성(신흥농장)	5. 10	7. 28	8. 6
경기 평택(천안포함)	6. 2	7. 12	7. 19
충북 진천(음성포함)	5. 3	6. 15	6. 25

소 축종별 수매실적을 보면 한우 381두, 젃소 313두, 육우 140두로 합계 834두를 수매하였으며, 수매대금은 한우 1,880백만원, 젃소 230백만원, 육우 396백만원으로 소 수매대금은 총 2,506백만원으로 두당 수매단가는 평균 3,342천원이었다.

□ 소 수매 결손율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소수매	2002년 소수매(신청)	'02수매정산확정
총집행액(A)	112,897	2,787	2,693
결 손(B)	53,770	1,352	1,259
결손율(B/A)	52.3%	48.5%	46.8%

위 표에서 보는바와같이 소수매사업에서 2000년보다 2002년도 손실율이 5.5% 감소되었는데, 이는 수매육 가공후 냉장판매 및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지양하고, 조기에 공개경쟁판매로 수송·보관료를 들이지 않고 판매하여 손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소 수매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수매관련 총비용이 2,692,949천원 이지만, 정육과 부산물 판매수입액은 1,433,629천원으로 결손액이 1,259,320천원으로 정산되었으며, 정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2002년 소 수매사업 정산 확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정산신청	수정액	정산액	비고
수입 (A)	정육 판매수입	1,403,866	△ 1,697	1,402,169	
	부산물 판매수입	31,504	△ 44	31,460	
	계	1,435,370	△ 1,741	1,433,629	
비용 (B)	수매비용	2,506,241	△ 92,134	2,414,107	
	도축비용	70,480	△ 1,172	69,308	
	가공비용	135,781	△ 259	135,522	
	부산물처리비용	5,103	△ 7	5,096	
	수매수수료(1%)	25,062	△ 147	24,915	
	판매수수료(3%)	42,116	△ 51	42,065	
	보관비용·기타	2,558	△ 622	1,936	
계	2,787,341	△ 94,392	2,692,949		
손 익 (A-B)		△ 1,351,971	▲92,651	△ 1,259,320	

2)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돼지수매

2002년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지역 돼지수매예정은 112천두로, 지정도축장 8개소와 육가공장 13개소, 부산물처리업체 10개소를 지정하여 시행하였다.

□ 돼지수매예정두수 : 112천두(경기 99, 충북 9, 충남 4)

구 분	사육두수	수매예정 두 수	지정도축장	육가공장	부 산 물 처리업체
계	527천두	112천두	8개소	13	10
경기 안 성	211	44	○안성LPC(2,200두/일)	9	6
용 인	123	35	○동지축산(300두/일)		
평 택·이 천	108	20	○신영축산(2,000두/일) ○평농축산(400두/일)		
충남 천안·아산	38	4	○사조산업(1,100두/일) ○일심산업(400두/일)	2	1
충북 진천·음성	47	9	○대생농장(2,500두/일) ○동일산업(500두/일)	2	4

돼지 수매가격을 보면, 비육돈은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평균 지육가격을 생채 가격으로 환산 적용하였고, 자돈은 두당 60천원(매물비 포함)을 적용하였으며, 모든의 경우에는 지육 kg당 1,448원으로 두당 약200천원을 적용하였고, 종돈의 경우에는 씨숫돼지(종모돈)은 두당 765천원, 씨암돼지(종빈돈)은 585천원, 그리고 F1 후보돈(암)은 366천원을 적용하여 수매하였다.

구제역 관련 우제류 수매사업내용을 2000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구제역 관련 우제류 수매사업 비교

구 분	2000년	2002년
최초발생일 (발표일기준)	○ 2000. 3. 27	○ 2002. 5. 3
수매개시일	○ 2000. 4. 4 ~	○ 2002. 5. 14(잠정)
수매대행기관	○ 농협, 한냉	○ 농협
소 수매대상	○ 한우암수, 거세우, 육우, 젖소(초산우, 다산우, 노산우)	○ 한우암수, 거세우, 육우(젖소 수소), 노산우(젖소암소)
한우수매규격	○ 500kg이상 큰수소 수매, 600kg이상 수소부터 수매 -단, 암소는 400kg이상	○ 500kg이상 수매 (암소 임신우는 제외) -농가별 큰 소 우선 수매
소 수매가격	○ 수매일 직전 1주일간 전국 평균 산지소값 -가축시장 폐쇄이후 서울공판장 지육경락가격 기준으로 환산 하여 수매	○ 수매일 직전 5일간 전국 평균 산지소값 -가축시장 폐쇄이후 서울공 판장 지육경락가격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매
절박우 수매	○ 이동제한지역 통제로 제때 수매·도축되지 못하여 수 의사가 절박우로 판정한 소 -정상 수매우가격의 80%적용	○ 좌 동
한우 과체중 가산금	○ 이동통제로 제때 수매되지 못하여 과체중 소에 대하여 두당 5만원 지급(홍성군)	○ 과체중 불인정
돼지수매대상	○ 비육돈, 과체중, 자돈, 모돈, 안등심(수출반송분, 재고분, 일반지역 수매분)	○ 비육돈, 자돈, 모돈, 종돈, 수출반송분(등안심)
돼지수매가격	○ 서울축산물공판장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지육 경락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수매	○ 좌 동

3. 경영안정자금 및 가축입식비 지원

1) 가축입식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보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이며, 다만 발생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입식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지원기준액은 살처분 두수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지원기준액을 곱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농가가 희망한 금액을 지원하되, 가축입식비 용도에 한하도록하고,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입식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 축종별 성장단계별 지원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성 축		육 성 축	자 축
한 육 우		3,537		2,424	2,068
젓 소		2,843		1,687	704
돼 지		206		124	65
염 소		277		136	90
사 슴	꽃사슴	암	450	420	250
		수	760	540	320
	레드디어	암	620	540	370
		수	1,080	780	450
	엘 크	암	1,350	1,160	600
		수	4,070	2,850	2,100

2) 긴급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경계 지역, 위험지역)지역내에 위치한 축산농가와 가축인공수정소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동제한 지역 설정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되 호당 지원한도 이내에서 농가 희망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수매에 응한 가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음 표와같이 두당 지원한도액을 적용하여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가축 및 두당 지원한도액

축종	지원한도	비고
○ 한육우	○ 수소 : 500kg이상 - 두당 900천원 ○ 암소 : 2세이상 암소사육두수당 1,000천원	
○ 돼지	○ 일반농가 - 1,000두미만 : 18백만원 - 1,000~1,500두 미만 : 25 " - 1,500~2,000두 미만 : 35 " - 2,000두이상 : 53 "	
	○ 종돈생산농가(종돈수) - 100두미만 : 18백만원 - 100~150두 미만 : 28 " - 150~200두 미만 : 37 " - 200두 이상 : 55 "	
	○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모돈씨숫돼지) - 20두 미만 : 20백만원 - 20~30두 미만 : 30 " - 30~40두 미만 : 40 " - 40두이상 : 50 "	
○ 젓소	○ 이동제한기간 중 인공수정대상 두당 600천원	
○ 사슴	○ 꽃사슴 : 1.5세 이상시 두당 750천원 ○ 레드디어 : 1.5세 이상 두당 100천원 ○ 엘크 : 1.5세 이상 두당 375천원	
○ 염소(산양)	○ 1세 이상 사육두수당 20천원	

3) 살처분농가 모돈갱신사업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모돈가격 보상금 산출방식의 보완과 관련하여 보상금 감액지급에 따라 경기 안성·용인등 살처분 농가들이 7월초부터 반발함에 따라 8월26일과 8월29일 경기도와 농림부 실무자간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8월30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사업인 후보모돈 갱신사업과 연계하여 살처분농가 모돈갱신사업비(마리당 100천원)를 국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월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01년도 결산심의) 및 9월16일 국회 농해위 국정감사시 이해구의원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등 조가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살처분농가의 향후예산소독부분을 양돈농가별도 수혜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갱신사업 지원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모든갱신사업의 실시목적은, 임신모돈의 살처분보상가격 산출시 현시가 보상으로 인정되지 못한 향후 예상소득 손실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모든적정가격 산출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재발시 보상금의 과다한 지급선례를 막고 살처분정책에 농가의 협조를 유도하며, 종돈장의 우라모돈을 입식함으로써 모돈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살처분 농가의 조기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모든갱신사업은 '02년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모돈을 살처분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하여 총 135농가중 종돈, 비육돈 사육농가 60농가를 제외한 75농가에 15,091두를 대상으로 1,5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02년10월부터 '03년 6월말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도별지원액은 경기도 1,336백만원, 강원도 173백만원, 충남도 1백만원이며, 국가부담액 755백만원의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질병근절대책비중 소독약품비 내역을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 모든갱신사업비 지역별 지원내역

(단위 : 호·두·천원)

구분	농가수	모돈수			지원액	
		계	임신	비임신		
계	75	15,091	11,676	3,415	1,509,100	
경기	안성	36	9,256	6,951	2,305	925,600
	용인	29	3,642	3,093	549	364,200
	평택	3	458	337	121	45,800
	소계	68	13,356	10,381	2,975	1,335,600
강원	철원	6	1,728	1,288	440	172,800
충남	천안	1	7	7	-	700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살처분보상금, 오염물질보상금, 방역소독비 지원 외에도 수매사업자금, 가축입식 및 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모돈갱신사업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지원과 살처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등 여러방안으로 피해농가를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총1,43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의 개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지원	추가지원	비 고
○ 살처분 보상금	428	428	-	농특회계(예비비)
○ 오염물질 보상금	103	103	-	"
○ 방역소독비	103	103	-	
- 소독약품비	90	90		축발기금
- 예방약품비 등	13	13		축발기금, 농특회계
○ 수매자금	337	337	-	
○ 입식 및 경영안정자금	382	232	150	축발기금(용자)
○ 생활안정자금	14.5	7.4	7.1	농림부 6.6(성금,축발기금) 지자체 7.9
○ 모돈갱신사업비	15.1	-	15.1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특별교부세(행자부)	20	20	-	안성·용인·지천은 6억원씩, 철원 2억원
○ 매몰지 사후관리	31	31	-	축발기금 3, 농특회계 (가물대책비) 28
계	1,433.6	1,261.4	172.2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년 발생시에는 3,006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1,43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구제역 발생 피해액

구 분	2000년	2002년	비 고
○ 총투자액	3,006억원	1,434억원	※ 살처분
- 살처분 등 보상	71	531	'00 : 2,216두
- 예방접종	70	-	'02 : 160,155두
- 소독약 등	179	154	
- 가축수매	2,428	337	※ 가축수매
- 경영자금 등	258	412	'00 : 444천두

'02년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돼지(경기 안성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 가검물 검역원 접수·신고(17:00, 대한사료 이승윤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 혀, 폐 등 병성감정접수 - 동농장 생돈1두, 폐사돈2두 재접수(차폐시설로 이송, 22:30) - 구제역 정밀검사 착수(검역원 차폐실험실, 5.3. 00:00) - 검역원 전문가 현지출장(주이석 해전과장 등 2명, 01:00) - 발생장소 가축방역관 배치 및 출입통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경기도, 01:30) 	5.4, 양성
5.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발생 긴급방역조치지시(경기도, 검역원,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관 현지파견 상주조치, 군·경 병력협조요청 - 인근지역 가축사육현황 파악, 의사환축 관련물품 반출금지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협조요청(국방부, 경찰청,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이동통제 인력지원 요청 ○ 의사구제역 발생보고(검역원→농림부, 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6-1, 유창주(율곡농장) - 헛바닥 수포, 발굽 일부 탈락 등 임상증상 ○ 농림부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강화(10:00~) ○ 경기안성의 구제역 발생 율곡농장의 자돈분양 현황과 분양업체의 관리농가 현황을 파악, 제출 지시(경기도, 10:20) ○ 구제역 발생사실 국제수역 사무국(OIE)에 통보(5.3, 10:40) ○ 농림부장관, 구제역 발생현장 긴급 진두지휘(10:3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가 현황파악 및 긴급방역지휘 - 조속한 살처분 및 이동통제, 긴급방역 철저 당부 ○ “경기 안성 돼지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보도자료 설명(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유창주)의 돼지에서 의사구제역이 확인되어 위험지역(3km), 경계지역(10km)설정, 긴급방역 조치중임을 설명(농림부차관) 	위생51580-558 위생51580-559 해외51583-24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협조요청(농진청, 시·도, 검역원 등 관련기관 및 생산자 단체,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구제역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 이동제한지역 설정, 관리지역까지 가축시장 잠정폐쇄, 양성판정 대비 이동 제한·소독 등 사전조치(경기도) - 가축이동감시 및 소독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준비, 우제류 가축 예찰·신고 및 축산시설 소독강화, 홍보강화(기타 시·도) - 방역활동 강화 및 협조, 방역인력·장비 지원(기타 기관) ○ 긴급가축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비상근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일시 : 2002.5.3, 18:00(비상근무 제3호) - 근무기간 : 5.3~ 발령 해제시까지(가축방역 참여기관) ※ 농진청 비상근무 태세 발령 : 무기한 ○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통제초소 근무요령 송부(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 안성 18개소 1개 중대, 용인 6개소 1개 소대 경력 배치(13:00) ○ 1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차관주재,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0, 421호(대회의실),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위원(13명) ○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적 구제역 방역대책회의 개최(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7개 관련부처장관, 2청장, 16개 시·도행정 부시장 부지사 - 인력·장비지원(국방부·경찰청), 소요예산 지원(기획예산처), 대국민홍보(국정홍보처, 문화부), 밀수·불법반입단속(관세청) ○ 축산국장과 검역원장 공동명의로 언론보도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빨라 방역이 늦을 경우 축산업 위기를 맞게되는 무서운 질병임 - '97년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업 붕괴, '00년 일본 구제역 발생시 보도자체 사례 등 소개 ⇒ 자극적인 보도는 가급적 삼가 협조 요청 ○ 검역원 구제역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용계획보고(검역원→농림부) ○ 구제역 발생농가(안성 울곡농장) 인근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 권고조치사항 보고(검역원→농림부, 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0-560 인사12140-319 위 생51580-561 위 생51580-562 방역51580-714 방역51580-715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3(금)	○가축시장 잠정폐쇄명령 발동 및 협조요청(경기·충북·농협, 13:00)	축통51550-186
	- 경기 : 안성·이천·용인·여주(20km접경)	
	- 충북 : 음성·진천(20km접경)	
	○의사구제역 발생관련 행사·모임 등 억제협조요청(중앙행정기관, 시·도, 각 기관, 13:30)	축통51580-187
	○의사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출하도축장 폐쇄 등 조치(경기도, 15:00)	위생51580-563
	- 신영도축장(경기 이천 소재) 폐쇄	
	- 의사구제역 발생 7일전에 도축 유통된 고기의 추적조사 및 현재 보관중인 고기, 부산물 등에 대한 출고금지 조치	
	○제주도,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제주
	- 타지역으로부터 전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5.3부터)	축정51580-560
	○의사구제역 발생지역 임상검사 지원(경기, 농협, 방역본부, 15:20)	위생51580-565
	- 위험·경계지역에서 발생농장 방향으로 임상검사 실시(경기)	
	- 농협, 방역본부는 인력지원 등 필요한 조치	
	○구제역에 관한 5월중 기상전망 파악(15:30)	
	- 5월중 때때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	
	- 구제역 바이러스는 25℃이하, 습도는 60%이상일 때 활성화	
	- 향후 철저한 방역조치가 요구됨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출검역 잠정중지(검역원, 통상협력과, 외교부)	위생51580-566
	○국내 의사구제역 발생통보 및 방역협조(15:52)	위생51580-567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지차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시·도	
	○의사구제역 발생과 관련 종축방역관리 강화지시(축기연, 농협, 각 협회, 16:10)	축정51530-262
	○의사구제역 발생농장 출하 돼지 도축관련 조치(검역원, 17:35)	위생51580-568
	- 도축·유통된 고기 구제역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지시	
	○의사구제역 발생농장 도축·유통돼지고기 검사추진(경기도, 17:35)	위생51580-568
	- 의사구제역 발생 7일전 도축·유통된 고기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신고·접수(검역원, 1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군 이월면(이춘복, 돼지 1,000두) ○ 1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차관 주재, 18:30) ○ 구제역 의심축 신고·접수(검역원,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광명시 가락동, 종열목장(염영선), 젖소17 ○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농가(이춘복) 인접농가 출하돼지 조치(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과원 역학조사 결과, 안양 협신식품으로 60두 출하 ○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홍보(KBS-R : 라디오 24시, 인터뷰 23:15 ~ 축산국장) 	<p>5.4, 양성</p> <p>5.4, 음성</p>
5.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 철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구제역 임상검사 등 구제역 확산 방지 철저 지시 ○ 의사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협조요청(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및 검역원의 역학조사에 따른 경찰인력 지원요청시 협조토록 조치 ○ 의사구제역 발생관련 중앙방역협의회 결과 조치(농진청, 시·도, 검역원, 농협 및 관련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인근농장 살처분 확대조치(600m 위치농장) - 구제역 방역특별대책기간 연장 추진(6월말까지) - 의사구제역 발생농장 출하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에서 출고된 유통돈육의 수거·폐기 조치 - 이동제한지역내 농장별 임상관찰 인력지원 -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 등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구제역 발생지 거주(방문)확인 ○ 구제역 의심축 출하도축장 잠정폐쇄(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이춘복 농가에서 출하된 협신도축장에 대하여 검사완료시까지 계류중인 가축 포함, 도축작업 잠정중단 	<p>위 생51580-571</p> <p>위 생51580-572</p> <p>위 생51580-572</p> <p>위 생51574-576</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적기생산 공급 및 수거 검정 등 약사 감시 강화(검역원, 시·도, 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판매협회) ○ 축산농장 외국인 고용관리철저 지시(농진청, 검역원, 시·도, 생산자단체, 축기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대상 외국인 신원확인 철저 및 구제역 발생지 출신일 경우 채용자제, - 외국인 고용농장은 소독철저 및 의심가축신고 요령 등 교육 - 시·도지사는 축산농장 외국인 고용실태 파악, 관리 ○ KBS·SBS-TV 돼지시장, 이천가축시장 현지취재 협조 (11: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축산물공판장 돼지고기 지육경매 및 가격 취재 - 이천가축시장 폐쇄현장 취재(가축시장 폐쇄현황, 시장약도, 주소 등 협조) ○ 구제역 발생보고(검역원→농림부, 1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충북 진천 ○ 구제역 관련 현지 점검(12: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유통과장, 양돈협회장이 용인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소속현황 파악 점검 ○ 미국, 캐나다, 호주국의 요청에 따른 국내 구제역 발생 확정사실 알림(국립수의과학검역원, 14:00) ○ 의사구제역 양성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시도, 각 협회, 축기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구제역 양성 판정에 따라 시·도 및 관련단체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방역철저 지시 - 경기도 제외 다른 시·도에서도 구제역방역상황실 설치·운영 - 축산관련단체는 구제역 방역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 사용방법 등 기술적 자문을 얻어 회원농가에 홍보 실시 	<p>위 생51580-578</p> <p>위 생51580-579</p> <p>위 생51580-581</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시·도, 국방부, 경찰청, 각 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살처분 조치, 이동제한구역 설정, 가축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철저 지시 - 국방부와 경찰청은 충북도와 협조 인력 지원 등 협조 	위생51580-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및 발생확인 보고시 조사자료 첨부(검역원) 	위생51580-5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명령 요청(시·도,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시장 개설자(지역축협)는 가축시장 소독철저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폐쇄 요청 	축통51550-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장 인근 이동제한지역 농가 등 현황 알림(경기도→농림부,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과 유관기관협의체 운영강화 - 양축농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발생지역 등 가축방역담당부서에 행정인력 지원 - 불법이동 및 매매중간상 단속활동 강화(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 관련 사료공급업무 추진 철저(농협, 한국사료협회, 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험지역, 경계지역 사료공급방법 시달 	축영51564-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농가 홍보·지도(농협,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농가에 정상 출하토록 유도 - 홍보물 제작·배포 : 포스터 5천부, 리후렛 10천부 	축통51550-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이동제한지역 축산농가 현황파악 지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지역 농가현황 조속파악 보고 	위생51584-58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차관, 구제역발생현장 점검(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경기 안성의 발생 농장 살처분 추진, 이동제한 지역 설정상황,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 상황 등 점검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원유집유업무 등 철저 지시(낙농진흥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청주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연세우유, 건국우유, 성원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원유 처리요령 시달 ○ 구제역 양성판정 및 추가발생상황 통보(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재경부, 외통부, 행자부, 문화부, 보복부,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율곡농장 및 충북 진천 이월농장 ○ 도축장 출하가축 도축시 이동제한지역 유래 확인 및 소독 철저 지시 (시·도) ○ 구제역 발생지역산 출하돼지 동향보고(경기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발생농가 인접농가 출하가축 도축장(안양 협신) 미입고 ○ 진천 구제역 발생농장 인접농장 출하돼지 처리(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협신도축장에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인근에서 전두수 살처분 또는 살처분이 용이치 않을 경우 가축방역관 탑승하에 오물누수방지 조치후 출하농장에 입고, 즉시 살처분 - 도축장에 입고, 계류되었을 경우 해당돼지 살처분 또는 동일 계류되어 도축된 고기의 수거·검사 실시 ○ 정보사항 사실확인(대구,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율곡 근무자 홍모씨의 당해 농장 질병발생사실 인지 여부 확인 ○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출하 협조(시·도, 각 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일반지역에서 사육·출하되는 소·돼지의 등의 원활한 반출입 협조 	<p>축영51541-317</p> <p>위생51580-586</p> <p>위생51574-587</p> <p>위생51580-588</p> <p>위생51580-589</p> <p>축통51550-191</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협조 (축기연,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긴급근무요원 기관별 각 4명 차출 협조 ○수사인력 지원요청(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의 역학조사시 수사인력과 합동조사 협조요청 - 역학조사지역 : 경기 안성, 충북 진천, 강원 철원 ○구제역 발생관련 정보사항 조사(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양돈수의사회의 발생지 인근농장의 돼이돼지 이동 정보 조사지시 ○일본측 구제역 발생 관련 조치사항(주일농무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우제류 동물의 고기 등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 - 공식수입금지를 위한 성령개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구제역 발생 농장(안성), 4.23 이후 출하 돼지 추적조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을 신속히 신고한 김현섭 수의사에게 장관 표창기로 결정 	<p>위 생51580-590</p> <p>위 생51580-592</p> <p>위 생51580-593</p>
5.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하도축장 지정(경기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일죽 금산리, 안성축산진흥공사(대표 : 김기선)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출하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경기도→농림부) : 관련호 위생51580-563, -568, -5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울곡농장 출하물량은 전량 소비, 수거 불가 ○진천 구제역 발생농장 인접농장 출하돼지 처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 협신으로 출하된 충북 진천 발생농장 돼지 조사후 조치 ○구제역 방역관련, 소독활동 강화 지시(시·도,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방역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오는 날 전·후 축사 내·외부 소독을 더욱 강화 - 축산농가 관계자에 대한 소독요령 교육 및 홍보 철저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출하도축장 폐쇄에 대한 후속조치(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이천 신영축산 폐쇄조치 유지여부 및 청립식품 보관 냉장육 처리방안 의견 제출지시 	<p>축산51580-11217</p> <p>축산51580-11220</p> <p>위 생51580-595</p> <p>위 생51580-596</p> <p>위 생51580-597</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철저지시(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진천 현장제보에 따른 방역보완사항 지시 - 살처분매몰지 주변 감독직원 배치, 구서·구충작업, 소독 - 축산폐수 소독 등 처리대책, 방역대 설치 및 언론통제 ○ '02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전국일제소독약품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액(천원) : 3,139,188(기교부 2,096,388, 금회교부 1,042,800) ○ 국제표준연구소 가검물 송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사환축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영국 Pirbright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의뢰 지시 ○ 구제역·돼지콜레라 특별방역관련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강화(시·도, 검역원,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6월 첫째·셋째 수요일 → 매주 수요일 소독 실시 (나머지 달은 현행과 동일) - 소독약 지원 : 돼지 100두 미만→돼지 300두 미만 확대 (기타 축종은 현행과 동일) - 기타 소독의 날 운영은 현행과 동일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철저(농진청, 시·도, 검역원, 농협, 축기연, 생산자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강원·충북은 이동통제, 예찰, 소독 및 홍보 강화 - 타시도는 구제역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지속유지 - 단체등은 회원농가 지도, 시·군 임상관찰지원 등 - 비가 올 경우 야외소독은 생략하고 축사안 중점 소독 ○ 도축검사 철저 지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체중·떨이돼지·다두출하 우려 - 축산물검사원은 생체·해체검사시 구제역 임상증상 철저 검사 및 저체중·다두출하농가 명단 시·군에 통보 	<p>위 생51580-598</p> <p>위 생51580-599</p> <p>위 생51585-600</p> <p>위 생51580-601</p> <p>위 생51580-602</p> <p>위 생51574-60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 관련 협조 요청(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기하거나 자제 요청 ○ 농림부장관,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 점검(12: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현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구제역 발생확진에 따른 수출입 검역조치(검역원, 통상협력과, 축산물유통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림수산성은 4.12일 이후 생산된 한국산 우제류 식육 등에 대해 수입중단 통보 -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수출검역 중단. 단, 수출상대국이 수입허용시 수출자 책임조건으로 검역증명서 발행 - 방한 외국인 근로자 중 축산농가 체류목적자는 검색강화 ○ 집유차량 및 사료공급차량 고정 배치 이행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유차량 고정배치 : 안성 1대(서울우유), 진천 1대(청주우유) - 사료차량 고정배치 : 안성 4대(안성축협, 서울축협, 용인축협, 농협중앙회) 진천 3대(도드람축협, 농가차량 2대) ○ 방역추진상황 방송사(KBS, SBS-TV) 취재 협조 ○ 광명시 젓소 구제역 의심축 신고 농장(음성 판정) ○ 구제역 발생농장산 돼지출하 육가공장 폐쇄에 따른 보관 육 처리방안 협의회(23:00~0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질병연구부장 등 8명 - 출고금지 조치된 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검토 - 도축장 및 가공장 폐쇄유지에 대한 검토 	<p>축정51573-267</p> <p>위생51580-604</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농진청, 검역원, 농협, 방역지원본부, 대한양돈협회 등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방지는 농가의 방역의식에 달려있습니다(앞)” “구제역 조기근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뒤)” - 각 시·군 및 생산자단체, 500천부 ○ ‘02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요청(축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일제소독의 날” 확대운영에 따른 축발기금(소독약품) 사업비 지출계획 조정요청 - 현행 3,312,188천원 → 조정 6,948,188천원 ○ 가축방역비상대책상황실 근무조 편성 및 근무자 파견 협조 요청(축산국, 검역원, 축기연, 농협,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근무 : 3개조 24시간 3교대 근무, 5.3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 상황실 차출 : 검역원 2명, 축기연 2명, 농협 2명, 양돈협회 2명 ○ 구제역 의심축 발생 의사환축 발생보고(경기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주군 남면 한산리(축주 : 김영식) ○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경기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주군 남면 한산리(한우83중 1두 의심축 신고) ○ 출고금지 조치된 고기 및 도축장 폐쇄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 및 부산물 : 오염우려가 있어 전량폐기 - 도축장, 가공장 : 오염원 제거 후 소독조치를 하고 해당 시·도에서 폐쇄조치 해제여부 결정 ○ 가축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협조에 대한 회신(농협→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전문가 포함 2인 1조 2교대 근무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606 위생51580-608 축정51500-265 축수51580-22426 위생51580-609 5.7, 음성 방역51580-755 건설73101-316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통선 돼지투기 성행 언론보도 관련 방역철저(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5.5일자 연합뉴스 보도내용관련 - 철원지역 폐사돼지 민통선 몰래 버려지는 건과 관련하여 군·경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조속한 사실조사 등 실시 및 방역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조치 ○ 우리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협조요청(행정부처 및 소비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소비에 대한 홍보자료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 구제역 발생지역 폐기원유 확인절차 통보(경기도, 충북도,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위험지역내의 폐기원유에 대한 확인절차 통보 ○ 구제역 발생지역 건의사항 회신(농협, 경기도,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장관 안성, 진천 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table border="1" data-bbox="277 1032 1187 128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건의사항</th> <th style="width: 50%;">검토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이동제한지역내 가축·분뇨처리</td> <td>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td> </tr> <tr> <td>살처분농가 충분한 보상</td> <td>기준 평가액 100% 지급</td> </tr> <tr> <td>통제소운영·약품비 등 지원</td> <td>소독약품이외는 지방부담</td> </tr> <tr> <td>무인자동세척기 지원</td> <td>기지원 소독장비 활용 강구</td> </tr> <tr> <td>돼지 방역약품 1,000두미만지원</td> <td>300두미만까지 6월말까지 공급</td> </tr> </tbody> </table> ○ 가축방역업무추진(농진청, 시·도, 검역원, 농협, 축기연,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방역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살처분 가축매몰지 관리철저(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매몰지 관리철저 - 침출수 수거·정화, 매몰지 위 탈취제 살포 ○ 구제역 방역 관련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R 「박찬숙입니다」 프로대담(농림부장관12:40~) - KBS1-R 「밝아오는 새아침」 프로대담(농림부차관15:20~) - SBS1-R 「박경재의 전망대」 프로대담(축산국장07:17~) - MBC-R 「손석희입니다」 프로대담(검역원장5.6) 	건의사항	검토의견	이동제한지역내 가축·분뇨처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살처분농가 충분한 보상	기준 평가액 100% 지급	통제소운영·약품비 등 지원	소독약품이외는 지방부담	무인자동세척기 지원	기지원 소독장비 활용 강구	돼지 방역약품 1,000두미만지원	300두미만까지 6월말까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0-610 축 통51500-192 축 영51541-318 위 생51580-611 위 생51580-612 위 생51580-613
건의사항	검토의견													
이동제한지역내 가축·분뇨처리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살처분농가 충분한 보상	기준 평가액 100% 지급													
통제소운영·약품비 등 지원	소독약품이외는 지방부담													
무인자동세척기 지원	기지원 소독장비 활용 강구													
돼지 방역약품 1,000두미만지원	300두미만까지 6월말까지 공급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장관,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 안성·진천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구제역비상대책본부(위원장:차관) 설치, 사실중심 언론보도 - 금후 조치 계획 : 구제역 방역대책 강도높게 추진, 살처분 정책 계속 추진, 축산농가 홍수출하 자제 및 안전성 홍보 ○ 구제역 발생관련 반상회자료 제출(행정자치부,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내용 :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 당부사항 : 매일 1회 이상 농장소독 철저 및 신고 철저 ○ 구제역 의심축 음성판정에 따른 방역조치의 해제(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군 남면 소재 김영식 농가 ○ 도축장 폐쇄로 축산물 출고금지에 대한 후속조치(검역원,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 신영축산 시설 및 보관물에 대한 오염도조사 - 경기도 : 안성발생일 21일전까지 도축물량 추적조사 등 ○ 차관보, 재해특위간사회의 참석, 구제역 방역대책설명(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현황, 방역추진상황,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 ○ 건의 회신(대한양돈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농가 피해소용비용 산출근거, 방역자조금 거출금액의 근거, 조성계획 및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출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신속 지급(경기,강원,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평가반 구성 및 보상금 결정 등 신속한 지급조치 - 살처분보상금 부족액 파악, 지급제출 ○ 사료공급차량·집유차량에 대한 소독철저 및 방역활동 자체홍보 협조(경기도, 충북도, 농협사료분사, 낙진회, 각 협회 및 각 유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공급차량·집유차량은 방역초소 경유 후 소독철저 및 자율적인 방역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13060-100 위생51580-614 위생51574-615 위생51580-616 위생51580-617 축영51564-33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가축출하 및 사료차량 출입 등 협조 요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과 관계없는 지역의 가축 및 타 시·도 사료의 운반차량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 철저 지시(시·도, 농협, 축기연, 각 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및 회원농가 소독참여 독려 - 비가 올 경우 야외소독 생략, 축사안 중점 소독 - 차량소독조 및 신발소독판은 세척·건조 후 소독약 투입 - 하수구, 배수구와 침수된 곳은 청소 후 소독 ○ 구제역 발생농장산 폐사돈 급여 개 사육농가 방역철저 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산 폐사돈을 급여한 개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요청 ○ 이동제한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코팅게시 협조(경기, 충북) ○ 구제역 방역관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R 「뉴스레이다」 (축산국장 07:00) - 「돼지정상출하 및 소독 철저」 포스터 제작(8,800매) ; 농협, 시·군, 양돈협회 등 배포 - TV자막방송 협조 요청 (전 방송국) ; 비 그치면 축사 내·외 철저히 소독합시다. - KBS-1TV 「뉴스라인」 (농림부장관, 23:00~ 생방송) ○ 구제역 의심축 신고(검역원→농림부, 1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최귀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고발(철원, 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 발생사실 지연 신고자 고발 조치 	<p>축통51550-194</p> <p>위생51580-618</p> <p>방역51580-762</p> <p>축통51550-195</p> <p>5.8 음성</p> <p>축산51580-841</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한 외국인의 국내 우제류가축 사육농가 등 방문자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내한한 외국인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방문 자제 요청(농촌진흥청) ○ 구제역 발생사실의 필리핀 등 통보(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조치 관련 OIE 사무국 통보내용 송부 - 돼지고기 수출국인 필리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및 태국정부에 전달요청 ○ 제주산 돼지고기 등 수출검역(검역원, 통상, 유통,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허용 결정 - 수출가능한 물품은 수출검역토록 지시 ○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 고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완료 후 위험지역은 30일, 경계지역은 7일 이후 방역상 이상 없는 것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에 출하 ○ 법무부에서 구제역 등 방역활동에 인력지원 가능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명령자 활용, 방역업무 협조 의사 표시 ○ 국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피해농가지원대책 등 설명 ○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대덕면 신령리(대표 : 이원근) 돼지농가 - 경기도, 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악성가축전염방역실시요령”에 의거 통제·소독 등 이동제한조치 - 경기, 충북은 의심축 발생농장의 위탁농장에 대한 임상 관찰 강화 및 이동제한조치 ○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이동제한지역 출하도축 허용(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돼지 30일, 경계지역 돼지 7일 이후부터 방역상 이상 없을 시 지정도축장 출하 ○ 이동통제초소 소독관리 등 구제역 방역추진(농진청, 시·도, 검역원, 농협,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초소 소독지점에 부직포 이용, 소독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각 시·도, 축산단체는 가용인력 및 장비 총동원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축51764-344 위생51584-619 위생51584-620 위생51580-623 5.9일 공문조치 위생51580-624 위생51580-625 위생51580-628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방역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적처리 철저(시·도,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사돼지를 개 사육농가에게 반출한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농장(울곡농장)주 및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 의심 농장 관리인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조치(행자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수발 미흡 등 일부 업무소홀 시·군 필요조치 ○구제역 의심축 발생 검사결과 통보(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대덕 신령 대덕농장(축주 : 이원근) : 음성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보고철저(검역원) ○도축장 폐쇄로 출고금지 축산물에 대한 처리방법 검토의견 제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 예정인 경기 이천 신영축산 보관 축산물이 열처리 가공품(통조림) 타용도 이용가능성 여부 검토의견 제출 ○구제역 방역활동 점검, 시·군 현장담당관 138명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소독간격 유지 건의 - 모내기 일손 부족 호소 ○구제역 방역관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R 「박경재의 전망대」 전화인터뷰(07:40~,농림부장관) - 교통방송 「엄길청의 열려라 경제」 전화인터뷰(17:30~, 농림부차관) ○KBS-TV 「취재파일」 방송취재(5.8~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진 : KBS 보도제작국 모은희 기자팀외 1 - 취재목적 : 구제역 발생상황, 방역조치 및 농가대책 등 - 축산국장 인터뷰, 인천공항 검역실태, 경기 파주 파평 소재 양돈농가 소독 등 방역관리실태(5.8) - 수의과학검역원 실험실 검사장면, 축산농가, 육가공장 등의 방역, 수급상황 등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629 위생51580-630 위생51580-631 위생51580-632 위생51574-633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방역활동 활용(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가축방역활동에 활용토록 전국 보호관찰소에 지시함에 따라 적극 활용토록 시·도에 통보 ○ 가축방역규정 위반여부 확인(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 구제역 발생농가(이춘복)의 신고 지연 사유 등 경위 조사후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의법조치토록 지시 ○ 재외공관 비자발급시 검역안내 홍보물 소요내역 참고자료 ○ 대러시아 돼지고기 수출검역 ○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내 가축정액 반출관련 질의회신(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내 인공수정은 오염되지 아니한 정액 조건 - 정액은 경계지역 해제시까지 경계지역 밖으로 반출 불가 통보 ○ 충북 진천군 위험지역 임상관찰 결과 제출(충북→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농가 30,300두(한우 463, 젃소 533, 돼지 29,170, 사슴 79, 염소 55) ○ 공동방제단 운영비 추가지원 건의(충북, 전남→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6월 소독의 날 확대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비 추가(7회분) 지원 요청 ○ 소독방제차량 및 방역기 지원의뢰(경기화성 남양농협→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 트럭 지원요청 ○ 발생지역 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점검(20:00~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충북 진천, 강원 철원 등 3개 지역 점검(인원 6명) - 비온 후 소독 철저 요망 ○ 인천 국제공항 국경검역상황 취재 협조(KBS1-TV보도제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검역상황 인터뷰(검역원 인천지원장), 휴대육류검역·소독장면 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634 위생51580-635 위생51580-639 위생51580-640 위생51580-641 축산51580-934 축산51580-940 축정51580-808 남농2002-57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검역원→농림부,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백암 옥산 696, 태양농장(김기돈), 돼지(모돈1두) ○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태양농장 구제역 의심축(돼지) 발생신고접수에 따른 가축방역관 현지파견 상주, 발생농장 통제 등 지시 ○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농장 : 경기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옥산영농조합법인 (농장주:김진우) - 경기도지사 및 검역원장은 해외약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가축방역관 현지파견 상주 조치, 발생농장통제·소독,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 시달 - 검역원장은 의심축 신고농장 반경 500m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권고 - 경기지사는 검역원 권고에 따라 살처분 실시 ○ 의사구제역 발생농가 인근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 권고 조치사항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백암 옥산 소재 태양농장(김기돈) 및 옥산영농조합법인(김진우)의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농가 반경 500m이내 가축 살처분 권고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가축방역중앙협의회 위원,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대책 회의 ○ 농림부장관, 돼지고기 시식회 현장 방문 격려(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협회의 「소비자단체와 돼지고기시식회 개최」 현장 방문 격려 - 지하철 3호선 매봉역 근처 코바식당, 홍보전단지 10침부 배포 ○ 농림부차관, 안성.진천 구제역 현장점검(15: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방역조치사항 등 점검 ○ 농림부장관, 수의과학검역원 불시 방문(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 금후 추진계획 점검, 관계자 격려 	<p>5.12, 양성</p> <p>위 생51580-642 위 생51580-645</p> <p>위 생51580-643 위 생51580-645</p> <p>방역51580-786</p> <p>위 생51580-644</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마을별 담당자 긴급지정·운영(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담당자를 긴급 지정하여 개별농장까지 관리되도록 운영하고, 시·군별 지정인력 현황을 '02.5.11까지 보고 - 구제역 방역 특별기간동안 마을 담당자가 매일 농가별로 소독상황 점검·종합·정리·보관 ○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시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삼죽 덕산 소재 제일제당농장(농장주:정헌주) 및 안성 보개 가울 소재 가울농장(농장주:우석재) - 검역원장은 반경 500m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실시 필요성을 검토, 경기도지사에게 살처분조치 권고 - 경기도지사는 반경 500m지역에 대한 우제류가축 전두수 살처분조치 권고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토록 조치 ○ 의사구제역 발생농가 인근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 권고 조치사항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삼죽 덕산 소재 제일제당농장(정헌주)의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농가 반경 500m이내 가축 살처분 권고 ○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장 관련, 역학추적조사 철저(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돈, 김진우에서 판매·출하된 양돈농장, 도축장 조사 철저 - 역학조사반 투입인력 확대, 조사내용충실 및 결과 신속 보고 ○ 농림부장관,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장 방문(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방역 및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현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구제역 의심축 신고(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이정학) - 돼지 2,730두 사육중 의심축 1두 신고 ○ 구제역 의심축 신고(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가울리(최천수) - 젖소 42두 사육 중 의심축 2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646 위생51580-647 방역51580-790 위생51580-648 5.9, 음성 5.12, 음성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추가발생 대비, 장비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충북은 관내 군부대, 경찰청, 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비·인력동원 -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사항 검토 및 준비 ○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지시(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보개 가울농장에 대한 전살조치 ○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장·연계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철저(검역원, 경기) ○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지시(경기,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 보개면 가울농장(우석재) 사육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 의사구제역 판명 ⇒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 - 농협중앙회는 소독약품 공급실태를 수시로 파악·지원조치 ○ 경기 용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시·도,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농협, 축기연, 각 단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태양농장(김기돈), 옥산영농조합법인(김진우) 구제역 양성판정 -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 조기완료·소독·이동통제 등 방역조치 강화 - 국방부, 경찰청은 이동통제 인력지원 등 협조 ○ 구제역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한 소독범위 확대 등 소독실시 강화(경기, 충북, 농협, 0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범위 : 축산 내외부 + 마을 전체소독 - 소독확대 : 발생 시·군 3 + 인접 시·군 7 - 소독방법 : 시·군소독방제차량·산림방제차량 활용, 지역축협 소독방제차량·군부대 제독차량 협조 - 시행기간 : 5.11부터 별도 지시까지(주 2회 소독) ○ 농림부차관보, 구제역 방역현장 지휘 점검(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안성 구제역 방역현장 살처분 등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0-650 위 생51580-651 위 생51580-652 위 생51580-653 위 생51580-654 위 생51580-655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일요진단」 녹화(10:00~11:30, 농림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대석 KBS해설위원장, 한두봉 고대교수, 박수홍 한농연회장 ○ 가축방역중앙협의회(3차) 개최(가축방역중앙협의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대책건(15:00, 대회의실)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시·도,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농협, 축기연, 각 단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제일제당(정현주) 및 가울농장(우석재) 구제역 양성판정 - 경기도지사 및 검역원장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전두수 살처분 조기완료·소독·이동통제 등 방역조치 강화 -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경기도 이동통제 인력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 ○ 경기 용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조사 후속조치(서울, 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영농조합법인 및 가울농장 도축장 출하 - 21일전 출하·도축된 돼지고기 추적조사·수거·검사 실시 및 보관용 고기와 부산물 출고금지조치 ⇒ 3개 도축장(신영축산, 양평축산, 대상농장) 보관물량 검사 : 구제역 음성(5.13일, 검역원)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추가 시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보개 가울 소재 최천수 농가 - 검역원장은 반경 500m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살처분 권고 - 경기도지사는 검역원의 살처분 권고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살처분 신속히 실시토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0-657 위 생51580-658 위 생51580-659 방역51580-831 위 생51580-66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조직 보강 협조(시·도,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한 방역조직보강 및 방역대책 철저시달 ○ 국무총리 구제역 방역현장 점검(14:50~ 농림부장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지역 : 용인 상황실,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살처분 현장 부근 통제초소 2곳 - 건의 : 자돈처리대책, 사료공장대책 등 자금 지원(특보) - 지시 : 당면 방역대책 주력, 행자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 지원 지시, 농림부 중심으로 농가 지원방안 강구 (관련부처 협조)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범위 확대지역 정정(경기, 충북,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10개 시·군(발생 시·군 3 + 인접 시·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 6개(안성·진천·인천·광주·여주·평택) 충북 : 4개(진천·천안·청원·괴산) - (정)11개 시·군(발생 시·군 3 + 인접 시·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 6개(안성·용인·이천·광주·여주·평택) 충북 : 4개(진천·음성·청원·괴산) 충남 : 1개(천안) ○ 경기 용인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조사 후속조치(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명 : 옥산영농조합법인 - 출하도축장 : 경기 신영축산, 강원 대원기업 - 조치 : 구제역 발생 21일전 출하물량 추적조사, 수거, 검사 및 보관물량 출고금지, 도축장 폐쇄 <p>⇒ 현지조사 및 조치(강원도, 5.13) : 대원기업 시설사용금지 및 양평축산 보관물량 출고금지</p>	<p>인사12200-368</p> <p>위생51580-661</p> <p>위생51580-662</p> <p>축산51580-899</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사업장 출입차량 등 소독 철저 및 현지점검 실시 (농업중앙회 및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출입차량·소독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5.16까지 농림부 상황실로 보고 ○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철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지사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 매몰작업시 필요한 장비지원 협조(건교부 건설기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충북도의 매몰작업 필요장비 요청시 대한건설기계 협회는 협조 요망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매몰장비 지원협조회신(건교부→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건설기계회에 행정기관의 요청시 지원토록 조치 ○ 구제역 방역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집행 철저(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에 의해 강제집행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자 고발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Task Force 구성(팀장:축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에 일본,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자료 수집 요청 	<p>축정51500-284</p> <p>구제역비상 51580-1</p> <p>구제역비상 51580-2</p> <p>기재58180-199</p> <p>구제역비상 51580-3</p>
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지연에 따른 조치(경기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가울농장 인근 젓소농가 살처분 보상문제로 집단반발 - 보상과 지원은 '02년 지원사례 감안 검토중 ○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도축장 방역조치(서울,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은 경기 안성 가울농장에서 출하된 돼지지육 및 부산물 재고가 없음 확인 - 잠정폐쇄조치는 세척·소독 후 재개 <p>⇒ 농협서울공판장 시설사용제한 해제(5.12, 서울)</p>	<p>위생51580-663</p> <p>위생51580-664</p> <p>농유51580-1377</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시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농장 :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1075, 박장근 - 검역원장은 반경 500m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살처분 권고 - 경기도지사는 검역원의 살처분 권고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실시토록 조치 ○ 의심축 신고접수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박장원) ○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진천읍 장관리 소재 유전자원(주)에서 구제역 의심증상 돼지 발생에 따른 조치 시달 ○ 진천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시달(시·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농장 : 충북 진천 진천 장관 소재 유전자원종돈장 (농장주:안종국) - 충북도지사는 유전자원 종돈장의 돼지 분양내역 조속 파악 - 유전자원 종돈장의 돼지 분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 및 해외악성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방역조치 ○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시달(시·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농장 : 경기 안성 삼죽 덕산 소재 삼죽영농조합 (농장주:박장원) - 검역원장은 반경 500m지역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살처분 권고 - 경기도지사는 검역원의 살처분 권고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살처분 신속히 실시토록 조치 	<p>위 생51580-665</p> <p>5.13, 음성</p> <p>구제역비상 51580-4</p> <p>위 생51580-666</p> <p>위 생51580-668</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를 방역소독 및 예찰강화(시도, 농진청,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충북도지사 이동통제초소 현장점검, 소독판 교체 및 부직포 설치 등 조치 ○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철저(경기도,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일제공동방역 소독 실시 - 농촌진흥청은 질병상황 등 파악하여 15:30까지 농림부에 보고 및 검역원은 차단방역 강화 ○ 구제역 발생지역내에서의 공연행사 개최연기 등 자제협조 요청(행정자치부장관, 안성시장) ○ 경기 용인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지시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 정밀검사 실시, 결과 통보 - 경기도 : 발생농장 긴급방역조치, 살처분 권고, 역학조사 ○ 행사부장관 경기 용인·안성지역 현장방문(14: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초소 및 상황실 방문 격려 ○ 구제역 발생 인근 11개 시·군 소독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별 소독실시상황, 소독약품공급실태 및 소독차량 확보 실태 등 현지점검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울곡농장과 진천 이춘복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내 돼지 전두수 살처분 결정 - 타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 발생시 반경 500m내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 : 황상하농장(사육두수:1800두 중 2두) - 주소 : 경기 용인 백암면 고안리 산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5 구제역비상 51580-6 구제역비상 51580-7 위생51580-66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진천 유전자원 의사 구제역 판정 방역조치(시도, 검역원, 각 단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군 유전자원 종돈장 검역원 검사 결과 의사 구제역으로 판명 - 충북도, 검역원 및 시·도에서는 초동방역조치와 역학조사 철저히 실시 ○안성군 보개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천안시 관리지역 우제류 현황보고(충남→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임상관찰 및 신고철저 ○경기 용인 백암 고안리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 조치 시달(경기, 검역원,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농장 : 경기 용인 백암 고안 산100 황상하 농장 - 검역원장은 반경 500m 내외 지역의 우제류가축 전두수 살처분 실시 필요성 검토 및 경기도지사에게 살처분조치 권고 - 경기도지사는 검역원의 권고에 따라 500m내외 살처분 실시 <p>⇒ 임상검사 및 간이키트 진단검사결과 의사구제역으로 판명 : 살처분 권고(검역원, 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출하도축장에 대한 조치계획 시달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이천 신영축산 도축장에 대한 조치> - 5.3일 폐쇄기준 당일 보관중인 지육·부산물·정육전체 물량 폐기(소각 또는 매몰)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한 보상 하되, 폐기처분 후 증빙서류 첨부 농림부로 신청 - 보관중인 물량을 완전폐기하고 도축장 소독실시요령에 따라 소독실시 후 경기도지사가 폐쇄조치 해제 	<p>위생51580-670</p> <p>축산51580-833</p> <p>위생51580-671</p> <p>방역51580-816</p> <p>위생51574-672</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 협조요청 (산림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에서 톱밥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산림관리청 및 산림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분뇨처리 요령(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별 분뇨처리 및 시설실태를 파악, 대책 수립·추진 - 톱밥 부족분은 산림청(산림청 총무과 042-481-4151)과 협조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 ○ 가축방역규정 위반행위자 고발조치 알림(시·도, 검역원, 농협, 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양돈협회 등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장은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농장(울곡농장)을 사법기관에 고발 ○ 제3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위원장(농림부차관) 외 12명 - 최초 발생농장인 울곡농장(안성)과 이춘복농장(진천) 반경 3km내외(지형지물 감안) 돼지 전두수 살처분 - 기타지역 발생시 현행대로 우제류 전두수 살처분 ○ 농림부 차관 등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위원 경기 안성, 충북 진천 현지조사(18:3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지역 주변 지형 등 역학적 상황 현지조사 ○ 제3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결과조치(농진청, 시도, 검역원 및 관련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대상가축 범위조정 : 울곡농장과 이춘복농장 반경 3km내 돼지 전두수 살처분 - 관할 도는 현지조사팀의 조정된 3km내의 우제류 가축 두수 및 농가현황 작성 제출 	<p>축정51573-285</p> <p>축정51573-285</p> <p>위생51580-673</p> <p>위생51580-674</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위험지역 돼지 전두수 살처분에 따른 지원요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장비지원요청시 조속 지원 협조 ○ 농림부장관, 13개 농업전문지와 합동간담회(11:00~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현황, 초동방역 및 확산방지대책, 농가보상대책 ○ 구제역 예방약 수급관련 검토보고 회신(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의 구제역 예방약 확보방안(해외51582-675, 70만 두분 추가구입)에 대하여 구입토록 조치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살처분 추진 철저(농진청, 시·도, 검역원, 농협, 생산자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현지조사팀 의견을 참고, 살처분지역 확대적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 등 ○ 구제역 긴급방역관련장비 지원 협조요청(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1일 살처분·매몰에 따른 추가장비 요청(페이로다 30대, 덤프트럭 30대, 포크레인 등) ○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장비 등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경기·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장비지원요청 건의(굴삭기 및 페이로다 9대, 덤프트럭 8대)대로 지원키로 하였으니 조속히 인수하여 살처분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 인력지원은 인근 군부대에 등 협조요청 -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건의 - 헬리콥터 운항금지 건의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조정 추진철저(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1391, 박태석 - 경기도 용인시 고안리 산 100 황상하 등 포함 ○ 구제역 살처분 돼지 처리방안 제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매몰·랜더링시설 이동시 살처분대상 가축 운반요령 - 소각·매몰 또는 랜더링 처리시 방역조치 및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9 위생51582-675 위생51580-676 구제역비상 51580-11 구제역비상 51580-12 위생51580-678 위생51580-67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살처분 추진(경기,충북,검역원,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매몰 조기추진 : '02.5.14까지 완료 - 살처분보상금은 보상금지급요령에 의거 지급, 소각·매몰 물건은 가축 재입식시 60% 현물 지급(40% 현금지급) - 중고생 학자금 면제, 생계비지원, 세금감면 협의·강구 ○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출하 도축장의 출하금지 축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내부결재, 장관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경기 안성 울곡농장) 출하물량처리 - 보관물량 : 전량폐기(지육, 가공육, 부산물) - 보상기준 : 시군 보상금평가반의 결정금액 - 폐쇄조치 : 압류물량 폐기, 소독 및 오염원 완전 제거 후 경기도에서 폐쇄조치 해제여부 결정 ○ 구제역방역관련 당정협의회 참석(14:00,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차관보, 당측: 정책위의장, 제2정조위원장 등 ○ KBS-R 「밝아오는 새아침」 인터뷰(15:35~축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상황,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농가 당부사항 등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협조요청(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구제역 발생시와 같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Task Force 제1차회의(19:30~ 축산국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임무부여, 작업주안점 시달 ○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 : 충북 진천 진천 문봉리 137, 정운소 ○ 충북 진천 정운소 농가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 조치(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은 신속한 진단실시 - 충북은 이동통제 및 방역조치 실시 	<p data-bbox="1217 293 1465 593">위생51580-680</p> <p data-bbox="1217 593 1465 1310">위생51580-681</p> <p data-bbox="1217 1310 1465 1747">구제역비상 51580-13</p> <p data-bbox="1217 1747 1465 1991">위생51580-68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콜레라) 살처분 농가 중고교생 자녀 현황 파악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살처분 농가자녀의 학자금 면제와 관련, 중고교생 자녀 현황 파악하여 5.14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 기독교신우회 구제역 극복특별기도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5.13~6.1, 지하소회의실, 12:30~12:50 ○ 농림부차관, 용인축산농가와 긴급간담회 개최(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에 따른 신속보상 - 현지농가방문(이선식) 지형지물 이용 살처분 구역을 정하기로 함 ○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도축장 방역조치(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농장(유전자원, 안종국)에서 태강 산업으로 출하된 돼지지육 및 부산물 재고 없음(서울시 조사결과) -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세척·소독 후 운영 - 지육은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추적조사 	<p>축정51500-286</p> <p>위 생51580-684</p> <p>농유51580-1407</p>
5.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인력 지원요청(경찰청장,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팀은 검역원역학조사팀과 협조·조사 요청 ○ 구제역 긴급방역 이동식 차량소독기 지원요청(광주광역시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초소 12개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독장비 5조 지원 ○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강원,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축 발생농장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및 소독철저 - 검역원과 협의하여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 주요도로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p>구제역비상 51580-14</p> <p>농정51580-11223</p> <p>위 생51580-685</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학조사 협조 철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협조 요청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관련 농가지원대책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5.14 15:00, 차관보, 각 도 국장, 농림부 축산국 각 과장 참석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조속 실시(경기도,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매몰 장비, 소요인력 추가 요청시 협조 요청 ○구제역 항원뱅크에 따른 설치사업비 협조(축산정책과) ○구제역 발생농장이 돼지 출하작업장(도축장·가공장)에 대한 조치계획(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고금지 축산물 처리방안과 도축장 폐쇄조치 해제방안시달 - 대상작업장 : 강원 대원기업, 충북 대상농장(이상 도축장), 강원 양평축산(가공장) - 축산물 처리 : 보관물량 전량 폐기 - 도축장 폐쇄해제 : 소독 후 해당도에서 결정 ○구제역발생 이동제한지역 도축부산물 처리 철저(경기,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의 출하·도축시 산출되는 부산물은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소독후 매몰, 열처리 소각 등으로 처리 - 양돈협회 부산물처리방안 별첨 ○차관보주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농가지원 대책협의(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보상금은 개산급(40%)으로 지원 후 사후정산 - 사료·건초 등 오염추정물건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 - 국가·지자체 공동으로 일정기간 생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15 축정51500-287 구제역비상 51580-16 위생51580-688 위생51580-689 위생51574-69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수급상황 파악 보고 (경기,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급실태 파악하여 제출 ○ 농림부장관, 구제역 발생지역(용인 안성·진천)현지 방문(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추진상황, 이동통제초소 운영현황점검, 관계자 격려 ○ 살처분 대상 법인(농가)의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현황 제출(강원, 경기, 충북)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철저(시·도, 각 단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 비오기 전·후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철저히 실시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ask Force 제1차 회의 개최(19:00~,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인프라구축 등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축산법·가축위생처리법 보완병행 - 이동제한지역 가축의 도축거부문제, 떨어돼지 규제 등검토 ○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운영(검역원)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농가 재입식기간 검토(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의 반경 3km 내외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 종료 후 해당지역 농가의 가축 재입식 허용시기에 대한 귀원의 검토의견을 우리부에 지급·제출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소독약품 추가배정 조치(경기, 강원,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소독약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는 추가배정 조치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소독약 지원 내역 제출(농협중앙회장, 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구제역 발생지역에 소독약 지원내역을 양식에 의거 즉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17 구제역비상 51580-18 구제역비상 51580-19 위 생51580-691 위 생51580-692 위 생51580-693 위 생51580-69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발기금 교육홍보비 집행(농협중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sk Force 팀원중 민간자문 위원에 대한 수당 집행 ○ 돼지 콜레라 발생 이동제한지역(철원) 출하돼지 처리 지침 시달 ○ 구제역 발생관련 이동제한지역 수매지침 확정통보(경기, 충북, 농협, 경영, 위생, 제주, 검역원) ○ 출하금지 조치된 축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추가지시(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영축산 보관 축산물을 재활용업체 위탁처리 건의(경기) - 도축부산물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회신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 및 교육 철저 (농협, 한국마사회, 낙농육우협회, 등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출입시 사람과 휴대품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교육 철저 ○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등 대비 구제역 방역 대책방안 마련 제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내의 사찰을 이용하는 연등행사인원 이동시 발생될 구제역 예방 방안을 마련 제출 요망 ○ 구제역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변경 보고 (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최초 발생이후 용인 추가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변경 ○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 반출관련 긴급건의(양돈협회→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초소에서 경계지역밖으로 반출하는 분뇨 금지 ⇒ 소독 후 경계지역밖으로 반출가능 회신 ○ 이동제한지역 우제류(소, 돼지) 수매지침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0km이내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는 소·돼지 등 - 수매품대(추정) : 202억원 ○ 구제역 관련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R 「박찬숙입니다」 전화인터뷰(12:40~ 농림부차관) - 국립방송K-TV 전화인터뷰(10:30~축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정51500-290 축통51500-198 축통51550-201 위생51580-696 구제역비상 51580-20 구제역비상 51580-21 축산51580-11461 양돈협지413-17 위생51580-69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추진관련 지시(경기, 강원, 충북, 안성시, 용인시, 진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살가축 매몰에 따른 가축 확대에 대한 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살 후 이동·살처분. ○ 일본에서 반송된 돼지고기 정부수매건의에 대한 회신(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서 요청한 수출반송물량 39.4톤을 국내 도매 가격으로 수매하고 해상운송비 지원 - 수매금액 : 111백만원(품대 99, 운송비 12) ○ 이동제한지역내 긴급도축 가축 보상건의(경기도→농림부) ○ 용인시 구제역 위험지역내 절박우 처리(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태·폐기, 매몰처리 -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 조치 - 가축공제가입농가는 공제금액을, 그 외 농가는 도매시장에서 도축장출하 절박우 가격으로 평가 보상액 신청 ○ ‘집회·행사시 가축방역 강화 지침’ 보완 시달(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시·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행사(특히 석가탄신일)시 사람·차량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예방 ○ 긴급 반상회 개최 협조 요청(시·도, 구제역 발생·인접 11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방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긴급반상회 개최 계획 보고 요망 ○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관리(국방부, 경찰청, 검역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작업시 인체피 해고려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수행 ○ 월드컵 참가국 선수단 반입물품 검역검사 방안 알림(외교부, 관세청, 월드컵조직위, 통협, 검역원) ○ 경계지역내 집유차량 등 소독철저(경기, 충북, 낙농진흥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수송, 집유차량, 집유장 및 유가공장에 대한 소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22 축통51550-205 축산51574-11464 구제역비상 51580-23 구제역비상 51580-24 구제역비상 51580-25 위생51580-703 위생51584-704 축영51541-357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등 재정지원 협조 요청 ○ 농림부 차관보 용인, 안성, 진천 현지 방문(16:30~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근무자 격려 및 구제역 방역 철저 당부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지침 질의회신(경기도, 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임상검사 차이점 설명 -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시점이 수매개시일임 ○ 방역비 지원요청(경기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약품비 등 ⇒ 위생51580-693('02.5.14)호로 기초치 ○ 구제역 방역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R 「라디오24시」 인터뷰(23:00~ 축산국장) 	<p>구제역비상 51580-26</p> <p>위생51580-705</p> <p>축산51580-11472</p>
5.1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구제역 돼지 밀도살」 보도관련, 해명자료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도살은 없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불법반출 단속 - 중앙언론기관 및 14개 소비자 단체에 송부 ○ 구제역 방역추진에 따른 건의(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를 매몰지로 사용할 시 축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집회·행사시 가축방역활동 협조 요청(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행사시에 가축방역강화 지침 시달 -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사찰입구에 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장비 설치 ○ 구제역 경계지역 중 특별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 강화(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백암면 백봉리·옥산리 등 위험지역 인접농가 - 기타 검역원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p>축산51580-11498</p> <p>구제역비상 51580-27</p> <p>위생51580-712</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검역원→농림부,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 : 이철동농가(한우 9두 중 1두)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요기동 520 ○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시군(11개소) 방역대책 추진 강화 (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별 책임담당자 지정 - 책임담당자 임무 및 추진실적 집계 등 ○ 광주광역시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소요액 지원 검토(행자부장관) : 71,7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보상 등 69,416백만원 이상(농림부 부담) - 생활안정자금 945백만원(행자부 472.5, 지자체 472.5) - 기타 경상비 1,421백만원(행자부 부담) - 기타 학자금, 기한연장, 세제 등은 파악 중 ○ 구제역 긴급방역관련 장비지원 기간연장 및 추가 협조요청 (건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지역 살처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장비 지원기간의 연장과 추가지원 요청 ○ 농림부장관, 「대구방송특별기획토론회」 대담방송(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방역대책, 농가지원대책 등 설명 ○ YTN 『경제와이드 초대석』 방송출연(검역원장,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방역현황과 방역대책 설명 ○ 안성축산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안성축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검토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우리부도 추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임 ○ 구제역 방역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매몰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사유지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망 	<p>5.13, 음성</p> <p>위생51580-715</p> <p>위생51580-717</p> <p>구제역비상 51580-28</p> <p>구제역비상 51580-29</p> <p>구제역비상 51580-30</p> <p>구제역비상 51580-31</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용인지역 살처분 조기완료 재촉구 지시(경기도)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소요액 지원 통보(경기도, 강원도, 충북) ○ 구제역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알림(각 시·도)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구제역·돼지콜레라 확산방지, 100천부 - 배포 : 안성 40천부, 용인 15천부, 철원 3천부, 진천 42천부 - 취지 : 발생지역의 대규모 집회·행사장 참석자 배포 ○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검역원→농림부,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 : 한국냉장(돼지 60두 중 약 7두) -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리-3 출하농가 :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118(돼지 2,000두) ○ 충북 청원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냉장(주)에 계류중인 돼지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 - 충북도는 관련규정에 의거 방역조치 - 경기도는 검역원 판정까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질의(경기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비대상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500m이내 우제류가축 전두수 살처분 여부 <p><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농가의 최초 발생농장 3km반경 포함여부는 경기도 결정사항 - 3km 내외의 범위에 포함안될 경우 반경 500m 범주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를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32 구제역비상 51580-33 위생51580-719 위생51580-721 5.17, 음성 위생51580-722 축산51580-11482 위생51580-723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가축방역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재배정 통지(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를 제외한 살처분 대상농가에 보상금 우선 지급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농가는 보상금 지급 유보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종돈수매 및 돼지A.I센타 보상 지침통보(경기, 충북, 농협, 축기연,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적체된 종돈 및 F1후보돈에 대해 수매 계획 - 각 기관은 종돈 이각표시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발행 등록 증명서의 이각표시가 동일한지 확인·수매 - 종돈장별로 구제역 발생이전 6개월간의 종돈분양실적을 파악하여 월평균 분양두수내에서 수매 허용 - 축기연과 종축개량협회에서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 이후 시·군의 돼지 A.I센타 정액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에 적극 협조 ○ 살처분 보상금, 수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보상금 개산금 40% : 11,149백만원 - 소·돼지 수매자금 : 10,000백만원 -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 13,236백만원 ○ 농림부 지원, 가축방역 현지점검 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현지출장자가 초소 및 현장안내 요구로 시·군 직원 불만 표출 - 개선 : 출장횟수축소(매일→주1~2회) 농림부 현지과견관과 동행 	<p data-bbox="1230 367 1453 405">위생51580-725</p> <p data-bbox="1230 645 1453 683">축정51530-29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원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통보(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냉장(주) 구제역 의심축 돼지 음성 판정 - 소독·방역 지속 추진 ○ 구제역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사후방역관리지침 시달(경기, 충북, 검역원, 방역본부,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 살처분농가 방역관리지침 - 살처분 농가의 타지역 방문 자제, 외출시 소독 등 방역 ○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방제차량, 인원 등 긴급지원 요청 (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차량 5대 및 가축방역관 10명 지원 요청 ○ 구제역 방역지역 긴급 지원요청 회신(경기, 검역원, 농협, 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지역은 방역지원본부에서 3명 차출지원 - 기타 인원은 비발생 시·군 방역관, 공수의 차출·배치 - 소독방제차량은 비발생 시·군이나 지역축협 보유차량 사용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기간연장 * 현행 - 충남 : 5.31-> 8.30, 농협 : 5.31-> 6.30 ○ 구제역 관련 당정협의(14:00~민주당 제2정도위원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차관,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행자부 차관보 참석 - 구제역 발생 3개 시·군, 군당 6억원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이동초소 운영경비 등 경상비 지원 - 정책자금 대출잔액(10,389백만원)의 발생이자 전액면제 (10.4억원), 상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726 위생51580-727 축산51580-11508 위생51580-728 축영5150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전국일제소독약품지원)보조금 교부결정(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3,139,188천원 → 변경 : 4,139,188천원 - 기교부액 : 3,139,188천원, 금회교부액 : 1,000,000천원 ○ 구제역 살처분 농장 가축 재입식 허용시기(시·도, 검역원, 농협, 방역지원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후 90일 경과 (사육금지 30, 입식시험 60) - 발생농장반경 500m 범위농장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 후 90일 경과(사육금지 30일 후 입식시험 앓고 60일) - 반경 3km내 농가는 30일 경과 후 재입식 ○ 시·군 수의직 공무원 근무 현황(가축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중 116개소(50%) 근무 ○ 석가탄신일 집회시 사찰 입구 소독 계도 출장(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5.19, 농림부·농협 합동 근무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초소 점검결과(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기간 : '02.5.15-5.16 - 출장지역 : 8개도 24개시·군(파주, 홍성 등) - 출 장 자 : 농림부 12명 ○ 소독약품 안전관리 철저 및 지속적인 방역추진(각 시·도, 농진청,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가탄신일 대비 소독철저 및 소독약 수급상황수시 파악 ○ 이동통제소 안전관리 철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초소 접근차량 서행토록 유도 ○ 구제역 발생지역 임상관찰 등 예찰활동 철저(경기,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포함 인근 11개 시·군에 대한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729 위생51580-731 구제역비상 51580-34 구제역비상 51580-35 구제역비상 51580-36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8(토)	○ 살처분·매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경기, 강원, 충북) - 5.17일 살처분 완료후 매몰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구제역비상 51580-37
	○ 구제역 발생지역 소독 철저(경기, 충북) - 우천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철저	구제역비상 51580-38
	○ 충북 진천 구제역의심축 신고에따른 방역조치(충북, 검역원) - 발생농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771, 이범용농가 - 조치 :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농장 방역조치	위 생51580-732
	○ 구제역 살처분 가축의 처리방법 등 통보(경기, 충북, 검역원)	위 생51580-733
	○ 구제역 간이신속진단키트 구매지원 검토(검역원)	위 생51580-734
	○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리철저(경기, 강원, 충북)	위 생51580-735
	○ 2000년도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내역 제출	위 생51580-736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송부(검역원→농림부)	역 학51580-188
	○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악취제거 관련 회의개최(경기 등)	축 정51573-308
	○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협조요청(농업기반공사)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살처분 완료통보(행자부)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특별교부금 지원 참고	구제역비상 51580-38
	○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경위)조사 보고(경기도, 22:30) - 안성·용인지역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한 농어민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조사 보고지시	구제역비상 51580-39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관련 수범·미담사례 협조 요청(관련부처·청, 시·도, 검역원 및 관련 협회, 22:30)	구제역비상 51580-40
	○ 구제역 발생지역 소·돼지 수매지연 관련, 해명자료 배포 - 다음주중 수매 착수 예정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시달(경기, 검역원, 0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경기 안성 일죽 방초리 871, 송병훈 - 이동금지, 소독 등 방역조치 및 반경 500m 내외 살처분 	위 생51580-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송병훈) 의사구제역 발생관련 역학조사실시 지시(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7일간 농장을 방문했던 타농장주 및 발생농장주가 방문했던 타농장을 중점적으로 추적조사 	위 생51580-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시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347, 신오성 경기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1281, 강경석 - 검역원은 반경 500m내외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실시 필요성 검토 및 경기도에 살처분 조치 권고 - 경기도는 살처분 권고에 따라 500m내외 살처분 실시 	위 생51580-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중앙협의회(4차) 개최(협의회 위원)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일시 : 5.19일, 15:00 - 추가발생농장 반경500m 범위 우제류 가축 전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방역관이 현지사정을 감안 결정 - 발생지역 주민 행동수칙 홍보 - 예방접종 검토 소위원회 구성 : 차관, 김순재 교수 등 9 	위 생51580-740 위 생51580-744 위 생51580-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송림농장 : 송병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시·도,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농협, 생산자단체 등) 	위 생51580-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시달(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995-2, 삼본농장(박용범) ○ 구제역 의심축 신고 사항 보도자료 배포(06:30) 	위 생51580-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설명철저(경기, 충북) 	구 제역비상 51580-4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및 예찰활동 강화(시·도, 농협, 낙농진흥회, 생산자단체 등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과 차량, 사람 등 최근 2개월 왕래가 있었던 농장은 방역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구제역 발생현장 접근 통제 철저(경기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구제역 살처분 현장출입을 철저히 통제 ○ 살처분가축 매몰지역 사후관리 대책회의 개최(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림부, 농협, 축기연 관계자 - 살처분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발생방지, 악취·냄새, 가스 제거 방안 등 협의 ○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소독강화 지시(각 시·도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소독방제 철저 ○ 구제역 방역 지연 관련, 마을앰프 방송문안(예시) 송부 (농촌진흥청장) ○ 농림부차관보, 검역원장, 교수 등 구제역 추가발생농장 점검(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현황과약, 주민과 대화로 방역 이해 협조 요청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지원요청(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40명, 방제차량 8대 ○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인력 지원(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 각 2명(5개도 10명) - 차출기간 : 5.20~5.25(6일간) - 사전조치 : 현지 배치전 검역원 사전교육 ○ 구제역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 보고(수의과학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별로 조사된 내용을 상황실로 5.21일까지 제출 및 매일 17:00까지 일일역학조사실적을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42 구제역비상 51580-43 구제역비상 51580-44 구제역비상 51580-45 축산51580-11584 위생51580-743 구제역비상 51580-46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철저 지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 축사 출입 금지 및 소독 철저 - 구제역 소독 관련 마을앰프방송 원고 송부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인력지원 협조(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용인,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이동통제 등에 인력 및 장비 지원에 감사 - 기파견인력을 대체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협조 요청 ○ 가축방역대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추가발생농장 반경 500m내외 우제류가축 전체 살처분 원칙 유지 - 추가발생농장 반경 700m범위에 소재한 경기 용인 백암 백봉리 및 옥산리 특별관리지역 양돈장 돼지 살처분도 가축방역관이 결정 - 사람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행동수칙 홍보 : 구제역발생농장 및 인근농가 방역관리지침에 의거 관내농가 홍보 실시 ○ 살처분·매몰시 유의사항 및 미담·수범사례 조사(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시 전살처리 등 구제역 행동지침에 의거 처리 - 구제역 방역 미담 및 수범사례 발굴 조사 ○ 석가탄신일 사찰행사 소독방역지원반 근무 점검(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지역 총20개 사찰 출입자에 대해 깔판소독 등 ○ 안성 발생농장 살처분현장 감독공무원 사망사고(18:3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망 자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7급 박상권(32세) - 사고경위 : 살처분 완료후 오염물 매몰시 후진하는 덤프 트럭에 추돌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비상 51580-47 구제역비상 51580-48 구제역비상 51580-48 구제역비상 51580-4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의심축 진단에 따른 추가방역조치(경기, 검역원, 0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경기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쌍둥이농장(강경석) - 발생농장 및 500m범위 우제류 가축 살처분 실시 - 발생농장 중심 위험지역(반경3km) 및 경계지역 (10km)설정 - 우제류 가축 등의 이동제한조치 및 통제초소 설치 등 - 발생농장 관리인 등의 역학조사 실시 등 ○ 구제역 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 일죽면 2농장(송림, 방초)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 1,152농가에 호소문 배포, 초소 30개, 장비 76대, 위험지역 원유 폐기 등 ○ 구제역발생관련 우제류 수매지침 보완 통보(보완 제1호) (경기도, 충북, 농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통51550-201('02.5.14)와 관련 수매지침 보완 시달 ○ 경기 안성. 용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시·도, 검역원, 국방부, 생산자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 신오성, 박용범(이상 안성), 강경석(용인) ○ 구제역 현장방역대책마련 추진(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 근본대책 강구건의 ○ 구제역 살처분 지역 주민 행동수칙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 (시·도,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방역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구제역 살처분 지역 주민 행동수칙 - 배포 : 100천부(발생지 70천부, 시도 21천부, 기타 9천부) ○ 구제역 및 콜레라 가축 살처분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상환 및 이자 감면(경기도, 강원도, 충북,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자금, 농특회계·축발기금 및 부채대책자금 * 살처분일에서 2002년 말까지 상환도래되는 원금은 2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747 축통51550-217 위생51580-749 축산51580-11594 위생51580-751 축정51500-30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보류 (경기도, 강원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경위 등 역학조사에 따라 농가 지원여부 검토 ○ 구제역 발생농장 출하 돼지고기 처리(서울시,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판매업소에서 보관중인 경기 안성 우석재 농장산 돼지가공제품 소각·매몰 - 소각·매몰확인서, 보상금지급요율평가서 및 보상금 평가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구제역 역학 관련사항 방역조치사항 보고(검역원→경기, 충북, 충남,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번 국도 및 57번 국도 차단방역강화 ○ 구제역 임상증상 관찰 및 시료채취·방역요령 교육실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31명(시·도 방역기관 10, 검역원 21명) - 후속조치 : 시·도 방역관 10명 용인 백암면 지원과견 ○ 구제역 상황실 및 방제초소 근무 철저(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수칙 엄수 지도·감독 강화 ○ 구제역 상황실 및 방제초소 근무 강화(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칙위반자 엄중처리 및 근무수칙 엄수 지도·감독 강화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소독약품 공급요령시달(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경계·통제초소운영지역 소독약품 공급요령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 소독약품 공급요령 통지(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지역에 소독약품 공급에 철저 기해주기 바람 ○ 구제역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 자율방역 철저(농협, 각 시·도 및 각 협회)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소독강화 및 마을 앰프 방송 문안 송부(본청) - 구제역 확산방지 축산농가 지도자료 제공(본청)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소위원회 개최(소위원회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조기종식 대책(5.21, 16:00, 농림부대회의실) 	<p>축정51500-310</p> <p>위 생51580-753</p> <p>방역51580-922</p> <p>구제역비상 51580-50</p> <p>구제역비상 51580-51</p> <p>구제역비상 51580-52</p> <p>구제역비상 51580-53</p> <p>구제역비상 51580-54</p> <p>경기도</p> <p>위 생51580-755</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추진상황 국무회의 구두보고(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개최 준비상황 점검결과 보고시 함께 보고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침(안) 검토조치요청 (검역원→농림부)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시·도, 검역원, 농협, 각 단체 및 생산자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준수해야 할 방역관리지침(위생 51580-579호) 내용 보완 시달 ○ 구제역 조기종식 방안 시달(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방역본부, 대한수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충북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접촉자 현황”과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농가현황”을 참고로 관할 공수의, 방역본부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농장별 1명씩 배치하고 임상관찰 실시 및 이상징후 발견시 보고 - 수의사회와 방역지원본부는 해당도의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 구제역 방역추진관련 복무자세 강화(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및 소독 철저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소독약 공급요령 보완통지 (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 구제역 발생 관련 월드컵 내방객에 대한 사전홍보 협조 요청(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내방객 대상 사전홍보 철저 ○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 근무조 개선(비상대책상황실, 축산경영과, 가축위생과, 축산물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 보강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51580-919 위생51580-756 위생51580-757 구제역비상 51580-55 구제역비상 51580-56 구제역비상 51580-57 축산정책과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경로 역학조사를 위한 현지점검(14:00~ 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발생지역(안성 일죽, 용인 원삼) 현지점검을 통해 가축방역 중앙협의회 소위원회에서 대책방안 논의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시·도, 검역원, 농협, 가축방역본부,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 배포 : 30천부(각 시·도 및 축산관련단체) ○ 차관주재, 가축방역 중앙협의회 소위원회 개최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21일(화) 18:30~21:10, 국제회의실 - 참석 : 차관 외 9명 - 향후 추가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나, 5.26일경 1~2건 우려 - 특별관리농장 전담방역관 배치 - 경계지역내 돼지의 과체중 출하요청에 대해, 10일내 임상 관찰 후 개체별 임상검사를 받은 뒤 지정도축장에 출하, 수매비축 방안 검토 * 운송차량 카바 씌우고 운반, 출하전 24시간 절식 조치, 기타 위험요소 최소화 - 기존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추가 발생시는 500m 범위 살처분, 10km이내 백신방안 검토 ○ 농림부장관, 외신기자 회견(15:00~ 프레스센터 18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농업·농촌, 동·식물검역,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책 등 설명 ○ 구제역 방역 지원대책 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R 「박찬숙입니다」 인터뷰(12:40~농림부장관) -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07:15~농림부차관) 	<p>축정51500-314</p> <p>위생51580-764</p> <p>위생51580-770</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조기종식 방안 수정 시달(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의, 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을 동원, 문제발생시 30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별 전담방역관”의 농장 또는 마을별 적정 배치 ○ ‘02년 농특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요청(기획예산담당관실) ○ ‘02년 가축방역사업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송금 내역통보(각 시·도) ○ 구제역 등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시·도, 농협, 양돈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에도 질병확산방지 위한 소독 철저 ○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중간결과) 보고(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51580-46(‘02.5.19)관련 - 경기 안성 율곡농장 외 11개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 ○ 구제역 발생관련 긴급 살처분 지시(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소재 신오승 농장에 대하여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38조 의거, 즉시 살처분할 것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지방교부세(특별)활용 철저(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교부 생활안정자금 및 경상비 적절 활용 ○ 가축질병(구제역·돼지콜레라)발생지역 살처분 매몰지 책임자 지정(나10, 11, 12, 2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마다 담당장 지정하여 매일 점검 및 점검결과 매일 17:00까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766 위생51580-772 위생51580-773 구제역비상 515810-58 역학51580-192 위생51580-775 구제역비상 51580-59 구제역비상 51580-6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개정 알림 (시·도, 검역원, 축기연, 농협, 각 단체 및 협회) ○ 이동제한지역내 비육돈 수매실시(경기, 충북, 축산경영과, 가축위생과, 검역원,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사육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매 실시 계획 ○ 구제역 발생관련 야생동물 방역관리 철저조치사항 보고 (검역원→농림부) ○ 경기 안성 구제역 분리주 영국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 송부 : 5.9일, 검사결과 : 5.22일(Type "O") ○ 석가탄신일 방역활동결과 통보 및 농장차단방역강화 지시 (각 시·도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농가 축사 내·외부 철저 소독 - 집회·행사 자제토록 지도 - 불가피한 행사추진시 철저한 소독·방역 조치 ○ 구제역 및 콜레라 방역 추진관련 일일상황보고 양식 추가 시달(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상황」 15:00까지 제출 ○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살처분 농장 재입식 허용시기(시·도, 검역원, 농협, 방역본부, 양돈협회, 수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은 추가발생 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80일 경과 후 입식 - 발생농장 반경 300m내외 범위의 살처분 농장도 살처분 완료된 후 80일 경과 후 허용 ○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지역지원 건의 회신(진천군의회회장) ○ 구제역 발생지역 도태권고 건의회신(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제외대상 특별관리 ○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지원인력 기간연장(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구제역 발생지역 지원인력 5월말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781 축통51550-227 방역51580-949 해외51838-321 구제역비상 51580-61 구제역비상 51580-62 위생51580-787 위생51580-788 위생51580-789 위생51580-79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배치 운영(경기, 검역원) -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배치·운영 철저 - 검역원 현장 인력은 유사시 경기도 현장배치 전담방역관과 연계 	위생51580-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이동가축 등 방역관리지침 검토지시(검역원) 	위생51580-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특별관리농가 전담 중앙가축방역관 배치보고(검역원→농림부) - 위생51580-792호에 의거 조치 	방역51580-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등 근무 철저 지시(각 시·도) 	상황51580-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우제류 수매지침보완통보(제2호)(경기, 충북, 농협) - 축통51550-201 및 동 51550-217호와 관련 젓소수매 및 부산물처리에 관한 것 보완·시달 	축통51550-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대책 추진(농협) - 매몰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지원 계획 - 농협에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 물품구입·지원 조치 - 사업완료후 농림부에 정산보고 	축정5157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지역 생활·농업용 지하수개발비 지원(경기, 충북) -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 국고 80%, 지방비 20% 	용수51320-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개정요청(가축위생과장) - 가축매몰방법 및 사후관리지침을 검토하여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개정시 반영 요망 	축정51573-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단체)에 대한 해외여행 내역 조사 긴급지시(경기, 충북, 충남) - 최근 3~4월 동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농가 파악 - 5.2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구제역비상 51580-6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행동요령 시달 - 전담방역관 사전 조치사항 - 임상관찰 등 현장 근무요령 - 농장방문시 주의사항 - 이상증상 연락을 받았을 때 행동요령 	위 생51580-796
5.2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지방교부세(특별) 용도 관련 (경기, 강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로 배정된 자금의 용도는 경상비 등으로 활용 ○ 용인지역 이동통제초소 교통사고 발생보고(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초소 15km 전방 7중 추돌사고(사상자:8명)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임상관찰결과 제출협조(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관찰실시 결과 지급제출 ○ 이동제한지역 임상관찰 결과제출(충북→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농가 11,146두(한우463, 젃소533, 돼지10,016, 사슴79, 염소55) ○ 구제역 방역관련 마을앰프 방송 철저(농촌진흥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앰프방송 실시, 양축농가 소독·농장출입제한 등 홍보 ○ 구제역 방역관리 강조(나, 검역원, 농진청, 식검, 농진공,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구제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차관님 경기 용인경계지역 특별관리농가 현장점검(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가축관리실태 및 전담 방역관 대응체제유지 확인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5.25, 18:0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총두수 : 118농가 111,455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48농가 37,684두 • 용인 60농가 49,189두 • 진천 10농가 24,582두 	구제역비상 51580-65 위 생51580-799 축산51580-1119 구제역비상 51580-66 구제역비상 51580-67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군) 구제역 방역상황실 근무 철저 촉구(시·도) - 일부 시·도(시·군)는 상황실 근무를 22:00까지 하는 등 근무상태가 다소 미흡 ○ 축산국장, 경기 용인 경계지역 특별관리농가 현장점검 ○ 구제역대책 상황실 운영철저(시·도)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가축 수매관련 회의개최(축산경영과, 가축위생과, 경기·충남, 농협, 검역원)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가축의 원활한 수매를 위한 논의(시·도, 농협, 지정도축장·육가공장 참석) 	<p>구제역비상 51580-68</p> <p>구제역비상 51580-69</p> <p>축통51550-229</p>
5.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농가현황 알림(경기→농림부, 검역원 등) ○ 구제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시·도)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임상검사 결과 제출(충북→농림부) - 충북 진천 임상검사결과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임상관찰결과 보고(경기→농림부) - 경기 안성, 용인 구제역 임상관찰 실시·완료 결과 보고 - 2,101농가 467,460두(한육우 26,909, 젖소 25,879, 돼지 409,321, 염소 3,099, 사슴 2,252)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관련 수범사례 제출(전남→농림부)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가축수매방안 회의개최(13:00~) - 과체중돼지(120kg이상)부터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우선수매 - 소등 돼지이외 우제류 가축은 농가 희망시 수매 ○ 축발기금 지출계획 변경(가축위생과, 축발기금사무국) - 향원뱅크, 발판소독조, 진단키트 : 1,631백만원 ○ 특별관리농가 및 전담방역관 변경내역 알림(경기→농림부) - 77농가 31명 ○ 구제역 오염우려 축산물 폐기에 따른 부대비용 국비보상 건의(충북→농림부) - 장비사용료, 인건비 국비보상 요청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등 수매지침(절차) 보완통보(경영과, 위생과, 경기, 충북, 농협) - 우제류가축 수매절차 및 수매주체별 행동요령 보완 시달 	<p>축산51580-11635</p> <p>상황51580-70</p> <p>축산51580-1119</p> <p>축산51580-11716</p> <p>축정51580-889</p> <p>축정51500-332</p> <p>축산51574-11718</p> <p>축산51582-1132</p> <p>축통51550-230</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 현장점검 및 홍보대처를 위한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농진청·농업기반공사 각 1인씩 3명 1조로 경기 용인·안성 및 충북 진천지역에 출장하여 매몰지 현장점검 및 홍보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가축 지정도축장 출하 방역조치 (경기·충북·충남, 검역원, 농협, 축산물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 외곽으로부터 경계지역 밖에 소재한 지정도축장까지의 운송도로를 기점으로 좌우 50m를 방역지역으로 관리 - 지정도축장 출하 가축운송차량은 지정도로에 한하여 운행 ○ 돼지수매에 따른 부산물 처리 실태조사(5.29, 3명) ○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홈페이지 게재(상황실) 	<p>상황51580-71</p> <p>위생51580-806</p>
5.2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등 이동제한지역 임상관찰시 농가현황파악 제출 (경기·강원·충북) ○ 이동식 차량소독장비 긴급구매 추진(경기·강원·충북·충남·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조(경기 30, 강원 8, 충북 8, 충남 4) ○ 지정도축장 출하가축 임파절 제거요령 등 교육실시사항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 사육가축의 지정도축장 출하에 따른 지정육가공장 종사원 등에 대한 임파절 제거요령 교육 - 교육기간 : 5.29~5.30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 관련 건의(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가축 운송시간 변경(08:00~18:00→06:00~16:00) - 도축후 지육 산도검사 실시기간 단축(24시→12시) - 부산물 폐기처리비용 추가 정산 - 도축후 생산된 부산물 봉인을 공무원 동승으로 대체 ○ 가축시장 휴장 해제 요청(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진정 기미에 따라 경기, 강원, 충북지역을 제외한 다른 가축시장의 휴장 해제 요망 ○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계획 시달(시·도, 농협, 각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7.3일까지) ○ 구제역 등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시·도, 농협, 각 협회) ○ 경기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소재 예방적 살처분 2농가 (황주하, 이우익)정밀검사실시 	<p>상황51580-72</p> <p>위생51580-809</p> <p>방역51580-978</p> <p>축산515577-11740</p> <p>상황51580-73</p> <p>축영51521</p> <p>상황51580-74</p> <p>5.30, 음성</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가축방역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재배정 통지(경기·강원·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17,305,582), 강원(1,649,652), 충북(5,353,220) ○ 구제역 발생지역 야생동물 포획 협조(환경부장관, 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요망 ○ 경계지역내 자돈 이동에 관한 질의(충북→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내에서의 감수성 가축 이동 ⇒(전화회신)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제16조 제4항 제1호 규정(입안취지)에 의거 허용 가능 ○ 특별관리농가 전담반 변경사항 알림(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농가 30명 ○ 구제역 발생지역 우체류 수매지침 보완통보(제5호)(축산경영과, 가축위생과, 경기도, 충북, 농협, 한우협회, 등급판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814 위생51580-817 유선회신 축산51580-11735 축통51550
5.3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방역 관련 피해농가 등 돕기 성금 모금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 및 관서·단체 임직원이 모금(300,301천원) ○ 구제역 발생지역 야생동물 포획협조(환경부,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가 출현 비둘기, 까치, 고양이 포획 협조 - 포획동물에 대한 검사로 역학조사(원인규명) 조치 ○ 구제역 방역사업 보조금 확정사업 알림(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원뱅크 1,248백만원 - 발판소독조 173백만원 - 진단키트 2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실 파악 위생51580-817 위생51580-82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장비 및 시설 파악제출(시·도,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방역장비 및 시설현황 파악 (6.3일 15:00까지 조사, 제출) ○ 수매도축 지육 처리방안 건의회신(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도축된 지육은 냉장실에서 24시간 이상 보관 후 가공장으로 이동, 가공(발골)처리후 pH 측정, 또는 - 도축지육을 가공장으로 이동, 24시간 보관후 가공(발골) 처리후 pH 측정 ○ 수매도축 부산물 폐기 감독 협조(농협중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와 협의하여 필요인력(6명 정도) 지원 협조 요망 ○ 살처분가축 등 보상금 지급업무 지도·감독 철저히(경기·강원·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업무 지도, 감독 철저 ○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규정 위반자 처분사항 통보(시·도, 검역원, 농협, 각 단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철원 신흥농장주 및 검안수의사 : 김찰송치 - 경기 안성 울곡농장주 : 구속기소중 ○ 구제역 의심축 신고·접수(1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23 강일원(버들농장) - 돼지 1,500두중 20~30두 	<p>상 황51580-75</p> <p>위 생51580-823</p> <p>위 생51580-824</p> <p>위 생51580-825</p>
6.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버들농장(강일원)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라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방역조치 강화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의심돼지 발생농장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10km)설정 및 우제류가축 사육현황 파악,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사전 조치 	<p>위 생51580-826</p> <p>위 생51580-827</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강화 지시(시·도, 검역원) : 소독·예찰 지속실시 등 ○ 가축방역중앙협의회(6차) 개최 알림(각 위원) : 6.3(월) 17:00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농장 긴급방역 조치(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권고에 따라 버들농장 돼지 전두수 살처분 - 버들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안성 이종돈) 특별관리 - 버들농장 출하차량 소유농장(평택 이영우) 특별관리 ○ 경기 평택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서울,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강일원)에서 구제역 발생 21일전(5.13)부터 출하되어 도축·가공된 돼지고기 역학조사 및 폐기 조치 - 작업장 잠정폐쇄 및 발생 7일전부터 도축·보관중인 고기와 부산물 등에 대해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고금지 	<p>위생51580-828</p> <p>위생51580-829</p> <p>위생51580-830</p> <p>위생51580-831</p>
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버들농장(강일원)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시도, 관련 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 등 ○ 구제역 발생지역 예방접종 대비 사전준비(경기, 충북, 검역원, 농협, 방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개최예정인 제6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결과를 대비하여 예방접종반 편성 등 사전준비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자료 제출(경기·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사육현황, 행정단위 마을명칭 제출 ○ 구제역 방역관련, 살처분 및 매몰요령 준수 철저(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병원체 확산방지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규정 의거 전살·타격으로 살처분하고 생체매몰 금지 - 환경오염 방지 고려, 살처분시 안전사고에 철저 권고 	<p>방역51580-1006</p> <p>위생51580-832</p> <p>위생51580-833</p> <p>위생51580-834</p> <p>위생51580-835</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철저 지시(시·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차단방역, 예찰 등 소독활동,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 야생조류 구제역 검사계획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지역 : 경기도 안성, 용인 및 충북 진천 - 구제역 검사 대상 : 비둘기(48수), 까치(72수) - 검사기간 : 시료채취 시부터 1개월 내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등 수매지침 보완 통보(제6호) 및 수매돈육판매지침 시달(축산정책과, 가축위생과, 경기, 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수매돈육 판매지침」 및 「구제역 이동제한세부지역 현황」에 따라 판매 ○ 구제역 발생지역 야생동물 포획 협조(환경부,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가에 접근한 야생동물의 물리적 전파 의심,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발생원인 및 전파규명에 기함. - 포획지역 :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 및 충북 진천 - 구제역 검사 대상 : 비둘기(64수), 까치(96수) - 검사기간 : 시료채취 시부터 1개월 내 ○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계획(평택시→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초소, 6명(공무원2, 군2, 경찰2)/초소, ULV고압연무 소독기1대/초소, 책임담당제로 운영 ○ 구제역 발생관련 도축가공돈육에 대한 조치(서울·경기·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 21일전(5.13일)부터 출하 도축·가공된 물량은 출고금지, 7일전(5.27일)부터 도축·가공된 물량은 폐기처리 ○ 구제역 발생관련 도축가공돈육 추적조사 결과조치(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21~7일전 도축·가공된 고기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 가능, 검토의견 제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836 방역51580-1005 축통51550-237 위생51580-839 평택시 위생51580-840 위생51580-84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 내 사료, 분뇨 반출요령 질의 회신(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가축의 분뇨는 소독후 반출 가능 ○ 경기 평택지역 이동제한지역 설정(경기,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라 이동제한지역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성 있음. -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상황 지급·제출 요망 ○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역학조사 결과 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태강산업 도축장 출하 중개인(경이수) 방문농장 특별관리(여주 가남 권재우 농장·운경농장) - 버들축산 가공장 탐차 1주간 운행정지 등 ○ 구제역 발생지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관리철저(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음식물 사료 열처리후 공급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출하차량 관련 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 출하차량 소유농장(평택 이영우) 살처분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등 수매지침 보완 통보(제6호) 및 수매돈육 판매지침 시달(경기, 충남, 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대행기관(농협)은 이동제한지역내 도축·가공된 수매돈육의 판매시 「정부 수매돈육 판매지침」과 「구제역 이동제한 세부지역현황」에 따를 것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원유집유업무 등 철저 지시(경기, 충남, 농협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3km) 내 원유 소독 후 폐기 - 경계지역(3~10km) 내 원유는 전담차량에 의해 수거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사료운영차량 등 소독 철저 재촉구(시·도,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공장 및 판매농협의 소독실태가 지적된 바, 준수치 않은 업체에 대해 지원정책자금 회수 및 지원중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841 축산51580-11797 위생51580-842 위생51580-843 위생51580-844 위생51580-845 축통51550-237 축영51541-417 축영51564-41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임상관찰 등 강화 지시(경기,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추가발생으로 기추진중인 11개 소독강화 시·군에 화성, 오산, 아산, 연기군(4개) 추가 ○ 가축방역 중앙협의회 개최(17: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발생농장 3km범위 돼지 전두수(5농가/1,527두) 살처분 및 이영우 농장 등 역학적 관련농장 돼지 살처분 추진 ○ 방역장비 및 시설보유 현황 제출(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살기 : 저전압 13대(부족 : 43대), 고전압 5대 - 소독기 : 차량 356대(부족 : 544대), 대인 2,554 	<p>상황51580-76</p> <p>축산51580-1031</p>
6.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구제역발생 관련 출하가축등 처리방법 시달 <평택 평농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중인 가축은 임상검사에 합격된 경우 도축 및 반출 - 지육반출시 운반차량을 철저히 소독 <서울 태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된 지육(소 16두분, 돼지 24두분)은 전량 폐기 - 계류중인 가축(소 4두, 돼지 34두)은 소독실시후 도축 ○ 구제역 추가발생지역 돼지살처분 조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 협의내용 관련 - 평택 버들농장 반경 3km내외 돼지 전두수 살처분 - 반경 500m~3km내 돼지의 우제류 가축은 임상관찰을 지속 실시후 추가발생시 전두수 살처분조치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살처분·매몰 신속 실시 및 관련 규정 준수 시달(경기, 충북) ○ 안성 성원유업 유가공장 관리에 대한 건의 회신(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산 원유는 전량 폐기, 경계지역내 우유는 초고온(132℃, 2초) 멸균처리·가공 ○ 구제역 방역취약농가 조사·선정 및 특별관리(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8개(이천, 여주, 광주, 평택, 안성, 용인, 화성, 오산), 충북 4개(진천, 음성, 괴산, 청원), 충남 3개(천안, 아산, 연기) ○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 추진 농가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단위 구제역 방역요령을 농업기술센터등에서 앰프방송 	<p>위생51580-850, -857</p> <p>위생51580-851</p> <p>위생51580-853</p> <p>위생51574-854</p> <p>상황51580-78</p> <p>위생51580-855</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살처분 추진 철저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살처분대상 양돈농가 설득 및 조기완료 지시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관련 수범·미담사례 홍보 위한 발굴협조 요청 ○ 구제역 살처분농장의 종업원 재취업시 방역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4일 이상 타농장·가축시장등 절대 방문금지 등 	<p>위 생51580-856</p> <p>상 황51580-79</p> <p>상 황51580-80</p>
6.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발생지역 우제류 수매지침 보완통보(제7호)(농협, 판정소, 경기·충북,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제류가축 수매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식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한 수매불이익 조치 · 양돈협회로 하여금 농가홍보 요청 - 소 수매지침중 가공정형·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개선 - 부분육등급표시확인시 등판소에 확인신청 ○ 장마철 대비 경기 용인, 안성지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현지점검 실시(농진청, 기반공사,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6.8(4일간), 2개반 운영(농림부·농진청·기반공사 각 2명) 총 6명 - 장마철 대비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수립여부 - 매몰지별 침출수 배수로 및 우수로 관리상태 등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관련 출하가축 등 처리(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농도축장 계류가축 : 임상검사후 도축·반출 - 보관지육 : 반출허용 ○ 민원회신(도드람 양돈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내 돼지이동(자돈생산농가→비육돈생산농가)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님 ○ 경기 평택 구제역 관련 도축가공육 조치(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강일원) 구제역 발생 7일전 출하·도축 돼지고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폐기처리(소각·매물) 및 보상금 지급 	<p>축 통51550-240</p> <p>축 정51573-351</p> <p>위 생51580-857</p> <p>위 생51580-858</p> <p>위 생51580-859</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축 신고(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미양면 보채리 125 금보농장(장성훈) - 사육두수 : 1,200두, 발생두수 : 5두(모돈4, 자돈1) - 농장관리수의사 신고 : 코에 수포 흔적, 발굽 빠짐, 식욕 및 체온정상 ○ 인도네시아 대표단(축산국장외 3명) 내방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산 피혁·오리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협상(가축위생과장, 검역담당사무관) ○ 구제역 방역관련 감사협조 요청(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일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고하여 물의를 일으킨 진천군 행정주사 이승철에 대한 감사요청 ○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추가방역조치(경기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의 돼지출하시 사용된 차량을 사용한 전용환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 지시 ○ 경기 평택 구제역 관련 방역조치 추가시달(경기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주가 방문한 이종동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버들농장 출하돼지를 도축한 평농도축장 및 평농육가공장에 대한 조치 시달 ⇒ 평농도축장 잠정폐쇄조치 및 수리작업 중지 등(경기) ⇒ 평농육가공장 보관육류 정밀검사 실시(검역원) ○ 가축살처분용 전살기 구입 추진(방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살기 20대, 30백만원(대당 1,500천원) ○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미양면 보채리 125 금보종돈(정성훈)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준비 등 방역조치 지시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추진 철저(농진청, 시·도, 검역원, 관련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지역(이동제한지역)에서는 각종 집회·행사를 자제 - 구제역 등 예찰활동을 제외한 기타 목적의 양돈장 출입 최소화 	<p>6.6 음성</p> <p>위 생51580-860</p> <p>위 생51580-861</p> <p>위 생51580-862</p> <p>위 생51580-863</p> <p>위 생51580-865 6.6일 음성 (위 생-870호)</p> <p>위 생51580-866</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출하 차량관련 농가 특별 관리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 시달(시·도,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농도축장 출입차량 출입 돼지농장 29개(위험도 높음) - 평농도축장 출입차량 출입 소농장 53개(위험도 다소 높음) - 태강산업 출입차량 출입 돼지농장 34개(위험도 비교적 낮음) - 각 농장별 전담방역관 배정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등 ○평택시 구제역 관련 천안 위험지역 돼지 전두수 살처분 완료(충남→농림부) : 2농가 13두(멧돼지 3, 돼지 10) ○경기 평택 구제역 방역관련 이동제한지역 재설정 보고 (경기→농림부) ○구제역 방역관련 농가서한 발송(시·도,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록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천부(젓소15, 한우250, 돼지20, 사슴15) - 발송명의 : 축산국장, 양돈협회장 등 단체장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경기, 충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 직원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역학 - 버들농장 관리수의사의 타농장 관리사항 등 역학 - 버들농장 중국교포 부부가 최근 접촉한 사람들 - 버들농장의 최근 소독사항 등 방역조치사항 등 - 울곡농장에 근무하다가 충북 진천의 종돈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방역조치 검토(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농도축장 출입차량이 방문한 돼지 사육농장(31개소)에 대한 방역조치 관련 검토의견 제출지시 ⇒ 관련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을 버들농장 발생관련 경계 지역의 이동제한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설정한 사유 ⇒ 관련농장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의 도축장 출하 여부 및 도축출하시 도축부산물 폐기 등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0-869 축산51580-1053 축산51580-11894 위 생51580-874 위 생51580-875 위 생51580-876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대책 점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검역대책 추진실적을 정리·분석, 외래성 질병의 유입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인파악 및 예방대책 마련 - 국경검역체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 농축협 조합장 선거연기 지시(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축협 조합장 선거를 이동제한지역 해제시까지 연기 지시 ○ 평택 구제역 관련,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명단 제출 및 살처분 동원인력 관리(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경북,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농가별로 배치한 전담방역관 명단 제출 - 살처분 동원 인력(군병력 제외) 파악 및 관리 ○ 평택 구제역 관련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명단 제출(강원→농림부) : 1개농장 전담방역관 1명 ○ 구제역 발생농장에 동원된 살처분 작업인부 사후 방역관리 강화 조치요청(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곡농장 살처분 참여자가 버들농장에 관여 ○ 살처분 작업 동원인력 관리 강화(경기, 충남, 검역원) ○ 각종 집회·행사시 방역강화지침 준수 철저(경기·충북·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일 지자체장 선거에 따른 홍보 강화 - 집회·행사시 방역강화지침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생51584-877 위 생51580-879 위 생51580-880 축산51580-1103 방역51580-1050 위 생51580-881 상황51580-83
6.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방역조치 검토의견 제출(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생51580-876호('02.6.6)에 대한 회신 ○ 평택지역 구제역 발생 역학관련사항 방역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곡농장 살처분 관계자(신상열) 관련 역학조치 - 평택 통북시장 및 정육점 일제소독 실시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51580-1054 방역51580-106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의심소(젖소)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소재 맘마농장 -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출입통제, 발생농장 및 주변 500m 반경 살처분 준비 등 ○ 구제역 의심젖소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맘마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가축 살 처분 조치 지시 	<p>위 생51584-884</p> <p>위 생51580-886</p>
6.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방역조치 검토의견(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대상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기간 적용 재검토 ⇒ 이동제한기간이 6.27일과 6.15일로 명시되어 있어 해석에 혼돈 예상 ○ 경기 안성 의사구제역 발생 알림(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곡농장 2.8km, 송림농장 700m 위치한 맘마목장 ○ 안성 일죽 맘마목장 관련 방역 조치사항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마목장 출입 집유차량과 관련 경기도에 조치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 알림(시도,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지시 - 국방부, 경찰청 및 타 시도는 이동통제와 살처분 등에 따른 인력지원과 역학조사시 적극 협조당부 ○ 농축협 조합장 선거연기 지시 조치결과 확인(농협) ○ 경기 안성·용인 위험지역 우제류가축 전두수 살처분 검토를 위한 현장 역학조사 실시(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장, 김순재교수, 박봉균교수 ○ 농축협 조합장 선거 연기 지시 조치결과 보고(농협→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축협 선거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p>위 생51580-887</p> <p>위 생51580-888</p> <p>방역51580-1067</p> <p>위 생51580-890</p> <p>위 생51580-892</p> <p>세 회11110-70</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추진 강화(농진청, 시도, 관련협회 및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소독을 통해 구제역 방역 최선 당부 -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방역소홀 책임을 물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은 지육의 시가수준으로 보상할 계획 - 사람접촉과 가축이동 중단, 축사 및 사료·집유차량 등에 대한 소독철저 지도 당부 ○ 평택관련, 특별관리대상농가 및 전담방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51580-869('02.6.6), 880('02.6.6)호 관련, 114농가 36명 ○ 충남 서산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충남,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예덕3구 한우농가(문효순) -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출입통제, 발생농장 및 주변 500m 반경 살처분 준비 등 방역조치 - 반경 500m, 3·10km범위 가축사육현황 파악 ○ 구제역 확산방지대책 추진 철저(농진청, 시·도, 검역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가별 “일일 점검표”에 의한 점검·기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젓소·한우·사슴농가) · 경계지역(양돈·낙농·한우·사슴농가) - 축종별 생산자단체 협조사항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방역추진상황 17:00까지 상황실에 제출 ○ 구제역 발생인근 시·군의 취약농가 특별관리(경기·충북·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농가 특별관리를 위한 농가명단 제출 촉구 ⇒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15개 시·군의 취약농가를 선정하여 특별관리 ⇒ 경기(이천, 여주, 광주, 평택, 안성, 용인, 화성, 오산) ⇒ 충북(진천, 음성, 괴산, 청원), 충남(천안, 아산,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영51583-434 축산51580-11916 위 생51580-893 6.9일 음성 위 생51580-894 상 황51580-8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활동 강화(나, 검역원, 축기연, 각협회, 농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가축 임상검사 철저 (경기, 충북, 농협) - 우천대비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축사소독 강화(공통) -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조사 철저(검역원, 경기도)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 등의 예찰 및 농가 조기 신고 홍보강화 (공통) ○ 충남 서산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음성 통보(충남, 검역원)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 철저(경기, 충북, 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선거기간에도 통제초소를 15개 시·군은 현행대로 운영하되, 선거종사원으로 차출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인원을 지원받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 구제역 방역 취약농장 선정·특별관리 강화(나, 농협,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취약 우제류 농가 선정 특별관리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 취약농가 명단 6.10일 20:00까지 제출요망. ○ 구제역 방역 취약농가 선정·특별관리(경기·충북·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충북은 취약농가 조속 선정 보고 및 충남은 기보고한 농가 전담방역관 선정 보고 ○ 농림부장관, 평택지역 구제역 발생현장 점검(15: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유천동 발생농장 통제초소 점검 소독방역사항 확인, 관계자 독려 ○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51580-875('02.6.6)호에 대한 보고 ○ 구제역 관련 돈육 정밀검사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농장 출하 돼지고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10개 및 충남 1개 정육점 및 버들축산육가공장 ○ 맘마목장(김준수) 역학 관련농장 방역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락회 회원 중 백두사료 차량 운행농가 - 선진사료 차량 이동농장 현황 - 죽산동물병원장 방문농가 - 농우회 회원관련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896 위생51580-897 상황51580-85 상황51580-86 상황51580-87 역학51580-224 방역51580-1069 방역51580-107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위험지역내 젓소농가 관리 촉구(농진청, 경기, 충남, 서울우유, 한국낙농육우, 낙농진흥회, 농협) -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한 안성지역은 안성시 또는 축산위생연구소 인력 활용 - 차량바퀴 소독으로 중복방문으로 인한 농장간 전파위험 방지 	위 생51580-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구제역 관련 축산물 조치 - 버들축산 관련 돼지고기 처리 - 경기도 관내 10개 업소에 보관중인 돼지고기는 소각·매몰 또는 랜더링 처리 및 당해업소 소독실시 	위 생51580-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기간중 구제역 방역관리 대책 추진(경기·충북·충남, 농협) - 위험지역내 투표소 출입구에 부직포 설치, 소독실시 * 경계지역은 소독방제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도로등 소독 	위 생5158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도살 가축사체 적정처리 요청 회신(쓰시모) 	위 생51580-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기간중 구제역 방역관리대책 추가지시(경기·충북·충남, 농협, 검역원) - 투표당일 축산농가의 회동을 자제토록 사전계도 - 투표당일 마을별 “구제역방역농가 행동수칙” 방송실시 	위 생51580-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방역조치(경기·충북, 검역원) - 평택버들농장 직원에 대한 타농장 취업금지 및 관리수의 타농장 진료 자제지시 	위 생51580-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 경기 안성 일죽면 화곡리 일죽GP - 검역원의 정밀검사 완료시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출입통제, 주변 500m 반경 살처분준비등 	위 생51580-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마목장(김준수) 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사항 방역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 상가집 방문, 동락회 회원, 농우회 회원 등 	방역51580-1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우대비 소독등 우제류가축 농장단위 방역강화 	상황51580-88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 경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25번지 소재 일죽GP농장 - 구제역 의심축(돼지)에 대한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위 생51580-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시도,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 경기 안성 일죽 화곡리 소재 일죽GP농장 구제역 양성 - 살처분·소독·이동통제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위 생51580-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내 젓소농가 관리요청(경기) - 인력부족으로 검역원, 서울우유 인력 운영 건의 	축산51580-1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지역 통제초소 소독·운영지침 시달(관련기관) 	위 생5158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 경기 안성축산진흥공사 및 최태광 농장 - 작업장 작업중지, 의심돼지 및 함께 계류된 가축 격리 등 	위 생5158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중앙협의회(7차) 개최(위원) : 6.11 19:00 	위 생51580-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돼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 경기 안성 일죽면 신흥리 소재 승문농장(양희문) 	위 생5158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농장관련 농가 특별관리(경기, 충북, 검역원) - 29개 농장중 이동제한지역 밖 농장의 관리사항 보완·시달 ⇒ 특별관리농가의 이동제한 기간 적용 : 6.15까지 ⇒ 이동제한 기간 중 해당돼지의 매매 등 농장간 이동금지 ⇒ 이동제한 기간중 도축장 출하는 가능한 자제토록 지도하고 부득이 도축장 출하시 지정도축장으로 출하유도 	위 생51580-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종돈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농진청, 시·도, 생산자단체) - 비둘기·까치 포획검사, 17·18번 국도와 주변지역 소독실시 ○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소독실태 점검결과 조치보고(검역원→농림부) ○ 지침, 수칙, 요령 등 정리(통제초소 소독·운영, 농가 행동수칙, 마을방송용 시나리오, 전담방역관 행동요령) 	위 생51580-917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 지휘감독 출장협조(각과,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 지휘감독조를 축산국과 검역원 과장 각 1인씩 2인1조로 운영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지방도로 통제 요청 (경기,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번 지방도로 한시적 통제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통제구간 : 일죽 능국리 - 이천시 경계 · 통제방법 : 안성시 경계에서 장호원방면으로 우회 · 통제기간 : 2002.6.12-6.30까지 ○ 구제역 발생농장 출하돼지 도축 등 역학조사 결과 조치(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일죽 GP농장 돼지가 안성축산진흥공사 도축장으로 출하 사실 확인 및 확인시까지 도축 보류 ⇒ 경기 역학조사 결과 제출(축산51580-11990, 6.12) ○ 경기 평택 구제역 발생관련 특별관리 농가지정 해제(충북, 검역원, 한우리육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소재 한우리육종(주)의 특별 관리농가 해제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통보 및 임상검사철저 (경기, 검역원, 농협양돈양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축산진흥공사 및 승문농장 “구제역 음성” - 수매가축 임상검사 담당 공·개업수의사, 가축방역관 적정배치 ○ 지방선거기간 중 투표소 등 방역관리 철저(경기·충북·충남, 검역원,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천시 출입구 부직포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 또는 손 세척 , 소독장소 별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소독기 등 간이휴대장비를 이용, 전담방역관이 투표참가자 소독 실시 · 소독약을 살포한 일회용 종이수건 사용 및 방역덧신 착용 - 통제초소 대체근무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 인력차출에 따른 통제초소 근무인원의 공백이 없도록 관할 농축협 직원 대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정51500-362 상황51580-91 위 생51580-919 위 생51580-920 위 생51580-921 위 생51580-922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구제역 관련 보관육류 처리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농도축장에 보관중인 냉장지육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5..28-6.1일(도축장 폐쇄조치 당시 계류되어 6.5 도축한 6두 포함)기간중 도축되어 보관중인 지육 전량 폐기 - 평농육가공장에 보관중인 냉장육류 처리 : 전량 폐기 - 기타 평농육가공장에 보관중인 냉동육류 제품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일자별로 구분이 될 경우 버들농장 구제역 발생 7일전까지 도축된 물량은 폐기조치 · 기타 냉동육류는 검역원 정밀검사결과 (검사시료38점 전부 음성) 등을 감안 유통허용 조치 ※ 폐기방법 및 폐기에 따른 보상은 위생 51580-859, -899호를 참고하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절박가축 처리건의 회신(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가축의 부상, 난산 등 긴급한 도축사유 발생시 현지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매몰,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 등 필요한 조치 - 가축공제 가입 경우 공제금액으로 처리, 미가입 경우 도매시장, 도축장 출하 절박가축 가격 평가 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송 시나리오 송부 (농진청,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농장 주인과 관리인 이웃농장 방문, 타축산인과 접촉금지 - 축사내 외부인 출입금지,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과 운전자는 반드시 소독 - 외국인 등 농장관리인 고용시 신분을 확인, 방역교육, 소독 실시한 후 근무 - 남은 음식물 가축사료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끓여서 먹여야 하고, 농장 소독은 매일 1회 이상 실시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924 경기 축산51574-11464 충남 축산51580-1105 상황5158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진청 앰프 방송용으로 차관님 수정후 농진청장실 송부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사료수송 및 집유차량 소독철저(경기·충북·충남, 농협, 낙농진흥회, 사료협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조합, 청주우유, 천안낙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사료운송차량 및 집유차량 소독 철저 및 어길시 운행정지 조치 - 양축가의 차량운행이 많은 이동통제지역내 17번, 38번 국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하여 운행 - 경계지역 운행차량은 필히 고온스팀세차와 소독후 운행 - 운행차량은 소독기 장착하여 농가출입시 차량전체와 운전사 소독 철저 - 사료공장, 집유업체, 유가공장 입구에 소독시설 및 소독조 설치 입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소독실시내역 기록 비치 - 차량운전자는 개별농장 방문후 손, 신발, 피복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 지휘감독 출장 협조(각 과,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2~7.4간 축산국 및 검역원 과장 각1인 2인 1조 지휘 감독조 편성 ○ 구제역 방역 관련, 통제초소 운영협조 재강조(경기,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일 선거와 관련하여 투개표 종사원으로 차출될 경우 농협시군지부 및 지역농축협과 협조, 인력지원을 받아 통제초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 초소운영현황 파악 결과 경기도는 15개 초소 312명 감축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초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구제역 발생농장(일죽GP) 출입 사료차량 방문농장 방역 조치 및 역학사항보고(검역원→농림부) ○ 구제역방역 강화조치 재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방역지역 통제초소 과속방지턱 및 부직포 설치 - 17,38번 국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방제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영51564-448 축정51500-362 상황51580-92 방역51580-1107, -1110, -1113 위생51580-925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추가 공급지원 건의(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장 통제초소 점검결과, 안성·평택·용인 등 소독약 공급 부족 제시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일죽~이천간 331번 지방도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 : 일죽 능곡리~이천시경계(2.2km) - 이천쪽 차량진입은 완전 폐쇄하여 우회토록 하고, 안성방향은 현지주민 차량에 한해 소독후 통행 ○ 구제역 발생농장의 인근농장 예방적 살처분 건의사항 검토 의견 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일죽 이원형(GP농장에서 800m 위치) - 안성 일죽 노정국(GP농장 계열) ※ 경기 축산51580-12018호에 의거 ○ 구제역 소독약품 추가배정 조치(경기, 검역원,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통제초소 점검시 소독약 추가공급 건의에 대하여 경기도는 필요량을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농협은 추가 요청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원활한 공급 지시 	<p>방역51580-1118</p> <p>방역51580-1119</p> <p>위생51580-929</p>
6.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산 축산물 폐기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옥산영농조합법인 관련 도축·가공물량 폐기 - 폐기보상금 타당성 검토 후 방역예산(1731-301)에서 지급 ⇔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출하작업장의 보관축산물 폐기완료 및 보상금 자금 배정 요청(강원도→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기업, 양평축산, 백설축산, 한일육가공 보관물량 : 43,296kg(260백만원) ○ 구제역역학조사를 위한 살처분농장 비둘기·까치 포획검사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경찰서 및 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포획토록 촉구 ○ 민원이첩 회신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김민희(고온인데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이유) ○ 농장 자율소독 등 구제역 방역 추진 실적(농진청, 시·도, 검역원,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시도,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행동수칙(축영51583-434, ‘02.6.8)호” 이행 등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p>위생51580-935</p> <p>축산51574-1043</p> <p>상황51580-94</p> <p>해외51580-364</p> <p>위생51580-940</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지역 적체물량 해소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6.15, 10:00-11:30, 축산물유통과 - 참석자 : 축산물유통과,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양돈협회 및 이천시지부, 낙농육우협회, 용인축협조합장, 용인농가 등 9명 ○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 해제 : 6.15부터 ○ 충남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임상관찰 결과보고 ○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요청(행자부,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 추가 지원계획금액 : 14,175백만원(현재까지 90,841백만원) ※ 충남 소독약품 및 방역재료비 요청(축산51580-1133. '02.6.16) ※ 경기 구제역 방역비 지원건의(경기51580-11760/'02.5.30, -12019/6.14) ○ 구제역 역학조사를 위한 비둘기·까치 포획 협조(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경찰서에서 총기류 등이 영치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바 관할경찰서의 적극 협조 요망 ○ 구제역 부족인력 파악 협조(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와 방역등에 소요되는 인력 및 부족인원을 파악하여 지급 제출 요망 ○ 살처분·매몰 동원인력에 대한 소독등 철저 지시(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의·방역복 등은 작업종료후 소각 등 폐기처리, 신발 휴대품 등은 철저히 세척 소독 - 동원인력 최소 14일이상 타농장, 가축시장, 양축농가 모임에 방문 금지 - 작업후 목욕, 손톱 밑까지 씻고, 코풀고, 가래침 뱉을것 ○ 구제역 관련 지정도축장 소독실시 철저조치 보고(검역원→농림부) ○ 충북 진천 구제역 경계지역 해제 후속조치 (농진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검역원, 축기연, 농협, 각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지역의 경계지역 6.15일부터 해제 - 충북도는 임상관찰,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농장 및 출입 차량 소독, 도축검사 강화 등 방역관리 지속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51580-1269 축산51580-1130 위 생51580-943 비 상51580-28, -26 상 황51580-95 상 황51580-96 상 황51580-97 방 역51580-1138 위 생51580-94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지도 추진요청(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앰프방송 듣지 못하는 원거리 농가에 대하여 전화등으로 구제역방역 기술지도 ○ 경기 용인지역 특별관리농가 관리기간 검토지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9이후 4주간 추가발생 없으나 특별관리 장기화에 따른 농가피해의식 고조 및 전담방역관 운영에 애로 ○ 축산농가 소독강화 홍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 추진과정에서 농가의 소독의식 약화 - 농가의 정부의존적 소독·방역의식 타파위한 계도실시 	<p>상황51580-98</p> <p>위 생51580-947</p> <p>위 생51580-948</p>
6.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지역 구제역발생에 따른 평농도축장 폐쇄조치해제 및 출하도축장 지정(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자로 폐쇄조치 해제 ○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상황 보고(경기→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주변 8개시군 초소현황 : 83개소 ○ 구제역 방역비 지원건의 회신(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알림 	<p>축산51580-12045</p> <p>축산51580-12050</p> <p>위 생51580-950</p>
6.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돼지콜레라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급 철저(경기, 강원,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돈 : 농협조사 성돈산지가격 기준, kg당 가격산정 - 젖소 : 고능력우는 연평균 산유량 7,486kg에 비해 12% 이상 초과하여 산유하는 젖소 - 사슴 : “월간한국양육” 일반사슴 농장 분양가격 기준 ※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대책비 소요추정(안) ⇒ 측정과 제출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고삼면 쌍지리 795, 한샘농장(최재충), 돼지 3두 ⇒ 구제역 음성(6.19) / 경기, 검역원 	<p>위 생51580-958</p> <p>경기축산51580-11697('02.5.25)</p> <p>위 생51580-961</p> <p>위 생51580-96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발생관련 가축입식자금 지원계획(경기·강원·충북·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로 살처분한 해당농가 ※ 발생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살처분 두수×축종별, 성장단계별지원기준액 한도내에서 용자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후 일시 상환 -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 자금용도 : 가축입식비에 한함 ○ 구제역 발생농장 일제 소독계획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등 18개 농장 소독실시 	<p>축영51521-459</p> <p>방역51580-1149</p>
6.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보, 구제역 발생지 용인·안성·평택 점검(수행:장기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가축수송차량점검 : 지정차량 아님, 톱밥 깔지않고 운행 등 지적 - 소독초소관리 점검 - 경기도 건의사항 : 안성부시장 및 경기 수의계장, 외상 구입소독약에 대한 소급 정산 요청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음성"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고삼 한샘농장 돼지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 당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등 해제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수매시 방역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전 12시간이상 절식, 운송차량의 분뇨등 누출방지 - 농가진출입 및 도축장 진출입시 수매차량 소독실시 등 	<p>위생51580-963</p> <p>상황51580-99</p>
6.2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지역 수매대상 농가 특별교육(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간 이상 절식준수, 수매차량 바닥에 톱밥을 깔 것 등을 소집교육(30농가, 백암면사무소) ○ 용인지역 특별관리농가 전담방역관 변경지정 보고(경기→농림부) 	<p>위생51580-860</p> <p>축산51580-1211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0(목)	○강우대비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상황51580-100
	-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 및 임상관찰 철저지시	
	○구제역 방역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상황51580-101
	(경기, 농관원, 농협)	
	- 경기 안성, 용인, 평택지역 이동통제초소 운영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협조요청(농관원 : 45명, 농협 : 45명)	
	-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6.21~30, 08:00~19:00	
	※ 지원인력 사전 교육실시 : 6.20, 18:30	
	⇒ 농관원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명단 제출(6.21)	
	○마을애프방송 이행철저 촉구(시·도)	상황51580-102
	- 우리부 현장점검시 일부지역에서 마을애프방송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군의 책임 하에 애프	
	방송 철저 지시	
	○구제역 방역 조치사항 이행 철저(경기, 용인, 안성, 평택)	상황51580-103
	- 농장주가 농장 및 외부 출입시 구제역 발생지역 행동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농가제도 강화	
	- 농가수칙 등 마을애프방송 철저 이행 등	
6.21(금)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보강 추진 철저(시·도)	위생51580-968
	○구제역 방역지역 통제초소 운영지원 추진(경기, 농관원, 농협)	위생51580-972
	-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02.6.21~30, 05:00~17:00	
	- 통제초소 근무자 교육(6.21, 10:00, 용인, 안성, 평택 상황실)	
	: 농림부 축산국 서기관 3명이 교육실시	
	○구제역 살처분 장비 사후관리 철저(경기, 검역원, 농협,	위생51580-973
	양돈협회, 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육우협회)	
	- 장비 및 인력 관리	
	○ 구제역 방역 관련 감사촉구(충북)	상황51580-104
	- 위생51580-860('02.6.5)호로 진천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어 감사	
	재촉구 지시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보강 추진철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가축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가축방역인력 채용 또는 충원 ○ 구제역 발생농장 일제점검 실시(경기, 충북, 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었던 사람, 장비 등에 대한 조치사항 일제 조사후 현지파견관의 확인후 6.24일까지 보고토록 조치 ○ 구제역 방역관련 감사자료 제출(충북→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51580-860(6.5), 상황51580-104(6.21) 관련 ○ 진천지역 위험지역내 우제류 가축 임상검사 결과 완료 보고(충북→농림부) : 77농가 	<p>위생51580-968</p> <p>위생51580-974</p> <p>감사07000-775</p> <p>축산51580-1311</p>
6.2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지역 특별관리 일부해제 조치(검역원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원삼면은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속 실시 - 안성과 인접한 용인 백암면은 6.30일까지 특별관리 실시 ○ 구제역발생농장 인근농장 출하 육가공품에 대한 유통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이월 태희농장에서 출하되어 냉동보관중인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유통허용 	<p>위생51580-986</p> <p>위생51580-987</p>
6.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이천 경계지역내 돼지이동 질의 보완지시(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가 질의한 경계지역내 돼지이동 가능여부에 대한 방역조치 계획 보완 제출지시 ⇒ 이동 사유, 이동거리, 수송·입식방법, 사후관리 등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긴급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정밀검사 판정시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차량·사람 출입통제, 발생농장 및 주변 500m 반경 살처분 준비 등 조치 ○ 경기 안성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농장의 구제역 의심돼지에 대한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매몰 조치 	<p>위생51580-989</p> <p>위생51580-990</p> <p>위생51580-992</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중앙협의회(8차) 개최(협의회 위원) - 일시 및 장소 : 6.24(월), 16:30, 대회의실(421호) - 회의안건 : 구제역 방역대책 	위생51580-993
6.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나. 검역원, 국방부, 경찰청, 축기연, 각협회 등) - 6.23일 신고된 경기 안성 일죽면 신흥리 신흥농장(최근섭)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 - 경기도와 검역원은 “행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농장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조기완료, 소독,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 강화 - 국방부와 경찰청은 경기도에 이동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적극 협조 	위생51580-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관련 화신방역 회원농가 특별관리 (경기, 검역원) -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일죽 GP농장(대표: 이원형) 및 신흥농장(대표 :최근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검역원의 역학조사결과 동 농장들은 화신방역회 회원으로서 회원농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바, - 화신방역회 회원농가에 대한 전담방역관지정, 특별임상 관찰,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담방역관 명단 제출 	위생51580-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결과 조치 및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철저 (경기,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 제8차 가축방역중앙협의회시 현행대로 살처분정책 유지 - 발생농장 3, 10km 범위 재설정, 500m내외 살처분 조치, 500m~3km 사육돼지 살처분, 기존 3km반경내 살처분 제외되는 가축 전담방역관 지정 특별관리 - 살처분 명령 미이행농가 강제집행, 해당농가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처하게 됨을 사전통고 조치 - 구제역발생농가 행동수칙 미이행농가 최대한 불이익 조치 	위생51580-996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진천 구제역 위험지역 혈청검사결과 검토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청검사 결과 한우 2두에서 LPB-ELISA 항체반응 나온데 대하여, 이동제한 해제시 방역상 문제없는지 검역원에 검토지시 ○ 통제초소 소독장비 운영철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장비 고장시 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화연구소 또는 제작업체에게 수리의뢰 및 수리완료시까지 소독방제차량으로 대체하여 소독 ○ 살처분 동원인력·장비등에 대한 점검결과 제출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51580-974(6.21)호에 의한 구제역 살처분 발생농장 살처분 작업동원 인력과 장비등에 대한 점검표 제출촉구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철저히지시(경기,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농장 주인·관리인들은 다른 축산인들과 접촉금지 - 신흥농장 경계지역내 양돈농가별 전담공무원 지정·점검 ○ 안성-이천간 331번 지방도로 통제구역내에 위치한 이천 산림휴양타운을 폐쇄 또는 외부왕래 제한토록 산림청에 요청 	<p>위생51580-997</p> <p>위생51580-1005</p> <p>위생51580-1007</p> <p>위생51580-1010</p> <p>상황51580-110 ⇒ 산림청 회신 ; 지원51580-469 (‘02.6.26)</p>
6.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농장 관련 도축장 등 방역조치 (경기, 검역원, 0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일자(가공일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일까지 도축물량은 박스 소독조치 후 유통 ⇒ 6.19·22일 도축물량은 전량폐기 ⇒ 6.20·21일 도축물량은 유통허용 - 일자별 구분이 안되고 위험·경계지역으로 구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산 전량폐기, 경계지역산 소독조치 후 유통 - 도축·가공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및 가공장 보관물량 전량 폐기 - 폐기방법 및 도축장 소독요령 등 방역조치 통보 	위생51580-101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경기, 농협,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에 소독약품비(축발기금 보조금 : 574,000천원) 지원 ○ 이동통제초소 소독관리 강화(경기도,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초소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지시 ⇒ 발판소독조 및 간이분무기로 신발 및 의류소독 ⇒ 세숫대야 등을 이용한 손 세척·소독 실시 ○ 경기 평택 등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추진(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중 살처분 종료일부터 3주 이상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 검역원과 협의하여 이동제한 추진 ○ 경기 안성지역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추진(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농장 중심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하여 향후 2주간 소독 실시 - 이천 관할지역은 자체 소독계획을 수립·추진 	<p>위생51580-1013</p> <p>위생51580-1014</p> <p>위생51580-1015</p> <p>위생51580-1016</p>
6.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이천지역 경계지역내 우제류가축 사육농가 행동수칙 이행점검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일죽 소재 신흥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경계지역내 1826농가에 대한 구제역 행동수칙 준수여부 점검후 일일 상황 보고 - 점검시 축주 및 관리인에 대해 이동제한 지역 외출 자제, 귀가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조치 당부 ○ 구제역 발생관련 이동제한지역내 소 수매지침 보완통보(제13호) (경기, 충북, 충남,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박우 수매가격 500kg이상 정상수매가의 80% - " 400kg이상 500kg미만 " 60% - " 300kg이상 400kg미만 " 40% 	<p>비상 51580-111</p> <p>축통51550-263</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죽GP농장 자돈사육농장 돼지 이동 건의회신(경기, 일죽GP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죽GP농장 자돈사육농장 돼지의 경계지역간 이동은 동농장의 구제역 발생(6.10)후 최대잠복기간(14일)이 지났으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간 7일을 포함 6.30일까지 이동제한 - 7.1일이후 경계지역내 이동은 이동 허용 대상농장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허용 ○ 구제역 방역비 추가지원 (경기,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복, 주사기 등의 재료비로 100백만원 지원(경기 100, 충북 10) 	<p>위생51580-1017</p> <p>위생51580-1019</p>
6.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살처분용 전살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하여금 가축 살처분용 전살기 20대를 구입, 살처분 가축발생시 해당 지역에서 사용 계획 ○ 각종 집회·행사시 방역강화지침 준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일 한-터키 경기도 길거리 응원에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등 참여자제 계도 마을방송 실시, 행사장 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및 차량소독 실시 철저 ○ 구제역 발생지역 야생동물 이동차단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서식하던 야생동물이 인근 시·군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막 설치 및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야생동물 포획, 수과원으로 이송조치 ○ 구제역 발생지역(안성) 집회·모임 금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일 한-터키전 경기도 길거리 응원자제 등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모임이나 집회 금지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추진관련 경위조사 보고 지시 	<p>위생51580-1023</p> <p>상황51580-113</p> <p>상황51580-114</p> <p>상황51580-115</p> <p>상황51580-116</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6.2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방역규정 위반사항 처리(경기도,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농장(신흥농장) 축주(최근접)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위반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결과 보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관련 가축의 이동제한 명령 위반 ○ 구제역 발생농장 인접지역 우제류가축 처리 건의 회신(경기도,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 백암면 옥산리 손혁락 농가 한우 25두 도축 수매건에 대한 회신 ⇒ 한우 : 수매·도축 원칙, 송아지와 오염우려 부산물은 랜더링 또는 매몰처리 ⇒ 폐기오염물의 보상은 살처분 등 보상금에서 지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입식자금 등도 발생농장 인근 살처분 농장의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51580-1027 위생51580-1031
6.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관련 마을앰프 방송문안(예시) 송부(안성, 평택, 용인, 천안, 아산, 0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소독 및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마을 방송용 문안(예시) 송부 ○ 강우대비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나, 검역원, 축기연, 진흥청, 생산자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 및 임상관찰 철저지시 ○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정밀보강 조사 실시(검역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일죽 신흥농장(최근접, 41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통에 필요한 위법사실 보강조사 후 결과 제출 ○ 가축방역관련 위반자 처분 재검토 지시(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방역 송롤자에 대한 훈계 조치 재검토 ○ 구제역살처분 가축매몰 및 사후관리 철저(나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 구제역 발생지역 연휴근무 철저 (나10,12,13,농협,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에 긴장감을 갖고 구제역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51580-118 상황51580-119 상황51580-120 위생51580-1033 위생51580-1034 상황51580-121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지역 연휴근무 철저 (나10,12,13,농협,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에 긴장감을 갖고 구제역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할 것 ○ 장마철 대비 및 살처분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등 구제역 방역철저 지시(시·도,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시작전 오염물 제거 및 주변정리 등 마무리 작업 조속 완료 - 살처분농가의 농장주·종사자의 농장밖 출입자제 및 타인접촉금지(최소 2주동안) 지도·감독 철저 - 설처분·매물 해당도에서는 장마철 대비 가축매몰지에 대한 배수로 설치 등 자체계획 수립·시행 등 ○ 경기 안성지역 소독이행 철저 재지시(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농가 예찰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 상황실 및 이동통제초소 근무자는 연휴기간중 긴장상태 근무 촉구 ○ 경기 가평 의심축 신고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수과원의 정밀검사 판정시까지 신고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 출입통제, 반경 500m 지역 살처분 준비 ○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방역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에 의거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계획을 수립·제출(방역지원본부) 	<p>상황51580-121</p> <p>구제역 비상 51580-122</p> <p>위생51580-1035</p> <p>위생51580-1036</p> <p>위생51580-1037</p>
7.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가평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음성” 통보 (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가평군 외서면 상천3리 741(수리재마을), 이대우 농가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 판정 - 이동제한 등 제한조치를 해제하되, 임상예찰활동 및 축사소독 등 차단방역은 지속 실시 ○ 가축방역위반 안성 신흥농장(최근섭, 41세) 고발조치(안성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구제역발생 위험지역내 가축이동 제한 위반 등) - 관련조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제18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해외역학전문가 구제역 발생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안성울곡농장 등을 방문하여 역학사항 조사 - 해외역학전문가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초소 통행차량·사람 등에 대한 통제 철저 · 3km이내지역 우제류 가축(특히 소) 특별관리 지속 유지 	<p>위생51580-1038</p> <p>위생51580-1035</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7.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추가지원(1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37백만원, 용인 30백만원, 평택 20백만원, 음성 20백만원 ○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방역행동수칙 준수 여부 점검철저 	<p>위생51580-1040</p> <p>상황51580-124</p>
7.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살처분 지역농가 행동수칙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천매 : 안성 2천매, 용인·평택 2천매, 기타 1천매 ○ 영국의 가축질병 관계법령 수집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도된 “구제역 농장주 15년 사육금지 처분” 기사 내용과 관련, 근거법령 및 판례 등 파악협조 ○ 태풍 “라마순”대비, 구제역 방역철저 및 농가피해 예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방역 농가행동수칙”에 따라 비오기 전·후 축사 소독 실시 - 가축매몰지에 대한 배수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등 	<p>위생51580-1047</p> <p>축정51500-</p> <p>구제역비상51580-125</p>
7.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시 방역조치 관련 의견제출(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 발생함에 따라 소독의 필요성 여부 및 이동통제 초소 운영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태풍대비 이동통제초소 운영 요령 통보(경기,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초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비가 적게 올 경우 : 정상 운영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 차단, 소독장비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태풍이 통과할 때까지 소독 필요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비가 적게 올 경우 : 정상 소독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차량 소독 생략, 비가 그치면 바로 소독재개 ○ 경기 평택·안성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추진(경기,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지역 우제류가축의 혈청검사를 조기 완료(검역원) - 경기도는 안성 원발농장을 비롯한 6개 권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문제를 검역원과 적극 협의, 구제역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이동제한 해제 절차 추진 	<p>상황51580-126</p> <p>상황51580-127</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7.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지 사후 관리 실태 및 조치사항 일일보고(경기, 안성, 용인, 평택상황실) - 매몰지 관리상태 매일점검후 점검실적 매일 17:00까지 보고 	상황5158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모든 살처분 보상금 관련기관협의(15:00,축산국장실) - 임신모돈 평가관련 제시보상금에 대한 의견 수렴등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살처분 돼지(모돈)보상가격 평가 협의(농진청, 경기, 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등) - 일시 및 장소 : '02.7.9, 18:00, 대회의실 - 협의안건 : 구제역 살처분 돼지(모돈)가격 평가방법 등 검토 	
7.1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방역규정 위반사항 후속조치 - 안성 신흥농장 고발취하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경위조사 조치 	위생51582-1074
7.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방역규정 위반사항 후속조치 - 신고 지연된 안성 울곡농장, 평택 버들농장과 이동제한 조치 위반한 안성 신흥농장에 대하여는 역학조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 정부 지원금 지급 보류조치 계속 유지 - 기타 13개 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 정상적으로 추진 ○ 가축시장 재개장시 소독 철저 촉구 - 전국 가축시장이 자율적으로 휴장하였다가 최근 진천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개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개장시에는 경매장, 진출입차량, 가축,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방역조치 이행 ○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비 보상마련 건의회신 ○ 구제역 살처분 돼지 보상가격 평가방법 등 협의 	위생51582-1078 축통51554-282 위생51580-1082 위생51580-1085
7.1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관련 회의개최 - 7.15(월) 10:00, 대회의실, - 참석 : 검역원, 시·도, 관련기관 ○ 장마철 대비 매몰지 사후관리 및 구제역 방역관리 철저 추진 - 호우 전·후의 매몰지 유실상태 점검·보수 등 매몰지 관리 철저 및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철저 이행 지도당부 	위생51580-1090 상황51580-129
7.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내 우제류 사육농가 축사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 경기도와 농협에 안성·용인·이천지역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방역 농가행동수칙에 따라 축사소독을 매일 1회이상 실시토록 지도 촉구 	상황51580-130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7.15(월)	○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하수·토양 환경조사 결과 통보(농촌 용수과→축산정책과)	용수51320-489
7.16(화)	○ 가축질병방역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마련 회의 - 일시 및 장소 : 7.16 15:30, 축산정책과 - 참석 : 축산정책과장, 수과원 방역과장, 농협 컨설팅실장, 방역지원본부 사무국장	축정51500-435
7.19(금)	○ 장마철 대비 매몰지 사후관리 및 구제역 방역관리 철저 추진 - 호우 전·후의 매몰지 유실상태 점검·보수 등 매몰지 관리 철저 및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철저 이행 지도당부 ○ 구제역 발생관련 축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금 및 처리 비용요청(경기→농림부) - 신영축산 542,408kg 2,552,000천원 - (주)평농 19,200kg 175,000천원 - 벼들축산 14,278kg 61,000천원 - 정육점등 238kg 1,000천원 - 폐기처리비 750,076kg 60,000천원 ○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대책 마련 요청(낙농육우협회) - 농협조사 산지가격이 현지조사가격과 상당한 차이	상황51580-131 축산51580-12476 한낙육02-1-162
7.20(토)	○ 구제역 마무리 방역·소독 및 농가지도 철저 - “구제역 방역농가 행동수칙”에 따른 축사내외부 소독 철저, 농협은 지역농협직원을 통해 특별관리농가 적극 지도 ○ 안성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동향 보고(경기→농림부) - 안성 축산인 구제역 비상대책 위원회 - “소 구매가격을 산지시례로 보상하라” ○ 평택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이동제한(위험지역) 해제 알 림(경기→농림부) - 7.19일부로 평택(신평동, 비전2동), 안성(공도읍)	상황51580-132 축산51580-12492 축산51580-12490
7.22(월)	○ 장마철 대비 매몰지 사후관리 및 구제역 방역관리 철저 추진 - 호우 전·후의 매몰지 유실상태 점검·보수 등 매몰지 관리 철저 및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철저 이행 지도당부 ○ 안성시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관련 추가 질의사항 회신 내용 보고(검역원→농림부) ○ 살처분 가축(젓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요청 건의(포천 축산발전연대모임→농림부)	상황51580-133 방역51580-1340 02-7-2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7.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농장 입식시험 방법 통보(경기, 충북, 충남, 검역원) - 젖소농가 : 어린 일령 소 2두, 염소 3두 - 돼지농가 : 돼지 돈사별 2-3두, 염소는 농장당 3두 ⇒ 돼지일령 : 60-70일령 ⇒ 염소 3두는 발생돈사에 입식 ⇒ 시험입식 돼지는 구제역 발생 돈방에서 최소한 14일 이상 계류 	위생51580-1125
7.2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중간결과 보고(검역원→농림부) - 역학조사위원회 개최 및 역학조사 중간결과 평가 - 7.23(화) 15:00~18:50 - 역학조사위원 13명(총 15명) ○ 경기 안성·용인 구제역 1차 경계지역 혈청검사 결과 송부 보고(검역원→농림부) - 504농가 3,255두(소 335/1,349, 돼지 128/1,742, 염소 41/164) - 3농가 프로방(안성 대덕 황의성, 금광 임양재, 삼죽 이관술) 	역학51585-291 해외51580-455
7.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 정밀검사 판정시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필요조치 실시 ○ 안성·용인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이동제한 해제 알림(경기→농림부) - 7.24일부로 안성(삼죽면, 죽산면, 보개면, 고삼면, 금광면, 양성면, 대덕면, 안성1동·2동·3동), 용인(원삼면, 백암면) - 3개 농가 제외(프로방 대상 ; 황의성, 임양재, 이관술) 	위생51580-1145 축산51580-12562
7.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알림(검역원, 경기) -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이며, 해당 농가의 프로방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방역조치는 유지할 것 	위생51580-1151
7.2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비상대책상황실 변경 통보(각과, 검역원 등) - 8.1일부터 가축위생과로 이관·운영 - 구제역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상황 보고 	상황51580-136
7.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이천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이동제한 해제(경기→농림부) - 2농가 제외(이천 모가 송병학, 이천 설성 지원영) - 2개시 8개면, 7.28일부 해제 	축산51580-12598

일시	주요내용	비고
8.02(금)	○ 구제역 발생농가 지원조치(농협중앙회) - 구제역 발생농가 중 3개 농가(울곡, 신흥, 버들농장)를 제외한 13개 농가에 대하여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조치토록 시달	위생51580-1173
8.03(토)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집회자체 지도 요청(경기, 농협,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 한국 농업경영인 안성시 연합회 규탄대회 예정 - 안성 시민회관앞 14:00~, 1,200여명 참여 예정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집회금지 협조요청(한농연) ○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집회자체 요청(한우협회) - 8.6일 집회강행시 자체 세부방역조치 수립·시행 - 향후 한우농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귀책사유는 한우협회에 있음	위생51580-1176 위생51580-1178 위생51580-1179
8.05(월)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지침 보완 시달(경기,충북도) - “구제역긴급행동지침”,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거 지급됨 - 살처분 가축이 사육된 지역에서 최근 1개월이내 거래된 가격을 조사, 상한가격 결정	위생51580-1179
8.06(화)	○ 민원회신(한병우) - 살처분 보상금 지급건 ○ 충북 진천 유전자원(GP종돈장)의 살처분 F ₁ 자돈 종돈 인정(충북, 유전자원) - 종돈인정 : 종축개량협회에서 F ₁ 혈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F ₁ 자돈 인정 - 보상두수 : F ₁ 자돈의 폐사율, 분양비율 등을 감안 ○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현황 제출지시(경기,충북,충남) - 7월말 현재 사후관리현황 ○ 구제역 종식선언을 위한 혈청검사 계획 송부보고(검역원→농림부) - 도축장에서 소 1,000두, 돼지 9,000두 ○ 구제역 종식선언을 위한 혈청검사 계획 조정(검역원) 및 보완시달(각 시·도) - 해외 51580-467호에 의한 검사계획은 SOP상 해제조건, 전국적 종식선언, OIE 규정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구제역 젖소 살처분 보상관련 건의내용 송부(서울우유, 포천축산연대)	위생51580-1185 위생51580-1186 위생51580-1157 해외51580-467 위생51580-1189 위생51580-1184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8.0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관련 가축이동제한 해제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일자 : 2002.8.7 - 해제지역 : 안성(일죽, 죽산, 삼죽), 용인(백암), 이천(설성) ○ 구제역 살처분 가축 피해 보상 건의회신(농림부→안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농가 생계비, 제반경비 국비지원건 	<p>축산51580-12681</p> <p>위생51580-1199</p>
8.1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소재 종환농장 -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조치 지시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 산정기준 누락내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살처분 모든 가격 평가액 산출방식 수정 	<p>위생51580-1204</p> <p>위생51580-1201</p>
8.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구제역 의심축 검사결과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성 소재 종환농장 검사결과 음성 판정 	위생51580-1205
8.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안성, 용인 2차 경계지역내 항체반응농가 프로방검사 결과 보고(검역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병학, 지원영 농가 프로방검사결과 각각 음성 	해외51580-487
8.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종식 및 평시방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완전 종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 - 구제역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종료 - 구제역·돼지콜레라 평시방역체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역 활동의 적극적 추진 당부 	위생51580-1218
8.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주간보고 실시 - 보고일시 : 8.24일부터 매주 토요일 12:00까지 - 보고기관 : 시·도, 검역원, 방역본부, 농협 - 보고내용 : 구제역 방역추진실적 및 계획 ○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매몰지(농장) 사후관리 보완요청 (검역원→경기,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 매몰지 관련사항 일죽 GP농장은 매몰지 지반침하로 복토 등 보수가 필요 제일제당 농장(손경식), 송림농장(송병훈), 일죽 GP농장(이원형), 신경순농장, 김중태농장은 매몰지 경고표시판 미설치로 표지판 설치 필요 - 구제역 발생농장 등 살처분 농가 공통사항 농장내 잡초제거 및 소독실시 축사내외, 분뇨처리장, 매몰지 주변지역에 살충제 살포 	<p>위생51580-1226</p> <p>방역51580-1469</p>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8.20(화)	○ 구제역 살처분 모든가격 산출관련 협의회 개최 - 8.21 17:00 축산국장실, 모든가격 산출방식 검토 회의	위생51580-1231
8.21(수)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 조기집행 촉구 (농림부→경기·강원·충북·충남도) - 구제역 살처분 모든가격 평가액 산출방식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 평가 집행 촉구	위생51580-1233
8.23(금)	○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집행추진 - 신고지연, 방역조치위반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율에 의거 보상금 지급토록 조치	위생51580-1173
9.09(월)	○ OIE 구제역 청정화 보고를 위한 혈청예찰계획 송부보고 (검역원→농림부) - 당초 검사완료기간인 2002. 12월에서 9월로 변경 조기완료 - 총검사물량 : 1,904농가, 9,472두	위생51580-1176
9.10(화)	○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및 입식시험 방역지도 보고(검역원→농림부) - 9.11~12일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방문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실태 및 발생농장 입식시험 추진사항 등 확인·지도	방역51580-1583
10.5(토)	○ 구제역 발생농장 입식시험 추진사항 방역지도 및 점검결과 보고(검역원→농림부) - 경기도 입식시험 대상농가 방역지도 및 점검 - 20개 입식대상 농장중 울곡농장(유창주), 버들농장(강일원)을 제외한 18개 농장이 입식시험중임	방역51580-1712

해외 구제역 역학전문가 조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부 방역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실시

○ '02.6.29~7.4일간 조사실시

※ 전문가 약력

- Dr.Graeme Garner : 호주 농무성 역학관련 수석연구책임관
- Dr.Graham Mackereth : 뉴질랜드 국립질병조사센터 (National Center for Disease Investigation)역학전문가
- Dr.Sherrilyn Wainwright(女) :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사처(APHIS) 수석 역학전문가

□ 조사결과

① 구제역 바이러스의 근원

-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형 (Pan Asia O1) 이나 Strain과 source가 다르므로 최근에 유입된 것 같음.
 - 오염된 사람 또는 물품을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중국, 몽고에서 퍼지는 것과 같은 것임
- Pan Asia O₁ 형은 매우 병원성이 강하므로 검역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음
 - 일본,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유입되었음
- 검역만으로 구제역과 같은 외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는 없음.
 - 축산농가들이 방역당국에 협력하고 자기 농장에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구제역의 전파

-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금번 발생에 있어서 주요 확산 원인으로 보임
 - 몇몇 사례(1-2건)에서는 단거리 공기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생축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라는 증거는 없음.

- 2000년도에는 소에서만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로 돼지에서 발생한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이전에 감염돼지가 살처분되어 옆의 소 사육농가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임.
 - 신속한 진단과 살처분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에서 온도 25℃ 이상 습도 60% 이상일 때 바이러스 활력이 떨어져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기중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생존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기전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임
 - 그러나, 오염된 축사나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③ 방역프로그램의 유효성

- 살처분정책과 이동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가 전파를 억제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
 - 동물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여 보여준 능력과 완벽함에 감명을 받았음.
 - 새로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은 신속한 확진과 감염된 양돈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을 가능케 하여 발생건수를 한정시키는데 핵심적 요소였다고 믿음.
 - 한국은 진단 및 살처분을 영국과 비교할 바 없이 짧은 시간에 조치했으며,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처럼 빨리 조치할 수 있었으면 함.
- 수의과학검역원의 감염농장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은 헌신적이었으며 자료는 충실하였음.

④ 예방접종의 타당성

- 금번 발생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할 필요가 없음
 -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은 사유
 - 돼지에서 접종한 후 면역을 획득하는데 수주(2-3주)일이 소요됨
 - 최초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때 이미 다수의 농장이 감염되어 있었다고 봄
 - 질병이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음

- 발견 당시 최소 4개 농장이 잠복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발농장 주위에 대한 예방접종은 감염을 은폐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백신접종팀이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음.
- 예방접종하면 예찰활동에 저해요인이 되고 차후 비발생국 지위 획득에 시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음.
- 예방접종은 임상적 발생건수 및 초기에 도축할 가축의 수를 줄이는 등 장점이 있으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할 수는 없음

⑤ 추가발생 가능성

- 전파위험은 벗어났다고 보며 시간이 갈수록 위험성이 낮아지나, 트럭 등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앞으로 1~2곳 추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함

⑥ 바이러스 유입방지 방안

- 방역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농가, 국민, 정부가 함께 유입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구제역 위험을 국민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입출국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기내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 뉴질랜드는 기내에서 비디오로 홍보하고 입국신고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으며 농가방문, 농산물 반입여부를 허위로 작성시 처벌을 받게 됨. 모든 수화물은 X-ray 검색을 받고 탐지견을 동원해 음식물을 찾아내며, 이와 같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음
- 중국 등 외국인이 방한할 때 주지시키고 가급적 외국인들이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시키는 것이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임.
- 호주, 뉴질랜드, 미국 모두 구제역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권고사항

① 조기신고체계 및 농가의 자체방역 조치 강화

- 의심축의 조기 추적·보고를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할 것.
- 또한 종업원과 방문자의 위생, 가축의 신규입식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양축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

② 자료분석 방법 등 역학조사기법 추가 개발

- 발생시기의 방역정책 결정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역원 역학조사과는 자료의 분석과 제시 방법을 추가로 개발할 것

③ 추가발생시 3km 지역내 소에 대한 위험평가 및 살처분 검토

- 3km 구역내에 사육되는 소와 관련된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의 예방적 살처분을 고려

※ 무조건 살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도 세밀하게 관찰하라는 취지임

④ 세척·소독 및 고위험 물품에 대한 표준처리 방법의 지속 적용

-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염농장내의 위험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실행절차(SOP)의 지속적인 활용을 지지
- 세척, 소독 및 감염농장내의 고위험물품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

⑤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 필요

- 금번 사례에서는 기술적으로 예방접종 필요성이 없다고 봄.
- 그러나, 구제역 박멸계획의 일환으로, 가축방역당국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평가·대비하는 것이 필요

⑥ 국경검역 체계의 지속 유지

- 국경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
- 공항·항구에 도착하는 승객과 연관된 위험의 평가를 고려할 것을 권고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Team on the Epidemiology and Control of the 2002 Foot and Mouth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Dr Graeme Garner¹, Dr Graham Mackereth², Dr Sherrilyn Wainwright³

Animal Health Science Unit, OCVO, AFFA. GPO Box 858 Canberra ACT Australia
graeme.garner@affa.gov.au

National Centre for Disease Investigation, MAF. Box 40742 Upper Hutt, New Zealand.
Mackerethg@MAF.govt.nz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 USDA, PO Box 848 Greenport NY 1195 USA
sherrilyn.h.wainwright@aphis.usda.gov

Summary

An International Epidemiology Assessment Team was invited to assess the FMD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detection of FMD in May 2002. The Team considered the following issues:

Source of the virus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program

Usefulness of vaccination in this outbreak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disease.

The Team recognises that Type O₁ Pan-Asia FMD virus is highly virulent and has shown the ability to survive and persist sufficient to enter countries despite good quarantine procedures. Examples include introductions to Japan, United Kingdom and South Africa.

Whil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good quarantine system, quarantine by itself cannot guarantee that an exotic virus like FMD will not be introduc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livestock producers work with authorities, and continue to be aware of the need to for appropriate biosecurity measures on their farms to protect themselves.

The Team agrees that the virus causing this outbreak in Korea is different to that responsible for the 2000 outbreak and is most likely a recent introduction. Phylogenetic analysis by NVRQS and the World Reference Laboratory, Pirbright, has shown that the partial VP1 sequence of the virus is closer to Chinese and Mongolian strains than to the strain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Korean outbreak in 2000.

At this time,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it has not possible for the Team to reach a conclusion as to the likely method of introduction. It is probable that the virus was introduced either through people or materials contaminated with virus from an overseas source.

The Team was impressed by the dedication and thoroughness of the Epidemiology Division in the collection of data on infected farms. This data has been extremely valuable for the Team's review.

Preliminary analysis suggests that eight of the sixteen outbreak farms were incubating the disease before the index case was confirmed on 3 May. It is also likely that some of the 15 pre-emptively slaughtered properties may have been incubating the disease when they were depopulated.

There is good evidence that the control measures introduced, including stamping out and movement restrictions were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disease. The Team was impressed at the competence and thoroughness with which the Korean Animal Health staff managed the outbreaks.

The use of pen-side tests enabled rapid confirmation of infection on infected farms and avoided time delay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esting of samples at the laboratory. The Team believes that this capability for early diagnosis enabled prompt stamping out of infected swine farms and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limiting the number of cases.

The available evidence suggests that short distance movements of people and vehicles have been responsible for most of the spread of the disease in this outbreak. In a few cases, short distance airborne spread could not be ruled out. There wa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movement of live animals had been a major factor in the spread of disease.

The Team has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emergency vaccination would have been useful in the outbreak. Although vaccination has some advantages for controlling FMD, such as reducing the level of clinical disease and the numbers of animals initially stamped out, it does not guarantee that infection will not occur and has considerable disadvantages, especially for countries wanting to regain FMD-free status. It was the Team's opinion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is outbreak, vaccination would not have been an advisable strategy because:

the time required to achieve immunity after vaccination in pigs, using commercial vaccines, is several weeks;

many farms were already infected at the time the disease was recognised;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disease was spreading out of control;

vaccination teams could have spread the virus.

Vaccination around Farm 1 may have masked infection, as at least four farms were incubating disease at that time and this could have compromised the control of the

outbreak. It is also likely that vaccination may not have been effective under these conditions. In addition, vaccination teams c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spreading virus further.

Recommend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authorities continue and enhance awareness programs for early detection and reporting of suspect cases of FMD. It is also important for farmers to protect themselves by applying good biosecurity measures, such as limiting access to their stock, good hygiene for staff and visitors, and careful attention when adding new animals to their herds.

The value of the collection of good epidemiological data has been demonstrated during this outbreak. It is recommended that NVRQS Epidemiology Division further develop its skills i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ata to contribute to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during an outbreak.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from the combination of meteorological data, farm location data, farm census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infected farms.

It is recommended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cattle herds within a 3 km zone of infected swine premises be carefully evaluated at the time of each outbreak, and where appropriate, pre-emptive slaughter of cattle herds be considered.

The Team supports the continued us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comprehensive assessment of risk materials on infected farms, so that these can be managed to minimise risk. It is recommended that minimum standards for cleaning, disinfection, and handling of high-risk materials on infected farms be promo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he issue of whether to vaccinate during an outbreak is complex. In this particular outbreak, vaccination was not technically indicated, however under other circumstances it may not be so clear. As part of FMD planning,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animal health authorities evaluate conditions under which vaccination for FMD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continue effective procedures at the border. The team recommends that quarantine authorities continue to review the risks associated with

passengers and commodities arriving at air and sea ports.

Summary

An International Epidemiology Assessment Team was invited to assess the FMD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detection of FMD in May 2002. The Team was asked to report on source of the viru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program, and the use of vaccination as a control tool. The team was also aske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disease.

The source of the virus

A Type O₁ Pan-Asia virus has been isolated and identified as the cause of the 2002 outbreak. Phylogenetic analysis by NVRQS showed that the partial VP1 sequence of the virus is closer to Chinese and Mongolian strains than to the strain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Korean outbreak in 2000.

The Team agreed that the outbreak was most likely caused by a recent introduction of FMD virus. It was not possible for the Team to reach a conclusion as to the likely method of introduction. It is probable that the virus was introduced either through people or materials contaminated with virus from an overseas source.

The Type O₁ Pan-Asia virus is highly virulent and has shown the ability to survive and persist sufficient to enter countries despite quarantine procedures. Examples include introductions to Japan, United Kingdom, and South Africa. To maintain freedom from FMD livestock producers need to work with authorities, and take appropriate biosecurity measures on their farm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program

Preliminary analysis suggests that eight of the sixteen outbreak farms were incubating the disease before the index case was confirmed on 3 May. It is possible that some of the 15 pre-emptively slaughtered properties were also incubating the disease when they were depopulated.

The Team was impressed by the dedication and thoroughness of the Epidemiology Division in the collection of data on the infected farms. There is good evidence that stamping out and movement restrictions were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disease. The Team was impressed at the competence and thoroughness with which the Korean Animal Health staffs managed the outbreaks.

The use of pen-side tests enabled rapid confirmation of infection on infected farms and avoided time delay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esting of samples at the laboratory. The Team believes that this capability for early diagnosis enabled prompt slaughter-out of infected swine farms and has been a key factor in limiting the number of cases.

The use of vaccination as a control tool

The available evidence suggests that short distance movements of people and vehicles have been responsible for most of the spread of the disease in this outbreak. Movement restrictions and rapid depopulation were effective in preventing further dissemination of the disease. In a few cases short distance airborne spread could not be ruled out. There wa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movement of live animals had been a major factor in the spread of disease.

The Team has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emergency vaccination would have been useful in the outbreak. Vaccination has some advantages for controlling FMD, potentially reducing the level of clinical disease and the numbers of animals initially slaughtered. Vaccination does not guarantee that infection will not occur and has considerable disadvantages, especially for countries wanting to regain FMD-free status. It was the Team's opinion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is outbreak, vaccination would not have been an advisable strategy because:

- the time required to achieve immunity after vaccination in pigs, using commercial vaccines, is several weeks;

- many farms were already infected at the time the disease was recognised;

-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disease was spreading out of control;

- vaccination around Farm 1 may have masked infection, as at least four farms were incubating disease at that time;

- vaccination teams could have spread the virus.

Recommendations

The team recommended

It is recommended to continue and enhance awareness programs for early detection and reporting of suspect cases, as despite good border security, the virus may still get through. It is important for farmers to protect themselves by applying good biosecurity measures, such as limiting access to their stock, good hygiene for staff and visitors, and careful attention when adding new animals to their herds.

It is recommended that NVRQS Epidemiology Division further develop its skills i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ata to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during the outbreak. The value of the collection of good epidemiological data has been demonstrated during this outbreak.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from the combination of meteorological data, farm location data, farm census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infected farms.

It is recommended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cattle herds within a 3 km zone of infected swine premises be carefully evaluated at the time of each outbreak, and where appropriate, pre-emptive slaughter of cattle herds be considered.

It is recommended that minimum standards for cleaning, disinfection, and handling of high-risk materials on infected farms be promo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he Team supported the continued us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comprehensive assessment of risk materials on infected farms, so that these can be managed to minimise risk.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Animal Health authorities evaluate conditions under which vaccination for FMD should be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to vaccinate during an outbreak is complex. In this particular outbreak, vaccination was not technically indicated, however under other circumstances it may not be so clear.

Acknowledgements

The members of the Epidemiology Assessment Team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many staff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 who assisted with this review.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support of Dr OK-Kyung Kim Director-General of NVRQS for his hospitality and support during our visit. We would also like to thank Dr Soo-Hwan An and Dr Yiseok Joo of NVRQS for their assistance in organising our visit and during our stay in Anyang. We are grateful to Dr Sung-Hwan Wee and the members of his Epidemiology Division for making their time available for discussions and for providing access to the epidemiological data they had collected.

We would like to thank Yunhee Kim and Yong Keun Ban from the United States Embassy, and Helen Park from the Australian Embassy who provided valuable assistance with translation services.

Finally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the hospitality shown to us by NVRQS during our stay in Korea, with special thanks going to some of the junior members of staff such as Drs Jee Yong Park and Yoon-Hee Lee who gave up their free time to entertain us and show us around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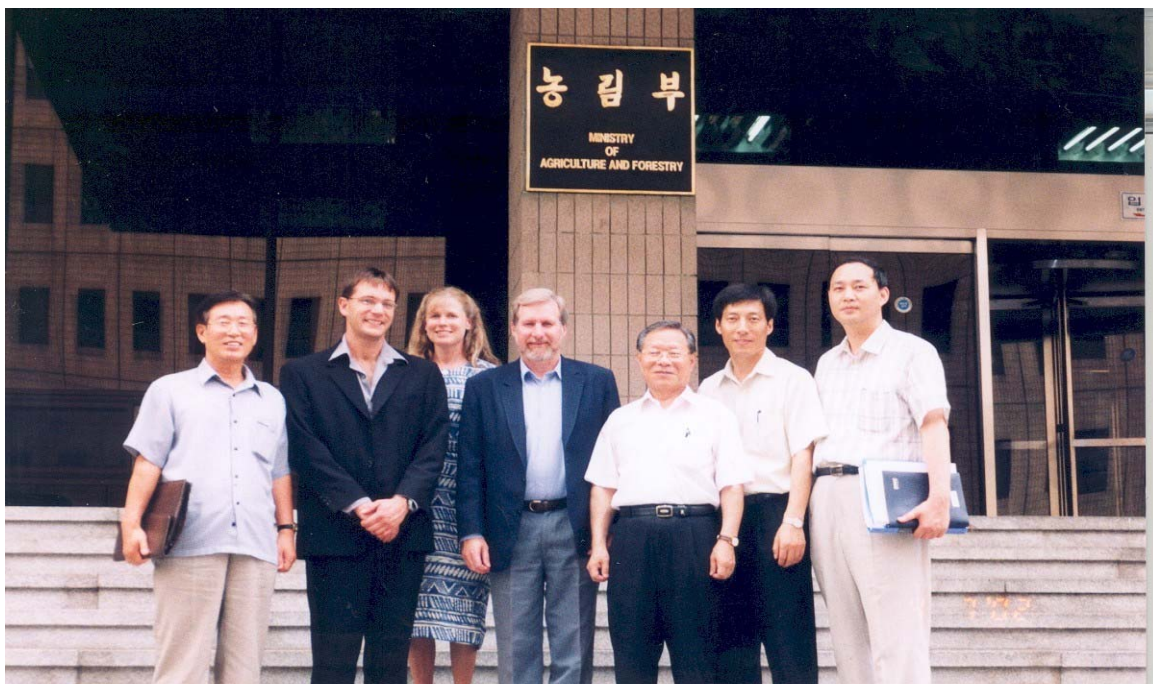


Figure 1: Epidemiology Team and NVRQS staff (from left: Dr Soo-Hwan An, Dr Graham Mackereth, Dr Sherrilyn Wainwright, Dr Graeme Garner, Prof Soon-Jae Kim, Dr Yiseok Joo and Dr Sung-Hwan Wee)

Summary	2
Acknowledgements	5
List of abbreviations	7
1. Introduction	8
1.1 Membership of Epidemiology Team	9
1.2 Itinerary	10
2. Findings	11
2.1 Index farm	11
2.2 Infected farm data	12
2.3 Epidemic curve	13
2.4 Dissemination rate	13
2.5 Virus production	15
2.6 Network of infection	16
2.7 Timeline analysis	17
3. Discussion and Conclusions	19
3.1 Source of virus	19
3.2 Performance of the NVRQS Epidemiology Division	19
3.3 Effectiveness of control measures	19
3.4 Pre-emptive slaughter	20
3.5 Rapid diagnosis (pen-side tests)	21
3.6 Vaccination	21
3.7 Biosecurity	23
Appendix I: Virus production profiles for infected farms	25

List of abbreviations

AFFA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Australia
DR	Dissemination rate
FMD	Foot and mouth disease
KNC	Korean native cattle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New Zealand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NVRQS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 Korea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 Introduction

On 4th May 2002, the Director, Animal Health Divis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otified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of the occurrence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in the Republic of Korea. FMD had previously occurred in March■April 2000 (Lee 2001) but prior to this, Korea had been free of FMD since 1934.

Between 2 May 2002, when the first case was detected, and 23 June 2002, 16 farms were confirmed with FMD ■ 15 swine farms and one cattle farm.

In response to the outbreaks, Korean animal health authorities implemented a range of measures including:

Stamping out of infected and all neighbouring farms within 500m

Culling of all pigs within 3km of infected farms

Strict movement controls within 3 km and 10 km of infected farms and local disinfection procedure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o ascertain the potential source of the outbreak

Unlike 2000, when emergency ring vaccination was used, no FMD vaccine has been used in 2002.

On 16 June, Korean authorities invited an international team of three epidemiologists with expertise in FMD to assess the situation. The Team was asked to report on possible source of the viru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program, and discuss the role of pre-emptive slaughter and the use of vaccination as a control tool. The team was also aske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disease.



Figure 2: FMD control point, Jinchon area

1.1 Membership of Epidemiology Team

Dr Graeme Garner

Senior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Epidemiology)

Office of the Chief Veterinary Officer

Animal Health Science Uni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

Dr Garner had been part of an OIE Expert Mission that assessed the FMD situation in Korea in 2000 (Garner and Ozawa 2000).

Dr Graham Mackereth

Disease Investigator

National Centre for Disease Investig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ew Zealand

Dr Sherrilyn Wainwright

Senior Staff Epidemiologist

Foreign Animal Disease Diagnostic Laboratory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A



Figure 3: Epidemiology Team (Drs Wainwright, Garner Mackereth and Mackereth Garner) addressing NVRQS staff

1.2 Itinerary

Date	Activities
27 June	Arrival (Dr Garner)
28 June	Discussions with NVRQS staff (Dr Yiseok Joo, Dr Soo-Hwan An, Dr Jee Yong Park)
	Arrival (Dr Mackereth)
	Seminar on modelling FMD outbreaks (Dr Garner)
29 June	Presentation by Epidemiology Division (Dr Sung-Hwan Wee) and discussions with Epidemiology Division staff
	Seminar on FMD in the UK 2000: databases, epidemiological analyses and use of GIS (Dr Mackereth)
30 June	Arrival (Dr Wainwright)
1 July	Visit to Jinchon and Pyoungtaek outbreak areas
	Discussions with Jinchon Provincial staff
	Visit to Farms 2 and 8 and discussions with owners/managers
	Visit to Pyoungtaek (Farm 13)
2 July	Visit to Anseong outbreak area
	Visit to Farm 1 and discussions with owner
	Tour of infected area
3 July	Discussions with NVRQS Epidemiology staff
	Demonstration of outbreak analytical techniques
	Preparation of Team's preliminary findings
	Presentation of findings and discussions with NVRQS staff
4 July	Preparation of summary report and recommendations
	Meeting with MAF staff and presentation of Team's findings to Minister
	Press conference
	Departure (Dr Garner)
5 July	Departure (Dr Mackereth)
	Seminar on FMD Epidemiology and Emergency Response (Dr Wainwright)
6 July	Discussions with NVRQS staff (Dr Yiseok Joo, Dr Soo-Hwan An, Dr Jee Yong Park, Dr In Soo Cho)
7 July	Departure (Dr Wainwright)

2. Findings

The team discussed the outbreaks with NVRQS staff. In particular, there was extensive consultation with the Epidemiology Division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farms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protocols

Possible source of the outbreaks

Methods of spread, including wind-borne spread

Data analysis techniques

The Team also visited outbreak farms in the Jinchon, Pyoungtaek and Anseong areas and had discussions with local animal health staff and affected farmers.

In this section of the report, key epidemiological features of the outbreaks will be describ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and visits. The analyses presented here are derived from data provided by Epidemiology Division of NVRQS.



Figure 4: Visit to Farm 1

2.1 Index farm

FMD was first detected on a large pig farm in Yongin. FMD subsequently spread to 14 pig farms and one cattle farm. The spread appears to be largely due to the movement of contaminated people and associated items between farms. A number of the other infected farms can be directly linked to the first case through movements of people and vehicles (see Figure 28).

2.2 Infected farm data

Table I shows the number of each species present on the infected farms. With the exception of the infected cattle, on Farm 14, all the farms had infected pigs. The pig farms were mostly large commercial farms.

Table I: Animal numbers on the infected farms

IP	Dairy	Beef	Sheep	Pigs	Goats	Deer
1	0	0	0	8302	0	0
2	0	0	0	1006	0	0
3	0	0	0	1423	0	0
4	0	0	0	11035	0	0
5	60	56	0	162	0	0
6	0	0	0	4009	0	9
7	0	0	0	301	0	0
8	0	0	0	17380	0	0
9	0	0	0	1048	0	0
10	0	0	0	996	0	0
11	0	0	0	2687	0	0
12	0	0	0	3181	0	0
13	0	0	0	1552	0	0
14	78	0	0	0	0	0
15	0	0	0	5494	0	0
16	0	0	0	3578	0	0
Total	138	56	0	62154	0	9



Figure 5: Discussions with owner, Farm 2

2.3 Epidemic curve

The number of new infections and diagnosed cases each week are shown in Figure 6. The apparent epidemic (based on diagnosis date) peaks in the week commencing 6 May. The peak in the number of new infections occurred the week before 6 May. The estimated infection date for each farm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number of animals infected on a farm, the probable means of infection, the antibody test results, the probable age of lesions, and an estimated incubation period of 5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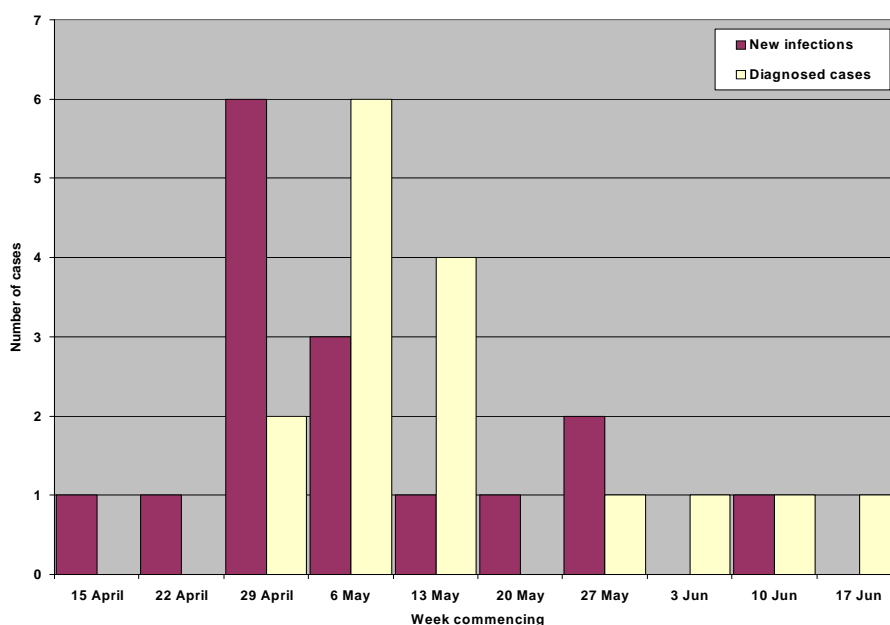


Figure 6: New infections and diagnoses of FMD cases by week

Figure 6 shows how diagnosis of the disease always lags behind infection. This analysis suggests that at the time that FMD was first confirmed on 3rd May it is likely that 8 out of the 16 affected farms in this outbreak had already been infected.

2.4 Dissemination rate

The dissemination of FMD virus in a previously free country is dependant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weather, herd density, and topography), the livestock production system, animal movements, farmer behaviour, and disease control activities. The current outbreak occurred in a region with sufficient herd density and herd interactions to sustain an epidemic. The available evidence indicates that there were few animal movements on to and off infected farms, however,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vehicle movements between pig farms provided opportunities for virus spread. Although weather conditions and topology may not have favoured airborne spread, the large size of many of the pig farms would suggest that had the disease not been detected early and infected pig farms stamped out promptly, there was considerable risk that the epidemic could have rapidly escalated.

The dissemination rate (DR) can be measur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cases infected by a single case. DR, will of course, be affected when control measures such as quarantine and area movement restrictions are introduced as these restrict the opportunity for disease to spread through animal, product, people and vehicle movements. A convenient way to estimate DR is to consider the number of new cases in one week divided by the number in the previous week. This ratio involves the assumption that the cases in the previous week gave rise to the new cases. The use of a period of one week is based on a three-day latent period and an average 4-day incubation period for pigs, however other time periods may be appropriate. The actual incubation period varies with age, species and amount of exposure to infection.

In theory when DR drops below one (i.e. each infected farm infects on average less than one other farm) the disease will be controlled. Changes in DR are an ind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control measures. The statistic is not appropriate when only small numbers of cases occur.



Figure 7: Farm 8

Table II shows the number of diagnosed cases and the number of new infections each week, calculated from estimated infection dates. DR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new infections in a week by the number in the previous week.

In the week beginning 6 May the control activities reduced spread by movements, and removed infectious animals on Farms 1, 2 and 3. The associated drop in DR from 6 to 0.5 suggests that these control measures were effective and sufficient to eradicate the disease. At the time however, the disease would not have appeared to

be under control as the diagnosis of disease lags behind the infection date. Thus, in the week commencing 6 May while there were 6 diagnosed cases, it is likely that only 3 cases were actually infected in that week.

Table II shows that 8 cases were probably infected prior to the diagnosis of FMD and establishment of control methods in the first week of May. This demonstrated the explosiveness of the disease in the absence of control methods. If vaccination had been used in the first week of May, then 6 incubating herds may have been vaccinated with the potentially serious consequences of masking the presence of disease, and inadvertent spread of disease by vaccination teams.

Table II: Table of new cases of FMD and estimated dissemination rate by week

Week commencing	New cases	Diagnosed cases	Dissemination rate
15-Apr-02	1	0	
22-Apr-02	1	0	1
29-Apr-02	6	2	6
06-May-02	3	6	0.5
13-May-02	1	4	0.3
20-May-02	1	0	
27-May-02	2	1	
03-Jun-02	0	1	
10-Jun-02	1	1	
17-Jun-02	0	1	

2.5 Virus production

The amount of FMD virus excreted into the air was estimated for each infected farm using a stochastic simulation model (Sanson 1993). The model, part of the EpiMAN suite of decision support tools, used Monte-Carlo techniques to simulate the infection and virus production of animals within the farm. Incubation periods for each infection cycle are based on a gamma distribution that varies with the stage of infection. The respiratory excretion of virus per pig was estimated at 10^3 TCID₅₀ the day before clinical signs, 10^7 TCID₅₀ for the first 2 days, and then dropping to 10^5 and 10^4 TCID₅₀ on the following two days. These estimates may be too overestimate the true virus production high as recent research by Donaldson *et al* (2001) on the Type O₁ Pan-Asia virus showed peak respiratory virus production of $10^{6.1}$ TCID₅₀ and demonstrated relative resistance of pigs to natural aerosols of FMD virus. The user-supplied parameters to the virus production model were:

date of infection,
age of oldest lesions,
size of initial infected group,
the number of animals with clinical signs,
the total number of pigs,
the means of introduction (incubating animals; yes or no), and
the intensity of production.

Calculation of virus production can be used to appreciate evaluate the relative risks of disease spread from various farms. Table III shows the estimated virus production on each infected farm up until the time of slaughter. The potential virus production without intervention was also calculated. The control programme is estimated to have reduced respiratory virus production to 5% of its potential. The model results showed that a large amount of virus was produced on Farms 1 and 8, a moderate amount on Farms 6, 10 and 15. The model results for Farm 8 may be an over estimate. This farm had only 3 clinical animals observed, one of which had FMD antibody. Airborne spread of virus is unlikely from the other farms.

Appendix I shows the estimated virus production for each infected farm. In most cases the pigs were depopulated before the second on-farm cycle of infection, and viral contamination was thus minimised. This has undoubtedly been an important factor in minimising the spread that has occurred in this outbreak.

Table III: Table of total potential and estimated respiratory virus production in each infected place

Infected farm number	Potential virus production without slaughter	Estimated virus production until slaughter	Percentage of potential virus production actually produced
1	10^{11}	10^{10}	21.11%
2	10^{10}	10^7	0.07%
3	10^{10}	10^7	0.04%
4	10^{11}	10^7	0.01%
5	10^9	10^7	0.34%
6	10^{10}	10^9	1.64%
7	10^9	10^7	0.61%
8	10^{11}	10^{10}	5.36%
9	10^{10}	10^7	0.08%
10	10^{10}	10^9	2.33%
11	10^{10}	10^8	0.24%
12	10^{10}	10^8	0.17%
13	10^{10}	10^8	0.42%
14	10^7	10^5	1.60%
15	10^{10}	10^9	1.19%
16	10^{10}	10^7	0.04%
total	10^{12}	10^{10}	5.29%

NB. Farm 14 had infected cattle.

2.6 Network of infection

The epidemiologists at NVRQS had constructed a symbolic diagram showing potential infectious contacts between infected farms based on their investigations. Figure 8 shows a subset of these contacts. Some farms had multiple contacts with infected farms. The symbolic network shows that there were possibly 5 generations of inf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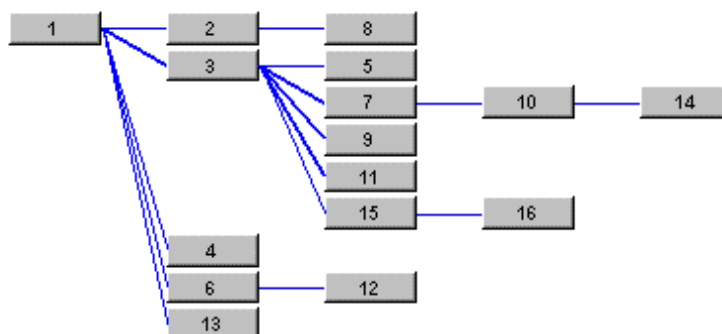


Figure 8: Symbolic network of infectious contacts.

The investigations suggest that two farms, Farms 1 and 3, were probably the sources of infection for many of the other farms. Figure 2 identifies that Farm 1 may have been the source for Farms 2, 3, 4, 6 and 13 while Farm 3 may have been the source for Farms 5, 7, 9, 11 and 15. It is important to appreciate that the network is tentative only as many of the links are tenuous, or missing, and investigations are still continuing.

2.7 Timeline analysis

Analysis of the estimated time of infection of each farm is useful when considering the likely source of infection, dissemination to other farms, and the priorities for tracing movements onto and off the farm. The timelines show the delay from first clinical signs to diagnosis and the delay from diagnosis to slaughter (Figure 9). These intervals are measures of the efficiency of disease surveillance and control.

In this epidemic, the mean delay to diagnosis is estimated as 2.9 days and the mean delay from diagnosis to slaughter was 1.7 days. Data provided by NVRQS on the time to slaughter indicated that 13 of the 16 farms were slaughtered within 24 hours of detection, 2 within 48 hours, and 1 within 72 hours. The latter farm was a very large breeding farm with 17,000 pigs. The intervals are quite short and compare very favourably with reports from other outbreaks overseas. For example, in the UK in 1967-68, the mean interval between diagnosis and destruction was 2-3 days, in Taiwan in 1997 there were frequently quite long delays of up to 12 days before infected herds were destroyed (Haydon and Woolhouse 1997, Howard and Donnelly 2000). In the UK, in 2000, initially there were delays of up to one week between diagnosis and destruction. Subsequently, with considerable effort delays were reduced to the stated policy objective of one day (Keeling et al. 2001).

3. Discussion and Conclusions

3.1 Source of virus

The virus causing the epidemic has been characterised as a Type O1 Pan-Asia virus. Phylogenetic analysis by Pirbright and NVRQS have shown that this virus is more closely related to Chinese and Mongolian strains than it is to the strain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Korea 2000 outbreak.

The Team agrees that the outbreak was most likely caused by a recent introduction. It has not been possible for the Team to reach a conclusion as to the likely method of introduction. It is probable that the virus has been introduced either through people or materials contaminated with virus from an overseas source.

3.2 Performance of the NVRQS Epidemiology Division

The Epidemiology Division is a relatively new part of the NVRQS, and Korean authorities are to be congratulated for their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role that epidemiology can play in disease management. Given the relatively short time since its formation, the Team was impressed by the dedication and thoroughness with which Epidemiology Division staff undertook the collection of data on infected farms. This data has been extremely valuable for the Team's review.

The value of the collection of good epidemiological data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during this outbreak.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from the combination of meteorological data, farm location data, farm census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infected farms.

It is understandable that up to this time, much of the Division's work has concentrated on the collection of field data.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analysing the data and integrating the field data with laboratory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NVRQS Epidemiology Division further develop its skills i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ata so as to contribute to active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during an outbreak.

3.3 Effectiveness of control measures

There is good evidence that stamping out and movement restrictions were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disease. This can be seen by the fall in estimated rate of spread (DR) from 6 to 0.5 by 6 May. Preliminary epidemiological analysis of the outbreak data suggests that eight of the sixteen outbreak farms were probably already incubating the disease when the index case was confirmed on 3 May. It is also likely that some of the 15 pre-emptively slaughtered properties were also incubating the disease when they were depopulated.

The assessment team was impressed at the competence and thoroughness with which the Korean Animal Health staff managed the outbreaks. The mean delay from infection to diagnosis was 2.9 days and from diagnosis to slaughter was just 1.7 days. Data provided by NVRQS on the time to slaughter indicated that 13 of the 16 farms were slaughtered within 24 hours of detection, 2 within 48 hours, and 1 within 72 hours. These figures compare very favourable with those from outbreaks in other previously free countries.

Detailed discussions with County staff at Jinchon on outbreak management reinforced this impression, with the Team being impressed by local planning and organising of measures such as road closures, checkpoints, stamping out, FMD surveillance and assistance for affected far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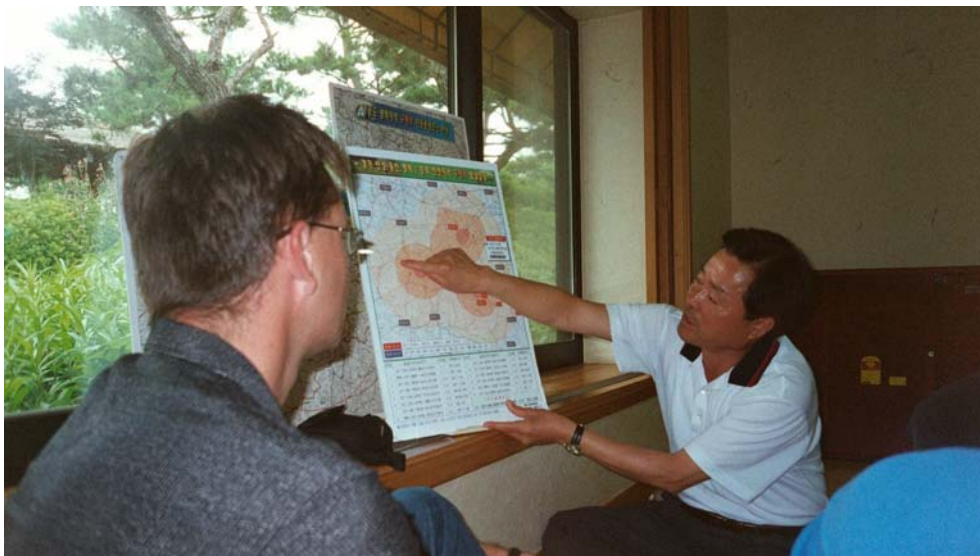


Figure 10: NVRQS Director-General OK Kim explaining the FMD control program

3.4 Pre-emptive slaughter

Pre-emptive slaughter of herds in an FMD outbreak is a controversial issue. As infected animals may excrete FMD virus for several days before they show clinical signs of the disease, pre-emptive removal of herds that are considered to be at high risk of having been exposed to the disease either because proximity to infected farms, or due to contact with infected animals or material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containing spread of the diseas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airborne spread of virus can occur if movement controls are effectively implemented in an area, then the greatest risk is from airborne spread. Airborne spread most commonly involves pigs to cattle, as pigs are the most potent excretors of aerosol virus and cattle are the most susceptible species to infection by the respiratory route.

However, as pre-emptive slaughter involves the destruction of 'apparently' healthy animals it may not be acceptable to livestock producers and administrators who may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moving infected animals as soon as possible, to minimise virus excretion.

In this outbreak, the policy has included removal of all animals within 500m of infected farms and removal of all pigs within a 3 km radius. The Type O1 Pan-Asia strain of FMD virus does not appear to pose as great a risk of airborne spread as some other strains of FMD virus (Donaldson and Alexandersen 2001, Donaldson et al 2001). This, coupled with early identification and removal of infected farms (see below), probably explains why airborne spread has not been a significant feature in this outbreak. However, this may not always be the case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livestock, especially cattle herds, close to infected swine premises, be carefully evaluated at the time of each outbreak. This evaluation should consider:

- The likely duration of infection on the infected farm (How long has the disease been present?)
- The number of infected animals, i.e. potential virus production
- Weather conditions
- Number and density of potentially exposed livestock downwind

Where the risk is assessed as high to very high, the potential use of pre-emptive slaughter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3.5 Rapid diagnosis (pen-side tests)

The use of pen-side tests enabled rapid confirmation of infection on infected farms and avoided time delays associated with transport and testing of samples at the laboratory. Control has thus been based on rapid detection and very prompt stamping out, before virus build-up on farms has occurred. The Team believes that this capability for early diagnosis together with rapid stamping out of infected swine farms and has been a key factor in limiting the number of cases in this outbreak.

3.6 Vaccination

The Team was specifically requested to comment on the use of vaccination as a control tool for FMD.

Experience has shown that vaccination on its own will not eradicate FMD, but it can be a valuable tool to assist with eradication when used alongside other measures (stamping out, movement restrictions, disinfection, etc). The biggest impediment to vaccination in a previously free country is its effect on trade (when vaccination is used, a country cannot regain its FMD-free status until 12 months after the last case of disease) and,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strong aversion to its use for this reason.

Recent changes to the OIE FMD code, notably that:

- FMD-free status can be regained 3 months after an outbreak where emergency vaccination is used when vaccinated animals are slaughtered and, more recently
- FMD-free status can be regained 6 months after the last case when vaccination is used provided serological surveillance of the vaccinated population is done.

This means that the trade effects may not be as severe as assumed in the past and many countries are re-evaluating their approach to FMD vaccination in the event of an outbreak.

A number of advantages of vaccination can be identified, including:

- Prevention of disease.
- Reduction in the amount of FMD virus excreted by animals should they

become infected.

- Containment of an outbreak.
- More efficient use of resources.
- Reduced need for slaughter of animals in the short-term. (However, the total number of animals slaughtered may actually be higher, if a country chooses to remove its vaccinated animals in order to regain FMD-free status as soon as possible).
- Greater flexibility in options for controlling an outbreak.

However, while vaccination can prevent clinical disease, it may not prevent infection (although replication of the virus is reduced). Vaccine immunity can be overwhelmed if the challenge is high, while vaccinated animals, particularly if exposed soon after being vaccinated, can become carriers of the virus. Th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vaccination include:

- Requirement for access to appropriate vaccine and other resources.
- Adverse market responses (especially internationally).
- Delayed recognition of disease freedom (if vaccinated animals are not slaughtered out).
- Increased risk of spreading disease by vaccination teams and by vaccinated animals.
- Persistence of carrier animals amongst vaccinated livestock.
- Limited options for managing vaccinated animals. As these animals will be seropositive, they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otherwise they can cause problems in subsequent surveillanc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appreciate that vaccination will be associated with longer periods until FMD-free status can be regained and the need to identify and manage all vaccinated animals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problems for animal health authorities. For small well-circumscribed outbreaks, the potential gains from using vaccination appear small. On the other hand, in large outbreaks where FMD is spreading rapidly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control the disease may be an issue, vaccination might be considered to help contain the spread of the disease, and reduce control costs and compensation.

The decision on whether to use vaccination or not is a complex on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such a decision. If emergency vaccination is to be used, the decision will need to be made quickly if the benefits are to be realise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USA,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developed, or are developing criteria and decision frameworks to assist with this complex decision. The aim of these tools is to assist in iden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vaccination is and is not likely to be useful.

Would vaccination have been helpful in this outbreak? The Team has considered this issue in detail. Vaccination has some advantages for controlling FMD, potentially reducing the level of clinical disease and the numbers of animals initially slaughtered. However, vaccination does not guarantee that infection will not occur and, as has been explained, has considerable disadvantages, especially for countries wanting to regain FMD-free status. It is the Teams opinion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is outbreak, vaccination would not have been an advisable strategy because:

- the time required to achieve immunity after vaccination in pigs, using commercial vaccines is several weeks;
- many farms were already infected at the time the disease was recognised;
-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disease was spreading out of control;
- vaccination around Farm 1 may have masked infection, as at least four farms were incubating disease at that time;
- vaccination teams could have spread the virus.

If vaccination had been used in the first week of May, then 6 incubating herds may have been vaccinated with the potentially serious consequences, of masking disease, and inadvertent spread of infection by vaccination teams.

In this particular outbreak vaccination was not technically indicated, however under other circumstances it may not be so clear.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Animal Health authorities evaluate conditions under which vaccination for FMD should be considered and develop a decision framework for use of vaccination in an FMD outbreak. It is preferable that this be done before, rather than during the 'heat' of an outbreak.

3.7 Biosecurity

The FMD Type O1 Pan-Asia virus is highly virulent and has shown the ability to survive and persist sufficient to enter countries despite good quarantine procedures. Examples include introductions to Japan, United Kingdom, France, Ireland, the Netherlands and South Africa as well as Korea. The team recommends that the quarantine services continue to evaluate and respond to potential FMD threats from overseas. This should include the assessment of risks associated with passengers arriving at air and seaports. It is essential to continue effective quarantine procedures at the border.

Although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good quarantine system, quarantine itself cannot guarantee that an exotic virus like FMD will not be introduc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livestock producers work with authorities, and continue to be aware of the need for appropriate biosecurity measures on their farms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References

Donaldson AI and Alexandersen S (2001) Relative resistance of pigs to infection by natural aerosols of FMD virus. *Vet Rec* 148: 600602.

Donalson AI, Alexandersen S, Sorensen JH and Mikkelsen T (2001) Relative risks of the uncontrollable (airborne) spread of FMD by different species. *Vet Rec* 148: 602604.

Garner G and Ozawa Y (2000) Assessment of the foot and mouth diseas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Expert Mission of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620 May 2000. 51 pp.

Haydon DT and Woolhouse MEJ (1997) An analysis of foot-and-mouth disease epidemics in the UK. *IMA Journal of Mathematics Applied in Medicine & Biology* 14: 19.

Keeling MJ, Woolhouse ME, Shaw DJ, Matthews L, Chase-topping M, Haydon DT, Cornell SJ, Kappey J, Wilesmith J and Grenfell BT (2001) *Supplementary material for: Dynamics of the 2001 UK foot and mouth epidemic: stochastic dispersal in a heterogenous landscape.* *Science* 294: 813817.

Lee J-H (2001) Report on the eradication of foot and mouth disease in the Republic of Korea. 108 pp.

Sanson R (1993) The development of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n animal disease emergency. A thesis presented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t Massey University. 1993.

구제역 관련 OIE 규정

CHAPTER 2.1.1.

FOOT AND MOUTH DISEASE

Article 2.1.1.1.

For the purposes of this Code, the incubation period for foot and mouth disease (FMD) shall be 14 day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ruminants include animals of the family of Camelidae.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trade, this chapter deals not only with the occurrence of clinical signs caused by FMD virus (FMDV), but also with the presence of infection with FMDV in the absence of clinical signs.

The following defines the occurrence of FMDV infection:

- 1) FMDV has been isolated and identified as such from an animal or a product derived from that animal, or
- 2) viral antigen or viral RNA specific to one or more of the serotypes of FMDV has been identified in samples from one or more animals show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FMD, or epidemiologically linked to a confirmed or suspected outbreak of FMD, or giving cause for suspicion of previous association or contact with FMDV, or
- 3) antibodies to structural or nonstructural proteins of FMDV that are

not a consequence of vaccination, have been identified in one or more animals with either epidemiological links to a confirmed or suspected outbreak of FMD, or show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recent infection with FMDV.

Standards for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are described in the Manual.

Article 2.1.1.2.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To qualify for inclusion in the existing list of FMD free countri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a country should:

- 1) have a record of regular and prompt animal disease reporting;
- 2) send a declaration to the OIE stating that:
 - a)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FMD during the past 12 months;
 - b) no evidence of FMDV infection has been found during the past 12 months;
 - c) no vaccination against FMD has been carried out during the past 12 months,and supply documented evidence that an effective system of surveillance for both FMD and FMDV infection is in operation and that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FMD have been implemented;
- 3) not have imported since the cessation of vaccination any animals vaccinated against FMD.

The country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Article 2.1.1.3.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To qualify for inclusion in the list of FMD free countri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a country should:

- 1) have a record of regular and prompt animal disease reporting;
- 2) send a declaration to the OIE that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FMD for the past 2 years and no evidence of FMDV infection for the past 12 months, with documented evidence that:
 - a) an effective system of surveillance for FMD is in operation, and that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FMD have been implemented;
 - b) routine vaccination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of FMD;
 - c) the vaccine used complies with the standards described in the Manual.

The country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If an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wishes to change its status to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the country should wait for 12 months after vaccination has ceased and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FMDV infection has not occurred during that period.

Article 2.1.1.4.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can be established in either an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or in a country of which parts are still infected. The FMD free zone must be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and, if relevant, from neighbouring infected countries by a surveillance zone, or physical or geographical barriers, and animal health measures that effectively prevent the entry of the virus must be implemented. A country in which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is to be established should:

- 1) have a record of regular and prompt animal disease reporting;
- 2) send a declaration to the OIE stating that it wishes to establish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and that:
 - a)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FMD during the past 12 months;
 - b) no evidence of FMDV infection has been found during the past 12 months;
 - c) no vaccination against FMD has been carried out during the past 12 months;
 - d) no vaccinated animal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zone since the cessation of vaccination, exc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8.;
- 3) supply documented evidence that an effective system of surveillance for both FMD and FMDV infection is in operation in the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4) describe in detail:

- a)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both FMD and FMDV infection,
- b) the boundaries of the FMD free zone, and the surveillance zone,
- c)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entry of the virus into the FMDV free zone (in particular if the procedure described in Article 2.1.1.8. is implemented),

and supply documented evidence that these are properly implemented and supervised.

The free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FMD free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Article 2.1.1.5.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can be established in a country with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or in a country of which parts are still infected. Vaccination of zoo animals, animals belonging to rare species or breeds, or animals in research centres as a precaution for conservation purposes is an example of implementation of such a zone. The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is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and, if relevant, from neighbouring infected countries by a buffer zone, or physical or geographical barriers, and animal health measures that effectively prevent the entry of the virus must be implemented. A country in which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is to be established should:

- 1) have a record of regular and prompt animal disease reporting;
- 2) send a declaration to the OIE that it wishes to establish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where there has been no outbreak of FMD for the past 2 years;
- 3) supply documented evidence that the vaccine used complies with the standards described in the Manual;
- 4) describe in detail:
 - a)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both FMD and FMDV infection,
 - b) the boundaries of the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and the buffer zone if applicable,
 - c)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entry of the virus into the FMD free zone (in particular if the procedure described in Article 2.1.1.8. is implemented),and supply evidence that these are properly implemented and supervised;
- 5) supply documented evidence that it has a system of intensive and frequent surveillance for FMD in the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The free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FMD free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If a country that has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wishes to change the status of the zone to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the country should wait for 12 months after vaccination has ceased and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FMDV infection has not occurred in the said zone during that period.

Article 2.1.1.6.

FMD infected country or zone

An FMD infected country is a country that does not fulfil the requirements to qualify as either an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or an FMD free country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An FMD infected zone is a zone that does not fulfil the requirements to qualify as either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or an FMD free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Article 2.1.1.7.

Recovery of free status

1) When an FMD outbreak or FMDV infection occurs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one of the following waiting periods is required to regain the status of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 a) 3 months after the last case where a stamping-out policy and serological surveillance are applied, or
 - b) 3 months after the slaughter of the last vaccinated animal where a stamping-out policy, emergency vaccination and serological surveillance are applied, or
 - c) 6 months after the last case or the last vaccination (according to the event that occurs the latest), where a stamping-out policy, emergency vaccination not followed by the slaughtering of all vaccinated animals, and serological surveillance are applied, provided that a serological survey based on the detection of antibodies to nonstructural proteins of FMDV demonstrates the absence of infection in the remaining vaccinated population.
- 2) When an FMD outbreak or FMDV infection occurs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one of the following waiting periods is required to regain the status of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 a) 6 months after the last case where a stamping-out policy, serological surveillance and emergency vaccination are applied, provided that a serological survey based on the detection of antibodies to nonstructural proteins of FMDV demonstrates the absence of infection, or
 - b) 12 months after the last case where a stamping-out policy is applied,
- provided that effective surveillance has been carried out.

The application to regain the free status according to one of the procedures described above should be submitted to the OIE by the country in question within 2 years of the occurrence of the first FMD outbreak or the first detection of FMDV infection, otherwise the

provisions of either Article 2.1.1.2., or Article 2.1.1.3., or Article 2.1.1.4., or Article 2.1.1.5., as relevant, are applicable to the country.

Article 2.1.1.8.

Transfer of FMD susceptible animals from an infected zone to a free zone within a country

Live animals from FMD susceptible species can only leave the infected zone if moved by mechanical transport to the nearest designated abattoir located in the buffer zone or the surveillance zone for immediate slaughter. In the absence of an abattoir in the buffer zone or the surveillance zone, live FMD susceptible animals can be transported to the nearest abattoir in a free zone for immediate slaughter onl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1) no animal in the establishment of origin has shown clinical signs of FMD for at least 30 days prior to movement;
- 2) the animals were kept in the establishment of origin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movement;
- 3) FMD has not occurred within a 10-kilometre radius of the establishment of origin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movement;
- 4) the animals must be transpor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eterinary Authority in a vehicle, which was cleansed and disinfected before loading, directly from the establishment of origin to the abattoir without coming into contact with other susceptible animals;

- 5) such an abattoir is not export approved;
- 6) all products obtained from the animals must be considered infected and treated in such a way as to destroy any residual virus; in particular, meat must be processed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2.1.;
- 7) vehicles and the abattoir must be subjected to thorough cleansing and disinfection immediately after use.

Animals moved into a free zone for other purposes must be taken to a quarantine st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eterinary Authority. Freedom of infection of these animals must be established by appropriate tests.

Article 2.1.1.9.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countries shall consider whether there is a risk with regard to FMDV infection in accepting importation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y, from other countries, of the following commodities:

- 1) domestic and wild ruminants and pigs;
- 2) semen of ruminants and pigs;
- 3) embryos/ova of ruminants and pigs;
- 4) fresh meat of domestic and wild ruminants and pigs;
- 5) meat products of domestic and wild ruminants and pigs which have

not been processed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2.1.;

- 6)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for use in animal feeding or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use;
- 7)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pharmaceutical or surgical use;
- 8) non-sterile biological products.

Other commod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not having the potential to spread the FMDV infection when they ar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Article 2.1.1.10.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MD susceptible animal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 1)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shipment;
- 2) were kept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Article 2.1.1.11.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 1)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shipment;
- 2) were kept in an FMD free country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and
- 3) have not been vaccinated and were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tests for antibodies against FMD virus, when destined to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may require additional guarantees.

Article 2.1.1.12.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 1)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shipment;
- 2) were kept in the establishment of origin since birth or
 - a) for the past 30 days, if a stamping-out policy is in force in the exporting country, or
 - b) for the past 3 months, if a stamping-out policy is not in force in the exporting country,
and that FMD has not occurred within a 10-kilometre radius of the establishment of origin for the relevant period as defined in points a) and b) above; and
- 3) were isolated for the 30 days prior to quarantine in an establishment, were subjected to diagnostic tests (probang and serology) for evidence of FMDV infection with negative results at the end of that period, and that FMD did not occur within a 10-kilometre radius of the establishment during that period; or
- 4) were kept in a quarantine station for the 30 days prior to shipment, were subjected to diagnostic tests (probang and serology) for evidence of FMDV infection with negative results at the end of that period, and that FMD did not occur within a 10-kilometre radius of the quarantine station during that period;
- 5) were not exposed to any source of infection during their transportation from the quarantine station to the place of shipment.

Article 2.1.1.13.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esh semen of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donor animal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 b) were kept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collection;
- 2) the semen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either Appendix 3.2.1. or Appendix 3.2.3.

Article 2.1.1.14.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ozen semen of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donor animal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and for the following 30 days;
 - b) were kept in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collection;
- 2) the semen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either Appendix 3.2.1. or Appendix 3.2.3.

Article 2.1.1.15.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semen of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1) the donor animal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and for the following 30 days;
- b)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from FMD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collection;
- c) if destined to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 i) have not been vaccinated and were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tests for antibodies against FMD virus; or
 - ii) had been vaccinated at least twice, with the last vaccination not more than 12 and not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collection;

2) no other animal present i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entre has been vaccinated within the month prior to collection;

3) the semen:

- a)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either Appendix 3.2.1. or Appendix 3.2.3.;
- b) was stored in a country free from FMD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month before export, and during this period no animal on the

establishment where the donor animals were kept showed any sign of FMD.

Article 2.1.1.16.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semen of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1) the donor animal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 b) were kept in an establishment where no animal had been added in the 30 days before collection, and that FMD has not occurred within 10 kilometres for the 30 days before and after collection;
- c) have not been vaccinated and were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tests for antibodies against FMD virus; or
- d) had been vaccinated at least twice, with the last vaccination not more than 12 and not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collection;

2) no other animal present i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entre has been vaccinated within the month prior to collection;

3) the semen:

- a)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either Appendix 3.2.1. or Appendix 3.2.3.;
- b) was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a virus isolation test if the donor animal has been vaccinated within the 12 months prior

to collection;

- c) was stored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month between collection and export, and during this period no animal on the establishment where the donor animals were kept showed any sign of FMD.

Article 2.1.1.17.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in vivo derived embryos of cattl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1) the donor female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 b) were kept in an establishment located in a country or zone free from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2)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or Appendix 3.3.9., as relevant.

Article 2.1.1.18.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in vivo derived embryos of cattl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donor female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 b) were kept in an establishment where no animal had been added in the 30 days before collection, and that FMD has not occurred within 10 kilometres for the 30 days before and after collection;
- 2)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or Appendix 3.3.9., as relevant.

Article 2.1.1.19.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in vitro produced embryos of cattl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donor female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 b)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from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 2) fertilisation was achieved with semen meeting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2.1.1.13., 2.1.1.14., 2.1.1.15. or 2.1.1.16., as relevant;
- 3)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or Appendix 3.3.9., as relevant.

Article 2.1.1.20.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in vitro produced embryos of cattl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donor females:
 -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FMD at the time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 b)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from FMD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collection;
 - c) if destined for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 i) have not been vaccinated and were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tests for antibodies against FMD virus, or
 - ii) had been vaccinated at least twice, with the last vaccination not less than one month and not more than 12 months prior to collection;
- 2) no other animal present in the establishment has been vaccinated within the month prior to collection;
- 3) fertilization was achieved with semen meeting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2.1.1.13., 2.1.1.14., 2.1.1.15. or 2.1.1.16., as relevant;
- 4)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or Appendix 3.3.9., as relevant.

Article 2.1.1.21.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esh meat of FMD susceptible animal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 1) which have been kept in the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since birth, or that have been imported from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is not practised;
- 2) which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and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for FMD with favourable results.

Article 2.1.1.22.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esh meat of bovines (excluding feet, head and viscera)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 1) comes from animals which:

- a) have remained in the exporting free country or zone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slaughter;
- b)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located in the free zone, when the animals originate from such a zone) and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for FMD with favourable results;

2) comes from deboned carcasses:

- a) from which the major lymphatic glands have been removed;
- b) which, prior to deboning, have been submitted to maturation at a temperature above + 2°C for a minimum period of 24 hours following slaughter, and in which the pH value of the meat was below 6.0 when tested in the middle of both the longissimus dorsi.

If the meat is to be imported into a country or a zone of equivalent FMD status or into an infected country in which the virus types used in the vaccines are the same, the maturation and deboning processes may not be required.

Article 2.1.1.23.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esh meat or meat products of pigs and ruminants other than bovine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 1) which have been kept in the country or zone since birth, or have been imported from a country or zone free from FMD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 2) which have not been vaccinated;
- 3) which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located in the free zone, when the animals originate from such a zone) and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for FMD with favourable results.

Article 2.1.1.24.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where an official control programme exists, involving compulsory systematic vaccination of cattle,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fresh meat of bovines (excluding feet, head and viscera)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 1) comes from animals which:
 - a) have remained in the exporting country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slaughter;
 - b) have remained, during this period, in a part of the country where cattle are regularly vaccinated against FMD and where official controls are in operation;
 - c) have been vaccinated at least twice with the last vaccination not more than 12 months and not less than one month prior to slaughter;

- d) were kept for the past 30 days in an establishment, and that FMD has not occurred within 10 kilometres during that period;
- e) have been transported, in a vehicle which was cleansed and disinfected before the cattle were loaded, directly from the establishment of origin to the approved abattoir without coming into contact with other animals which do not fulfil the required conditions for export;
- f)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 i) which is officially designated for export;
 - ii) in which no FMD has been detecte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last disinfection carried out before slaughter and the shipment for export has been dispatched;
- g)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for FMD with favourable results within 24 hours before and after slaughter;

2) comes from deboned carcasses:

- a) from which the major lymphatic glands have been removed;
- b) which, prior to deboning, have been submitted to maturation at a temperature above + 2°C for a minimum period of 24 hours following slaughter and in which the pH value was below 6.0 when tested in the middle of both the longissimus dorsi.

[Note: Article 2.1.1.24. should also apply when meat is to be imported from an infected country into another infected country, in order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new strains of FMD virus.]

Article 2.1.1.25.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meat products of domestic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which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and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for FMD with favourable results;
- 2) the meat has been processed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2.1.;
- 3) the necessary precautions were taken after processing to avoid contact of the meat products with any potential source of FMD virus.

Article 2.1.1.26.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milk and milk product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and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from FMD susceptible animals) intended for use in animal feeding or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us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se products come from animals which have been kept in the country or zone since birth, or which have been imported from an FMD free country or zone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Article 2.1.1.27.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milk and cream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se products:
 - a) originate from herds or flocks which were not subjected to any restrictions due to FMD at the time of milk collection;
 - b) have been processed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2.5. and in Article 3.6.2.6.;
- 2) the necessary precautions were taken after processing to avoid contact of the products with any potential source of FMD virus.

Article 2.1.1.28.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milk powder and milk product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 1) these products are derived from milk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2.1.1.27.;

2) the necessary precautions were taken after processing to avoid contact of the milk powder or the milk products with any potential source of FMD virus.

Article 2.1.1.29.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blood and meat-meals (from domestic or wild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manufacturing method for these products included heating to a minimum internal temperature of 70°C for at least 30 minutes.

Article 2.1.1.30.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wool, hair, bristles, raw hides and skins (from domestic or wild ruminants and pig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1) these products have been processed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s 3.6.2.2., 3.6.2.3. and 3.6.2.4.;

- 2) the necessary precautions were taken after collection or processing to avoid contact of the products with any potential source of FMD virus.

Veterinary Administrations can authorise, without restriction, the import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y of semi-processed hides and skins (limed hides, pickled pelts, and semi-processed leather ? e.g. wet blue and crust leather), provided that these produc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usual chemical and mechanical processes in use in the tanning industry.

Article 2.1.1.31.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straw and forage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se commodities:

- 1) are free of grossly identifiable contamination with material of animal origin;
- 2) have been subjected to one of the following treatments, which, in the case of material sent in bales, has been shown to penetrate to the centre of the bale:
 - a) either to the action of steam in a closed chamber such that the centre of the bales has reached a minimum temperature of 80°C for at least 10 minutes,
 - b) or to the action of formalin fumes (formaldehyde gas) produced

by its commercial solution at 35–40% in a chamber kept closed for at least 8 hours and at a minimum temperature of 19°C;

OR

3) have been kept in bond for at least 3 months (under study) before being released for export.

Article 2.1.1.32.

When importing from FMD free countries or zones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skins and trophies derived from wild animals susceptible to FMD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se products are derived from animals that have been kept in such a country or zone since birth, or which have been imported from a country or zone free of FMD (where vaccination either is or is not practised).

Article 2.1.1.33.

When importing from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for skins and trophies derived from wild animals susceptible to FMD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se products have been processed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2.7.

[Note: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s for animal products coming

from infected countries or zones may not be required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in an approved manner to premises controlled and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processing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FMD virus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s 3.6.2.2., 3.6.2.3. and 3.6.2.4.]

구제역 방역활동 홍보·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 3.
- 제공자 : 농림부 조직인사담당관실
- 담당과 : 박형규
- 사무관 : 박상윤
- 전 화 : 500-1584

이 자료는 2002년 5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긴급 가축방역대책 총력 대응체제 구축

≡비상근무명령 발령으로 81,000여명의 농림관련 공직자와 생산자단체 임직원이 긴급 가축방역업무에 최우선 투입할 수 있는 동원체제 확립≡

□ 농림부는 최근 돼지 콜레라와 의사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림부 및 소속기관, 생산자단체 등 81,000여명의 전 농림관련 공직자와 생산자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역량집결을 통한 총력 대응을 위하여 2002년 5월 3일부터 비상근무명령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비상근무 발령 사항】

- 비상근무 발령 일시 : 2002. 5. 3, 18:00
-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3호
- 비상근무기간 : 2002.5.3 ~ 비상근무발령 해제시까지
- 비상근무대상기관 :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마사회, 기반공사, 유통공사 가축방역비상대책 참여기관
- 근무요령
 - 가축방역기관 및 축산물 수급대책 부서는 축산국에서 별도의 비상근무체제 수립·추진
 - 기타 기관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대책반 구성·운영
 - 비상근무 제3호에 의한 연가억제, 소속직원의 1/10이상 비상근무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 3.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창 섭
 - 전화 : 02-500-1940
-

이 자료는 2002년 5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경기 안성 돼지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 농림부는 5.3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대표 : 유창주)의 돼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 결과 의사 구제역으로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사료회사원이 5.2일 22:30분경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 시료를 의뢰하여 현재 검역원의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 이에따라 농림부는 경기도에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발생시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방역 조치토록하고 의사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발생농장 중심으로 농장 반경 위험지역(반경3km이내),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하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 실시하고, 관리지역(20km)내 가축시장 폐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조치사항 : 신고철저, 전국 가축시장 소독 철저, 전두수 임상관찰, 시도간 이동시 소독철저 지시

○ 농림부는 5.3일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산하 행정지도기관의 농림공직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였다.

□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내행사를 앞두고 의사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14:00시에 긴급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관계부처 협조 : 이동제한초소, 소독 인력·장비지원(국방부), 소요예산지원(기획예산처), 대국민 및 월드컵 관련 홍보(국정홍보처·문화부), 밀수 및 불법 반입단속(관세청), 인체무해성 홍보(복지부) 등

○ 구제역은 지난 2000.3.24~4.16일 사이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확인 후 2년 1개월만에 처음 발생한 것이다.

□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

설 명 자 료

- 제공일 : 2002. 5. 4.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장 기 윤
 - 전화 : 02-500-1934
-

제 목 : 돼지고기 등 우제류 축산물 일본수출선적 중지

- 농림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의심돼지가 발생함에 따라 5. 3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축산물의 수출선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 수출중단조치는 한일간에 협의하여 제정된 일본의 한국산 우제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한국에서 구제역, 우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측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수출선적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

-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는 우리정부의 의사 구제역 발생통보에 따라 한국산 우제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증명서의 발행을 일시정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 4.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창 섭
 - 전화 : 02-500-1940
-

제목 : 경기 안성 돼지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최종확인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김옥경)은 5.2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대표 : 유창주)의 돼지에서 발생한 의사구제역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최종확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임상증상을 나타낸 돼지의 가검물에 대하여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O₁임을 확인하였으며, 동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Pan Asia O₁형으로 분석되었다.
 - 유전자형중 Pan Asia O₁형은 2000년 우리나라 분리바이러스 및 2001년 몽고, 러시아, 중국 티벳 및 남아프리카 등에서 2001년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과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금번 경기도 안성 돼지에서 발생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에 밝혀진 바와 같이 돼지에서 병원성이 매우 강할뿐만 아니라 소에도 전염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실시, 외부인 농장 출입통제 등 초동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2. 5. 4.
- 제공자 : 농림부 조직인사담당관실
- 담당과 : 박형규
- 사무관 : 박상윤
- 전 화 : 500-1584

제목 : 구제역 의심 가축 신속 신고한 수의사 장관표창 격려

-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5.4 충북 진천지역의 구제역 의심 가축에 대하여 신속히 신고한 (주)선진브릿지랩의 김현섭 수의사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주)선진브릿지랩의 김현섭 수의사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이춘복씨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아 임상검사를 실시하던중 소유 돼지 1,000두 중 50두에서 구제역 증상을 발견하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속하게 신고함과 동시에 농장출입 통제, 축사소독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해당 농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농장에서 5.3(금) 안양 소재 협신도축장으로 60두가 출하된 것을 확인하고 도축장에 도축을 보류토록 조치하는 등 구제역 초동방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 ※ 신고된 돼지는 격리시켜 도축 보류조치, 검사실시후 음성 판정시는 도축허용하고,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돼지는 살처분 조치 예정

설 명 자 료

- 제공일 : 2002. 5.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위생과
 - 과 장 : 조규담
 - 사무관 : 박영근
 - 전 화 : 500-1898
-

제 목 : 구제역관련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 농림부는 이번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을 도살·매몰한 경기도 안성·용인과 충북 진천지역 매몰지에 대한 두차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지난 5.2일 이후 구제역 긴급방역 차원에서 군 병력과 장비협조를 받아 밤늦게까지 도살·매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미진했던 점이 확인되었음

- 이에따라, 5.20, 22일 두차례에 걸쳐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음.
 - ※ 5.23 :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 점검계획

- 농림부는 5.22일 농림부 차관보 주재 매몰지 사후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매몰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우선 성토, 악취제거제 살포로 악취발생을 줄이고 침출수는 별도 집수하여 저장·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지하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음용수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음용수 수질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시·군별 매몰지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여 사후관리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악취제거제 구입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14.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김실중
○ 사무관 : 이학주
○ 전 화 : 500-1917 500-1918

제목 : 구제역 등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수매키로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용인지역과 충북 진천의 가축에 대해 수매가 실시된다. =

□ 2002. 5.14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수매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이동을 제한하여 가축의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 수매대상 : 소 500kg이상(젖소 노폐우, 육우 포함), 돼지의 경우 자돈과 비육돈 100kg이상(모돈 포함)을 수매키로 하고,
- 수매가격 : 현재 시가(서울축산물공판장 지육경락가격을 기준)로 수매하기로 하였으며,
- 수매시기 :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하여 수매를 실시한다.

□ 한편, 강원도 철원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철원지역내 육가공업체에서 민간수매를 추진키로 하고, 수매자금 44억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28.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김실중
- 사무관 : 이학주
- 전 화 : 500-1917 500-1918

이 자료는 2002년 5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등 수매키로

= 철저한 방역장치를 마련하여 구제역이 발생된 경기 안성·용인지역과 충북 진천지역의 돼지 수매가 개시된다. =

□ 2002. 5.27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시·도, 양돈농가 및 협회, 농협, 양돈전문가 등이 구제역 발생 진정기미가 보이자 현 시점의 과체중 등을 감안하여 수매적기라는 건의가 있어 농림부는 철저한 방역 하에서 수매가 이루어 지도록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수매대상은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비육돈 중 과체중 돼지(120kg이상)가 우선 수매대상이며,
- 현재 시가(서울축산물공판장 지육경락가격을 기준)로 수매를 실시한다.

□ 한편, 금번의 조치는 수의과학검역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시달된 수매지침을 보완하여 수매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것이다.

- 우선, 운송차량의 이동을 줄이기 위하여 읍·면 또는 리단위 운송 전담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 운송과정에서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는 출하전 12시간 이상 절식, 운송차량에 카바설치,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해 톱밥 또는 부직포를 깔아 운송토록하고,
 - 수매 운송차량은 농가진출입시 2회 소독, 지정도축장 진출입시 2회 소독 실시토록 하였으며,
 - 부산물 생산에서 폐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키로 하였다.
- 한편, 농림부는 금번 수매로 인하여 그동안 구제역 발생 이동제한 지역내 묶여 있던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출하가 활발히 이루어져 출하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 구제역발생지역내 소 등 돼지 이외 우제류 가축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매하게 됨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7. 16
- 제공자 : 축산국 가축위생과
- 국 장 : 서 성 배
- 과 장 : 이 희 우
- 전 화 : 500-1940

이 자료는 2002년 7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둘기·까치 등 야생조수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없어

-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서식하던 비둘기·까치 등 야생조류의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매개체(Carrier) 기능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힘
 - 농림부는 구제역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6.13일부터 환경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야생조수 83마리(비둘기 28, 까치 53, 참새 2)를 포획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7.15일 정밀검사(RT-PCR방법) 결과 83마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역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됨
- 야생조수의 구제역 정밀검사는 5.2~6.23일까지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과정에서 구제역 전파경로에 대해 “사람과 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하면서도
 - “야생조수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의전문가와 축산농가의 지적이 있어 야생조수의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임

□ 이번 야생조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로 국내역학조사 전문가와 지난 6.29~7.4일간 외국 구제역 역학전문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오염된 사람·물품”을 통한 구제역 유입과 전파가능성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 지난 2000년 구제역 역학조사시에는 1년 이상 학계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으나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① 수입건초에 의한 유입 ② 해외 여행객(오염된 의복 및 신발 등)에 의한 유입,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③ 황사에 의한 유입등 몇가지 가능성을 거론

< 참고자료 >

야생조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 포획기간 : '02.6.13~7.9
- 포획장소 : 구제역 발생농가 축사 인근
- 포획방법 : 환경부, 경찰청의 협조로 수렵용 총으로 포획
- 검사기간 : '02.6.15~7.15
- 검사방법 : RT-PCR방법
- 정밀검사 결과 내역

지 역	검사결과 (음성)			
	비둘기	까치	참새	소계
경기 안성	18	13	2	33
용인		5		5
평택	10	13		23
충북 진천		22		22
계	28	53	2	83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7. 30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희우
- 사무관 : 김창섭
- 전 화 : 500-1930/1940

이 자료는 2002년 7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구제역 등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농림부는 금년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 농가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 ①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의 명문화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방역교육 실시
- ②농장출입 사료·약품·분뇨차량의 소독의무 규정 신설
- ③농장 또는 마을단위의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 ④농가의 가축거래 사실 기록 의무규정을 신설
- ⑤방역조치 이행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염병 발생시 효율적 방역추진을 위해

- ①전염병 신고지연 농가에 대한 농장폐쇄 등 제재규정 신설
- ②발생지역에서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에 가축, 차량외 사람까지 포함하였고
- ③가축의 도살·매몰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신설
- ④공·항만에서 휴대육류 등 신고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500만원이하)을 부과토록 하였고

○ 아울러 방역체계를 개선하고자

- ①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장의 방역조치 요구 권한 신설
- ②가축방역협의회 운영규정 신설
- ③행정기관에 두는 가축방역관(수의사) 자격요건 완화
- ④민간방역단체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화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정부 방역위탁사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02.7.26~8.5)와 입법예고(8월중 20일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설 명 자 료

- 제공일 : 2002. 7 . 31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창 섭
- 전화 : 02)500-1940

이 자료는 2002년 7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구제역 방역지역에서 도망간 염소 처리

-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 염소농장에서 지난 7.27일 혈청검사를 위해 피를 뽑던 중 우리를 탈출한 염소 43두를 포획하여 도태처분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탈출한 염소는 지난 5.2일 구제역이 발생한 울곡농장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육된 것으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지난 7.22일 1차 혈청검사(8두)에 이어 2차 혈청검사를 위해 채혈(4두)을 하던 중 우리를 탈출하여 인근 야산에 배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
- 경기도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염소는 1·2차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인근 농작물 피해발생과 가축사육 농가의 구제역 전파염려 등을 감안 용인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포획하여 도태하기로 한 것임
- ※ 구제역 발생지역은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됨
- 한편 농림부는 해당 염소가 구제역 농장이 아직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 경기도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염소를 포획하여 도태토록 지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8. 14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창 섭
- 전화 : 02)500-1940

이 자료는 2002년 8월 15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구제역 52일만에 종식, 평시방역 대폭 강화키로

□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5.2일부터 6.23일까지 경기도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던 금년도 구제역이 최초발생 52일만에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8.14일 발표했다.

※ 경기도 안성 9건, 용인 4, 평택 1, 충북 진천 2(돼지 15, 젓소 1)

- 그동안 발생지역(반경 3km : 위험지역, 3~10km : 경계지역)에 대해 취해왔던 가축이동제한 등 집중 방역조치는 지역별 정밀검사를 거쳐 이미 8.7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고,
 - 진천지역 : 최종 살처분 5.15일/경계지역(6.15), 위험지역(6.24)해제
 - 평택지역 : 최종 살처분 6.6일/경계지역(7.12), 위험지역(7.20)해제
 - 안성·용인 : 최종 살처분 6.24일/경계지역(7.25·28), 위험지역(8.7)해제
- 이동제한 해제후에도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5개 농가를 선정·특별관리하면서 추가검사(프로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개 농가는 8.10일, 2개 농가는 8.13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날 전국적인 종식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김 장관은 구제역을 종식하기까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와 군·경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약 16만두(162농가)의 우제류 가축을 도살·매몰하여 약 531억원의 살처분 보상 및 오염물건 보상소요가 발생하였고,
 - 이동통제초소(최대 119개소) 운영과 살처분 작업 등에 연 인원 95,588명의 군·경과 관련공무원 48,24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병력의 적극적인 협조로 살처분·매몰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이 이번 구제역 종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구제역 피해 농가들이 빠른 시일내에 생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구제역 방역비용 추정(총 1,429억원) : 살처분 등 보상금(531), 소독약품 등 방역비(123), 생활안정자금(15), 가축입식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392), 가축 수매 자금(337),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31)등

- 한편,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평시 방역체계 강화와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등 구제역 이후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대만·몽고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 둘러 싸여 있고 최근 이들 국가와의 인적·물적교류·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 위험도별·유입경로별 검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 축산농가에서도 축사내외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금번 구제역 유입경로 및 전파원인으로 추정되는 해외여행객,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등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제역 방역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이미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참고로, 지난 6월말에 내한한 **외국의 구제역 전문가**(호주 Dr. Garner, 미국 Wainwright 등) 들은 소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이상 많은 돼지 구제역을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근절 시킨 것은 축하 받을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 검역만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해외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신고체계의 구축과 함께 **양축농가의 협조와 능동적인 방역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농림부는 최종 발생농장에서 살처분이 끝난 6.24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9.24일 이후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금년 11월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구제역 및 가축질병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역 청정 지위 복귀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며
- OIE에서 청정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양국간 위생조건 협의 및 일본 농림수산성령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일돈육수출 재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청정국 지위회복 전이라도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한 필리핀·러시아 등 일부 수입국과는 현재 수출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9. 19.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정책과
○ 과 장 : 조규담
○ 서기관 : 노수현
○ 전 화 : 500-1887

이 자료는 2002년 9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공직자, 구제역 등 살처분 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성금 모금 지원

□ 농림부는 농림공직자와 산하 기관·간체 임직원 등이 정성들여 모금한 성금 286백만원을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으로 9.19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분 농가 평균가계비(1천만원)를 기준으로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였으며, 이번에 농림부가 지급한 생활안정자금은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50~500만원의 범위에서 차등지급 하였다.

※ 생활안정자금 지급총액 1,450백만원(성금 등 665백만원, 지방비 785백만원)

□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농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2. 12. 02.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장 기 윤
○ 전 화 : 500-1936

제 목 :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증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위원회”에서 청정국 인증 -

- 농림부는 금년 5.2~6.23일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 지난 11.25일부터 5일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앞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경검역 강화와 축사소독 등 국내방역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 추진중 미담사례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목련화, 그리고 철원희군과 내 딸아이 이야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방역과 수의사무관 김도순

2000년 3 ~ 4월 66년만에 국내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의 6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 모두의 합심 노력으로 발생한지 18개월만인 2001. 9.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로 2001. 12. 1일자로 전면적인 예방접종 중지(제주도 및 강원도는 그 이전에 중단)와 함께 대한민국은 돼지콜레라 청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2002년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해였다. 지구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월드컵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하여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마 그 다음으로 구제역 방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는 2001년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전분야에 걸쳐 이동제한과 행사 취소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영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 2002년도 방역은 구제역 청정화 유지와 돼지콜레라 재발방지에 가축방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2002년도는 한달 앞당겨 2월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 지는 봄철이 되면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외출이 잦아지고, 축산농가에서도 겨울철에 미루었던 축사 보수나 정비, 분뇨처리 등을 위하여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며, 농촌지역에서는 마을이나 부락단위 또는 단체 회원끼리, 지역별 계모임 등으로 중국이나 몽고 등 인접국가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이들 나라에서도 관광·산업시찰 및 산업연수 등 각종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되어 그만큼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2001년 12월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함에 따라 그 이후에 태어난 새끼 돼지는 60 ~ 90일이 지나면 어미로부터 젖을 통해 받은 항체가 몸속에서 없어지게 되므로 농장 축사나 바닥 등 자연환경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2002년도 봄철이므로 방역당국으로써는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출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특별방역대책상황

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02년 2월달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은 일선 시/군의 소독의 날 운영사항이나 축산농가, 도축장·가축시장·집유장 등 가축이 모이거나 연관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루가 멀다하고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밤늦게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이러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농장 방역지도에 애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은 서서히 고갈되어 갔고, 생각이나 의욕만큼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럴라 치면 3층에 위치한 방역과 사무실 앞 옥상으로 나가서 본관 현관앞에 유유한 자태를 뽐내면서 따듯한 봄기운을 받아 금방 꽃망울을 터트릴 목련화를 보면서 하루라고 빨리 저 목련화가 피어 봄철이 후딱 지나가기를 바랐다. 저 목련화가 지고나면 우리의 특별방역대책도 거의 끝나갈 것이고 우리의 이 고달픈 생활도 종식을 고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2주 정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고단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2002. 4. 13일 토요일날 원조 칼국수 집에서 기대 부푼 마음으로 방역과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채 그저 4월이 지나면 새로운 지평선을 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이다.

우리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던 사항이 2002. 4. 16일 저녁에 강원도 철원지역으로부터 날라 들어왔다.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였다. 강원도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11개월이나 빠른 2001. 1. 1일 실시하여 예방접종 중단후 15개월이 지난 2002. 3월달의 항체 양성율은 6.3%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사육 돼지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확산이나 전파의 위험성에 대하여 솔직히 겁이났다. 걱정하고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가고,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2000년도 구제역의 초동방역 경험을 밑바탕으로 농림부, 강원도,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4. 20일에는 강원도 화천에서, 4. 21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이었다. 4월말로 접어들면서 1주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이제는 뭔가 잘 되어 가는구나 하고 다소 마음의 위안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던중 4. 24일부터 돼지 수매 출하를 시작하였는데 이동제한 지역에서 수매용으로 출하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소의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하게 되므로 몇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4. 30일 출하농가중 한농가(3km내 소재)에서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가 현장에서 다급하게 전화로 알려왔다. 감염축이 도축장으로 출하되어 유통되면 여러경로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 초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감염농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방역정책을 살처분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되기 시작되었다. 방역정책의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사항은 감염농장을 신속히 찾아내어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더 급선무였다. 검역원과 강원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임상관찰 20개팀이 5. 1일 다급하게 구성되어 1개팀(2명)이 2 ~ 3개 농장을 2일 간격(5월 1일, 5월 3일, 5월 5일, 5월 7일, 5월 9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으로 2주동안 집중적인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하고, 출장을 가지 않는 날에는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5. 1일에 공문조치가 되어 인원 동원 및 출장준비 등으로 5. 2일에는 대부분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5. 3일부터 본격적인 농장예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진두 지휘하는 상황실은 밤늦은 시간에도 항시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방역과 직원들은 출장자들이 가지고 가야할 일회용 방역복이나 장화 등 방역재료를 챙기고 각자 팀원들간에 착오없도록 임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기에 바빴다.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5. 3일) 검역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님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 나는 예방접종시의 장단점이라던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실시범위 등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을 신속히 찾아내어 추가 발생을 막을 것인지에 대하여 골몰하고 있는 나에게 2002. 5. 2. 23 : 30분경 상황실로부터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가 느닷없이 나에게 내밀어 졌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5,000두 정도 사육규모의 양돈농가 였다”

“나는 그순간 ‘97년 대만의 돼지 구제역 상황이 떠올라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아찔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2000년에 겪은 구제역을 또 겪는단 말인가?”

“나는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신고서를 가지고 온 김성원씨에게 물었다.”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는가?”

“해외전염병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면서 말을 흐렸다. 그리고, 사람이 가검물을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나는 얼른 그 사람들을 상황실로 오라고 했다”

“가검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대한사료의 양돈컨설팅을 담당하는 오규석, 장교훈 이었다”

“나는 이분들을 데리고 원장실로 바로 내려갔다”

“원장님, 저....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는데....이분들이 가검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상소견이나 농장의 질병 진행경과 등을 들어보니까 동물적 감각으로 거의 구제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아이구, 이 일을 어쩌나, 한쪽에는 돼지콜레라가 터지고, 한쪽에는 구제역이라니 정말로 하늘이 깜깜하였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경기도에 바로 연락하여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림부에도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면서 철원에 돼지콜레라 특별임상관찰을 위하여 우리 직원들은 각자의 차량으로 철원을 향하여 북으로, 북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새벽 통트는 햇볕처럼 뇌리에 선하게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철원 돼지콜레라는 강원도에 일단 맡기고, 모두 철수하여 다음 지시를 받도록 조치가 떨어졌다. 이유를 설명할 겨를도 없이 상황실 여기저기 전화에서는 철원으로 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철수하여 사무실에 대기토록 하는 전화 목소리가 요란하게 퍼졌다. “나는 그 순간 조선시대를 건국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이렇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듬하여 “철원회군”이라 할까? 아마, 그당시 출장을 가고 있었던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채 철수를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02년 구제역과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방역과에서는 2월달부터 시작된 “구제역특별방역대책상황실”, “돼지콜레라비상방역대책상황실”, “구제역비상방역대책상황실” 3개를 뭉쳐서 운용해야 했다. 2월부터 시작된 특별대책 추진, 철원 돼지콜레라 방역으로 3개월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저하되고, 5월이 되면 조금 쉴 수 있다는 희망도 꺾여 모두가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회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

야 한다는 심정으로 대강당으로 옮겼다. 2000년 구제역 발생시 앉았던 옛날 그 자리로.....

내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중에 그렇게 빨리 지기를 기대했던 목련화 꽃잎은 모두 떨어진지 아주 오래이고, 이제는 잎이 피어 햇볕을 가리기에 충분했다.

2002. 5. 5일 어린이 날이 가까워 와도 나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내 딸아이(김우희)에게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었다. 그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해야 했다.

“아빠, 오늘도 나가?, 친구들은 서울대공원에도 가고, 에버랜드에도 가는데 우리는 뭐야고 투정을 부렸다!”

“응, 아빠가 바빠서, 다음에 꼭 시간내어서 우리도 한번 가지”

언젠가, 나는 나의 와이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딸아이 학급반에서 각자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던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는 “우리 아빠랑 뒷산에 올라가 꽃도 보고, 백화점도 가고, 또 오락실도 가고 하는 등등의 말”을 꾸며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는 금년(’03년)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봄방학을 하면서 2학년 생활통지표를 가지고 왔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한번 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1년 동안 가르치고 지켜본 사항을 적은 내용은 “상상하여 꾸며서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일을 어쩌나, 나는 딸아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인가?, 거짓말쟁이로 키우는 것인가? 내 자신이 의아스러웠다”

언제가 내 딸아이가 이 글을 보게되면 조금은 아빠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공무원 가축방역 긴급조치 협조 우수사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진단과장
가축위생연구소 이오수

-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소재 강정석농장에서 살처분 과정 및 뒤처리 작업 등의 초동방역 수행에 있어 신속히 대처해 준 원삼면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가축방역 긴급조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o 강정석 발생농장(원삼면 독성리)에 의심축이 2002.5.26 11:20신고되어 접수되었을 현장도착(동일 11:40)까지 주변 돼지 및 사료차량 등이 이동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하여 500m와 3km에 면장(견광수 5급)을 중심으로 면 사무소직원(자체인력) 가용인원과 경찰서(지소) 등을 모두 동원하여 신속하게 농가출입구 도로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농장차량 출입구를 봉쇄하고 또한 자체 소독차량을 농가주변을 소독하게하여 용인시의 어떤 지시가 있기도 전에 중앙가축방역관의 방역업무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속한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 o 또한 원삼면 최초 의심축 신고 접수시 농장주인(강정석), 관리인 등 발생농가에 근무하는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초소 근무자로 하여금 이동통제를 유도하고 또한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초소근무요령과 이동통제 근무기록서를 별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 o 원삼면 소재 양축농가 현황판을 정밀하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중앙역학조사위원회로 하여금 500m 이상 떨어진 양축농가(1개소 살처분, 2개 농장 특별관리농장)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유도하여 질병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며,
- o 또한 원삼면 사암7리(한지숙) 농가에서 2002.5.25일 신고한 돼지콜레라 의심축에 대한 초동방역을 발생신고 약 15분이내에 중앙가축방역관과 신속히 출동하여 축주가 “이렇게 빨리 나왔느냐” 할 정도로 매우 긴급하였으며 아울러 동시에 차량 통제초소설치 통제라인 설치, 소독차량 즉시동원 등이 높이 인정되었음.
- o 향후 시/군 가축방역에 신속하고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면장 중심의 가축방역을 한번 고려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55사단 지휘관과 장병들의 헌신적 노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진단과
가축위생연구소 이철현

-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던 안성시의 율곡농장에서 살처분 과정 및 뒤처리 작업에 참여하여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 노력으로 일련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휘관(55사단 기동대대 대대장 중령 신정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율곡농장 폐지의 살처분 매몰작업에 군 병력의 투입이 결정되자 지역사단인 55사단 병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군 병력이 투입되자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령관급 지휘관들이 통제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배치문제 등을 논의하였지만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병사를 지휘한 지휘관은 기동대대장이었다.

당시 악천후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힘들고 더딘 작업이 계속되었고 사흘 밤낮을 악전고투하여 1만여두의 살처분 매몰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고 이어 이틀간의 뒤처리작업이 강행되었다. 수만 톤의 돈분들이 소독 조치되었으며 수십 동의 돈사가 깨끗이 청소되어 소독약으로 도배가 되었다. 아마 현장을 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생스러움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스러움을 견디며 완벽에 가까운 임무수행을 이루어낸 것은 단순히 군 장병들의 젊음 패기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방역 때문에 투입된 농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 현장에서 함께한 안성시 직원, 경기도, 검역원 방역관들의 노고는 물론이고 그 열악한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솔선한 지휘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과묵한 인상의 신중령을 작업이 끝나고 만났을 때 병사들이 자기일 처럼 열심히 해 주어서 고마웠다는 한마디만을 남겼다.

그리고 용인시 백암면에서 살처분 후속처리를 지휘하고 있는 신중령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쪽 한적한 곳에 있거나 따로 행동하지 않고 병사들 속에 묻혀 있어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처음 본 사람은 아마 대대장 인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살처분 농가의 방역조치를 점검하다 보니 신중령이 직접 지휘한 농가는 뭔가 달라도 달랐고 보강할만한 조치사항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진행한 이번 구제역 방역작업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결과물로 차곡차곡 쌓인 것이라 생각한다.

2년만의 동굴생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
가축위생연구소 최강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에 있는 차폐연구실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실험실을 동굴이라고 우스게 소리로 부른다. 차폐실험실이 이중옹벽(Box in Box)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구제역 신고를 접한 것은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여 방역당국을 한층 더 긴장시키고 있을 무렵인 5월 2일 저녁이었다. 그날은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주위 집중관리대상 농가 일부의 임상관찰을 담당하고 있어 그 동안 밀려있던 연구사업 실험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막 저녁을 먹고 난 시간, 병리과 강경일 연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성의 한 돼지농가의 수포성 질병 의심축 사례가 신고되었는데, 메일로 보내온 임상증상 사진을 내게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의심축 신고는 가끔씩 경험했던 해외전염병과의 일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하는 심정과 그럴 리 없다는 바램이 보태어져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30여분이 흘렀지만 그 메일은 오지 않았다. 궁금하기도 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겸 다시 강경일 선생에게 전화했을 때 메일전송에 실패했다며, 사진상으로는 부제병 같다며 여하튼 직접 오라고 부탁했다. 마침 담당업무를 맡고있던 계수정 수의주사보를 데리고 병리과로 갔다. 그 당시 사진을 보았던 다수의 의견이기도 했지만 발바닥을 촬영한 사진으로 분명 그렇게 보였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 직접 의심돼지를 가지고 온다는 신고한 수의사의 말을 전해듣고서는 바로 대한사료 이승윤 수의사와 통화를 시도했다. 분명 수포성 병변이 보이며 전파속도가 너무 빨라 수 백마리가 감염되어 있고 자돈 급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감염율이 빠른 수포성 질병은 구제역과 돼지수포병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구제역이나 돼지수포병에서 폐사율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니기를 바랬지만 나의 의심은 이미 도를 넘어서 버렸다. 해외전염병과장에게는 의뢰된 신고축이 도착하여 임상증상과 역학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보고하고, 담당 실장인 조인수 연구관님에게 급히 검역원으로 오시라고 요청했다. 신고축이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이었다. 신고축은 자돈으로 1두는 이미 폐사하였고 1두는 살아있었다. 자돈의 발굽과 혀를 관찰한 순간 나는 이미 얼어버렸고, 진영화 과장님, 조인수 연구관님 그리고 주위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었다. 곧바로 나는 신고축을

차폐실험실내로 옮겨서 부검 및 시료채취작업이 들어가고, 조인수 연구관님은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의 동굴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의 동굴생활이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밤새 구제역 진단작업은 시작되었다. 아울러 구제역이 아닐 경우 돼지수포병 진단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다. 메쾌한 동굴속 내음과 차압으로 인한 약간의 어지러움 증도 이내 사라지고 그렇게 긴박하게 밤이 흘러갔다. 동굴 자그마한 창사이로 새벽 수리산 가너린 등선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2년전 당시 매일 새벽에 바라보던 그 수리산 능선은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이틀을 시름한 끝에 진단결과가 나왔다. 구제역 바이러스 O형이었다 (물론 돼지수포병은 음성이었다). 패스박스사이로 내가 손으로 O형을 나타내며 “It’s true!”라 전한 순간 동굴밖에서 진단결과를 학수고대하며 같이 밤을 새었던 우리과 직원들은 토끼눈으로 나를 주시하였다. 그 동안 구제역진단 검사경험이 없었던 요원들의 실전 기술훈련이 시작되었고 이내 모두들 최고의 정예 전문요원들이 되어버렸다.

두 달간에 걸쳐 밤에 동굴로 출근하는 박쥐생활 (시료가 대부분 밤늦게 실험실에 도착함)이 반복되었다. 사실 2년 전의 구제역발생 경험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집중적인 구제역 진단연구 결과로 구제역 진단기술은 2년전 당시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시스템화되었고,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세련되어져 갔다. 청춘남녀들이 거의 매일 밤을 동굴에서 새면서 한 두 사람씩 몸져 눕기도 할만큼 체력이 고갈되어 갔다.

그 당시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축구는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 함성과 함께 우리들의 고갈된 체력을 보충해주기에 충분했다.

나를 포함해, 이종오, 손현주, 나진주, 고영준, 엄재구, 이광녕, 이세영 선생 등 동굴속 드림팀, 그리고 현방훈, 이재길, 이영주, 강민수, 김인중 등 정예 용병팀, 끝없이 밀려드는 구제역 근절 대책 및 조치를 취하느라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주이석 해외전염병과장님, 조인수 연구관님, 박지용, 계수정, 이윤희 선생 등 동굴밖 드림팀, 그리고 구제역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모든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불과 몇 개월만에 세상 어디에 가도 자랑스러운 월드컵 4강신화와 같은 구제역 청정화라는 기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동굴생활을 경험하여서는 안 되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추억이기를 바라면서...

구제역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업무지원자 이상규의 하루

(구제역이 한창 추가발생되었던 6월 초순에)

방역과 수의주사보 하준일

-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던 2002년 5월 초, 부산지원 항만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구제역 비상방역대책상황실로 업무지원을 오게 된 이상규(수의주사보)의 하루일과를 업무지원자들을(현 4명) 대표해서 수범사례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인 2002년 5월 4일, 부산 앞바다를 뒤로 하고 이상규씨는 안양으로 올라왔다. 5월 2일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로 인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체가 발각 뒤집혔고, 그에 따라 검역원 본원인 안양에 구제역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이 설치되었다. 부산지원의 이상규씨는 상황실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서울지원에서 1명(수의주사보 백동진), 인천지원에서 1명(수의주사보 신현택), 군산지원에서 1명(수의주사보 김철희)도 역시 상황실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양에 도착했다. 업무지원자들은 직원식당(人和亭) 2층을 숙소를 잡고 근무하기로 했다.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잠깐 숙소에 갔다가, 또 출근하기를 벌써 한달 짜다.

상황실이 설치된 이후 줄곧, 부족한 수면과 향수에 시달리는 이상규씨는 오늘도 검역원 강당2층에 설치된 상황실에 출근한다. 몸은 출근해 있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그를 깨우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온다.

“여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인데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고접수/처리한 내용을 팩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순간,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통화내용을 엿듣고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이상규씨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농가에 전화해서, 환축의 임상상태를 체크한다. (충남 아산시청에서 3년6월,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아산지소에서 4년 정도 근무했던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연락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한다. 검역원 상황실에 수리된 신고내용은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료 채취팀과 구제역의 감염경로를 찾아내는 역학조사팀에 통보되고 현장 출장자들이 즉시 출동한다.

이상규씨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한 대 물고는 혼자서 되된다....

‘이러다가 집에 못가는 거 아니야, 아직 장가도 못 가고 벌써 서른 일곱인데, 데이트할 만한 시간도 없고...이번 신고는 설마 아니겠지, 구제역 음성일꺼야, 아니 혹시 구제역 양성이면 어떻게 하지?’

그는 시/도 지방공무원을 거쳐 검역원까지 오게 되어서 현장경험이 풍부했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는 없다

저녁식사 전에 이상규씨는 매일 체크하는 일이 있다. 바로 특별관리농가 99곳 등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사육하고 계시는 돼지들... 이상이 혹시 있는지요?”라는 구제역 예찰전화를 한다. 전화가 다 끝나고 나면 전화를 들고 있었던 팔이 빠근하다. 귀에서는 진물이 나올 것 같고, 전화를 끊어도 상대방의 목소리 계속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깐, ‘현장에서 이 무더위에 나보나 더 고생하는 가축방역관들도 있는데...’하며 위안을 삼는다.

우리 업무지원자들 4명은 직원식당 2층에 살고 있다. 남자들만 네명이 사는 지라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못한 채로 조금은 어수선하다. 이불은 각자 어디선가 구해온 침낭으로 하고, 아침도 물론 말할것도 없이 거르기 일쑤다. 서울지원이나 인천지원에서 업무지원 온 직원은 그래도 얼마전 일주일 전쯤에 집에 잠깐 다녀왔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올라 온 결혼한지 3년되는 김철희씨와 서른 일곱의 비범한 노총각-만형 노릇을 톡톡히 하는 듬직한-이상규씨는 한달동안 아직 한번도 그리운 집에 가본 적도 없다.

오늘도 업무지원자 모두는 언제나 구제역 종식선언이 빨리 되는 날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린다. 그러나 종종 9시 저녁뉴스에 잠깐잠깐 나오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인터뷰장면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친가족 내지는 자식처럼 기르고 아끼던 가축들의 살처분 현장을 지켜보며 시름을 앓고 향후 대책을 고심하며 낙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축산농가를 생각할 때, 비록 하루하루가 버겁고 피곤함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다.

업무지원자 중 만형인 이상규씨는 언제나 출근하면 상황실 벽면에 걸려있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막아 우리축산 보호하자!”와 “초동방역과 방역비상사태 수습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문구를 바라보고는 구제역 종식을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을 해 보며 숨가쁘게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 비상상황, 그리고... 딸내미 회유작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수의주사 박종우

예방접종 중단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방역자문 및 현지 역학조사를 위해 각 계 인사들 - 대학교수 및 관련협회·단체 임원 등 - 을 모시고 강원도 철원 발생농장 일대를 돌아보던 그 때(2002년 4월 30일)는 차창 유리를 통해 팔뚝을 데우는 따뜻한 햇살과 막 새로이 돋은 초록빛 여린 나뭇잎에서 희망을 찾듯 돼지콜레라도 이제는 진정국면에 접어드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수행하는 발걸음도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

그런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는 뜻하지 않게, 바로 그 날 최초발생에 이어 추가로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이 확인된 시점이었던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5월 1일) 추가발생농장에 방문하여 미리 급파되었던 역학조사과의 초동방역 수행을 독려하고 및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양 본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 였다.

비록 1박2일의 비교적 짧은 출장이었으나 여독을 뒤로 하고 바로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치고는 곧바로 추가발생농장에 대한 발생상황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고 나니 어느덧 날은 저물고... 인천 집에 가기에는 너무 늦고 전철시간도 놓치게 되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 전화를 걸을 수 밖에 없었다.

“ 여보, 난데...오늘도 어쩔 수 없네...애들은?...그래, 그럼 잘 자!”.

그리고는 이튿날(5월 2일) 새롭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아침부터 부산하기 시작하여 오후 늦게까지 현지긴급출장 준비에 여념이 없는가 했더니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상황실에서 들려 오는 근심스러워 하는 대화들... 바쁘게 이리 저리 부산스레 움직이는 발걸음들... 알고 보니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심상치 않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양돈농가로부터 사료회사 A/S담당 수의사를 통해 구제역 의심축으로서 병성감정 의뢰된 검사시료에서 구제역 감염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2년전 66년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겪었던 악몽같은 비상방역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인가!...

그야말로 긴장감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발생지역과 발생상황 확인, 그

리고 현장으로의 방역관 급파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가운데 2년전의 기억을 되뇌며 긴급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방역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비상상황에 집에 전화하는 것마저도 더 이상 집사람의 눈치를 볼 만한 상황도 안 되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들어 본 전화수화기에 대고는...

“여보, 나야! 민수아빠...지금 비상상황이 벌어졌는데... 2년 전처럼 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내 다급한 전화 목소리와 ”구제역 발생“이라는 말에 집사람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 차렸는지... “뭐? 또?... 그럼 뭐, 할 수 없지...”라고 응대해 주었다.

그리고는 5월 3일 금요일, 2년 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각 반별로 구성하고 총괄 근무하기에 넓은 공간인 대강당으로 상황실을 이전하고자 구성반별로 긴급히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하고, 전화 및 팩시밀리, 그리고 PC배치까지 마치고는 각종 상황판넬과 대형지도로 벽면을 도배하듯 붙인 후 상황표식을 다 마치게 된 시점이 언제인고 하니 그 다음 날 5월 4일 토요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전화수화기를 들고 집으로 또 나는 전화를 한다.

“여보... 오늘도...어쩔 수 없어!”

그렇게 또 전화를 하며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외박(?)을 하게 된 것이 일주일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11일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당시 맡고 있는 업무는 구제역비상방역대책상황실의 상황자료(게시물) 제작 및 자료게시, 구제역 발생상황지도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가축방역 관련 홈페이지 민원상의 답변, 가축방역 관련 교육/홍보업무 등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구제역 최초발생농장에 이어 추가로 발생이 확인될 때마다 요구되어지는 각종 지도자료 및 상황자료들을 만들고, 이어 각종 회의석상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기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갈아 입을 옷과 속옷 등은 잘 포장된 상태로 당시 우리집과 비교적 같은 방향에서 살고 있는 라윤경 씨(축산물안전과 근무) 편에 받아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것도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집을 나선 지 열 하루만에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이 5월 11일 토요일 오후였다.

5월의 녹음, 그 자체가 지는 석양에 투영되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정경 가운데 퇴근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 항상 만원버스인 상태로 운행

하는 마을버스 - 실로 초라함을 감출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누구를 위하여 꼭 이래야만 하는가?’하는 생각에 골몰하다보니 어느덧 너무나 오랜만에 기에 반갑기까지 한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 그 당시 얼마 전 첫 돌이 지난 둘째아이(딸내미)가 잠을 자고 있을 경우에 께 까봐 초인종은 절대 누르지 않기에 - “아빠 - ---!”하고 달려 올 큰 아들 놈의 모습을 마음 속으로 연상지으며 열어 제치는 순간,

반갑게 맞이하는 집사람은 당연한 사실일테지만, 첫째아이(아들)는 잠을 자는지 안 보이고...그러나 뒤로 멀끔히 쳐다 보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뒷걸음질 하며 제 어미 뒤로 숨어버리고 마는 둘째아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얼마나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얼마나 ‘웬 아저씨지?’하며 낮설게만 느꼈기에... 딸내미가 그럴 수 밖에 없었을까?

정말 그 상황은 겪어 보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참담하기만 한 현실, 그 자체였던 것이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집에 온 탓인지, 아니면 3월말에 새로 이사 온 집이어서인지...아니면, 충격적인 딸내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고여서인지... 나는 잠을 옹게 청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그건 바로 마냥 아빠 품에서 재롱을 부리는 걸 받아주며 같이 놀아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부족한 아빠의 너무나도 당연한 고민이었을 게다.

그렇게 오랜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왠지 무거운 발걸음으로 향한 출근길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상심스런 심정으로 많이도 고민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날(5월 12일) 또 추가발생이 확인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실의 여러 모습들...

어느새 출근길의 무거운 마음도, 고민들도 떠올릴 틈을 주지 않고 또 바쁜 일정으로 난 포장되어 가야만 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 또 어둠은 드리워지고 환하게 조명으로 밝혀진 상황실의 심야일상(深夜日常)은 엿저녁의 딸내미의 모습, 그리고 출근길에서의 많은 군심(群心)들을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이 상황을 만회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효선씨(일반독성과 근무)가 취미활동으로 만들고 있는 테디베어(Teddy-Bear) 중 특별히 예쁜 것으로 골라 값을 치른 후에 며칠이 지나 집으로

퇴근할 때 딸내미의 가슴에 안겨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누군가 얘기했던가? “여자는 자고로 선물에 약하다!”고...

아니나 다를까! 언제 모른 채 했냐고 얘기하듯 아빠 품에 달려 와 얼굴을 묻고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딸내미 회유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당시에 비록 선물로써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퇴근을 제대로 할 만한 상황이 구제역 비상방역상황에 어디 한번 있었겠는가!

돌이켜 보면, 이렇듯 나 뿐만 아니라 구제역비상방역 체제하에서 우리원 모든 식구들이 감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고, 때로는 가정사를 제쳐 두고 밤낮으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해야만 했던 여러 순간들도 기억 속에서 생생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초라할 정도로 거의 우리는 안양6동 480번지 - 본원의 경우 -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게는 사랑스런 가족 - 부족한 나를 의지하고 이해하며 받아주는 아내, 그리고 아직은 철없지만 언젠가는 부족한 이 아빠를 이해할 거라 믿는 사랑하는 아이들 -이 있어, 비록 고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 나가야 할 길, 이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는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난 구제역 비상방역상황에서 발생농장 현장에서 살처분 등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명을 달리한 고 박상권 수의사(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소속)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또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끝으로, 나의 이 부족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무쪼록 가축방역업무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다시 아저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속 : 공병대대

계급 : 상병

성명 : 정 명 훈

TV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만 해도 내 주변에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과 그 심각성을 헤아릴 바가 없었다.

구제역이 갑작스럽게 안성에 이어 용인 주변일대에서도 발생하여, 이번 지원에 참석해야될 때만해도 솔직한 심정으로 힘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 짜증이 났을 뿐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갑작스런 출동준비도 반가울 리 없었고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군인으로서 우리만이 이일을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말 또한 그다지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기나긴 대기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작스런 상황이었다보니 사전에 장비를 동원하여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 또한 정확한 상황판단조차 어려웠던 시점이었다. 우리가 배고픔을 달래면서 8시간 여에 걸쳐 지루함과 싸우고 있던 중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날씨도 쌀쌀해질 무렵 드디어 우리가 이 일에 투입되게 되었다.

그 돼지들을 살처분하여 더 이상의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일도중에는 불가피하게 돼지에 대해 매질을 가할 때도 있었고 힘껏 걷어차는 등의 일종의 학대를 가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리 동물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잔인하다고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농장의 규모가 방대하다보니 우리는 고달픈 철야작업을 감행해야 했다. 어느덧 작업을 하다보니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을 때쯤 한 아저씨가 매장하기 위해 살아있는 돼지를 가득 담아놓은 구덩이 안을 바라보면서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 아마 그분은 이 농장에서 돼지를 애써 기르시던 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아마 본인의 자식들이 저 구덩이 밑에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게되었고 문득 대대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단지 막연히 ‘충을 들고 나탈를 지킨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저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구제역 작전을 해야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하고 해내는 것이야말로 나의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이 아저씨에게 웃음이 찾아오길 바란다.

★아주머니 힘내세요!

소속 : 의무근무대

계급 : 일병

성명 : 김 지 훈

'02년 5월초 뉴스데스크에서는 경기도 지방에 구제역이라는 병이 돼지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도 가끔 들어봤던 일이라 전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런 일을 쉽게 넘긴 것은 내 현재의 신분을 잊고 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5월 10일에야 알게 되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전입 온지 두 달이 채 안된 나는 한창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민 지원으로 5명이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손을 들게 되었다.

출발하기 전에는 밖에 나간다는 자유로움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연병장에 인원이 다 모여 2½톤 트럭을 타고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대민 지원 할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저녁시간이 다 되어 고참들과 나는 용인시에서 지원 나온 도시락을 2개씩 먹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으로 부대에서 벗어나 마냥 좋기만 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이 시작되었다.

굴삭기가 돼지우리 가까이에 큰 구덩이를 파고 우리는 살아있는 돼지를 그 큰 구덩이로 몰아 넣는 작업을 했다. 두 시간째 계속 작업을 해 우리는 돼지 400~500마리를 구덩이 안으로 몰아 넣었다. 익숙하지 않은 작업에 지쳐있던 나는 군대로서 무슨 고생이냐, 이 짓을 왜 해야하나 하며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화장실 찾다가 외진 곳에 웬 아주머니가 울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농장주인 아주머니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 큰 후회를 하게 되었다.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새벽까지 계속되어 이집 저집을 옮겨가며 돼지 몰는 작업을 했다.

아침해가 밝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는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드린 것이 정말 후회되고 죄송스러웠다. 그 후 구제역 대민 지원을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손을 들어 참여해 더 많은 피해지역이 없도록 노력했던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당시에는 참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내 군생활의 처음 생긴 큰 추억거리였다.

★삼겹살을 먹을 때 오늘을 되새겨서....

소속 : 172연대 1대대 계급 : 일병

성명 : 강 형 진

2일간의 대민 지원을 마치고서 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 다양한 일거리와 쇼킹한 불거리(?) 덕분에 처음인 이번 대민지원은 내 생애에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겨 질 것이다.

나는 한창 구제역으로 떠들썩 한 안성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면서 속으로는 긴장감도 약간은 있었다. 왜냐하면 돼지도 오염되서 죽이는 마당에 사람이라고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도착한 후에 애길 들으니 다행이 사람인체에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나는 몇 번의 제독에 걸쳐 도착지에 다달았다. 방역복을 지급 받고서 우리가 맡은 방역지역에 투입됐다. 방역복을 입은 나의 모습은 비행준비를 하는 우주비행사 같은 모습이었다.

긴장을 풀 겨를도 없이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돈사. 즉, 돼지를 키우는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돼지가 사는 곳에 돼지가 없는 것이다. 알고보니 오염지역에 있던 돼지들을 옆 공터에 묻어 버린 것이었다. 대략 2,500여 마리를 모두 죽여서 묻었다는 소리를 듣자 집에서 먹던 삼겹살이 생각났다.

곧바로 일하는 곳으로 투입이 됐다. 돈사의 문을 열고 난 기절할 뻔 했다. 수많은 벽과, 발냄새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 느끼는 것도 잠시 코가 무감각해 지면서 그래도 참을만 했다.

나는 온 사방에 벌려있는 변을 치우고 열심히 청소를 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기쁨도 잠시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잘 먹지를 못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먹었다.

밥을 다 먹은 후 섬 돌릴 틈 없이 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옷깃이 젖을만큼 내리기 시작했다. 일을 하다 잠시 바람을 쐬려고 할때 갑자기 돼지를 묻은 곳에서 피기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돼지들에게서 나오는 피가 가스 때문에 밖으로 분출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정말 놀라웠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 비가 와서 일을 못하나 했지만 일은 계속됐다. 비를 맞으며 불굴의 투지를 앞세워 하다보니 끝이 보였다.

청소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방역을 해야 했다. 장소는 돈사 주위를 소독제를 뿌리는 일이었다. 나는 오염지역을 소독함으로써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 오염지역

을 나오면서 또다시 제독과 소독을 하면서 나오게 됐다. 나와서는 속옷도 갈아 입었다. 첫 대민지원을 나와서 아무사고 없이 끝마치고 온 것은 좋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구제역 때문인지 못내 아쉬웠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후회 없는 지원을 하고 돌아 올 것이다.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때 오늘을 되새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다.

★구제역 소감문

소속 : 172연대 2대대 계급 : 중령

성명 : 편 재 필

2000년 4월경에 안성시 구제역 유입을 막기위해 지역내 검문소 20여개중 10개를 맡아 일일 3교대로 검문소를 운용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던 가운데 안성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을 때 재작년과 똑같이 검문소를 운영하고 병력통제를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병력을 투입시켰다.

최종상황보고 및 중간상황보고를 마치고 각 초소에 담당간부와 병사를 동시에 배치하여 검문소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살”처분이라는 생소한 작업을 요청 받았다. 내용인즉, 구제역 발생지점 500m이내의 소, 돼지는 모두 도살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어떻게 돼지를 죽이는 작업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되어 바로 병력을 투입하였다. 병사들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임무완수의 책임감을 평소부터 믿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못할 결정이었다.

믿음대로 병사들은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불평한마디 없이 휴일도 반납한채 돼지 죽이는 악몽과 냄새와 껍뻑거리는 돼지소리와 싸워가며 임무수행을 훌륭히 해내었다. 상급부대의 병력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단기간에 끝내지 못할 작업이었다. 이후 연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야간작업과 시청의 작업준비 미비등 구제역통제 상황실에서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여 작업병역이 대기하는 모습에 대민지원에 대한 한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심도 들었지만,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운상승의 기회로 삼고자하는 국가정책을 생각할 때 신속히 구제역을 차단하는 것이 군인의 본부임을 자각하여, 통제상황실에서 지휘가 안되면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작업준비가 덜되었을때는 작업실무자를 독촉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종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대민지원이 아니라 우리군이 평소 훈련한 국지도발/정규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균과의 전쟁이다”, “세균이 발생 원점에 숨어있고 우리는 이것을 차단/격멸하는 것이다.”라는 개념하에 병사를 독려하고 통제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작업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급한

상황보고소리. 대대장님 군인한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아! 실로 앞이 캄캄해지며 맥이 풀려버리는 순간이었다. 어렵게 고생하면서 한 작업인데 병사가 죽다니 그곳에 투입된 병력은 우리 2대대 병사들인데, 이럴수가, 누구인가? 누구냐? 누구냐? 소리치면서 한 10분 지났을까. 민간인 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되는 순간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역복에 장화에 장갑에 전부 똑같은 옷을 입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청 직원이 치였다는 것이다.

아! 감사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장으로 달려가 병사들을 위로하던 생각이 뇌리에 박힌다. 이 모든 기억을 함께 했던 안성 2대대 장병 너무도 수고했다.

병력이 부족하여 작업이 어려울때마다 아낌없는 병력지원을 해주신 연대장님과 사단장님 그리고 타지역에서 와서 대민지원을 실시한 분당대대, 용인대대, 사단 직할대 병력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아들 100일 잔치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가하여 밤을 샌 동원편성관을 비롯한 대대간부 및 휴가를 반납하고 구제역 작업에 참가한 안성대대 병사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자랑스런 안성대대 장병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리없이 다가온 불청객

삼죽면 덕산리 58-1 (덕산농장) 김명중

출던 겨울을 추억하며 봄날의 따사로우움을 느끼며 안정된 농장의 여건속에서 봄날 돌아나는 푸른 풀잎들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을 쫘 생각지도 않던 불청객이 나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5월 1일 부모님께서 계시는 강원도에 휴가차 다니러 갔었는데 5월 2일인가 농장에서 전화가 왔다고 집사람이 전화를 바꿔준다. 쉬고 있을 때 농장에서 오는 전화는 반갑지가 않은 전화들이 대부분이다. 전화를 받으니 인근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급히 올라오란다.

정말 아찔함을 느끼는 순간도 잠시 바로 농장으로 향해 올라오면서 오만가지 생각들을 해 본다.

우리 농장은 이틀에 한번씩은 내·외부 소독도 하고 정기적으로 안개분무 소독도 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안심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삼죽면 농협앞에는 도로를 통제하면서 소독을 실시 중이었고 우리 농장 정문도 굳게 잠겨져 있고 농장 출입구가 허연 생석회로 이미 도포된 상태였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오니 인근 울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다. 부랴부랴 현장점검을 하고 축사소독을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우리농장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출입통제, 1일 2회 전 농장소독, 전 직원의 기숙생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래도 걱정은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농장에 근무자중 울곡리 근처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울곡리 발생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더 걱정됐다. 지리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루하게 이어져 갔다.

5월 10일 오후 소독을 마치고 가축을 관찰하던 중 비육돈에서 보행이 이상한 개체를 1두 발견했다.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

사실 우리농장처럼 젃돈과 비육돈 만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구제역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발굽은 똥이 묻어 관찰하기 힘들고, 콧등도 습식급여기 사용 등으로 사료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증상이 보인 후에야 발견이 가능하다. 정밀한 관찰을 위한 빈 돈방으로 돼지를 이동시킨 후 자세히 관찰하니 발굽이 탈락되고 콧등에 수포가 형성된게 보인다. 한마디로 아찔했다. 이일을 어쩌나 순간 별별 생각이 다들었다. 긴급히

농장장에게 보고하고 농장장은 여기저기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축사소독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것이 일정한 잠복기간을 거친 후 임상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구제역 발생이 발표되기 전, 우리가 철저한 출입통제를 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초 발생한 농장이 좀 더 일찍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더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도 안 걸릴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앞으로 일이 막막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방역당국에서 나왔고 수포를 채취해 간이 검사기로 검사를 하니 양성이다. 농장 앞 도로에는 이미 소독을 하느라 난리고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냇 나간 사람들처럼 허탈해 하고 있을 때 살처분이란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는 내손으로 기른 자식같은 돼지들을 몰아 큰 구덩이로 생매장을 시켜야 했다. 죽음을 직감한 놈들이라 그런지 왜 그리도 만나갈려고 애쓰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려온다. 한 농장안에 모든 가축을 기르다보니 소에게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일은 소도 살처분 한단다.

아! 이 일을 어쩐다 말인가. 내가 몇 년 동안 개량해 만들어 놓은 소들인데 돼지도 돼지지만 착유우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내 가슴을 더욱 더 아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잔 술로 순간을 한탄하며 다음날을 맞이했다. 우리농장을 비롯해 주변 반경 500미터 내에는 살처분이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농장이 발생함으로 인해 남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으로 내 자신이 자꾸 위축되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군인들이 들어오고 장비도 추가로 들어오고 소를 살처분하기 위한 작업들이 부산하게 진행된다. 젓이 붙어 울부짖는 젓소 부인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하나 죽여간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소들을 보며 또 한번 가슴에 고이는 눈물을 훔쳐야 했다. 600kg이 넘는 비육우들도 장정들이 끄는 밧줄에 이끌려 싸늘한 주검이 되어갔다. 이런 눈에 보이는 가슴아픈 충격도 잠시 축사청소라는 커다란 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축분청소, 건초, 볏짚 매물, 축사 물청소 등 농장 구석구석을 파헤치며 청소하는 커다란 작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청소작업은 계속되어 갔다. 인근 농장들도 군인들이 투입되어 청소하느라 난리들이다. 며칠을 노력한 끝에 축사청소를 마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 후 방역관으로부터 청정화를 인정받았다. 그 후 우린 창살 없는 감옥이 된 농장에서 청소 등으로 지리한 생활을 시작했다. 구제역 추가 발생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말 구제역 바이러스는 대단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철저히 방역관

리를 한다던 종돈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었단다. 농장앞 큰길에 경찰과 군인이 지키고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우리가 먹을 주·부식도 하나하나 소독한 후 들여보내 준다. 이 얼마나 처량한 생활인가. 그런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충격을 알지 못한다.

간간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농장 때문에 살처분 한 주변농장들이 우리를 원망한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렸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등에서 역학조사를 가끔씩 나와 이것저것 물어볼 때 꼭 경찰서에서 취조받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지루하게 진행되던 생활도 주변에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는 시점에서 해제되었다. 출입의 자유로움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구제역이 완전 종식된 지금 우리농장에도 시험가축이 입식되어 있다.

가을의 들녘은 풍요로운데 텅빈 우리농장의 축사를 보면 벌써 한겨울의 삭풍이 몰아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시험가축이 정상적으로 자라 입식이 자유로워져 축사마다 가득 찰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 가을 옷깃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이겨볼까 한다.

구제역이 종식된 10월의 어느날 지난날을 돌아보며 쓴다.

금년 여름까지만....

안성시 기획감사실 윤석원

2002. 5. 3 정말 잊지 못할 날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이곳 안성에서 구제역이라는 치욕적인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나 역시 구제역이란 질병에 대해 자세한 지식이 없었다. 단지 몇해 전 이는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쨌든 구제역이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첫날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먼저 발생지를 중심으로한 가축사육 분포도, 도로망, 초소배치도 등 우리는 상황실 준비에 돌입했다.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도구를 갖추고 난후에 비로서 초소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방역활동을 하였다. 구제역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방역만이 최선책이라고 한다. 무려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구제역 초소근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몇 가지만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배치된 초소는 보개면 적가 초소로부터 시작되었다. 날씨도 쾌청했고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 다녀가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시에는 차량을 방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농협직원 1명을 포함하여 우리시 직원 2명은 일일이 차량을 세우고 바퀴, 차체 바닥에 대한 방역으로 도로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이상하리 만큼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대부분 방역에 협조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아마도 특이한 방역복 차림에 땀 범벅이 되어 방역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였을까?

그러나, 차량 밑 부분에 대한 방역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일어서거나 하는 반복 동작을 거의 한나절 이상했기 때문에 다음날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알이 배기기도 하였다.

또한, 양성초소에서는 방역 약품에 의한 차량 변색을 우려한 젊은 운전자가 약품 분사를 피하려고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려다 옆 좌석에 앉아있는 운전자 부

친으로 보이는 나이든 분에게 혼이 나는 장면을 목격, 결국 후진하여 방역 후 주행했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일죽 고은리 초소에서는 밤 12시경 자동 분사가 되는 장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통제본부장과, 농림부 직원과의 장비 설치장소 이견으로 기계설치가 지연되는 등 지휘체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구제역상황실 또는 발생지 주변에 대한 기관별 잦은 현지 방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발생 후 무려 10회에 걸쳐 상급기관 또는 정당 등에서 방문하여 구제역 총괄 지휘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이들의 현황청취 귀가 행위는 사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중 구제역 발생 대비차원의 방역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금년도의 구제역 발생시 초기부터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믿었던 구제역이 무려 3개월 동안 우리 모두를 괴롭히지 않았던가!

셋째,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과 환경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연중 방역 태세를 확립하여야 함. 가축사육 두수가 1마리이든 100마리이든 방역은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제역 증상 조기 파악을 위해 00면 00리 축산농가별로 전화확인을 한 결과 가축두수가 적은 이웃농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 발생을 우려한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대신 방역을 해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축산농가끼리 서로 불신의 벽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구제역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방역 활동, 환경보존 등 의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방송매체의 보도 형태도 개선되어야 한다.

구제역 발생시기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시기였다. 구제역 보도에 혈안이 되어 주민과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해결보다는 어느 언론에서 누가 가장먼저 살처분 장면 등을 보도하는지에 중점을 둔 보도 행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보안을 유지하며 대책마련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았을까?

이제 그 무더웠던 시기의 구제역 근무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무차별적인 생매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분발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다시는 없어야 할 사건

세무과 진상범

오늘은 구제역 발생지 근무하는 날이다. 매 3~4일에 한번씩 주간 또는 야간에 8~10시간씩 도로에서 통행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나 오늘은 구제역 발생지역내의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날이다. 지금까지 구제역 근무를 하면서 제일 피해가고 싶은 일이었다. 어떻게 동물을 산 채로 때려죽이며 묻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수백 수천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다니...

그러나 임무가 임무이다보니 마음을 굳게 먹고 살처분 농가로 향하는 마음은 비장하기만 했다. 방제복을 입고 동료직원과 살처분 농가에 도착하였다.

다른 동료들의 표정은 매일 하는 일인데 하며 심각하거나 비장한 표정이 아니고 일상적인 무표정한 모습이라, 나만의 혼자 비장한 표정을 지을 수도 없어 태연한 표정으로 농장에 들어갔다.

돼지를 몰아 차에 싣고 운반하면서 보니 그 더위에 돼지도 지쳐서 운반 도중 죽는 놈도 발생하였다. 또한 돼지의 고집은 어찌나 세던지 돼지 똥과 땀이 범벅이되면서 싸우는 바람에 이제는 안쓰럽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다 달아나 버렸고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 생각이 났다.

깊은 돼지 구덩이를 파고 새끼돼지, 어미돼지 상관없이 몰아 넣으며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돼지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들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다 보니 구제역이 아니라 돼지의 고집과 싸우는 것 같다.

한 두 마리 때려죽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전혀 불쌍하다거나 안쓰러운 마음이 없어졌다.

구제역은 무서운 병이다.

삼시간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많은 발굽 달린 동물들이 죽는다. 2년전에는 소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직원이 동원되어 고생하드니 이제는 돼지란다. 사람들에게도 옮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구제역은 발굽이 있는 동물에만 걸린단다. 또한, 구제역 걸린 소나 돼지의 고기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병든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해보기도 싫다.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남자나 여자 모두가 동원되어 소독과 주민 통제를 했다. 언제나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특히 여자공무원까지 동원되어 차량의 소독과 주민에 대하여 소독을 하는등 남자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였다. 통과하는 차량에 소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분도 있지만 더러는 짜증과 호통으로 자기만 모면하려는 사람도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구제역의 방제에는 많은 군인과 경찰도 동원되었다. 특히 군인과 전경들은 성남과 안양 등의 외지에서 새벽부터 출장을 와서 안성의 주민을 위하여 고생하였으며 이분들에게 안성주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안성은 농축산업이 주업인 도농복합형 도시이다. 특히 축산업은 전국에서 제일이며 맛있는 한우고기는 안성마춤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때에 구제역이라는 병마가 우리 안성에서 발생하여 많은 축산업자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또한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에 외국손님 유치에 악영향을 주게된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이땅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제역 비상 근무 때 보여준 훈훈한 정감 있는 분도 많다. 늦게까지 소독하며 고생한다고 빵과 음료수를 보내주신 분, 축산업자로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과일과 음료수를 시켜주신 분, 어느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10여개 사다주신 분들 이럴 때는 시민의 공복으로 보람을 느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단결하는 저력을 지닌 민족이다.

우리는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에 대해서 비상대책기구를 상설운영하고 발병시 즉시 출입을 차단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조기에 퇴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농축산업자들도 솔선수범하여 방역작업에 참여하는 등으로 우리지역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구제역을 위해 고생하신 경찰, 군인,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철저한 예방으로 다시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되돌아본 구제역

허가과 이인수

2002년 5월 2일 산불비상 근무에 시달리다 마무리 될 즈음 우리시에 구제역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축질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2년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2002년도에 이어 2년여만에 재발하고 말았다. 기 경험이 있어 하루이틀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니 너무나 실의에 빠지게 되고 전 공직자가 비상 대책근무에 들어갔다. 비상근무중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 부상 등 마음 아픈 상처가 있었으며, 국가적인 대형사건이다 보니 모두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하루하루 지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근무 당시를 상기하며, 사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근무지에 이동하면서...

- 3근무 교대시간대로 근무를 하다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었던 것이 우선 상기된다. 무엇보다도 2근무 교대 시간에 상황실에 들러 등록하고 근무지 왕복 이동시에 12시 전후 늦은 밤시간이라 피로의 누적에 의한 졸음 등으로 아찐한 순간을 겪는 등 안전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 농가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다.

소독하면서...

- 소독을 하다보면 바람이 불어 소독약이 근무자한테 날리고 차에는 가지 않아 안타까웠던 생각이 떠오르고, 약을 하루종일 치다보면 두통이 몰려오곤 했다.

어떤 암체족은 소독약을 피해서 가려고 급발진하여 달리곤 했었다. 물론, 소독기 앞에 서서 철저히 소독하고 지나가는 차가 더 많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소독기 앞에 방지턱을 꼭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구제역 말기에 낮 근무시 더위에 지쳐서 근무하던 모습이 상기된다.

살처분장에 투입되어...

- 돼지 살처분 후 돼지우리내 돈분 치우는 일에 투입되어 일을 했으며, 돈사내 남은사료 및 각종 이물질들을 구덩이를 파고 묻는 작업을 하였다. 냄새가 역겨웠으며 무엇보다도 더위에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다보니 땀에 젖어서 탈진되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근무에 열중하였던 기억이 상기된다.

- 돼지 살처분 후 사후 관리차원에서 투입된 매몰지에서의 작업은 더위에 힘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 농민의 어려움을 더욱더 생각나게 했던 것 같다.

기타 사례

- 미담 사례로 삼죽농협 앞 근무시 몸이 아파서 삼죽약방에 약을 사러 갔더니 축산농가를 위하여 고생한다고 약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래도 약값은 받으셔야죠 하고 몇 번 얘기하였더니 구제역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고생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근무지에 돌아와 경찰관과 얘기했더니, 전경, 의경들에게도 항상 무료로 약을 제공하여 준다고 하였다. 참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꼈으며 고마움과 함께 아픈 몸이 싹 낡는 기분이었다. 약방 주인을 구제역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에 의한 연구로 구제역이 정복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철저한 소독과 관리로서 다시는 이러한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안성의 경우는 전국 제일의 축산사육 지역으로 남달리 가축전염병예방에 예산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 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살처분하여 땅에 매립하는

장면을 보고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완벽한 이동식 식품가공 차량 등 장비 투입으로 철저한 멸균기술에 의한 식품제조에 의거 한정된 일정지역에 공급하여 살처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국익차원에서 해봤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튼, 정책적인 일들은 축산 관계자들의 몫으로 돌려놓고, 우리 일선 공직자는 사태시 비상대책위의 지시에 철저히 응하여 대처하고 금번 구제역을 계기로 향후 평시 소독의 날 운영 등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며 가축 질병 관리요령 등 교육을 축산농가에 시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죽면 고은리 은석마을에서

수도사업소 송정용

내간 근무하던 곳은 안성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3번째로 발생한 곳이다.(고은리 고목마을)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입차량 및 통행인에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차량내부 및 하차하여 신발바닥까지 소독을 필하여야만 하고 심지어 하루에 10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여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축산농가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밤잠을 설치며 근무한 것이 3개월이란 기일이 흘렀다.

처음 발생 시부터 방역소독은 너무도 철저히 하여 하절기 반팔을 착용한 중·고생들이 등교 길에(특히, 여중고생이) 아침에 하얗고 깨끗하게 다림질하여 착용한 학생복에 동력으로 분사하는 곳을 통과하면 방역 소독액으로 교복이 젖어 한 퍼느론 안타깝기도 하였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에 투입된 공무원중 실과소장이하 직원들께서는 현지 축산농가와의 생활에서 삶의 체험을 같이하여 5~6일간씩 귀가도 못하고 현지에서 숙식하고 지낸 결과 구제역이란 전염병도 물러간 것 같다. 이러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족과 같은 소와 돼지들을 살처분한 축산농가중 나의 친우가 3명이 있다. 이친우들에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한들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마는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하는것만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근무에 열중하고 있다.

돼지를 살처분할때에 군부대에서 나온 장병들이 살려달라는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구덩이로 몰아 넣을때는 젊은 장병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물론 장병들은 국가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기간중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소 살처분 축산농가의 심정을 달래기 위해 축주 및 그 가족들을 인근 노래방이나 주점 또는 숙박업소에 대피시키고 술로서 마음을 달래주려 위로하며 그 비용부담을 한 일죽면장님, 농협장 이하 관계인들의 배려가 한편 고맙게 느낀다.

내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나가도 서운한데 매일같이 닦아주고 긁어주며 착유 하던 자식같은 가축을 생매장한 축주들의 심정은 구제역 기간중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제역 발생지역이란 이유로 타 축산농가와의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어 출입통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구제역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고자 구제역 본부 및 초슬르 주야로 순회 하며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혀지를 찾아 음료 및 장비를 지원하여주는 시장, 부 시장 님 이하 국·실과소장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구제역 근무중 느낀점은 -

축산농가들도 자율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방역에 참여하여 전국제일의 축산시를 자랑하는 선진안성시민의 축산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근무중 한낮의 뜨거운 폭염아래 38국도변 차량통행이 끊임없이 주행하는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공직자의 모습에 자긍심을 갖었고, 오후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워 차량통행이 적어지고 인적이 끊기며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야심한 시각이면 함께 근무나온 경찰공무원, 군부대에서 나온 자식 같은 장병들과 가정사 또는 우리지역의 생활을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밤샘을 하든 일들이 뇌리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근무 중 뜨거운 한 낮에는 축산농가 또는 지인들이 근무에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 및 다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차량 및 통행인이 끊길 시각 차량불빛과 함께 인근 축산농가 주민이 근무에 너무도 수고가 많다며 양념통닭 또는 족발을 가져와(근무중 음주를 하면 안된다하며..) 소주한잔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노라면 밤 근무의 피로가 사라지기도 하여 인정 많은 한국인의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 구제역으로 인해 애석한 점은 -

구제역 근무중 순직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근무중 일부 몰지각한 차량운전자 또는 통행인이 방역소독을 거부하는 일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직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말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심히 구제역 근무에 충실하여 타 시군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되어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기대하며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제역과 공무원

양성면사무소 박노성

2002년 5월경에 우리시 보개면 및 삼죽면, 일죽면 등과 인근市인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 구제역이라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다.

공무원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적립된 구제역의 정의란 고작 우제류에 걸리는 가축 법정전염병이라는 정도, 그리고 과거에 영국이나 대만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 외에는 생소한 단어로 다가왔다. 막상 우리시 및 인근시에서 발생하여 우리면이 경계 및 관리지역 등에 편입되어 초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및 의무경찰, 농협직원, 축산농가 등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소독 및 가축 이동제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면 경우에는 발생초기에 자체 초소를 3개소 운영하였고 초소근무자는 시청 및 보건소,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직원들은 초소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일찍 발생한 지역이 일부 해제되었으나 평택시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하여 우리면 초소가 없어지면서 공동읍 건천리에 파견을 나가서 초소근무를 운영하게 되었다.

구제역이 2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공무원 및 의경, 축산농가들은 많이 지쳤으며 주민들은 효과도 없는 소독을 왜 하느니 전염균 전파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초소근무를 하는 나에게도 들려왔다. 나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 관계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초소근무를 하면서 힘든 일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격려의 소리가 피곤함을 잊게 했다.

כות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듯이 2달 이상 줄다리기를 하던 구제역과의 싸움이 끝나던 날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지역의 발전 및 안녕등을 위해 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그 구성원인 공직자 분들은 참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구제역 발생이후 대처기간 중에 약간의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적어보고 싶다.

첫째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제역이란 축산농가의 재산 및 소득, 운영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했던 것 같고 향후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는 공무원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녕을 위해 구제역 대책의 최선봉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내부적으로 너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운영은 같은 공직사회 일원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으며 앞으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셋째는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는 우리 안성시가 전국 축산의 메카라는 이미지가 많았으나 구제역 발생기간 중 각종 언론매체 등의 무분별한 보도 등으로 현재는 과거의 명성이 거의 사라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만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약간의 관리가 필요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그동안 수고한 안성시 전공직자와 의경, 농협직원 등 관련 기관단체 및 개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나 자신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으며 앞으로는 이번 구제역 건을 거울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가 튼튼한 축산운영 체계를 재구성 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002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2003. 3.

국립수위과학검역원

목 차

I. 국내 및 구변국가의 구제역 발생 현황	1
II.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조치사항	2
1. 방역 활동	2
2. 국내 예찰	2
3. 기타 검사	4
III.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팀 활동 현황	5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및 역학조사위원회	5
2. 역학조사의 방법 및 활동 현황	5
3. 해외 역학전문가 자문	5
IV. 2002년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결과	6
1. 발생지역 개요	6
2.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 결과	6
3. 유입 요인별 분석 내용	7
4. 국내전파 양상	8
5. 추적조사 및 예찰	12
6. 방역 활동의 평가	12
V. 결 론	13

2002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I. 국내 및 주변국가의 구제역 발생 현황

1. 우리 나라

가. 2000년 구제역 발생 현황

- 우리나라는 1934년에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증한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66년만인 지난 2000년 3.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의심축 신고를 시작으로 4.16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 등 3개 지역 6개 시·군 15농가(한우 62두, 젖소 19두)에서 구제역이 발생
- 발생농가 및 주변 농가의 살처분, 이동제한, 예방접종, 소독 등의 신속한 방역활동으로 2001년 9.19일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

2. 세계의 구제역 발생현황



II.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조치사항

1. 방역 활동

가. 공항만에 발판 소독조 설치 운영

- 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신발을 소독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의 탑승교 및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

※ 선박화물 : 항만의 차량진입로에 소독깔판 설치 및 소독 시설물 설치

나.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

※ '01년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2월~4월)을 정해 방역활동 강화 (소독 : 4회/월)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홍보

- 지역별 구제역 가상훈련(CPX)을 매년 실시
- 전국 시·군·구에 24시간 긴급방역 신고 전용 전화 (1588-4060) 설치
- ※ 국경검역 시 긴급상황 발생대비 신고 전용 전화 (1588-9060) 설치

라. 해외여행객 불법축산물 반입 예방을 위한 검역탐지견제도 도입 운영

2. 국내 예찰

가. 구제역 발생이전 (2000년 이전) 혈청검사 현황

- 국내 구제역 감염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0년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 소 4,078두, 돼지 9,286두 등 총 13,364두의 혈청검사 실시

년 도	축 종	소		돼 지		계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1997		-	1,293	-	1,704	-	2,997
1998		751	1,331	982	3,963	1,733	5,294
1999		767	1,239	904	3,121	1,671	4,360
2000 (발생이전)		136	215	128	498	264	713
소 계		1,654	4,078	2,014	9,286	3,668	13,364

나. 2000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혈청검사 현황 (2000.3 ~ 2000.9)

- 2000년 3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지역 등을 지정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4,782농가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 및 사슴 총 17,831두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

지 역	축 종	소		돼 지		기타 (염소·사슴)		계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보호지역 ¹⁾ (10km이내)		1,472	6,441	155	600	169	719	1,796	7,760
경계지역 ¹⁾ (20km이내)		1,302	4,253	154	658	-	-	1,456	4,911
이동제한지역 모니터링		179	504	203	1,088	-	-	382	1,592
비발생지역		914	2,795	234	773	-	-	1,148	3,568
소 계		3,867	13,993	746	3,119	169	719	4,782	17,831

1) 이동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다. 2000년 구제역 종식이후 국내 비발생 증명을 위한 검사 현황

○ 혈청검사 현황

- 2000년 구제역 종식이후 국내 비발생 증명을 위하여 소, 돼지 등 총 10,267농가 47,399두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

기 간	축 종	소		돼지		기타 (염소·사슴·멧돼지·고라니)		계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00.9 ~ '01.12		6,796	31,023	44	1,085	2,483	9,969	9,323	42,077
'02.1 ~ '02. 4		748	3,672	97	1,245	99	405	944	5,322
소 계		7,544	34,695	141	2,330	2,582	10,374	10,267	47,399

○ 구제역 항원 (바이러스) 검사 실적

- 2000년 구제역 종식이후 실시된 혈청검사에서 항체가 의심되는 경우 Probang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00년 이후 총 631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음성
- 구제역 유입원인과 관련 국내에 수입되는 건초를 비롯, 여행객의 휴대축산물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의 성적을 나타냄

구 분	2000	2001	2002	계	비고(결과)
농가확대 Probang 검사	563	68	0	631	음 성
수입건초 검사	40	186	131	357	음 성
채집황사 검사	100	357	334	791	음 성
휴대축산물 검사	0	155	115	270	음 성
유럽산 수입돈육 검사	0	46	0	46	음 성
계	703	812	580	2,095	

라. 야생 조수류 검사 현황

-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인근지역으로 야생조류가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발생농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음

구 분	2000	2001	2002		계	비고(결과)
			발생지역	발생농장		
독수리*	0	6	0	0	6	음 성
비둘기	0	0	22	6	28	음 성
까 치	0	0	48	5	53	음 성
참 새	0	0	0	2	2	음 성

* 2001년 몽고 등에서 날아온 독수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 음성

3. 기타 검사

가. 외국 여행객 반입 휴대육류 등 검역실적

○ 국별 휴대육류 검역실적

- 2000년 이후 국별 휴대육류 검역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일본은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몽골·러시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2000		2001		2002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중 국	1,407	4,968	1,729	5,071	3,118	9,186
미 국	1,554	11,241	860	3,715	850	4,319
몽 골	127	1,115	305	1,938	688	3,365
러시아	66	250	230	663	620	1,457
일 본	360	2,087	310	1,446	281	1,187
기 타	1,539	9,912	1,231	6,269	2,183	9,917
계	5,053	29,573	4,665	19,102	7,740	29,431

○ 탐지전제도 도입 이후 국별 탐지실적

- 탐지실적중 중국·몽골이 차지하는 비율 (건수) : 전체의 82%를 차지

국 가	2001		2002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중 국	6	26	788	2,563
몽 골	13	104	744	3,513
러시아	3	4	318	693
독 일	0	0	17	31
일 본	0	0	4	35
기 타	0	0	6	9
계	22	134	1,877	6,844

* 탐지실적에는 휴대육류 이외에도 유가공품 등이 더 포함되어 있음

Ⅲ.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팀 활동 현황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및 역학조사위원회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원인규명을 위해 긴급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그 이후 역학조사 강화를 위하여 2001년 12.31일자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역학조사과를 신설

나. 역학조사위원회 구성 (중앙역학조사반운영규정; 검역원훈령)

- 역학조사위원회 구성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 ※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분과위원회 구성(6인) 운영
 - ※ 역학조사위원회 활동사항 : 역학조사위원회 3회, 구제역분과위원회 2회

2. 역학조사의 방법 및 활동 현황

가. 역학조사 내역

-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발생농장 축주 및 조사대상자와의 면담을 하고, 환축의 임상증상 관찰내용과 농장의 위치 및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
- 1차 조사된 현지 내용을 바탕으로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관련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자료 (사료, 동물약품, 인공수정 등의 차량운행 일지, 배달일자, 판매대장 등)를 재차 확인작업을 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

나. 역학조사 내용의 검증 및 자문

-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 보고
- 구제역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된 역학조사 내용 보고 및 결과 토의
- 해외 역학전문가와 역학조사 내용 토의 및 발생농장 등 현장 점검

3. 해외 역학전문가 자문

가. 국내 역학조사·방역정책 자문을 위한 해외역학전문가 초청 (6.27 ~ 7.7)

- 해외역학전문가 : 가너 (호주), 맥커레스 (뉴질랜드), 웨인라이트 (미국)

나. 해외 역학전문가의 평가 결과

- '02. 5.2일 이후 6.23일까지 총 16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결과로 평가
- 감염농장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역학조사 자료는 해외역학전문가팀의 평가 시 매우 가치가 있었음을 표명
-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르고 최근에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의견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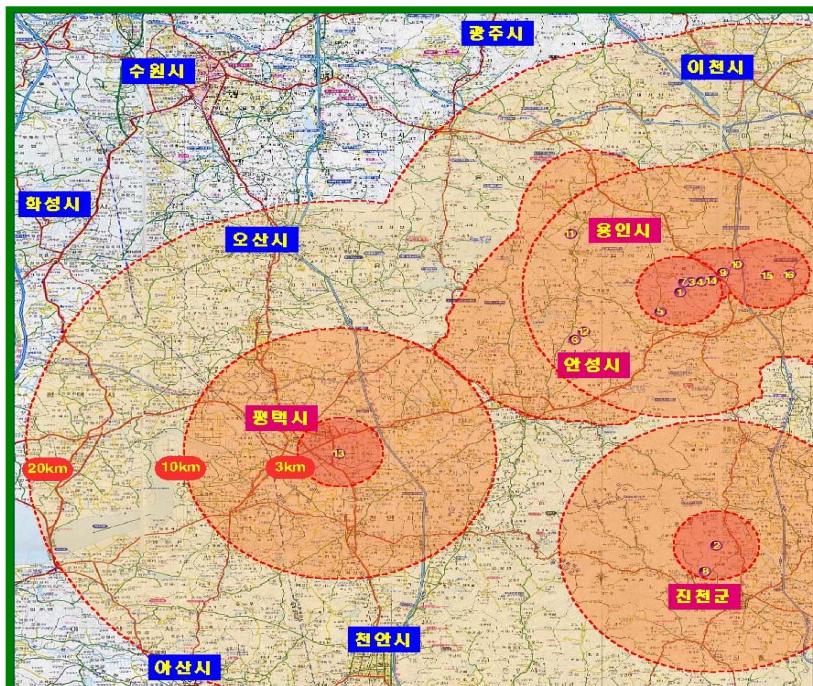
IV. 2002년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결과

1. 발생지역 개요

가. '02년 5.2일 의심축 신고이후 '02년 6.23일까지 총 16건이 발생

- 소에서 발생한 1건(경기 안성)을 제외한 15건이 돼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 4개 지역(안성, 용인, 평택, 진천)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 안성 : 9농가, 용인 : 4농가, 평택 : 1농가, 진천 : 2농가



2.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 결과

가. 2002년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 국내 소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Pan Asia O₁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2000년 발생주와는 다른 바이러스주(strain)로 밝혀짐

- 2002년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퍼브라이트 연구소 (영국)와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의 계통 발생론적 분석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00년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분리되었던 바이러스형보다는 2001년 발생한 중국이나 몽고형 바이러스 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명

나. '00년 이후 지속된 혈청 예찰의 결과, 구제역 발생 축종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

3. 유입 요인별 분석내용

가. 발생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 발생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중국 등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촉하는 친지나 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교포 : '02. 3월까지 총 6명의 중국교포가 근무 (3월 2명 퇴사, 4월 3명 퇴사)하고 있었으며, 구제역 신고일 당시에 1명이 근무중
 - 몽 고 인 : 발생농장내 분노처리를 위해 1명의 몽고인이 율곡농장에 상근
 - ▷ 발생농장과 또 다른 농장 등 2곳의 돈분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두 농장의 분노처리장에 “화성유기질비료공장”을 건립하여 운영중
 - ▷ 발생농장에 일이 많아질 경우 다른 농장에 있는 몽고인 (2명)이 도와줌
 - ▷ 발생농장(인근농장) 몽고인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몽고타운을 방문하여 친구·동족을 만나 몽고에서 가져온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와 햄·소시지 등을 먹음

나.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통한 유입 가능성

- 중국에서 개최된 축산기자재박람회 참가 (4.23~4.27) 및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 (3.15~3.19) 등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 등 해외여행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 인근지역 농가 해외여행 : 안성지역 소재 축산농가 (45명, 3.15~3.19, 중국)
 - ※ 축산기자재박람회 참가
 - 동물약품·사료 등 관련업체, 일반농가 등 관련자 (264명, 4.23~4.27, 중국)

다. 잔반을 통한 전파 가능성

- 최초 발생농장으로 추정되는 농가에서 잔반 급여를 확인한 결과 잔반공급은 없었으며, 인근 탐문조사 결과도 최초 발생농장은 잔반 급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인근 군부대 등 잔반을 공급하는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 발생농가 및 인근지역에서 잔반 급여사실이 없어 잔반을 통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라. 황사·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

-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서부 해안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2002년도는 내륙지방에서 발생
- 2000년 발생한 소는 주로 개방 우사인 반면, 2002년 발생은 돈사가 밀폐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여, 황사 등에 노출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 황사·바람 등에 의한 전파 시 나타나는 산발적이고 불특정인 감염 특성 등을 나타내지 않아, 황사·바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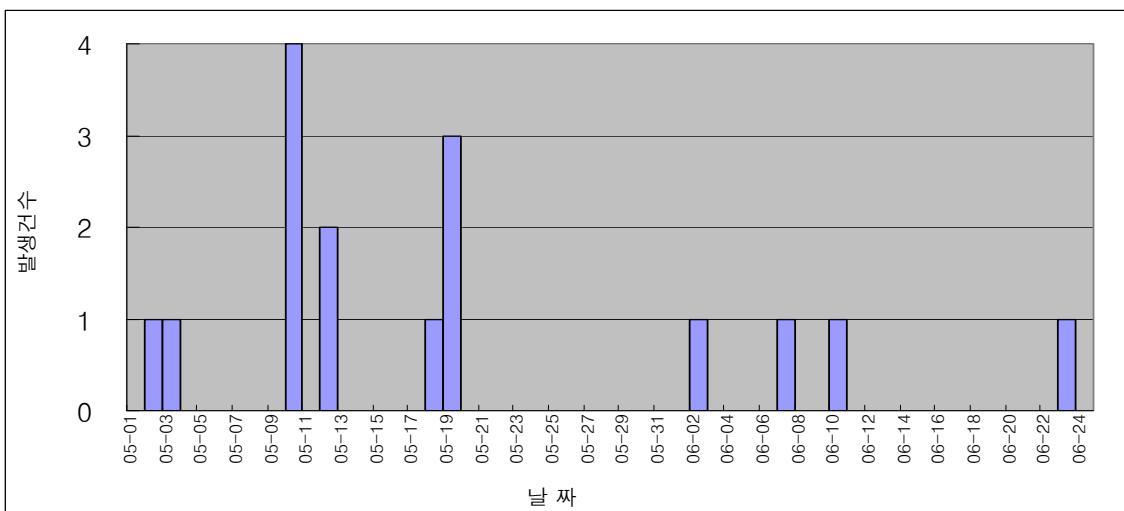
다. 2000년 발생이후 잔존하던 바이러스의 재발 가능성

- 구제역 바이러스는 야외 환경에서 2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없으며,
-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에 잠복감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약 1년이므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없고, 돼지는 잠복감염이 성립되지 않음
- 혹시 만에 하나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에서 남아 있었다면 소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서 발생하여 주로 돼지에 감염되는 양상을 보였음 (총 16건중 15건이 돼지에서 발생)
- ※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에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혈청 예찰을 실시하였고,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결과를 OIE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1년 9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

4. 국내전파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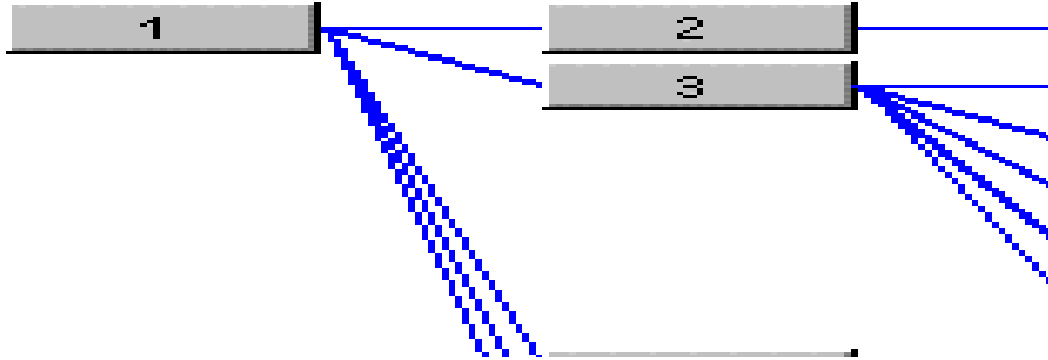
가. 구제역 발생 양상

- 총 16건중 13건 (81.3%)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 km 이내에서 발생
- 질병은 8~9일 간격으로 전파되었으며 (평균±표준편차 9.1±2.0일, 중간값 8.5일) 그룹별로 전염되는 연속적 발생양상 (herd serial interval) 형태를 나타냄



[구제역의 발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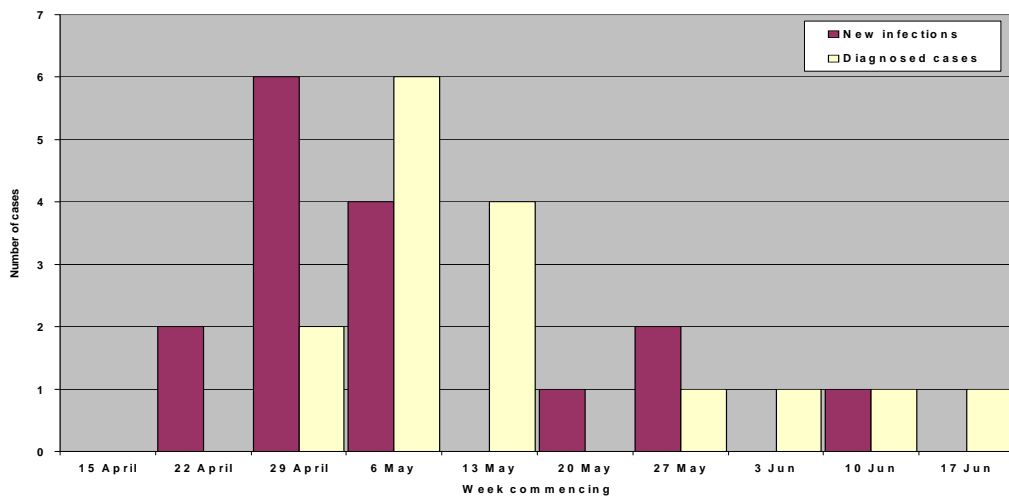
-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원발농장(발생농장)에서 또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한세대로 보았을 때 최대 5세대에 걸쳐 전파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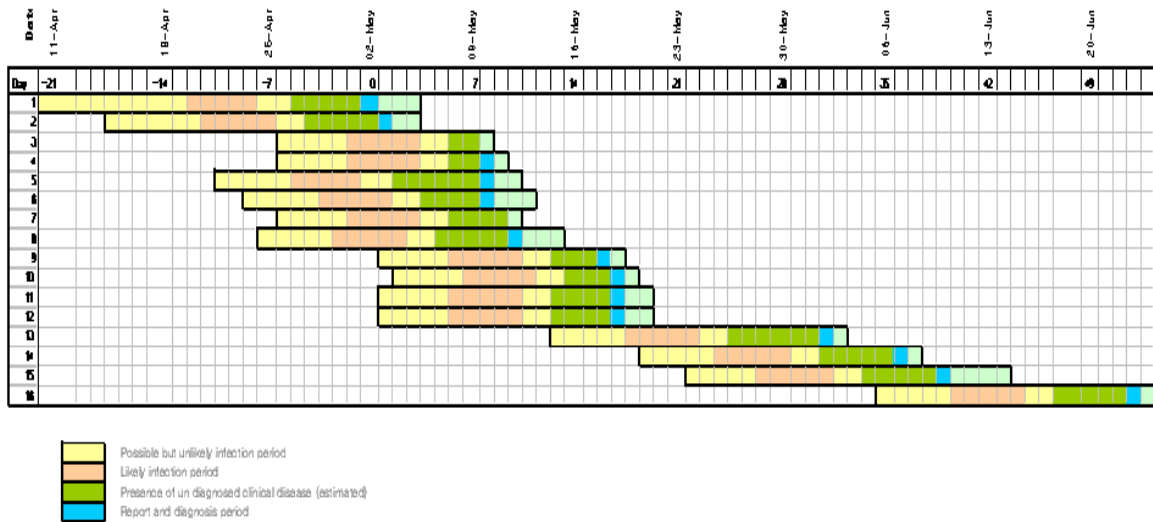
[구제역의 전파 양상]

나. 발생농장의 감염시기 등 분석 결과

- 구제역 발생 16개 농장 (최초 발생농장 포함)의 추정 감염일로 부터 진단 일까지 평균 10일 이었음
- 16개 발생농장 중 8개 농장은 5.2일 최초 신고된 원발 발생(index case)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주별 새롭게 감염된 수 및 진단 건수는 감염일을 기준으로 4.29일에 시작되는 주에 절정을 이루고, 그 결과 5.6일에 시작하는 주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방역조치 이후 감염이 급감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 ▷ 각 농장별 추정 감염일은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동물 두수, 항체검사결과, 추정병변 경과일(병변 진행정도) 및 5일의 추정잠복기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음



[구제역의 유행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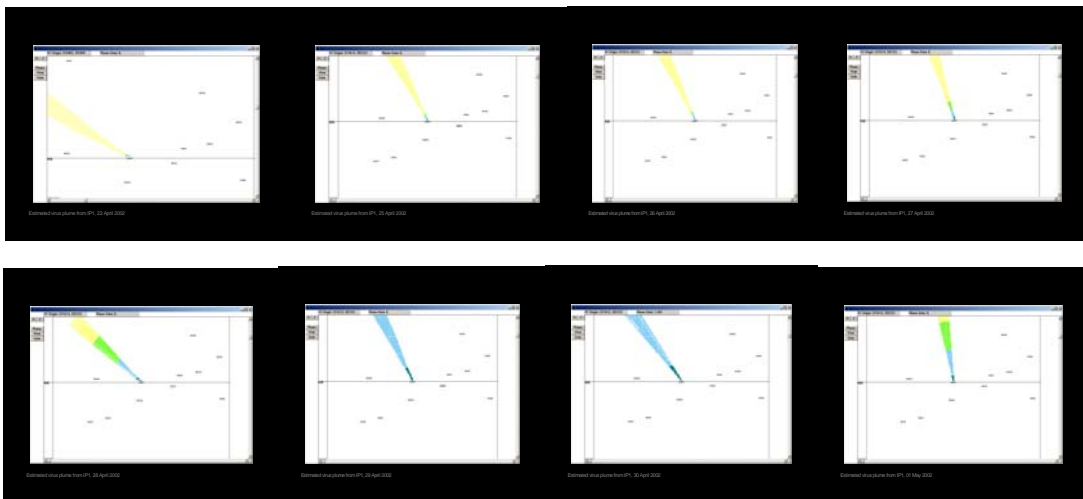
[발생농장별 질병유입의 추정일]

다. 인근농가 전파 요인분석

-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원발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 전파경로를 분석하면 돼지 이동에 의한 직접전파는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사람 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로 추정
- 농장 축주간 접촉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
 - 발생농장 주인이 타농장을 방문하거나 상가집을 방문하여 접촉한 경우
 - 농장종업원의 출퇴근 경로가 살처분된 감염농장을 매일 통과
 - 살처분에 참여한 직원의 사후 방역조치 미비로 타 농장 전파
- 농장 출입자 (동물약품, 정액납품자 등)를 통한 전파 가능성
 - 발생농장의 신고일 전후에 동일약품 판매상이 두 농장을 왕래한 경우
 -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공급을 위해 농장을 오가면서 기계적으로 전파
 - 발생농장을 출입한 택배직원에 의해 타 농장으로 전파
- 농장 출입 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를 통한 전파 가능성
 - 발생농장의 잠복감염 상태에서 출입한 사료차량이 매개체로 작용
 - 발생농장의 돈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 등
- 가능성은 낮으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 발생농장 주변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 (까치, 비둘기)
 - 발생농장을 매일 출입하는 우유배달원, 우편배달부, 친·인척들
 - 소독약 등 약품 및 물자 공급과정에서의 전파가능성

라. 공기전파에 대한 가능성 평가

- 발생농가 주변 500m내의 모든 감수성 가축을 살처분하고, 반경 3km내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여 공기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으며
- 의심축이 신고된 현장에서 진단키트로 진단하여 즉각적인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방역대처로 공기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실험실 정밀검사결과 전이라도 진단키트에서 양성 판정이 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살처분을 실시하여 감염돼지를 제거
 - ※ 신속한 살처분으로 감염 돼지가 호흡기로 배출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총생산량의 5% 수준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 공기전파의 가능성 분석 결과
 - 공기전파는 일반적으로 돼지에서 소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돼지가 호흡기를 통하여 바이러스를 공기중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소는 호흡기로 통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축종이기 때문임
 - 감염된 돼지에 근접해 있는 가축 특히 소에 대한 공기전파 위험 분석필요
 - ※ 감염된 농가에서의 감염기간, 감염된 개체수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 날씨,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수와 밀집도 등 분석
 - 구제역 원발 농장의 신고 전 바이러스 배출현황 및 동 기간동안의 온·습도 및 풍향 등을 분석한 결과 바람 (공기)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울곡농장의 신고전 일자별 바이러스 배출현황, 바람의 방향 등 분석현황]

5. 추적조사 및 예찰

가. 추적조사 대상농가 및 결과

- 목적적 혈청학적 예찰 :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상황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목적적 혈청 예찰을 실시 (여기에는 사료차량과 집유차량을 통해 간접적인 접촉을 한 농장들이 포함)
- 또한, 통계학적 예찰을 보완하기 위해 야생동물과 같이 통계학적 예찰에 포함되지 않았던 감수성 동물에 대한 목적 예찰을 실시

※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농가는 862농가 임

※ 발생농가 중심 10 Km이내 (혈청검사지역) 이외의 농가(264농가) 예찰실적

지 역	소		돼 지		농 가	
	농 가	두 수	농 가	두 수	농 가	두 수
경 기	68	682	130	1,831	198	2,513
강 원	4	56	1	14	5	70
충 북	13	211	10	140	23	351
충 남	18	229	20	280	38	509
합 계	103	1,178	161	2,265	264	3,443

나. 혈청예찰 대상농가 및 결과 : 구제역 음성

- 발생기간 중의 혈청학적 예찰 : 보호지역 및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혈청학적 예찰 실시 (경계지역 혈청학적 예찰은 마지막 발생 3주 후에 실시되었으며, 보호지역은 경계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에 실시)

※ 검사두수 : 보호지역 5,067두; 경계지역 10,842두 (LPB-ELISA를 사용)

→ 항체반응 개체에 대해 추가검사 실시 (3ABC-ELISA, VN, PCR, VI)

6. 방역 활동의 평가

가. 인근농가의 살처분 현황 : 총 162개 농장 160,155두 살처분

- 발생 농장 및 반경 500m이내의 인근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감수성 동물 (90농가 97,202두)을 긴급 살처분
- 발생 농장 반경 3 km이내에 구제역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돼지 (72농가 62,953두)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처분

나. Pen-side 키트의 효능

- Pen-side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농가에서의 구제역 감염의 빠른 확진이 가능

※ Pen-side 키트는 3번째 신고된 구제역 발생농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와 100% 일치

- ※ 실험실로의 시료의 운송 및 검사와 관련된 시간의 지연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기 진단 능력이 감염된 양돈 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을 가능케 하여 발생건수를 한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다. 진단부터 살처분까지의 시간

- 구제역 의심축 신고부터 살처분 완료사이의 시간을 근거로 방역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신고부터 살처분 완료까지 평균 1.7일 (표준편차 1.1일) 소요
- 구제역 발생농장 감염축의 바이러스 배출기간은 농장에 따라서 최소 4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7.9일간 (표준편차 2.0일) 바이러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
- 감염된 농장별로 호흡기 바이러스 생산량을 분석하였던 결과, 임상증상이 보이는 동물 신고 즉시 Pen-side 키트 적용 및 즉각적인 살처분으로 감염동물이 배출할 바이러스 총 생산량의 5% 수준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냄
- ※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정책의 결과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V. 결 론

- 역학조사 결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Pan Asia O₁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재발이 아닌 동북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
 - 2000년과 같은 Pan Asia O₁형이나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strain (바이러스주)로 밝혀졌으며, 2002년 분리 바이러스는 중국, 몽고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주와 유사
 - 국내의 유입 요인은 발생농장(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지역 농가들의 해외여행을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최초 발생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는 주로 사람 및 차량(물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
 - 발생농장과 비발생 농장 축주간 접촉, 발생농장을 출입한 출입자 (종업원, 동물약품, 정액납품자 등), 그리고 농장을 출입한 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판단
 - Pen-side 키트 현장적용, 발생농가 주변 감수성 동물의 신속한 살처분으로 주변으로의 바이러스 오염을 최소화하였고, 발생농장 바이러스 배출현황, 바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바람(공기)에 의한 주변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